

발 간 등 록 번 호
11-1520000-000926-01

최종보고서



Ecolabelling

국제규범화 관련 수산부문 대응방안

2006. 6



연구주관기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수산부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 FISHERIES

최종보고서

Ecolabelling 국제규범화 관련 수산부문 대응방안

2006. 6

연구주관기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수산부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 FISHERIES

제 출 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Ecolabelling 국제규범화 관련 수산부문 대응방안” 연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5년 6월

【연 구 진】

주 관 연 구 기 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 구 책 임 자 : 주 문 배
연 구 진 : 정 갑 용
안 재 현
정 명 화
이 우 진
유 동 규
전 회 성

목 차

요 약	i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
2. 연구방법과 범위	4
제2장 Ecolabelling의 이론적 배경	7
1. Ecolabelling의 이론적 배경	9
1) Ecolabelling의 탄생배경	9
2) Ecolabelling의 본질	10
2. Ecolabelling의 경제적 타당성	14
1) Ecolabelling의 경제학 - 소비자 구매행동과 정보의 비대칭	14
2) 정보비대칭의 대안으로서 Ecolabelling의 역할과 과제	17
3. 수산업과 Ecolabelling	18
1) 수산업에 있어서 Ecolabelling 도입 경제적 효과	18
2)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Ecolabelling	22
제3장 Ecolabelling 관련 국제사회의 논의동향	25
1. 주요 국제기구의 Ecolabelling 논의 동향	27
2. Ecolabelling 논의의 주요 쟁점과 시사점	32
제4장 Ecolabelling 관련 법적 검토	35
1. Ecolabelling의 국제법제	37
1) Ecolabelling과 일반국제법	37
2) Ecolabelling과 WTO협정	40

3) Ecolabelling과 FAO	46
4) Ecolabelling과 OECD	46
5) Ecolabelling과 ISO	50
2. Ecolabelling의 국내법제	53
1) Ecolabelling 관련법제의 구조	53
2) 해양수산부 관련법제	56
3) 산업자원부 관련법제	58
4) 환경부의 관련법제	60
5) 농림부 관련법제	64
3. Ecolabelling의 법제화 추진원칙과 방향	66
1) Ecolabelling 법제화 추진원칙	66
2) Ecolabelling의 법제화 추진방향	69
제5장 Ecolabelling의 국내외 적용사례	77
1. 국내사례	79
1) 농림부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79
2) 산업자원부의 GR(Good Recycled) 인증	86
3) 환경부 환경라벨링 제도	88
4)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절약마크제도	100
5) 민간사례	105
2. 국외사례	106
1) MSC의 수산물 인증	106
2) FAO의 수산물 Ecolabelling 가이드라인	114
3) EC	123
4) 결론	128
제6장 Ecolabelling 국제규범화 관련 수산부문 대응방안	131
1. Ecolabelling 국제규범화 관련 수산부문 쟁점	133
1) Ecolabelling의 개념 및 적용범위에 대한 국제대응문제	133
2) Ecolabelling 국제규범화의 수산부문 국내대응문제	139

2. 수산물 Ecolabelling 관련 유사제도	144
3. Ecolabelling 국제규범화 관련 수산부문 대응방안	147
1) 수산부문 Ecolabelling 제도화의 규범적 타당성	148
2) Ecolabelling 국제규범화 대비 수산부문 기본방향	149
3) Ecolabelling제도의 수산부문 도입방안	150
4) 수산물 Ecolabelling 도입을 위한 실천계획	157
참고문헌	161
부록	167

표 목차

<표 2-1> ISO에 의한 에코라벨링제도의 3가지 유형	12
<표 2-2> 에코라벨링제도 분류 주체별 비교	13
<표 3-1> Ecolabelling 관련 국제회의 논의동향	28
<표 4-1> 협상관련 무역-환경문제와 WTO/CTE의제	45
<표 4-2> 환경라벨링 관련 WTO 논의체계	45
<표 4-3> 환경기준의 종류	53
<표 4-4> 경제적 유인수단의 현황	54
<표 5-1>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지정현황	81
<표 5-2>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종류 및 기준	83
<표 5-3> 연도별 친환경농산물 인증현황	84
<표 5-4> 연도별 친환경농산물 인증건수	85
<표 5-5> 3가지 유형의 환경라벨링 비교	90
<표 5-6> 국내 환경라벨링 제도 유형	92
<표 5-7> 환경마크 연도별 인증품목	93
<표 5-8> 환경마크 인증제품 현황	94
<표 5-9> 환경마크제도의 기관별 업무수행	95
<표 5-10> 환경성적표지 인증현황	96
<표 5-11> 해외 환경라벨링 국가별 상호인정 내역	98
<표 5-12> 에너지절약마크 대상품목	103
<표 6-1> 수산자원회복 대상어종(예)	155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의 범위와 추진체계	5
<그림 2-1> 식품 단위당 특정 속성의 수요와 공급	15
<그림 5-1> GR마크	87
<그림 5-2> 환경마크 연도별 인증품목 증가추이	93
<그림 5-3> 환경성적표지 라벨	96
<그림 5-4> 에너지 절약마크	102
<그림 5-5> 인증기구에 위한 어업 평가 프로세스	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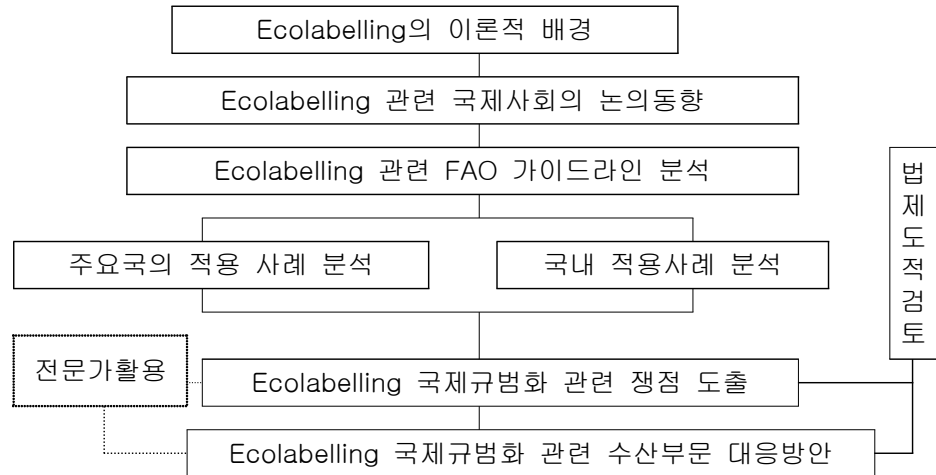
요약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수산부문에 있어서 에코라벨링(Ecolabelling)제도의 국제규범화 논의는 단순히 친환경성 확립의 범위를 넘어 자원관리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음
 - 당초 FAO의 논의과정에서 회원국간 상당한 이견이 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 및 책임있는 어업을 위하여 동 제도가 필요하다는 데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됨
 - 제26차 FAO COFI에서는 해면어획 수산물의 Ecolabelling을 위한 국제가이드라인이 Ecolabelling 소위원회에서 채택되었으며, 향후에 각국이 개별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인 하위규정 작성을 위한 합의가 있어야 하는 단계임
- 수산부문에 Ecolabelling 제도 도입은 소비자의 반응정도에 따라 개별국가의 수산자원관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우리 수산업에 있어서도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및 사전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 특히, Ecolabelling 제도의 국내 이행은 수산자원관리의 하나의 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국제기준에 조화되는 수산물 수입관리 및 수출촉진수단으로도 검토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의 목적은 수산부문 Ecolabelling 제도의 국제규범화와 관련하여 국제적 협상방향과 국내도입을 위한 대응방안을 도출하고자 한 것임
 - 이 연구의 결과는 수산부문 Ecolabelling 국제규범화 논의과정에 우리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자료로서 역할을 기대하며,
 - 국내정책에 있어서도 Ecolabelling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의사결정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의도하였음

- 이상의 연구를 수행하는 범위와 추진체계는 <그림 1>과 같음

<그림 1> 연구의 범위와 추진체계



II. Ecolabelling의 이론적 배경

1. Ecolabelling의 이론적 배경

1) Ecolabelling(에코라벨링)의 탄생배경

- WTO 체제의 확대, 강화와 더불어 최근에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에코라벨링을 포함한 환경라벨링을 기술무역장벽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환경라벨링을 기술무역장벽화 도구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음
 - 수산부문에서도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줌으로써,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비자들에게 수산물의 생산과정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자는 움직임이 국제사회에서 뜨겁게 논의되고 있음
 - 수산업 분야, 특히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핵심으로 하여 에코라벨링에 대한 개념을 도입하고자 직접 시도한 것은 1997년 FAO COFI 논의를 들 수 있는데, 이 회의에서는 Ecolabelling의 최소구비요건과 기준으로서 관리체계 (Management system), 생태계의 고려(Ecosystem considerations), 어족자원의 관리(Stocks under considerations)를 제시함

2) Ecolabelling의 개념

- 에코라벨링(Ecolabelling)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적용되는 상품 또는 산업에 따라 약간씩 다르게 해석됨
 - 에코라벨링의 제도화 목적은 친환경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기 쉽게 제공함으로써 친환경 상품(식품)에 대한 구매 및 소비를 활성화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소비자 선호에 부합하는 친환경 제품을 개발·생산하도록 유도하는데 있음
- 현재, 우리나라에서 에코라벨링은 그린라벨, 그린마크, 친환경인증, 환경표지, 환경마크, 환경라벨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용은 용어의 개념 또는 본질에서의 차이보다는 인증방법과 범위, 인증기관의 주체 또는 용어의 사용주체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Ecolabelling이란 상품이 환경에 배려된 것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라벨의 총칭임
 - 에코라벨은 환경을 진심으로 배려하는 소비자에게 있어서는 상품선택에 있어서 주요한 의사결정수단이며, 환경의식이 약한 소비자에게 있어서는 동기부여의 효과를 부여해주는 수단임. 다시 말하면, 에코라벨링은 소비자들에게 상품의 친환경적 정보를 제공해주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임

3) Ecolabelling의 기능

- 에코라벨링의 기능(효과)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 첫째, *Protecting environment* - 실제적으로 환경적 영향을 감소시키거나 환경적 질을 개선시키는 구체적인 기능
 - 둘째, *Encouraging environmentally sound innovation and leadership* - 소비자나 생산자의 행동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셋째, *Building consumer awareness of environmental issues* - 소비자의 인식이나 태도에 직접 영향을 주어 그 영향이 소비자의 실제 소비행위를 변화시키는 기능

4) Ecolabelling의 유형

- 현재 활용되고 있는 환경라벨링을 근거로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는 <표 1>과 같이 3가지 에코라벨 유형-TYPE I, TYPE II, TYPE III으로 분류하고 있음
 - 이러한 ISO14020의 구분에 따르면 에코라벨링(Ecolabelling)은 제1유형 환

경라벨(Type I: Environmental label)만을 의미하는데, 이는 에코라벨링 또는 에코라벨에서 '에코'가 환경적(ecology)이고 경제적(economic)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임

<표 1> ISO에 의한 에코라벨링제도의 3가지 유형

유형	구분	내용
제 1 유형 (Type I) (ISO 14024)	정의	제품의 제조, 유통, 사용 또는 폐기과정에서 동일 용도의 다른 제품과 비교하여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임을 인증하는 제도
	인증주체	제3자 인증
	시행 시기	한국 1992년 4월 ISO 1999년 4월
	LCA적용	적용안함
제 2 유형 (Type II) (ISO 14021)	정의	생산자 자신이 제품의 환경성은 주장할 수 있는 방법·조건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품의 환경성을 자기주장하는 제도
	인증주체	당사자 인증
	시행 시기	한국 1996년 8월 ISO 1999년 9월
	LCA적용	적용안함
제 3 유형 (Type III) (ISO 14025)	정의	제품의 환경성 정보를 계량화하여 도표·그래프 등으로 표시하는 환경성적표지제도
	인증주체	제3자 인증, 당사자 인증
	시행 시기	한국 2001년 2월 ISO 1999년 3월
	LCA적용	적용

- 제26차(2005년 11월) FAO COFI에서 해면어획 수산물에 적용할 Ecolabelling의 국제가이드라인을 채택한 바 있는데,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해면어획 수산물의 에코라벨링이란 수산물에 특정 로고나 문장을 부착함으로써 수산물이 어업자원 보호 및 지속가능한 어업생산방식에 따라 생산되었음을 인증하는 제도임
 - 즉, 수산물에 특정 로고나 문장을 부착하는 에코라벨링의 목적은 상품의 정보를 확인하고 소비하려는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부응하는 동시에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2. Ecolabelling의 경제적 타당성

- 1) 소비자 구매행동과 정보의 비대칭
 - 소비자는 정보의 한계편익이 탐색의 한계비용과 같아지는 수준까지 최저가격에 대한 정보를 찾고자 하며, 이 결과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지불의사

(willingness to pay)와 생산자의 정보제공의 한계 비용에 기초하여 정보시장이 생겨나게 됨. 또한 라벨링은 생산자가 소비자에 정보를 전달하여 신용 속성을 가진 상품이 시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종종 쓰이고, 소비자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 결정을 내리게 됨

- 그러나, 생산자는 자신이 생산한 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알고 있는 정보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제3의 기관이 개입하여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이 경우에는 제3의 인증기관에 의존할 수도 있으며 정부규제를 이용할 수도 있음
- 소비자과 생산자가 상품의 친환경적 측면에 관해 가지고 있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함
 - ① 소비자가 의사 결정에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가지고 있지 못할 때, ② 소비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한계를 모를 때, ③ 소비자가 정보를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을 모를 때 정보의 비대칭이 발생함.
 -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에코라벨링을 활용할 수 있음

2) 정보비대칭의 대안으로서 Ecolabelling의 역할과 과제

- 에코라벨링을 자기선언적 표시 형태로 추진하면 여전히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하기는 한계가 있음. 이에 대한 대안 중의 하나가 제3기관의 인증을 바탕으로 하는 에코라벨링임.
 - 만약 해당 상품이 관련 기준을 충족할 경우 상품에 '인증표시'를 부착할 수 있음. 제3기관이 인증하는 소비자 에코라벨링은 시장에서 ① 상품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와 보증, ② 소비자 보호, ③ 구체적인 특정 환경 정책 달성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음
- 에코라벨의 인증기관은 정부기관이나 준정부기관, 독립기관일 수 있으며, 해당기관은 일정한 금액을 받고 일정기간 동안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함.
 - 에코라벨링 인증기관의 역할은 일반적으로 ① 기준정립, ② 인증, ③ 마케팅 임. 기준 정립은 상품이 에코라벨을 달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환경적인 기준을 결정하는 것이며, 인증은 해당 상품이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



부를 판정하는 것임. 그리고 마케팅은 해당 상품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를 높이고 표시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시키는 역할임

- 에코라벨의 효과성은 소비자가 특정 라벨을 얼마나 인지하고 얼마나 수용하는지에 달려 있음. 따라서 에코라벨링제도의 성공 여부는 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awareness)를 기본으로 함.
 - 따라서, 에코라벨링에 대한 정책홍보가 선행되지 않으면 안됨. 즉,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라벨링 상품을 선택하도록 해야 함

3. 수산업과 Ecolabelling

- 에코라벨링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이유 중 하나는 수산자원량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획에 대해 보상을 함으로써 과도하게 남획한 어류를 회복할 유인을 창출하는 것임
- 수산업에 있어서 에코라벨링 도입의 시사점
 - 미국시장을 대상으로 에코라벨을 표시한 수산물 수요에 대해 Johnston, Wessells and Donath(1999b)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가 인증을 받은 수산물과 인증을 받지 않은 수산물을 비교하여 인증을 받은 수산물에 지불하고자 하는 프리미엄이 유발하는 가격 차이가 나타나도록 설계됨
 - 인증과 가격의 차이를 제외하면 두 가지 상품은 모든 면(품질과 신선도 포함)에서 동일함. 인증은 '수산물에 라벨을 부여하여 해당 수산물이 남획을 엄격히 방지하도록 하고 있는 프로그램 인증을 받은 수산물은 남획하지 않았음을 보증하는 라벨을 부착함. 인증을 받지 않은 수산물에는 이러한 보증이 없다.'고 표현함
 - 평균적으로 응답자의 70% 정도가 에코라벨링을 한 새우, 연어, 대구를 에코라벨링을 하지 않은 경우보다 선호함. 그리고 계량분석의 결과, 응답자의 에코라벨링 수산물에 대한 선호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인이 프리미엄의 규모임로 나타났음.
 - 프리미엄이 커질수록 응답자가 에코라벨링을 한 수산물에 대한 선호도는 낮아짐. 뿐만 아니라 응답자가 에코라벨링을 한 수산물을 선택할 확률을 상품 종류(연어, 대구, 새우), 소비자의 지리적 위치, 소비자 그룹에 따라 달랐고, 인증기관은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 또한 응답자의 2/3 정도가 태평양 연어와 대서양 대구의 자원상태를 잘 모른다고 응답해 소비자에 대한 심도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 수 있었음
- 국가간 선호도 차이를 보면, 노르웨이의 소비자들은 미국에 비해 에코라벨 수산물 선호도가 낮은 편이었음
- 이들 연구결과에서 나타나는 주요한 시사점은 에코라벨링 인증에 대한 인지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것임. 즉 에코라벨링에 대한 교육 또는 홍보의 중요성이 크다는 점을 알 수 있음
- 결국, 소비자의 수산물의 선택은 에코라벨링을 한 수산물에 대해 지급하는 에코라벨링의 프리미엄(가격 차)에 좌우되며, 소비자가 에코라벨 문제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 지에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임

III. 에코라벨링 관련 국제사회의 논의동향

1. 주요 국제기구의 Ecolabelling 논의 동향

- 최근 세계 수산물 생산량 감소 및 수산자원의 남획이 계속되자 기존의 지휘-통제의 어업관리 메커니즘(command-and-control management)의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함
 - 이에 대한 대책으로 소비자 구매 결정에 영향을 줌으로써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비자들에게 수산물의 생산 과정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자는 움직임이 국제사회에서 일기 시작함
 - 상품 정보를 접한 소비자들 가운데서 수산물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어획된 상품을 더 선호하는 자는 에코라벨링이 부착된 상품을 구매할 확률이 높아지고, 이렇게 반복되는 소비자의 구매 행동은 수산물 생산자 및 유통인들에게 신호를 보낼 수 있을 것임
- 이 같은 움직임 속에서 에코라벨링을 가장 먼저 도입한 곳은 MSC(Marine Stewardship council)임.
 - MSC는 비영리조직으로써 1996년 세계야생동물보호기금(WWF)과 다국적기업인 Unilever의 합작으로 창설됨
 - 인증 받은 수산물 또는 수산식품은 해당 상품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어획



되었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알릴 수 있는 라벨을 상품에 부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

- 이를 통해 MSC는 시장 중심의 수산자원 관리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되며, 또 소비자들은 MSC 로고가 부착된 수산물 및 수산식품을 구매하면서 깨끗한 해양 그리고 깨끗한 환경을 지지한다는 것을 생산자들에게 알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임

○ MSC 창설이후 1997년 FAO의 수산위원회(COFI)는 제22차 회의에서 처음으로 에코라벨링에 관한 논의를 시작함

- 이 논의는 에코라벨링이 세계교역에 새로운 무역장벽을 형성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논의의 진전이 이뤄지지 않다가 2003년 COFI 제25차 회의에서 해면어획 수산물에 적용할 수 있는 에코라벨링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것을 FAO에 제의함

- 논의를 거듭하여 2005년 3월 COFI 제26차 회의에서 최종 가이드라인이 채택됨

○ WTO에서는 라벨링의 전반적 내용에 대해 논의가 이뤄지고 있음. 즉, 라벨링이 국제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기술장벽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기술장벽효과 예방을 위해 TBT협정을 체결함

- TBT의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 즉 의무적(mandatory) 라벨링에 대해서는 TBT협정 제2.1조(최혜국대우 및 내국민대우), 제2.2조(무역제한적 목적의 제거), 제2.4조(관련 국제표준의 준수), 제2.9조(투명성 및 공지의무)가 적용됨. 또한 표준(standard), 즉 자발적(voluntary) 라벨링에 대해서는 TBT협정 부속서 3 “모범관행규약(code of good practice for the preparation, adoption and application of standards)”이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음

- 그러나 PPMs를 포함하는 라벨링이 TBT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에코라벨은 전과정 환경영향을 고려하여 PPM 기준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임

- 또한 TBT협정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가와 관련하여 TBT협정이 정부라벨링(governmental labelling)이 아닌 민간라벨링(private labelling)까지도 규율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는 것이 WTO의 일반적 견해임. 그러나 WTO 회원국은 자국내 민간라벨링 프로그램이 TBT협정에 부합하도록 적

- 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므로 민간라벨링 프로그램은 TBT협정에 의해 직접 규율되지는 않으나 국가에 의한 간접규율 대상이 된다고 해석하고 있음
- 스위스 및 EC는 환경라벨링으로 인한 불필요한 무역기술장벽효과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TBT협정이 환경라벨링에 대해 포괄적으로(강제적/자발적/정부주도/민간주도/PPM을 불문하고) 적용되어야 하며, 라벨링의 유형에 따라 적절한 TBT규정이 보완·확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함
 - 또한 환경라벨링 프로그램이 비교적 성숙한 캐나다와 일본도 환경라벨링의 유효성을 WTO에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체로 EC의 주장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임
 - 미국은 현행 TBT협정의 불충분성으로 인해 발생한 무역분쟁사례가 없으므로 TBT를 확대 적용할 필요가 없으며, 실제로 라벨링 관련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WTO 분쟁해결기구를 통해 처리하면 자연스럽게 관례가 형성될 수 있으므로 TBT에서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임
 - 개도국 역시 미국과 마찬가지로 PPMs 환경라벨링까지 TBT에서 적용한다면 이는 PPMs에 근거한 제품차별을 WTO에서 수용한다는 의미이므로 선진국이 라벨링을 이용하여 개도국의 선진국 시장진입을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입장임
- 또, 환경라벨링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주요 국제기구로 1994년 발족된 이래 국가간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greement)을 지원하고 있는 GEN(국제환경라벨링네트워크)이 있음.
- 전 세계 Type I 환경라벨링을 시행하고 있는 27개 국가의 환경라벨링 운영기관들의 협의기구인 국제환경라벨링네트워크는 이러한 환경라벨링의 무역차별효과를 예방하고 각국간의 환경라벨링 정보공유를 통해 제도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2. Ecolabelling 관련 국제사회 논의의 특징과 시사점

- 지금까지 논의된 국제동향을 살펴보면 수산물의 지속가능성이라는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MSC'라벨 등의 민간차원의 에코라벨링이 개발되었고, 이를 모멘텀으로 하여 민간에서 만들어 졌던 에코라벨링이 신뢰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FAO는 해면어획수산물에 대상으로 한 에코라벨링 가이드라인을 채택하기에 이르렀음

- FAO의 에코라벨링 주요 논의 목적은 어업관리방안의 개선임. 수산자원관리 방식의 패러다임 변화라고 할 수 있음.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관리방안으로 국제사회는 개별 국가 및 지역수산기구를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에코라벨링의 지배구조를 개발하는 데 힘쓸 것으로 예상됨
 - 수산자원의 사용자 또는 기타 어업에서 가지고 있는 권서는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임
 - 또한 수산부문 에코라벨링은 산업간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는 문제가 아니라 어업의 특수한 문제로 한정되기 때문에 민간보다는 정부의 노력이 무엇보다도 강조될 것으로 보임

- 이 같은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에코라벨링제를 국제사회에서 구체화해 나가는 데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음
 - 첫 번째 문제는 어업의 인증과 관련된 문제임. 실제 어업의 인증은 객관적인 기준에 대한 신뢰성 문제로 평가절하되었음. 동시에 어업관리에 있어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었던 것도 사실임
 - 대표적인 인증기준으로 MSC 기준이 있는데 이는 기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개발도상국과 소규모 어업국에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는 실제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음. 그러나 MSC 인증을 받은 어업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 에코라벨링 인증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임. 지속가능한 어업이라는 가치 있는 슬로건과 에코라벨링 시행 주체에 대한 논의 외에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문제는 에코라벨링의 도입하게 되었을 때의 사회적 비용임.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관리방안을 개선하는 것은 곧 수산물 가격 인상을 의미하고 소비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임

- 현재 FAO가 제안한 에코라벨링 가이드라인의 대상은 해면어획수산물에 한정하고 있고 향후 양식수산물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을 채택할 것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로 양식수산물과 해면어획수산물 둘 중 어떤 수산물에 라벨을 부착할 것인지 더욱 신중을 기해서 결정되어야 할 문제임

- 현재 국제 사회에서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WSSD)는 현 어업관리방식을 바꾸기 위해 몇 가지 야심 찬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2010년

- 까지 책임있는 어업에 대해 생태계 기반의 접근방법을 적용한다는 것임.
-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과학적 데이터, 분석 방법, 적절한 생태계 접근을 위한 보존 및 관리 측정기준 개발, 새로운 규제 메커니즘 도입 등 다양한 사안들을 해결해야 함
 - 또한 이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문제는 개발도상국의 참여문제임. 수산물 교역에서 개발도상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개발도상국이 에코라벨링에 참여는 필수적으로 여겨지지만 이는 선진국의 지원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 구체적으로 개도국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선진국의 지원방법의 구체화도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아있음
 - 뿐만 아니라 WTO 내에서도 스위스 및 EC 등은 환경라벨링으로 인한 불필요한 무역기술장벽효과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TBT협정이 환경라벨링에 대해 포괄적으로(강제적/자발적/정부주도/민간주도/PPM을 불문하고) 적용되어야 하며, 입장을 견지하는 한편 미국은 TBT를 확대 적용할 필요가 없으며, 실제로 라벨링 관련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WTO 분쟁해결기구를 통해 처리하면 자연스럽게 관례가 형성될 수 있으므로 TBT에서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으로서 양 선진국간의 의견합의를 보는 것도 해결해야 하는 과제임
- 결국, 수산물 에코라벨링에 있어 정부가 국제사회의 국내어업의 가교역할을 하며 에코라벨링 확대를 위해 힘써야 하며 구체적으로 인증 기준을 개발하는 데에도 중요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논의동향임
 - 나아가 세부적으로 에코라벨링을 시행하게 되었을 경우의 환경보호적인 측면과 사회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국제적으로 에코라벨링을 확대 실시하기 위해 개도국의 지원방법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음

IV. Ecolabelling 관련 법적 검토

1. Ecolabelling의 국제법제

1) Ecolabelling과 일반국제법

- Ecolabelling은 UN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통하여 '의제21'에서 채택됨. 이후 논의된 작업 계획들은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상태·반응(DSR)구조의 지

속가능개발지표가 탄생함

- 현재까지는 일반국제법상 Ecolabelling제도에 대한 논의가 국가간 이해관계에 따라 환경보호효과(긍정적 측면)와 무역제한효과(부정적 효과)에 대한 상대적 가치의 평가문제가 됨
 - 특히, 국제무역에서 환경 보호목적의 무역조치가 자의적이고 불공정한 차별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출국에게 과도한 부담을 강요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으로 나타나야 할 것임

2) Ecolabelling과 WTO협정

- 환경라벨링과 관련된 규정을 가진 WTO 협정으로는 첫째, 관세 및 무역에 관한일반협정(GATT) 및 서비스무역에 관한일반협정(GATS)과 같은 일반협정, 둘째, 기술장벽협정(TBT), 위생검역협정(SPS), 원산지규정협정, 정부조달협정 등과 같은 특별협정이 있음
- GATT와 GATS에서 규정한 동종상품(like product)에 대한 최혜국대우(most favored nation) 및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원칙과 환경라벨링에 근거한 제품차별이 양립가능한지 여부가 논의의 핵심임
- TBT관련 환경라벨링 논의핵심이 동종상품(Like Products)에 대한 동일대우 원칙에의 부합 여부이므로 환경라벨링의 제품차별기준(인증기준 또는 표시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환경라벨링과 관련한 논의는 결국 TBT협정이 PPMs 라벨링까지도 포괄하여 적용할 것인가, 기술장벽 제거를 위해 TBT 규정이 충분한 수준인가, 그리고 개도국의 시장접근성 제고를 위해 별도의 대안이 필요한가로 집약됨
- 기술장벽협정(TBT)과 라벨링, GATT 체결국들은 도쿄라운드에서 표준코드(Standards Code)라고 통칭되는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협정(An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을 채택하기에 이르렀음
 - 공산품 및 농산품에 대하여 정부에 의하여 정해진 의무적인 명세(Specifications)를 규율하는 표준코드는 각국의 규제요건의 차이로부터 발생하는 무역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
 - 표준코드에 의하여 표준의 유효성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그 표

준이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unnecessary obstacle to international trade)”가 되는지 여부임. 표준코드가 각국의 다양한 표준들이 비관세장벽으로서 무역을 왜곡시킬 가능성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지만 “불필요한 장애”의 판정을 위한 핵심적인 기준 등이 명백히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용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SPS협정과 라벨링, SPS협정의 목적은 위생 및 검역조치가 인간, 동물 및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에 필요하도록 하고 국제무역에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장애로 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임
 - SPS협정은 농산품등 식품안전에 대한 상품표준과 공중보건관련 수입제한을 다루고 있음. TBT협정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제품과 무관한(unrelated) 공정 및 생산방법(PPMs)규제는 새로운 SPS협정의 적용을 받지 않음
 - 예를 들면 참치잡이에 적용되는 돌고래안전표준에 관한 미국법은 SPS협정의 적용대상이 아님

3) Ecolabelling과 FAO

- FAO는 1997년 이후 수산물의 Ecolabelling을 추진하여 왔으나, 2003년 10월 수산물 에코라벨링에 대한 국제적 지침개발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하면서 본격화됨. 전문가 협의회에서 마련한 초안에 대한 회원국간 기술협의회를 개최(2004.10)하여 Ecolabelling을 위한 절차적·제도적 측면을 합의함
 - 다만, Ecolabelling을 위한 실질적 기준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로서도 FAO의 합의가 국제 에코라벨링 지침이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하여 WTO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이 지침이 추후 국제자유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하고 있음

4) Ecolabelling과 OECD

- 1991년 OECD의 환경라벨링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라벨링은 라벨이 붙여진 상품이 기능 및 경쟁적인 면에서 유사한 상품보다 환경친화적으로 인증된 상품이라는 것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민간 또는 공공기관에 의해 부여되는 라벨을 부착하는 제도임
 - OECD는 1972년 ‘환경정책의 국제 경제적 측면과 관련한 지침의 원칙’의 발표를 통해 환경과 무역에 대한 4대원칙*을 제정한 후 환경과 관련된 무역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를 이끌어오고 있음

* 오염자부담원칙(Polluter Pays Principle : PPP원칙), 국가간 환경정책 및 규정의 조화를 위한 조화원칙



(Harmonization principle), 내국민대우 및 무차별원칙(National Treatment and Non-discrimination principle), 각국간 환경정책의 차이에 따른 생산비 차이를 상쇄하기 위한 수입부과금 및 수출환급의 금지원칙 (Compensating import levies and export rebates principle)

5) Ecolabelling과 ISO

- 국제표준화기구(ISO)는 재화 및 용역의 국제교환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규격의 제정 및 보급과 기술발전을 위한 정보·지식 등의 국제간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1947년 2월 설립됨
- 환경라벨링(environmental labelling)이란 동일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환경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소비자가 식별·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정보수단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환경라벨링은 ISO 분류에 따라 Type I (제3자 인증), Type II (자기주장), Type III (정보공개)로 분류됨

2. Ecolabelling의 국내법제

- Ecolabelling 관련법제의 구조 : 환경관련 직접규제, 경제적 유인수단, 자율규제수단으로 되어 있으며 전반적인 범구조는 자율적인 환경관리형태가 조속히 발전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될 잠재력을 배경으로 함
- 해양수산부 관련법제 : 수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수산가공품의 지리적 표시 등록요령, 수산물·수산특산물 및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과 품질인증에 관한 세부기준고시, 수산물원산지표시업무처리요령, 유전자변형 수산물의 표시대상품목 및 표시요령, 품질인증 세부 실시요령 등이 있음
- 산업자원부 관련법제 : 산업표준화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등이 있음
- 환경부의 관련법제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자율환경관리협약 운영규정, 유해물질 전과정 위해성 평가 위원회 규정 등이 있음
- 농림부 관련법제 : 축산물가공처리법,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우수농산물인증의 세부기준 및 대상품목 고시, 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 및 대상품목고시,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고시 등이 있음

3. Ecolabelling의 법제화 추진원칙과 방향

1) Ecolabelling의 법제화 추진원칙

- 투명성원칙 : 무역-환경문제와 관련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우선 기존 각국에 대한 무역정책검토제도(TPRM : Trade Policy Review Mechanism)에 의한 투명성 검토가 이용될 수 있음
 - 강제적인 Ecolabelling제도는 그것이 중앙정부에 의해 시행되든, 지방정부에 의해 시행되든지 여부에 상관없이 TBT협정 제2조 및 제3조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임
- 이해관계국의 참여 보장 : Ecolabelling 제도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광범위한 참여에 기초하여 발전될 때에야 국제무역에 있어서 혼란을 야기시키지 않고서도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할 것임. Ecolabelling제도는 환경적 의식이 있는 생산자들에게는 새로운 마케팅의 기회를 창출할 수도 있는 것이며, 환경적 목적과 무역이 상호 양립할 수 있는 Ecolabelling제도가 개발되어야 할 것임
-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 : 개발도상국에 대해 Ecolabelling제도는 무역적 측면에서 볼 때에는 비관세장벽의 하나로서 수출국의 경쟁력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며, 환경적 측면에서 볼 때에는 Ecolabelling제도의 기준이라는 것이 선진산업국의 지역적 환경문제와 우선순위를 강조하는 것이 되므로 다른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에게는 관련이 없거나 부적절한 경우가 많음

2) Ecolabelling의 법제화 추진방향

- Ecolabelling제도의 국제적인 조화 : 범세계적으로 기초를 둔 Ecolabelling제도는 Ecolabelling제도의 무역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일부분 완화시킬 수 있으며, 각국별로 다양한 Ecolabelling제도가 존재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소비자들의 혼란을 경감시킬 수도 있음. 이를 위한 요건으로써 4대 원칙이 필요한데, 무차별의 원칙(Non-Discrimination Principle), 내국민대우, 일반적 예외, 상호인증(mutual recognition) 등이 그것임
- 규제법체계의 완화 : 각종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에 위반하는 기업에 대하여 개선명령, 조업정지 등의 행정명령을 내리고 불이행시에는 벌금과 형사

처벌을 가하는 직접규제는 단기적으로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냄으로써 많은 국가에서 적용의 범위를 넓혀갔다. 보다 경제적 유인방식을 보다 많이 활용하고, 업계의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노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편해 나가야 할 것임

- 행정·제도적 기반조성 : 환경규제체계를 직접규제 위주에서 경제적 유인수단과 자율적 규제방식으로 점진적으로 개편함에 있어서 현재의 행정적·제도적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음. 이는 집행력 부족의 문제를 개선,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기업, 시민 모두가 자율적으로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협력관리체계(cooperative management system)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자율규제방식의 적극 도입 : 자율규제제도는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친 후 도입되어야 한다. 자율규제의 맹점은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기업의 가장 큰 인센티브는 지도단속 등 규제당국의 직접규제의 완화임. 자율규제는 배출목표량을 설정하고 과학적으로 단계적 삭감목표를 설정하는 등의 마스터플랜이 필요함. 또한 규제확대는 우선 철저한 규제집행 능력이 확보되어야 하고 강력한 직접규제방식의 규제체제가 정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함

V. Ecolabelling의 국내외 적용 사례분석

1. 국내사례

-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환경부와 친환경상품진흥원(전 환경마크협회)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금까지의 환경마크제도 대상품목은 사무용품, 산업용 제품, 가정용 기기 등 주로 2차 산업의 상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운영방식은 환경친화적인 제품에 라벨을 인증해주는 수준에 그치고 있음
- 그러므로 수산물에 이를 그대로 적용할 제도적 장치는 아직 없음. 다시 말하면 단순히 환경친화적인 상품에 라벨을 인증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수산자원보호라는 관점에서 생산, 유통된 수산물에 적용할 법제는 새롭게 마련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1) 농림부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을 전문인증기관이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검사하여 정부가 그 안전성을 인증해 주는 제도로서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 제17조의 3,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8조, 제9조, 제14조 내지 제17조에 근거하여 1993년부터 실시되고 있음. 본 제도는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증대,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감소, 유통과정에서의 신뢰구축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공급체계 확립 등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농업 추구를 목적으로 함
- 친환경농산물이란 환경을 보전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농약과 화학비료 및 사료첨가제 등 화학자재를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최소량만을 사용하여 생산한 농산물을 의미함
- 인증기관으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에 따른 13개 민간인증기관(2005년 7월 현재)에서 인증업무를 수행중임
- 인증기준으로서 농산물은 경영관리, 재배포장 용수 종자, 재배방법, 생산물의 품질관리 등이고, 축산물은 사육장 및 사육조건, 자급사료기반, 가축의 출처 및 입식, 사료 및 영양관리, 동물복지 및 질병관리, 품질관리 등이며 자세한 인증제도 종류 및 기준은 다음과 같음

2) 산업자원부의 GR(Good Recycled) 인증

- 재활용제품의 품질·환경친화성 등을 정부가 인증함으로써, 그동안 소비자가 외면해 오던 재활용제품의 품질을 향상시켜 소비자의 불신을 해소하고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립기술품질원고시 제 1997-87호에 의거 1997년부터 시행되었음
- 국내에서 개발·생산된 재활용제품을 철저히 시험·분석·평가한 후 우수제품에 대하여 우수재활용제품인증마크(GR마크) 부여하는 등 국제적 규격·기준과 동등 이상으로 제정하여 단계별로 국가 규격화하고, 재활용제품의 품질 일류화를 유도하고자 함
- 인증기관은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이며, 대상품목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재활용제품(별표 1)중에서 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제품임

3) 환경부 환경라벨링 제도

- 환경부에서는 지속가능한 경제개발 즉, 환경을 고려하는 경제개발을 통해 환경보호와 경제발전이라고 하는 양자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 친환경상품의 생산·소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이를 위해 환경부는 환경마크제도와 환경성적표지제도 등을 운영함으로써 친환경상품의 기준을 마련하고 평가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그 외에도 친환경상품 생산지원, 친환경상품 정보제공, 친환경상품 구매촉진과 친환경 소비 활동 지원,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친환경상품 및 제품 환경성 향상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환경라벨링 제도는 환경마크제도 및 환경성적표지제도 2가지로 구분되며, ISO 환경라벨링 구분에 따르면 각각 Type I(에코라벨링) 과 Type III에 해당함
 - 환경마크제도는 동일 용도의 제품 중 생산 및 소비과정에서 오염을 상대적으로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환경마크를 표시함으로써 정확한 제품의 환경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가 환경보전활동에 참여토록 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이러한 소비자의 친환경적 구매욕구에 부응하는 환경친화적인 제품과 기술을 개발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임
 - 동 제도는 ISO14024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제품의 생산, 유통, 소비, 폐기 등 전과정에 걸쳐 오염배출이 적거나, 자원 및 에너지를 절약하는 친환경제품임을 인증하는 정부공인제도로써 친환경제품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친환경적 생산·소비 패턴의 확산을 목적으로 함. 1979년 독일에서 처음 시행된 이 제도는 현재 유럽연합(EU), 북유럽, 캐나다, 미국, 일본 등 현재 40여 개 국가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동 제도의 법적 근거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법률(1994.12.22)'이며, 1990년 말 환경마크 도안에 대한 국민공모와 1992년 '환경마크제도 운영에 관한규정'을 제정함으로써 1992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음. 환경마크제도에서 운영되는 환경마크 인증제품 현황은 2006년 4월 현재 107개 제품군에서 790개 업체, 3,176개 제품임
 - 환경성적표지제도는 2000년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법률(1994.12.22)'에 제도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2002년 5월에는 첫 인증이 이루어졌으며, 2005년 12월 현재 환경성적표지

대상품목은 전과정평가 수요가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제안을 받아 총 24개 제품군이 선정되어 각 품목별 환경표지 작성지침이 마련되었음. 이에 따라 삼성, LG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8개 기업, 96개 제품이 환경성적표지를 인증 받고 있음

4) 에너지관리공단의 에너지절약마크제도

- 에너지절약형 전자제품의 보급확대와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의 홍보 등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1998년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결정에 의거, 에너지효율이 높은 제품 또는 에너지절약을 위해 노력하는 사업장·단체 등을 대상으로 1999년부터 도입되었음
- 본 제도의 근거규정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3조(특정에너지사용기자재의 보급촉진),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e-Standby Program) 운용 규정(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39호), 절전형 사무기기 및 가전기기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자원부고시)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자원부고시) 등임
- 에너지절약마크를 사용하는 대상은 제품 또는 사업장·단체등으로서 에너지절약마크가 부착된 제품은 에너지효율이 높은 제품이고 마크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에너지절약에 노력하는 사업장을 의미함. 마크부여 대상은 에너지절약형으로 인정받은 제품,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제품,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녹색에너지 가족운동본부와 약정을 한 에너지사용업체 및 단체, 에너지절약 자발적 협약 및 단체, 에너지절약 5개년계획 점검 결과 우수등급업체, 기타 공단이사장이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임
- 마크부여 기준으로는 제조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대기전력 감소를 위해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자동적으로 절전모드로 전환되거나, 플러그만 꽂아둔 상태에서 대기소비전력을 기준치 이하로 최소화하는 제품에 마크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음

4) 삼성전자의 삼성에코마크

- 제품의 친환경 특징을 고객에게 보다 쉽게 전달하기 위한 삼성전자 고유의 마크로서 제품개발 초기부터 자원효율성, 환경유해성, 에너지효율성의 3가지 환경측면을 고려하여 개발된 친환경 제품에 사용하고 있음. 자원효율성이란 자원순환형 사회구현을 위한 제품의 자원절약측면, 재활용 용이성을 위한 분



해성, 플라스틱 재질표기 등이며, 환경유해성이란 RoHS 등 유해물질 규제를 만족한 제품인지 등 제품의 제조, 사용, 폐기과정의 유해성을 고려하고, 에너지효율성에서는 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와 가장 관계가 깊은 에너지측면을 개선하기 위한 제품의 소비전력, 대기전력 측면 등을 고려함. 대상 제품으로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메모리, LSI이 있음

- 해양수산부는 에코라벨링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으며, 유사한 용어로서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10조 품질인증 대상품목 선정에서 친환경수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품목으로 규정하는데 그치고 있음. 또한, “원산지표시제(국산, 원양산, 수입산)” 및 “유전자변형 수산물표시제(무지개송어, 대서양연어, 미꾸라지)” 등을 시행함으로써 부분적으로 친환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 중에 있음. 여기서 사용되는 친환경의 개념과 제2장에서 살펴 본 에코라벨링의 개념은 다름

2. 국외사례

1) MSC의 수산물 인증

- MSC는 소비자로 하여금 환경친화적으로 생산된 수산물을 소비하도록 하기 위해 인증 원칙을 가지고 있음
- MSC의 인증원칙

MSC 어업 인증 기준의 3가지 원칙
① 목표어종의 상태(status of the target fish stock) ② 어업행위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Impact of the fishery on the ecosystem) ③ 어업관리시스템의 성과 및 효율성(Performance and effectiveness of fishery management system)

○ MSC의 어업인증과정

- MSC의 어업인증과정은 다각적인 측면(multi-step)으로 이뤄지는데, MSC가 인허한 인증 기구에 의해 인증이 이루어짐. 독립인증기구가 사용하는 방법론은 목표어종, 어업행위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어업관리시스템의 효율성에 관한 문제를 투명하게 확인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절차들로 구성되는데, 다음과 같음. ①이해관계자와의 논의 ②평가과정에서 사용되는 운영

성과 및 정보의 공개보고 ③운영성과조치를 포함하는 표준화된 방법론 ④ 성과 개선을 위한 조건 확인 ⑤평가에 대한 상호검토(peer review) ⑥이의 신청

- 인증 준비과정 첫 단계는 어떤 인증기구로부터 어업평가를 받을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임. 인증이 받기 위한 의뢰인은 정부기관, 어업협회, 지방자치단체, 어업협회 및 NGO에 공동의뢰할 수 있음. 인증 기구 선택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점은 인증업체가 의뢰인에게 직·간접적으로 제시하는 조건들을 준수할 수 있는가의 여부임. 두 번째는 무엇을 인증받을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는 결국 인증단위를 결정하는 것임. 인증단위는 특정 어업, 특정 어족, 특별 어구·어법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시장에서 MSC 에코라벨을 부착할 수 있음
- 두 번째 단계는 예비평가(pre-assessment)임. 예비평가란 인증기구가 시행하는 최초 과정으로써 의뢰인이 MSC기준 충족 가능성에 대해 간단히 평가하는 1차 예비평가는 의뢰인의 강점과 약점을 확인하고 다음 평가단계(full assessment)로 넘어갈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임
- 마지막 단계는 전 평가(full assessment)과정임. 전평가는 MSC 기준으로 특정 어업을 상세히 평가하고 점수화하는 과정으로써 공개적인 프로세스를 거치면서 어업이 MSC의 지속가능어업에 대한 원칙 및 범위(Principles and Criteria for Sustainable Fishing)를 충족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

- 2006년 5월 현재, 인증을 받은 어업으로는 호주 서부지역의 랍스터(rock lobster), 영국 템즈의 청어, 영국 베리 인렛(Burry Inlet)의 새조개, 미국 알래스카의 연어, 뉴질랜드의 호키(hoki), 영국 남서부 콘월의 고등어임. 또한 현재 7개 수산물이 MSC 평가를 완료했고, 12개 이상의 수산물이 평가를 받는 중임. 현재 평가를 받고 있는 대표 어종은 미 남부 조지아의 이빨고기, 미 알래스카 대구(pollock) 등임

2) FAO의 수산물 Ecolabelling 가이드라인

- FAO의 수산물 에코라벨링은 해면에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어획된 수산물로 범위를 한정하고 있음. 에코라벨링의 주체는 어업관리 및 국가의 주권 및 권리를 인정한다는 점을 상기해볼 때 국가의 개입이 바람직하며 필요하다면 지역수산기구(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 RFMOs)도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 FAO의 에코라벨링 최소실질요건 및 범위
 - 최소실질조건에는 관리시스템, 인증 대상(이하 고려대상어족이라고 함), 어업이 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음.
 - 관리시스템(Management systems)이란 최선의 어업관리관행(good practice) 속에서 이뤄지는 어업 행위를 말함. 즉, 첫째 어족의 현 상태와 향후 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데이터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함. FAO에서 말하는 관리시스템은 데이터 및 정보의 수집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과학적 정보가 부재하다고 해서 보존 및 관리조치를 하지 않거나 보호조치를 연기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 이 같은 문제는 위험평가를 통해 불확실성 문제를 줄여 나갈 수 있어야 함. 나아가 정부는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법적,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관리시스템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효과적 메커니즘도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고려대상 어족(Stocks under consideration)이란 단지 과잉어획(over fished)된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optimal)하게 활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되는 상태를 말함. 다시 말해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고려대상 어족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을 일컫음. 이때 자연적 변수 또는 어업 외 다른 변수로 인해 장기적으로 생산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등 모두를 고려해야 함. 그리고 생물량(biomass)이 적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관리조치(책임있는 어업을 위한 행동강령 7조 6항)를 통해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해당 어족을 적정 수준으로 회복시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생태계 고려사항(Ecosystem considerations)이란 생태계에 미치는 어업의 부작용을 적절하게 평가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함. 과학적 불확실성이란 해당 어족의 상태를 평가하는데 있어서의 불확실성 이라기 보다는 생태계에 발생할 수 있는 가능한 한 모든 부작용을 일컫음
- 에코라벨링의 원칙과 제도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크게 표준인증 수립, 독립인증기관의 인허, 그리고 어업 또는 수산식품이 필요한 기준 및 절차에 근거하여 생산되었는가에 대한 인증으로 구분할 수 있음
 - 표준인증이란 에코라벨링제가 추구하는 목적과 동일할 수 있는데 상품 또는 상품의 생산과정과 방법이 인증을 받기 위해 충족시켜야 하는 일정 범위라고 표현할 수 있음
 - 독립 인증기관의 인허란 인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 있는 기관을 선정하는 활동을 일컫음. 여기서 인증기관은 중립적이고 독립적이어야 하며,

특정 수산물이 기준을 충족시켰는가를 인증할 수 있도록 기술적, 재정적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함

- 표준설정에 관한 원칙의 경우, 표준 설정은 해면에서 수산물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고자 하는 에코라벨링의 목적을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임. 여기서 표준은 에코라벨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지속가능 어업의 목적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어업의 관리영역 또는 지배 시스템의 정성적이고 정량적인 요소로써 구성되어야 함

○ 인증의 방법과 범위

- 인증이란 수산물이 관련 표준을 준수하고, 일련의 적절한 검사가 있었음을 제3자가 확인하는 절차임. 지속가능한 방식의 해면어업을 위해 인증은 에코라벨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음. 인증은 또한 특정 수산물 또는 수산식품이 지속가능어업 표준에 따라 생산되었음을 구매자와 소비자에게 확인시켜주는 기능을 함
- 인증의 범위(Scope)에는 두 가지 타입이 있음. 첫째는 수산물 자체에 대한 인증이며, 두 번째는 수산물이 생산-가공-판매 과정에 적용되는 일련의 관리방식에 대한 인증임. 이 같은 인증 범위에 대해 두 가지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첫째는 부합성의 평가(confirmity assessment)로써, 수산물이 표준 및 표준인증범위를 준수하였는가를 평가하는 것이고, 둘째 검사 평가(chain of custody assessment)는 수산물 가공, 유통, 마케팅 단계에서 인증 수산물을 확인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임

2) EC의 에코라벨링

- EU의 ‘수산물 시장 미래 커뮤니케이션 위원회’(Commission Communication on the Future for the Market on Fisheries Products)는 1997년 12월 처음으로 에코인증의 논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음
- 회원국들은 EC가 에코 인증에 대한 공통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에 동의하였지만, 각 국의 시행 방식에서는 차이를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이루었음
- 2002년 위원회는 커뮤니티액션플랜(Community Action Plan)을 채택하여 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공동어업정책(Common Fisheries Plan)에 통합시키고, 수산물에 적용하는 에코라벨링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하였음

- 에코라벨링제를 통해 수산업도 환경의 영역이라는 것을 소비자에게 각인시키고, 어업이 환경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가 인지하면서 환경 및 해양을 보호할 수 있도록 목적을 가지고 있음
- EC 위원회는 일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수산물 및 수산식품 에코라벨링 정책을 개발하되, 에코라벨링제도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에코라벨링 시행에 대한 세 가지 안을 제시하였음
 - 제1안 : 정부 무개입, 민간주도의 에코라벨링 시행(Non-action)임. 즉 에코라벨링이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자유롭게 개발되도록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것임. 현재까지 EC는 에코라벨링과 관련해 어업에 대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음. 결과적으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 제1안이 현 상황과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음
 - 제2안 : EC가 단일 에코라벨링제를 시행 하기 위한 표준을 마련하는 것임. EC는 정부 또는 공공부문에서 관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에코라벨링 표준을 수립할 것을 제안하였음. 단일 계획하에 정부는 에코라벨링 계획의 개발, 운영, 관리 등 전 분야에 참여할 수 있음
 - 제3안 : 자발적으로 에코라벨링을 시행할 수 있도록 최소 조건만을 수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에코라벨에 대한 최소한의 조건만 준수할 경우에는 공공 및 민간이 자유롭게 에코라벨링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임. 정부의 개입은 에코라벨의 등록 및 최소조건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역할에 한정되어 있음. 여기서 말하는 최소한의 조건이란 기술적, 제도적 측면과 절차상의 문제로 구분할 수 있음

VI. Ecolabelling 국제규범화 관련 수산부문 대응방안

1. Ecolabelling 국제규범화 관련 수산부문 쟁점

- Ecolabelling의 국제규범화 추진에 대응하여 고려될 수 있는 주요한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하나는 Ecolabelling의 개념 및 적용범위에 대한 국제대응문제이며, 다른 하나는 Ecolabelling의 수산부문 국내대응 문제임

- 1) Ecolabelling의 개념 및 적용범위에 대한 국제대응문제
- 에코라벨링의 개념 및 적용범위에 대한 국제대응 문제는 FAO COFI에서 논의되고 있는 “해양어획 수산물의 에코라벨링 가이드라인”을 비롯한 전체 수산물에 대한 에코라벨링의 국제규범화는 다양한 방법으로 수행되고 있는 기존의 수산업 관행에 크고 작은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해양생태계에 부정적이지 않은 어구 및 어법은 무엇이며, 역으로 해양생태계에 긍정적인 어구 및 어법은 어떠한 것인가를 규명하여야 됨
 - 이러한 문제가 FAO COFI 등 국제기구의 논의의 장에서 논의될 경우에는 WTO 수산보조금 논의와 같이 자국의 수산업 특성에 따라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에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어구 및 어법이며
 - 더 나아가서 수산물을 생산·가공·유통시키는 어떤 행위가 해양생태계에 긍정적인가를 구체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안 됨
 - 이러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국제기구의 논의과정에 우리나라의 수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우리 수산업에 유리한 규범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저층 트롤어업과 같은 어업방법은 해양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어업관행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현행 조업방법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강구해야 할 것임
 - Ecolabelling 제도화와 수산자원관리 : Ecolabelling의 기본목적은 수산자원의 관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어업을 하게끔 하게 하는 것임. 지속가능한 수산자원의 개발이용은 한 나라의 수산자원 관리정책의 목표이자 세계적인 추세임
 - FAO 제26차 Ecolabelling 기술협의회에서 합의된 가이드라인 중 에코라벨링의 최소구비요건과 기준으로써 관리체계(Management System), 대상어족(Stocks under consideration), 그리고 생태계 고려(Ecosystem consideration) 등으로 크게 세 가지 분류로 나누고 있음. 이 중에서 「대상자원」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조건으로 자원이 남획(overfished)되지 않아야 하고, 어업자원량의 최적 사용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을 유지해야 하며, 현세대 및 차세대가 이용 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Ecolabelling 제도화와 국제무역(자유화, 차별화) : 선진국들은 Ecolabelling의

초기 계획은 ‘어업자원의 지속적 이용’을 위해 라벨을 부착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라벨 부착된 상품이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줄 경우에는 라벨을 부착하지 않은 상품을 수출하는 국가는 시장에서 외면당함으로써 무역장벽을 경험할 수 있음

- 이에 대해 개도국들은 어업자원의 지속적 이용에 대해서는 이미 FAO의 ‘책임 있는 수산업 규범’ 등 국제적인 규범들이 발효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Ecolabelling제도를 이용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으며, Ecolabelling 제도가 무역장벽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음
 - 좀 더 넓은 범주에서 에코라벨링을 살펴보면 환경라벨링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환경라벨링이 어떻게 무역장벽으로서 역할을 할 것인가, 그리고 가능한 무역장벽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날 것인가에 논의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음
 - 현재 국가별로 시행중인 환경라벨제도는 대부분 자발적인 권고규정으로 운영되어 있어 수입품에 대한 강제인증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환경친화적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 선택에 따라 시장 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음. 국가별로 다른 환경라벨 대상제품의 범위와 그 기준을 충족하는데 따른 부담증가도 무역제한 효과를 발생시킴
- Ecolabelling 제도화와 개발도상국 적용 예외 문제 : 자본력이 많은 선진국은 정책 이행과 실현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에 비해 유리한 것이 사실임. 막대한 자본력은 곧 경쟁력을 의미하고 그 경쟁력은 바로 정책의 실현에 한발 다가감에 유리한 것이 현실임
- 최근 현대 산업화의 발달로 인하여 현재 전 세계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급격히 늘어났음. 대기오염과 온실가스의 배출로 인한 지구 온난화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지구를 살리자는 세계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이것은 교토의정서라는 결과물을 낳게 된 것임
 - FAO의 26차 회의에서 채택된 해면 어획수산물의 에코라벨링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부, 국제기구, 비정부기구는 에코라벨링제도에 참여하고자 하는 개도국에게는 적극적인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으나, 이 같은 개발도상국 우대조치는 에코라벨링을 도입하려는 선진국으로부터 개도국에게 특혜를 제공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음
 - 에코라벨링의 문제는 무역의 문제를 불러일으키며 국가의 이익에 직접 관련된 사항이 될 수도 있음. 국가의 이익과 세계 환경보존의 기로에서 개발도

상국과 선진국간의 이해와 타협이 절실히 필요한 문제이기도 하며, WTO 도하개발아젠다에서도 개발도상국에 대한 우대조치가 명문화되기도 하였음

2) Ecolabelling의 수산부문 국내대응문제

- Ecolabelling의 수산부문 도입 문제 : 친환경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기 쉽게 제공함으로써, 친환경 상품(식품)에 대한 구매 및 소비를 활성화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소비자 선호에 부합하는 친환경 제품의 개발·생산 유도에 목적이 있는 Ecolabelling의 국내 제도화는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인 추세이며, 각 산업부문에 있어서 도입의 시점은 각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수산업 부문에 있어서도 Ecolabelling의 도입은 국제사회의 동향(WTO, FAO, MSC 등의 논의동향)과 기존의 수산자원관리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하나의 수단으로 도입을 검토할 시점임
 - 다만 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현장에 직접적으로 제도화하는 시점은 가능한 어종 및 업종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할 하되, 참여 주체의 합의하에 결정하여야 할 것임
- Ecolabelling의 국내 제도화 문제
 - 수산업 부문에 있어서 Ecolabelling제도를 도입하려면 사전적으로 해결하여야 하는 다음과 같은 주요한 문제점이 있음. 첫째, Ecolabelling의 법제화는 어떻게 할 것인가? 둘째, Ecolabelling의 도입 범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셋째, Ecolabelling의 인증방법과 범위(기준)는 어떻게 할 것인가? 넷째, Ecolabelling의 인증비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다섯째, Ecolabelling의 인증을 관리하는 인증기관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임
- ① Ecolabelling의 법제화 문제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공산품의 경우, 국제표준화기구의 분류에 의한 Type I (ISO14024)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법률', Type II (ISO14021)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Type III (ISO14025)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운영하고 있음
 - 환경부가 Type I (ISO14024)의 운영근거로 삼고 있는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의 경우에는 공산품 중심의 운영체제로 1차 산업 특히 수산 부문에 적용에는 많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

- 따라서 만약 법제화를 통하여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수산물품질관리법의 활용 및 수산부문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별도의 (가칭)친환경수산업육성법 또는 (가칭)수산물에코라벨링지원에관한법을 제정, 그리고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반영 등을 통하여 추진할 것인가를 주요 쟁점으로 지적할 수 있음. 또한 법제화에 대한 관계자의 반대가 매우 강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는 것이 주요한 쟁점으로 제기됨

② Ecolabelling의 도입 범위(대상어종, 업종)

- 에코라벨링의 도입은 에코라벨인의 인증 기준에 따라 적용 가능한 어종 또는 업종, 역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어종 또는 업종이 있을 수 있음. 에코라벨링의 도입 범위는 원칙적으로는 전 어종을 대상으로 하여야 함. 그러나 현실적으로 에코라벨링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어종 및 업종에는 우리나라의 수산업 현실을 고려할 때 상당한 한계가 있음
- 따라서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원회복계획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함

③ Ecolabelling의 인증방법과 범위

- FAO의 인증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에코라벨링 인증에는 수산물 자체에 대한 인증과 수산물의 생산-가공-판매 과정에 적용되는 일련의 관리방식에 대한 인증이 있음
- 또한 인증을 위해서는 부합성의 평가(confirmity assessment)로 수산물이 표준 및 표준인증범위를 준수하였는가를 평가하는 것과 과정평가(chain of custody assessment)로써 수산물 가공, 유통, 마케팅 단계에서 인증 수산물을 확인할 수 있는지를 평가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도 주요한 쟁점임

④ Ecolabelling의 인증원칙과 기준

- 에코라벨링은 용어의 개념 또는 본질에서의 차이보다는 인증방법, 인증기관의 주체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일반적으로 Ecolabelling이란 상품이 환경에 배려된 것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라벨의 총칭임
- *Protecting environment, Encouraging environmentally sound innovation and leadership, Building consumer awareness of environmental issues*의 세 가지

에코라벨링의 기능에 조화되는 수산물 에코라벨링의 원칙과 기준을 결정하여야 함. 그런데 이 원칙과 기준은 ISO 에코라벨링의 일반원칙과 MSC의 원칙 등이 있는데, 수산물 에코라벨링의 원칙은 국제기준에 조화되고 우리나라의 수산업 현실에 맞는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야 함

⑤ Ecolabelling의 인증기관

- Ecolabelling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인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증기관이 필요함. 현재 공산품 에코라벨링을 관장하고 있는 친환경상품인증원과 같이 수산물 에코라벨링을 관리할 인증기관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⑥ Ecolabelling의 인증비용

- Ecolabelling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바와 같이 여러 단계에 걸쳐 평가 및 검증 작업이 필요함. 이러한 검증을 위해서는 인력과 시간, 그리고 과학적인 평가 기술이 필요하며, 인증 후에도 인증을 받은 에코라벨링의 사후관리가 필요함. 이와 같이 인증을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임

⑦ Ecolabelling 제도의 필요성과 한계

- Ecolabelling 제도는 이론적으로 Ecolabel 부착으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환경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이 더 높은 가격(Premium Price)을 지불함으로써 생산자들이 보다 높은 어업수입을 올리고 환경친화적인 생산방법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나, 이 제도가 그 기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 가지 조건, ① 소비자들이 환경라벨이 부착된 제품을 차별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하고, ② 라벨이 부착된 제품에 대한 실질적인 지불의사능력이 있어야 함이 충족되어야 함
- 그러나 이러한 소비자들의 조건에 대한 국제적인 조사와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Ecolabelling 제도의 기대효과, 즉 이 제도의 필요성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2. 수산물 Ecolabelling 관련 유사제도

- 소비자에게 수산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유사한 제도로 수산물품질인증제도, 원산지표시제도, HACCP인증, 수산물 이력추적제 등이 활용되고 있음
- 상기의 관련 제도들은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비해 생산자 또는 유통인이 가지고 있는 많은 수산물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그 방향성은 유사하지만, 제도적 범위, 인증방법, 표시방법, 제도적 목표 및 영향면에서는 큰 차이를 가지고 있음. 그러나 수산물 이력추적제의 기본 시스템과의 연계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됨. 왜냐하면 에코라벨링 대상 품목 정보에 대한 신뢰성 확보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는 것임.

3. Ecolabelling 국제규범화 관련 수산부문 대응방안

1) Ecolabelling 국제규범화 대비 수산부문 기본방향

- Ecolabelling의 규범화 문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자원의 지속적 이용과 친환경적인 산업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나라의 수산업에 있어서도 동 제도의 도입은 국제적으로는 협상대책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국내적으로도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 및 환경친화적인 수산물 생산 및 유통, 그리고 수출입 관리를 위한 하나의 정책대안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임
- 그러나 수산부문에 Ecolabelling을 하나의 규범으로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누가, 언제,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는 많은 선택지를 가지고 있음. 따라서 수산부문에 Ecolabelling을 도입해야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에 두어야 하며, 이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하나의 정책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임
- 따라서 구체적 실천방향으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에코라벨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원회복계획'과 '수산물 이력추적제'와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국제사회에서는 현재 규범화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므로, 구체적인 도입범위 및 접근방법에 대해서는 향후 관련 업계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그 속

도를 조절하여 자발적이며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다시 말하면 Type I 제3자 인증의 자발적 수산물 에코라벨링에서 TypeⅢ(환경성적표시제도) 계량적 인증제도로 추진되도록 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것임

2) Ecolabelling제도의 수산부문 대응방안

○ 추진목표

- 수산물 Ecolabelling제도를 도입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에 두어야 하며, 이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하나의 정책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임. 다만, 국제사회에서는 현재 규범화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므로, 구체적인 도입범위 및 접근방법에 대해서는 향후 관련 업계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그 속도를 조절하여야 할 것임
- 현재, 수산부문의 에코라벨링제도는 해면 어획수산물을 대상으로 에코라벨링제도를 상정하고 있으며, 생산현장에 적용되기에는 많은 검토를 필요로 하는 수준임. 또한 향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양식수산물 및 내수면 수산물(어획물, 양식물)에 대한 준비도 있어야 할 것임

○ Ecolabelling의 국제규범화에 대한 협상방향

- 수산부문의 에코라벨링제도는 현재 MSC(Marine Stewardship Council)와 FAO의 수산부문 에코라벨링제도를 들 수 있음. 양자 모두 해면 어획수산물을 대상으로 에코라벨링제도를 상정하고 있으며, 생산현장에 적용되기에는 많은 검토를 필요로 하는 시점임
- 현재는 에코라벨 표시상품의 국제거래가 미미하고 그 상품의 시장점유율이 높지 않아 에코라벨 프로그램이 심각한 무역영향을 초래하지는 않지만, 에코라벨이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제품선택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게 됨에 따라 장래에 에코라벨이 국제무역에서의 역할이 유의적이게 될 전망이다
- 따라서 중장기적인 시점에서 수산물 에코라벨링에 대한 협상전략이 필요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에코라벨링 기준의 강제적 적용은 가능한 한 중장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상에 임하여야 할 것임
- 또한 FAO COFI에서 논의되고 있는 “해면어획 수산물의 에코라벨링 가이드라인”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화 작업에 우리의 수산업 특성, 특히 개별어업별(원양어업, 연안어업, 근해어업), 업종별(선망, 트롤, 권현망 등) 특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수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논의를 주도하여야 할 것임.

그리고 주요 수산물 수출시장으로서 EU시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수산업계로서는 EC가 추진하고 있는 단일관리 방식의 수산물 에코라벨링제도에 대한 전략 수립도 필요함

※ 제27차 FAO COFI 회의 쟁점과 검토방향

- ① 수산물 에코라벨링 운영의 자발성을 적극 강조해야 한다. 현재 WTO 비농산물 협상에서 EU를 비롯한 선진국은 환경상품에 대한 무관세 또는 관세 인하를 제기한 바 있다. 개도국의 반발로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향후 환경상품에 관한 국제 사회의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미 FAO에서는 해면 어획 수산물에 대한 에코라벨링 가이드라인이 채택되었고, 자발적 운영(voluntary)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 점을 적극 강조할 필요가 있다.
- ② FAO의 해면어획 수산물의 에코라벨링 가이드라인 최소실질요건에 대해 고려대상 어족(Stocks under consideration)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제26차 COFI 회의에서 고려대상 어족을 과잉 어획되지 않았으며 현 세대와 미래 인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기준이 모호하여 각 국가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운영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 ③ 에코라벨링의 최소실질기준과 관련한 생태계 고려사항이 광범위하다. 즉, 가이드라인에서는 어업활동이 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모든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모든 부작용을 고려한다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각 국가의 현재 생태계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 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 ④ 수산물 에코라벨링에 대한 표준화된 국제 인증기구를 설립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현재 EU를 비롯한 선진국 중심으로 MSC인증을 받은 수산물이 늘어나고 있으며 향후 국제교역에서 거래될 가능성을 고려하면 개도국보다 선진국이 경쟁 우위에 있을 수 있고, 선진국은 개도국에서 수입하는 수산물 중 에코라벨링 인증을 받지 않은 수산물은 수입을 제한 또는 금지할 가능성도 있다. 우리나라 역시 수산물을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에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수출체제에 직면할 수 있을 것이다. 선진국 중심의 기준이 국제 교역에서 인정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에코라벨링에 대한 국제인증기구설립방안을 제안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Ecolabelling제도의 수산부문 국내대응 방안

① Ecolabelling의 수산부문 도입방안

- 최근 WTO체제의 확대·강화와 더불어 선진국을 중심으로 에코라벨링을 기술무역장벽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기존의 수산자원 관리 메커니즘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우리나라의 수산부문에 그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메커니즘이 필요한 시점임
-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수산업 부문에 Ecolabelling의 도입은 국제사회의 동향과 기존의 수산자원관리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도입하는 것이 타당함

② Ecolabelling의 법제화 방안

- 현재 환경부가 Type I (ISO14024)의 운영근거로 삼고 있는 ‘환경기술개발및 지원에관한법률’의 경우에는 공산품 중심의 운영체제로 1차 산업 특히 수산 부문에 적용에는 많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
- 따라서 법제화를 통하여 추진하기 위해서는 편의성 또는 효율성 측면을 강조할 경우에는 기존의 수산물품질관리법 또는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수산 자원관리법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 정책의 적극성 측면을 강조할 경우에는 (가칭)친환경수산업육성법 또는 (가칭)수산물에코라벨링지원에관한법률 제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③ Ecolabelling의 도입범위 설정방안

- 에코라벨링의 도입은 에코라벨인의 인증 기준에 따라 적용 가능한 어종 또는 업종, 역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어종 또는 업종이 있을 수 있음. 따라서 에코라벨링의 도입 범위는 원칙적으로는 전 어종을 대상으로 하되, 우선 제도 적용의 가능성이 있는 어종 및 업종을 선택하여야 할 것임
- 선정에는 TAC 어종, 대 EU 주요 수출어종,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는 어종으로 과학적으로 또는 정량적으로 분석이 가능한 어종, 자율관리어업과 같이 자발적인 수산자원 관리시스템하에서 어획되는 어종 등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함
- 따라서 현재 추진중인 자원회복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자원회복 대상종 선정은 FAO 기준을 고려, 어획통계자료상 최근 15년간 어획량 자료 중 과거 최고 3년이동 평균에 비해 30% 이하로 감소된 종을 기초로 어종별 어획량 변동추세를 감안하여 최종 회복대상종 선정함.

〈표 2〉 수산자원회복 대상어종(예)

회복대상종(40종)	관리대상종(40종)
말쥐치 참조기 정어리 보구치 갈치 가자미류 부세 도루묵 명태 까나리 임연수어 골뱅이류 강달이류 뱀어류 갑오징어류 뱀망이 젓새우 꽃새우 중하 꽃게 가오리류 갯장어 서대류 준치 민 어 풀뚜기류 개량조개 코끼리조개 성게 류 홍어 키조개 전어 참돔 양태 전복 보래새우 낙지 해삼 자리돔 오분자기	복어류 눈볼대 고등어 다랑어류 삼치 전갱이 뽕치 청어 대게 붉은대게 오징 어 문어 대하 매둥이류 주꾸미 멸치 아 귀 봉장어 방어류 학공치 넙치 대구 병 어류 노래미류 가무락 맛류 백합 동죽 조피볼락 농어류 송어 감성돔 바지락 꼬막 새조개 개조개 옥돔 능성어 소라 닭새우

주 : 해양수산부, 수산자원회복 세부실천계획 수립 보고 자료(2006.1) 참조.

④ Ecolabelling의 인증방안(방법, 범위, 원칙, 기준)

- 우리나라의 수산부문에 적용할 수 있는 수산물 에코라벨링 인증방법은 FAO의 가이드라인에서 정하고 있는 인증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국제기준 조화원칙에 합리적일 것임. 이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수산물과 수산물 관리에 대해 개별 인증을 할 수 있다는 것임. 또한 대상품목의 부합성 평가, 과정평가를 들 수 있음. 이들 두 가지 인증을 위해서는 생산과 유통의 인증을 관리,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됨
- 또한 에코라벨링은 용어의 개념 또는 본질에서의 차이보다는 인증방법, 인증기관의 주체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수산업에 도입할 수 있는 수산물 에코라벨링의 원칙은 국제기준에 조화되고 우리나라의 수산업 현실에 맞는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야 함

⑤ Ecolabelling의 인증기관 설립방안

- Ecolabelling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인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증기관이 필요함.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은 ①기존의 친환경상품인증원을 활용하는 방안, ②MSC와 연계하여 수산물 에코라벨링 인증을 담당하는 (가칭)수산물친환경인증원을 설립하는 방안, ③국제기준(FAO 에코라벨링 가이드라인과 MSC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한국형 수산물친환경가이드라인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 운영할 독자적인 (가칭)수산물친환경인증원을 설립하는 방안 등이 있음
- 그 외에 Ecolabelling의 인증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데, 일반적으로 에코라벨링의 인증 및 운영, 사후관리를 위한 비용은 신청수수료에 의해 충당하고 있음
- Ecolabelling제도가 기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 가지 조건, ① 소비자들이 환경라벨이 부착된 제품을 차별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하고, ② 라벨이 부착된 제품에 대한 실질적인 지불의사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음
- 마지막으로 향후 Ecolabelling제도에 대한 FAO COFI의 협상 방향에 대해 예상하는 것은 쉽지 않으나, 제26차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논의된다는 전제하에서는 타결 시점은 다를 지라도 에코라벨링의 수산부문 도입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FAO COFI 논의과정에서 우리정부가 협상

력을 갖고 협상결과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종별, 어업별, 업종별 구체적인 도입을 위한 검토가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임. 특히 해양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 대상어종에 대한 자원평가 기법의 개발 등도 정책적으로 시급히 정비해나가야 하는 과제임

3) 수산물 Ecolabelling 도입을 위한 실천계획

여기서는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수산물 Ecolabelling의 국내 도입에 필요한 절차상의 실천계획을 간략하게 제시하고자 한다.

① 추진배경

최근, 세계 수산물 생산량 감소 및 수산자원의 남획이 계속되자 기존의 어업관리 메커니즘의 한계 노정



보완(극복) 대안으로서 수산물 에코라벨링 도입
시장 중심의 환경 및 천연 자원 관리방식으로 전환
상품(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구매 결정에 영향을 줌으로써 환경(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비자들에게 수산물의 생산 과정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자는 움직임이 국제사회에서 나타남

② 추진목표

수산자원관리에 있어서 국제사회의 규범화에 조화되고, 국내적으로 수산자원관리의 보완적 수단으로 활용하여,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에 기여

③ 추진방향

수산물 에코라벨링 제도화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입각하여 시범사업을 연차적으로 실시하며, 연차적으로 동 제도 적용 대상품목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추진함
기본계획 및 시범사업계획은 자원회복계획과 연계시켜 추진될 수 있도록 작성하고, 또한 정보의 신뢰성 및 관리를 위해 이력추적제와 연계시켜 추진되도록 함

④ 에코라벨링의 개념

에코라벨링의 개념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환경보호 및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을 위해 활용되는 메카니즘의 일종으로 수산물(수산상품)이 소비자에게 해양생태계를 배려한 또는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을 위한 관리시스템하에서 생산, 가공되었다는 정보를 제공하여 구매하게 함으로써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하도록 시장이 생산자에게 신호를 보내는 시스템으로서 시장의 신호에 의해서 추진되는 해양생태계 및 수산자원관리 메카니즘으로 정의함

MSC 어업 인증 기준의 3가지 원칙

- ① 목표어종의 상태(status of the target fish stock)
- ② 어업행위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Impact of the fishery on the ecosystem)
- ③ 어업관리시스템의 성과 및 효율성(Performance and effectiveness of fishery management system)

⑤ 에코라벨링 도입 대상품목의 선정 방향

- 첫째, 국제수산기구에서 에코라벨링의 개념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또는 민간영역에서 이미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는 어종을 우선으로 선정하고
- 둘째, 수산자원회복계획의 회복대상어종 및 관리대상어종을 고려하며
- 셋째, 에코라벨링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어종 또는 품목을 대상으로 선정토록 함

※자원회복계획상의 대상종(사례)

회복대상종(40종)	관리대상종(40종)
말뚝치 참조기 정어리 보구치 갈치 가자미류 부세 도루묵 명태 까나리 임연수어 골뱅이류 강달이류 뱀어류 갑오 징어류 밴댕이 전새우 꽃새우 중하 꽃게 가오리류 갯장어 서대류 준치 민어 꼴뚜 기류 개랑조개 코끼리조개 성게류 홍어 키조개 전어 참돔 양태 전복 보래새우 낙 지 해삼 자리돔 오분자기	복어류 눈볼대 고등어 다랑어류 삼치 전 갱이 콩치 청어 대게 붉은대게 오징어 문 어 대하 매둥이류 주꾸미 멸치 아귀 붕장 어 방어류 학공치 넙치 대구 병어류 노래 미류 가무락 맛류 백합 동족 조피볼락 농 어류 송어 감성돔 바지락 꼬막 새조개 개 조개 옥돔 능성어 소라 닭새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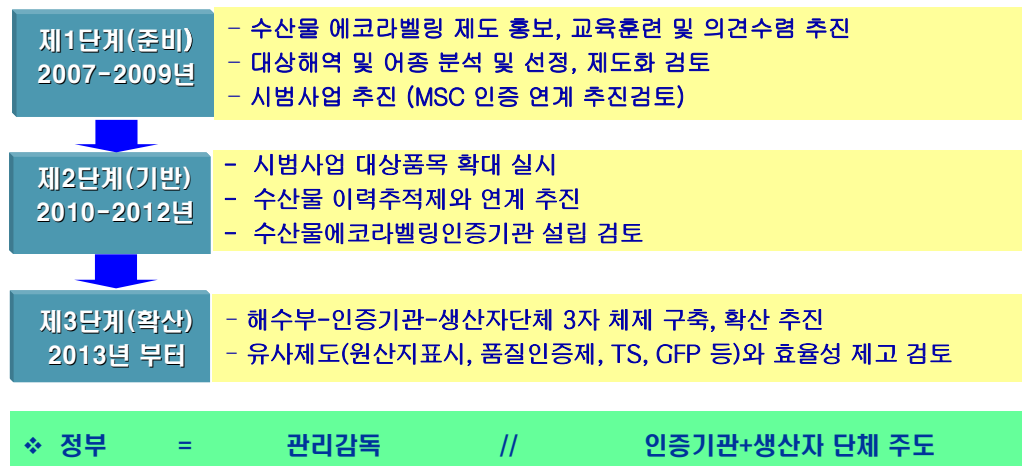
⑥ 에코라벨링의 제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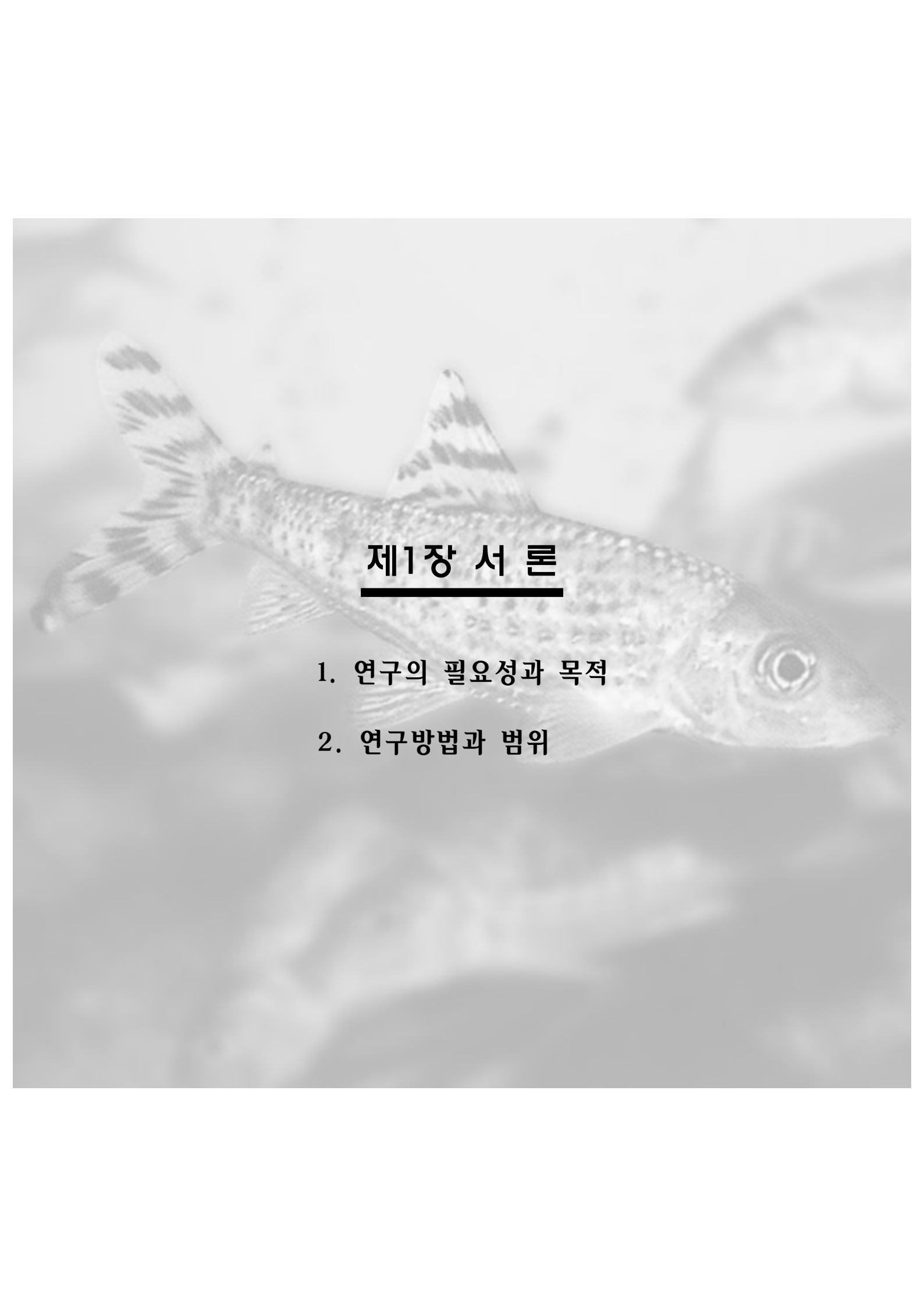
수산물 에코라벨링 제도는 우선 제반여건 구축과 함께 정책사업으로 시범사업을 우선저금로 추진하고, 2단계로 법제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법제화는 기존의 수산물품질관리법, 수산업법의 활용이나, 또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반영하는 것 등으로 고려할 수 있음. 만약 정책의 적극성 측면을 강조하여 독립법으로 할 경우에는 (가칭)친환경수산업육성법 등 법률 제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⑦ 추진전략

에코라벨링 제도 도입은 MSC 와 FAO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동 제도에 대한 관계자의 이해뿐만 아니라 관련되는 시스템의 구축을 전제로 하여야 하므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특히 어종별 자원상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사후관리체제 구축을 전제로 하고 있음. 따라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며, 국제사회에서 쟁점화되고 있는 참치 등 원양어업 등을 우선순위로 시범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에코라벨링 도입 단계별 추진전략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방법과 범위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Ecolabelling은 단순한 품질확인 또는 친환경성 등의 범위를 넘어 자원관리 문제까지를 고려한 수산관련 생태계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개념으로, 당초 FAO(세계식량농업기구) 논의과정에서 회원국간 상당한 이견이 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 및 책임있는 어업을 위하여 동 제도가 필요하다는 데 폭넓은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주로 FAO/COFI(수산위원회)와 WTO/CTE(무역환경위원회)를 중심으로 Ecolabelling의 국제규범화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는 바, FAO는 1997년 이후 수산물의 Ecolabelling을 논의하여 왔으며 2003년 10월 이에 대한 국제적 지침개발을 위한 「전문가협의회」를 개최하면서 본격화되었다.

2004년 10월에는 「전문가협의회」에서 작성된 초안에 대한 회원국간 기술협의회를 개최하여 Ecolabelling을 절차적·제도적 측면에서 추진기로 합의하였으나, Ecolabelling을 위한 실질적 기준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2005년 3월 로마에서 개최된 「Ecolabelling 기술협의회」에서는 Ecolabelling 인증을 위한 최소실질기준 (Minimum substantive requirements and criteria for Ecolabels)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으며, 동 회의에서 Ecolabelling의 최소구비요건과 기준으로서 관리체계(Management system), 대상어족(Stocks under consideration), 생태계고려(Ecosystem considerations) 요건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수의 회원국이 동 기준의 추상성, 포괄성을 지적하여 문구를 보다 명확하게 수정하였다.

그 이후 제26차 FAO 수산위원회에서 수산물 Ecolabelling를 위한 국제가이드라인은 Ecolabelling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대로 채택되었으며, 향후에 각국이 개별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하위규정 작성을 위한 합의가 있어야 하는 단계이다.

이러한 움직임과 함께 수산물에 대한 Ecolabelling 제도 도입은 일반적인 친환경 Ecolabelling과는 다른 개념으로 소비자의 반응정도에 따라 개별국가의 수산자원관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

향후 국제 규범화될 가능성이 있는 「Ecolabelling 가이드라인」은 형식상 자발적 이행을 근거로 한 국제규범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제정된 여타 FAO 규범과 같이 사실상 국제적으로 이행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우리나라의

수산업에 있어서도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및 사전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Ecolabelling 제도의 국내 이행은 국제기준에 조화로운 수산물 수입관리수단 및 수출촉진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하며, 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수단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FAO/COFI와 WTO 등의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논의될 국제규범화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산관연의 긴밀한 협력 하에 국내적으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수산부문 Ecolabelling 제도의 국제규범화와 관련하여 국제동향을 파악하고, 국내도입의 이론적 타당성을 분석하여 향후 추진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생태계를 고려한 수산업의 지속가능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수산업 부문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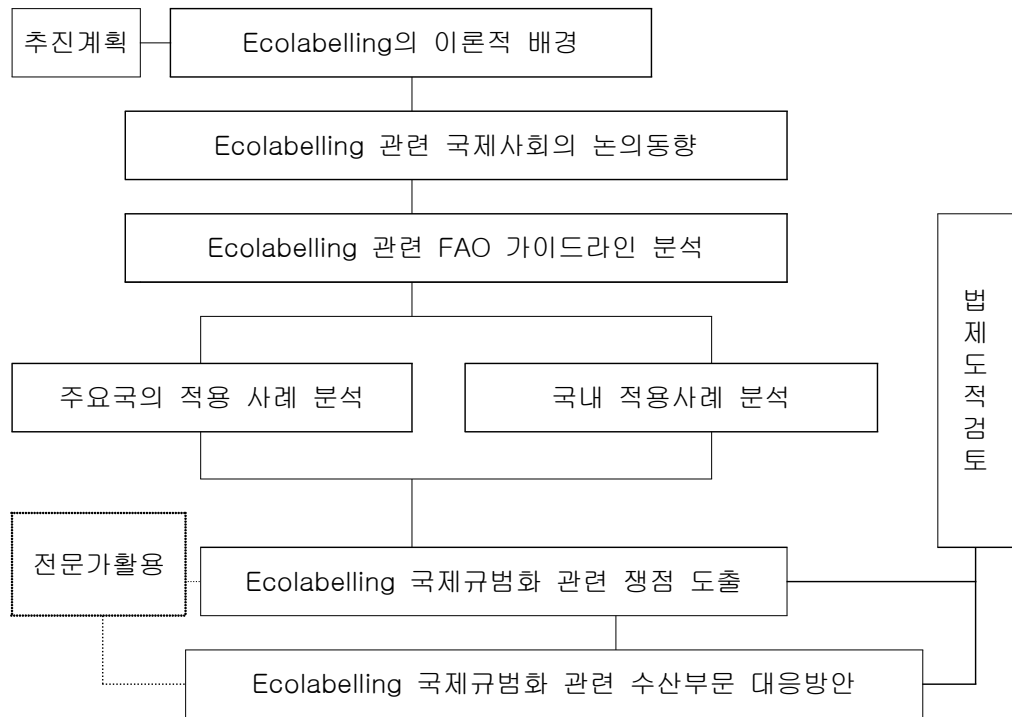
구체적으로는 첫째, 지속가능수산업을 실현하고, 생태계의 영향 등을 고려한 통합적 자원관리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국제규범화 논의과정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둘째, 대외교역 여건이 과거의 직접적인 방법에서 환경 및 위생 기준 설정 등과 같은 간접적인 시장진입 규제형태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와 관련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며, 셋째, 관련 제도의 국내도입을 위한 추진방안을 조기에 수립하고자 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연구방법과 범위

이 연구는 문헌자료를 수집하여 규범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방법을 중심으로 활용하고, 보완적으로 해양수산부 국제협력담당관실, 국립수산물과학원 등 정부기관,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전문연구기관, 수협중앙회 등 생산자 단체, 수산물 수출입 및 유통 관련 단체 등의 관련 전문가 및 업계의 간담회 및 면접조사를 통하여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검토 대상이 되는 주요 자료는 첫째, 관련 국제기구의 동향과 자료, 둘째, 각국의 관련 정책자료, 셋째, 국내 에코라벨링 정책 동향 및 관련 자료 등이다.

연구의 범위와 추진체계는 <그림 1-1>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제1장 서론에서 수산부문 Ecolabelling 제도의 국제규범화에 대응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연구범위를 한정하고자 하였으며, 제2장에서는 Ecolabelling의 이론적 검토로서 이론적 필요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림 1-1〉 연구의 범위와 추진체계



제3장에서는 Ecolabelling 관련 국제사회의 논의동향 분석으로 탄생배경, MSC, FAO 등의 움직임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제4장에서는 Ecolabelling 국제규범화와 관련하여 국제법적 검토 및 국내법적 검토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제5장에서는 국내외의 Ecolabelling 관련 적용사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검토를 바탕으로 제6장에서는 우선 Ecolabelling 제도화 관련 주요 쟁점 및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산부문 Ecolabelling 국제규범화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에 수산부문 Ecolabelling 국제규범화에 대비하여 국제규범화 논의과정에 우리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로서 역할을 기대하며, 지속가능한 수산업 및 자원관리와 Ecolabelling의 규범화를 제도화할 수 있는 의사결정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의도하였다. 만약 Ecolabelling 제도가 수산분야에도 적합한 지를 검토하여 국내수산업과 국제기준에 걸맞은 Ecolabelling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초석을 다짐으로써 국내수산분야에 Ecolabelling제도가 도입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데도 유의하여 검토하고자 하였다.



제2장 Ecolabelling의 이론적 배경

1. Ecolabelling의 이론적 배경
2. Ecolabelling의 경제적 타당성
3. 수산업과 Ecolabelling

1. Ecolabelling의 이론적 배경

1) Ecolabelling의 탄생배경

에코라벨링(Ecolabelling)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 새로운 용어는 적용되는 상품 또는 산업에 따라 약간씩 다르게 해석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에코라벨링(Ecolabelling)은 친환경적이며 품질과 성능이 우수한 제품에 대해 환경마크를 표시토록 하는 인증제도를 말하는데, 이 에코라벨링의 제도화 목적은 친환경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기 쉽게 제공함으로써, 친환경 상품(식품)에 대한 구매 및 소비를 활성화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소비자 선호에 부합하는 친환경 제품을 개발·생산하도록 유도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에코라벨링(Ecolabelling)의 적용사례는 1978년에 추진된 서독의 블루엔젤을 시초라고 할 수 있다. 그 이후 캐나다의 환경선택프로그램(1988), 일본의 에코마크(1989), EU의 에코라벨인증제도(1992) 등이 뒤를 잇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2년 4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전 세계의 40여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2004년 말 기준).

WTO 체제의 확대, 강화와 더불어 최근에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에코라벨링을 포함한 환경라벨링을 기술무역장벽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환경라벨링을 기술무역장벽화 도구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수산물 생산량 감소 및 수산자원의 남획으로 수산자원 관리 메커니즘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수산업 분야도 에코라벨링과 무관한 일이 아니다.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줌으로써,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비자들에게 수산물의 생산과정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자는 움직임이 국제사회에서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수산업 분야, 특히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핵심으로 하여 에코라벨링에 대한 개념을 도입하고자 직접 시도한 것은 1997년 FAO수산위원회(FAO-COFI) 논의를 들 수 있다. 이 회의에서는 Ecolabelling의 최소구비요건과 기준으로서 관리체계(Management system), 생태계의 고려(Ecosystem considerations), 어족자원의 관리(Stocks under considerations)를 제시하였다.

2) Ecolabelling의 본질

① Ecolabelling의 개념

Ecolabelling에 대한 정의 및 인증기준은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제도마다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인증도 정부기관 인증과 민간기관 인증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에코라벨링은 그린라벨, 그린마크, 친환경인증, 환경표지, 환경마크, 환경라벨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사용은 용어의 개념 또는 본질에서의 차이보다는 인증방법, 인증기관의 주체 또는 용어의 사용 주체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Ecolabelling이란 상품이 환경에 배려된 것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라벨의 총칭이다. 에코라벨은 환경을 진심으로 배려하는 소비자에게 있어서는 상품선택에 있어서 주요한 의사결정수단이며, 환경의식이 약한 소비자에게 있어서는 동기부여의 효과를 부여해주는 수단이다.

다시 말하면 상품의 제조와 소비에 있어 기본적인 주체는 수요와 공급이다. 즉 수요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공급이 이뤄지게 된다는 것인데, 그 때문에 환경 효율적인 제품들 또한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지게 된다.

이러한 맥락을 기준으로 할 때, 아직까지 생산자들이 환경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이유는 바로 상품의 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의사결정은 친환경적 생산에 있어 제외시킬 수 없는 요인이기 때문에, 에코라벨링(Ecolabelling)을 통한 정보의 제공을 통해 소비자의 관심을 끌어낼 필요가 있다. 에코라벨링은 소비자들에게 상품의 친환경적 정보를 제공해주는 통로가 될 수 있다.

② Ecolabelling의 기능

에코라벨링(Ecolabelling)은 소비자의 선택이라는 시장 원리를 이용하여 유사 제품군에서 환경을 배려한 제품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이를 위한 기준을 정하는 것인데, 에코라벨링의 기능(효과)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Protecting environment* - 실제적으로 환경적 영향을 감소시키거나 환경적 질을 개선시키는 구체적인 기능이 있다.

둘째, *Encouraging environmentally sound innovation and leadership* - 소비자나 생산자의 행동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셋째, *Building consumer awareness of environmental issues* - 소비자의 인식이나

태도에 직접 영향을 주어 그 영향이 소비자의 실제 소비행위를 변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또한 에코라벨링은 한 국가의 정책도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즉, 다른 제품의 시장진입이나 자국시장에 다른 나라 제품의 접근을 막는 수입관리메카니즘으로서 시장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광고를 통하여 환경친화적 제품을 구매하도록 소비자를 인도할 수도 있고, 이러한 여러 인센티브를 통해 생산자가 더 나은 공공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③ Ecolabelling의 유형

현재 활용되고 있는 환경라벨링을 근거로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는 <표 2-1>과 같이 3가지 에코라벨 유형-TYPE I, TYPE II, TYPE III으로 분류하고 있다.

TYPE I은 제3자 인증기관의 심사에 의해 마크사용을 부여하는 형태(ISO14024)이며,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을 고려하여 미리 설정된 복수의 기준에 따라 제3자가 인증하는 임의참가의 환경라벨체도로 일본의 에코마크, 우리나라의 환경마크제도가 이에 해당된다.

TYPE II는 기업이 자사제품이 환경친화적임을 광고하는 것과 같은 자기선언에 의한 환경라벨체도(ISO14021)이며, 사업자 자신이 제품이나 서비스에 배려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이 주장이 허위가 아니며, 유의성이 있다는 것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설정되어 있다. 일본의 NEC와 히타치제작소 등이 독자의 환경마크제도를 가지고 있다.

TYPE III는 환경성적표지체도(ISO14025)이며, 사전에 설정된 환경지표에 의거하여 제품의 공급자로부터 제공되는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환경정보이며, 환경에 대한 부하를 LCA(Life Cycle Assessment)수법에 의해 정량적인 정보로 공개하는 것이다.

이러한 ISO14020의 구분에 따르면 에코라벨링(Ecolabelling)은 제1유형 환경라벨(Type I: Environmental label)만을 의미하는데, 이는 에코라벨링 또는 에코라벨에서 '에코'가 환경적(ecology)이고 경제적(economic)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표 2-1〉 ISO에 의한 에코라벨링제도의 3가지 유형

유형	구분	내용	
제 1 유형 (Type I) (ISO 14024)	정의	제품의 제조, 유통, 사용 또는 폐기과정에서 동일 용도의 다른 제품과 비교하여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임을 인증하는 제도	
	인증주체	제3자 인증	
	시행 시기	한국	1992년 4월
		ISO	1999년 4월
	LCA적용	적용안함	
제 2 유형 (Type II) (ISO 14021)	정의	생산자 자신이 제품의 환경성은 주장할 수 있는 방법·조건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품의 환경성을 자기주장하는 제도	
	인증주체	당사자 인증	
	시행 시기	한국	1996년 8월
		ISO	1999년 9월
	LCA적용	적용안함	
제 3 유형 (Type III) (ISO 14025)	정의	제품의 환경성 정보를 계량화하여 도표·그래프 등으로 표시 하는 환경성적표지제도	
	인증주체	제3자 인증, 당사자 인증	
	시행 시기	한국	2001년 2월
		ISO	1999년 3월
	LCA적용	적용	

한편, 수산업 분야에서는 에코라벨링(Ecolabelling)에 대해 FAO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제26차(2005년 11월) FAO COFI에서 해면어획 수산물에 적용할 Ecolabelling의 국제가이드라인을 채택한 바 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해면어획 수산물의 에코라벨링(the Ecolabelling of Fish and Fisheries Products from Marine Capture Fisheries)이란 수산물에 특정 로고나 문장을 부착함으로써 수산물이 어업자원 보호 및 지속가능한 어업생산방식에 따라 생산되었음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즉, 수산물에 특정 로고나 문장을 부착하는 에코라벨링의 목적은 상품의 정보

를 확인하고 소비하려는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부응하는 동시에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에코라벨링에 대해서 ISO나 FAO, OECD 등에서 다양하게 분류하고 있는데 이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표 2-2>와 같다.

<표 2-2> 에코라벨링제도 분류 주체별 비교

분류주체	내용
FAO-COF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AO수산위원회(FAO-COFI)가 제시하고 있는 것은 넓은 의미의 에코라벨링(Ecolabelling)에 대한 개념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리체제: 어업자료의 수집·평가, 어업자원의 보존관리조치, 어업자원의 보존관리에 관한 법제도, 효과적인 감시감독의 실행 등 예방적 접근이 포함 -자원관리: 어업자원의 남획방지, 적절한 이용, 유지가능한 이용, 자원회복을 위한 필요한 조치 등 -생태계의 고려: 생태계보호를 위한 지원, 위험관리, 과학적 지역적 정보의 이용, 재정 및 적 기술지원, 과학협력
OEC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ECD에서는 에코라벨링을 크게 에코라벨(eco-label), 단일속성라벨(single issue label) 및 소극적 라벨(negative label)로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코라벨 : 제품의 전과정(life-cycle) 환경영향을 평가하여 환경친화제품임을 표시하는 라벨(예: 환경마크, 친환경농산물마크) -단일속성라벨 : 특정 환경영향단계에서의 제품속성을 표시하는 라벨(예: 에너지절약마크, 재활용마크, 산림보호마크 등) -소극적 라벨 : 부정적 환경영향을 가진 제품(유해물질, 독성물질, 유전자조작식품 등)에 대해 경고성 메시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라벨
ISO (국제표준화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SO는 3가지 유형으로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Type I: 기업의 자발적 신청에 의하여 제품의 전과정 환경영향을 제3자가 평가하여 환경친화제품임을 인증하는 라벨 -Type II: 제품의 환경친화성을 기업 스스로 주장하기 위해 부착하는 라벨 -Type III: 제품의 전과정 환경성적을 정량적으로 산출하고 그 결과를 가치판단 없이 제품에 표시하는 라벨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재활용, 에너지절약 등 제품의 특정측면만을 고려한 단일속성라벨링, 재활용 라벨링, 친환경 농수산물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기타 환경목적 라벨링 등도 에코라벨링의 유형으로 볼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너지 관련 라벨링 : 에너지 관련 라벨링은 자동차, 전기·전자제품 등 에너지를 사용하는 제품의 에너지 사용 효율을 평가하여 우수 제품에 대해 라벨을 부여하거나 효율등급을 표시하는 제도 -재활용 라벨링: 재활용 라벨링은 상당히 포괄적인 용어로서 제품 및 포장재의 분리수거가 용이하도록 재질을 표시하는 라벨링, 제품 자체가 재활용된 소재를 사용하여 제조된 것임을 표시하는 라벨링, 제품 및 그 포장재가 전문 수거업체에 의해 재활용되는 것임을 표시하는 라벨링

2. Ecolabelling의 경제적 타당성

1) Ecolabelling의 경제학 - 소비자 구매행동과 정보의 비대칭

소비자들이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판매자를 찾는 과정에는 시간과 에너지로 표현되는 탐색비용(search costs)이 든다. 물론 상품의 가치가 높을수록 탐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편익은 커질 것이고, 반대로 소비자의 소득이 높을수록 해당 소비자의 탐색에 따르는 기회비용이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는 정보의 한계편익이 탐색의 한계비용과 같아지는 수준까지 최저가격에 대한 정보를 찾는다. 이 결과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지불의사(willingness to pay)와 생산자의 정보제공의 한계 비용에 기초하여 정보시장이 생겨나게 된다.

또한 라벨링은 생산자가 소비자에 정보를 전달하여 신용 속성을 가진 상품이 시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종종 쓰이고, 소비자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 결정을 내린다.

그러나, 생산자는 자신이 생산한 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알고 있는 정보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제3의 기관이 개입하여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경우에는 제3의 인증기관에 의존할 수도 있으며 정부규제를 이용할 수도 있다. 제3 기관의 인증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해당 상품의 생산, 마케팅, 소비에 관여하지 않는 기관에 의한 인증'을 의미한다. 제3의 기관은 개별 조직일수도 있고 공공기관일수도 있다. 정부규제는 라벨링, 라벨 형식을 의무화할 수도 있고, 자발적으로 라벨링을 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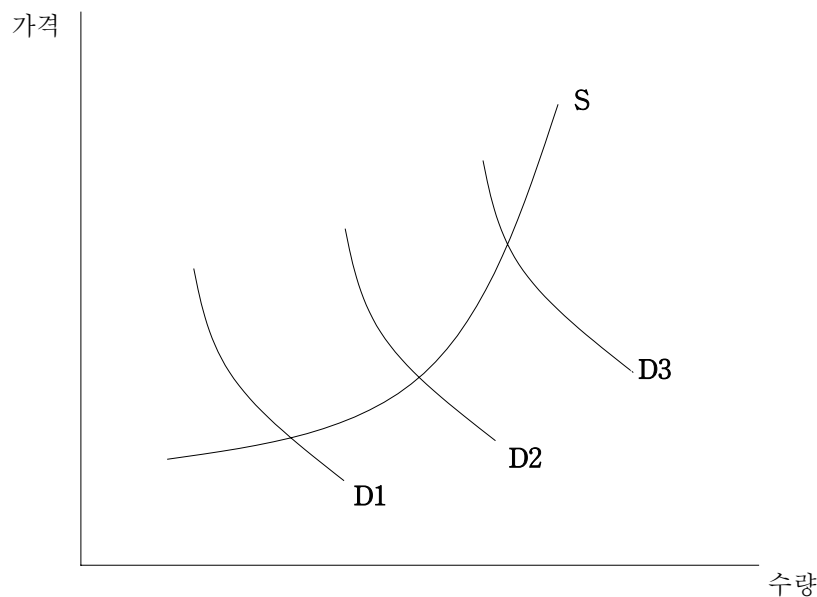
개별 상품이 그 자체로는 효용을 창출하지는 못하지만, 효용을 창출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한다면, 상품의 이러한 특성들을 <그림 2-1>과 같은 그래프를 이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이 그래프의 Y축은 식품 한 단위당 속성의 양에 따른 가격을 표시하였고, X축에는 식품 한 단위당 특정한 속성의 양을 표시하였다. 공급은 가격이 증가함에 따라서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식품 한 단위당 속성의 양을 의미한다. 이 속성은 친환경적인 면에서 특정한 품질이 증가하는 정도일 수도 있고, 한계비용의 증가는 해당 산업이 더 많은 양의 친환경 제품을 공급하면서 발생하는 한계 비용을 의미한다. 수요곡선은 식품 한 단위당 특정한

속성의 다양한 수준의 양에 대해서 소비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지불의사를 나타낸다.

이는 소득수준에 따라 소비자가 해당 속성을 구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편익을 나타내는 것이다. 수요 곡선은 우 하향하는데 이는 임의의 소득수준에서 식품 한 단위당 품질의 가격이 낮아질수록 더 많은 소비자가 이를 구입하고자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D3는 가장 높은 소득 수준을 의미하고, D1은 가장 낮은 소득 수준을 의미한다. 따라서 고품질일수록 우월한 상품이라고 가정하면 수요곡선은 소비자가 부유해질수록 우 상향할 것이다.

<그림 2-1> 식품 단위당 특정 속성의 수요와 공급



생산자와 소비자가 식품 한 단위당 품질에 대한 정보를 균등하게 나누어 가지고 있다면,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의 교차점은 효율적인 시장 균형을 나타낼 것이다.

그러나 정보가 비대칭적이라면(즉, 생산자가 소비자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이 시장 균형은 효율적이지 못하다. 예를 들어 생산자가 저품질 상품에 고품질 표시를 하여 속이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의무적인 라벨링이나 제3기관의 인증을 받는 라벨링을 통해서 정보의 비대칭성을 제거하여 효율적인 시장 균형을 달성할 수 있다.

수산물의 특성을 품질, 안전성, 가격, 생산과정, 맛, 색상 등으로 봄으로써, 각 속성이 소비자에게 주는 한계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소비자와 생산자가 상품의 친환경적 측면에 관해 가지고 있는 정보의 비대칭성은 다음과 같은 경우, 즉 1) 소비자가 의사 결정에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가지고 있지 못할 때, 2) 소비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한계를 모를 때, 3) 소비자가 정보를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을 모를 때 발생한다.

에코라벨링을 사용하면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일반적으로 자기선언적인 표시(self-declaration)로 이루어진다. 환경적인 속성에 관한 자기선언적 형태의 라벨링이나 생산자 표시는 일종의 광고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기선언적 표시는 몇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공통적인 정의가 없으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환경친화적인’이나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수확한’ 등의 표시는 명백한 의미를 알 수 없다. 생산자들이 이용하는 환경적인 측면과 관련된 표시 중 상당 부분은 해석하기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최악의 경우 이러한 표시들은 잠재적으로 속이거나 오도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이 환경라벨에 대해 잠재적으로 혼돈을 느낀다면 이는 라벨이 해당 상품이 끼칠 수 있는 다른 환경 피해를 은폐했기 때문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일회용 기저귀보다 천으로 만든 기저귀를 사용하면 폐기물 양을 줄일 수 있지만, 세탁 과정에서 물과 세제를 더 많이 사용한다.

‘dolphin-safe’라는 라벨을 보면 참치를 잡다가 돌고래도 죽이는 것을 방지한다는 것은 알 수 있지만, 이러한 돌고래 보호가 해양 생태계 전체에 이로울 것인지는 알기 어렵다. 즉, 배들이 돌고래와 관련이 있는 참치 떼를 피하기 때문에 돌고래가 보호를 받을지는 모르나, 이러한 선박 중 일부는 부족한 어획량을 보충하기 위해 성장기의 참치를 잡는다는 일화도 있다.

미국 연방통상위원회는 소비자가 광고를 통해 잘못된 정보를 얻거나 현혹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 연방통상위원회는 환경 관련 광고가 사실이고 거짓된 내용을 담아서 안 되며, 확인이 가능하고,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문화했다.

미국 의회가 참치 통조림 회사들이 ‘dolphin-safe’ 라벨을 사용하기 시작한 뒤 ‘돌고래 보호와 관련된 소비자 정보 법(The Dolphin Protection Consumer Information Act of 1990)’을 제정한 이유 중 하나이다. 이 법은 ‘dolphin-safe’ 라벨을 사용하는 기업에게 참치가 돌고래에 무해함을 증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 광고의 사실여부 확인은 소비자가 아닌 정부의 몫이 된다.

2) 정보비대칭의 대안으로서 Ecolabelling의 역할과 과제

환경라벨링을 자체적인 표시 형태로 하면 여전히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이에 대한 대안 중 하나가 에코라벨링(여기서는 자발적이고 '해당 상품은 구체적인 환경 기준을 충족한다는' 제3기관의 인증을 거치는 프로그램으로 정의)이다. 만약 해당 상품이 관련 기준을 충족할 경우 상품에 '승인 표식(seal-of-approval)을 부착할 수 있다. 이 기준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모든 상황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제3기관이 인증하는 소비자 에코라벨링은 시장에서 ①상품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와 보증, ②소비자 보호, ③구체적인 특정 환경 정책 달성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

에코라벨의 인증기관은 정부기관이나 준정부기관, 독립기관일 수 있다. 해당 기관은 일정한 금액을 받고 일정 기간 동안 인증 표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에코라벨링 인증기관의 역할은 일반적으로 1) 기준정립, 2) 인증, 3) 마케팅이다. 기준 정립은 상품이 에코라벨을 달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환경적인 기준을 결정한다. 인증은 해당 상품이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마지막으로 마케팅은 해당 상품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를 높이고 표시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시킨다. 물론 에코라벨을 받은 상품의 생산자도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에코라벨링 기관은 이와 무관하게 마케팅 활동을 하여 소비자들이 에코라벨이 붙은 상품을 찾도록 해야 한다.

에코라벨의 효과성(effectiveness)은¹⁾ 소비자가 특정 라벨을 얼마나 인지하고 얼마나 수용하는지에 달려 있다.

인지(awareness)는 일반적으로 성공적인 판촉 활동의 성과물이다. 수용성은 1) 해당 사안을 대중이 얼마나 이해하는지, 2) 해당 사안과 상품 선택 간의 관계를 대중이 얼마나 이해하는지, 3) 상품 속성을 이해한 상태에서 정확하게 표현했는지, 4) 라벨링 프로그램을 본 개인들이 그에 대한 반응으로 특정한 행위(예를 들어 구매)를 할지에 대해 정확히 이해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에코라벨링 정책이 널리 통용되려면, 라벨링을 둘러싼 사안들이 잘 알려져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라벨을 찾도록 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에코라벨링 프로그램은 공공교육의 기능도 하는 것이다. 믿을만한 기관이 라벨링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면 수용성은 한층 더 높아질 것이다.

1) 효과성은 특정한 정책 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는 것이고, 효율성(efficiency)은 이 목표를 얼마나 적은 비용으로 달성했는지를 측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 수단이 효율적이지 않아도 효과적일 수 있다.

3. 수산업과 Ecolabelling

1) 수산업에 있어서 Ecolabelling 도입 경제적 효과

① 가정 1 : 자기선언적 에코라벨링과 수산자원관리

두 가지 핵심적인 가정을 이용해서 기존의 수산업 관리시스템이 자기 선언적인 수산물 에코라벨링 프로그램의 성공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분석했다.

첫 번째 가정은 에코라벨링을 도입한 수산물은 가격 프리미엄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가정은 상품은 차별화가 가능해야 하며, 이는 라벨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라벨을 제외한 나머지 측면에서의 품질은 동일).

Gudmundsson and Wessells는 에코라벨링을 한 수산물에 대해 단순 가격 프리미엄(양에 관계없이 프리미엄이 일정)이 존재하면, 에코라벨링을 실시하더라도 어업 종사자들이 자원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용하는 정도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혔다.

최적화된 상태에서조차 필요 이상의 남획이 이루어지고 수산자원량은 최적 수준보다 낮다. 만약 수산자원량이 가장 낮을 때 가격 프리미엄이 가장 높고, 수산자원량이 늘어날수록 가격 프리미엄이 감소한다면, 최적화된 어획 활동은 어획량을 줄일 것이고, 접근이 제한된 어업 종사자는 어획량을 늘리거나 투입재를 증가시켜 비용을 늘릴 것이다.

이 분석은 다이나믹 생물경제모형(dynamic bioeconomic model)을 이용하여 이루어졌고, 이 모형에서는 어업 종사자의 목적을 소비자·생산자 잉여 극대화로 가정하고 있다. 이 경우 어업의 수익 마진이 낮고 프리미엄이 높다면, 에코라벨링에 반응할 유인이 높다. 그러나 어업활동이 이미 수익성이 있고 프리미엄이 상대적으로 낮다면, 어업 생산자가 에코라벨링에 반응할 유인이 작아진다.

에코라벨링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이유 중 하나는 수산자원량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획에 대해 보상을 함으로써 과도하게 남획한 어류를 회복할 유인을 창출하는 것이다.

이들의 연구는 어업 행위의 결과 수산자원량 수준이 지속가능한 최고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프리미엄(에코라벨)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을 경우에도 에코라벨을 부여할 경우 생기는 결과를 분석하고 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라벨링을 받은 경우에는 어획강도가 낮아져 수산자원량이 보다 빠르게 회복된다. 이 회복 속도는 에코라벨(프리미엄) 함수의 형태와

한계수의 대비 에코라벨(프리미엄)의 규모에 따라 결정된다.

한 어종에서 생산되는 상품에 라벨을 부착하면 라벨링을 하지 않은 다른 어종 상품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즉, 프리미엄 때문에 라벨링을 하지 않은 어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이 어종 상품에 대한 가격이 높아진다.

② 가정 2 : 에코라벨링이 후생과 교역에 미치는 영향

Nimon and Beghin(1999a)은 에코라벨링이 후생과 교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틀을 제시했다. 이들은 산업화가 이미 이루어진 북부와 개발도상국이 많은 남반구의 섬유 시장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고, 에코라벨링은 생산 과정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정형화된 모형에서 북부는 전통적인 섬유 상품을 남반구로부터 수입하고 이러한 상품을 직접 생산하기도 한다. 또한 북부는 수입 섬유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며, 인증 과정에는 고정 비용이 수반된다고 가정했다.

비교정태 분석 결과는 북부에서만 라벨링 프로그램을 실시(남반구 불참)하면 북부와 남부의 전통 섬유제품 생산자가 모두 손해를 보게 된다. 소비자는 선택의 폭이 넓어져서 이익을 보지만 전통 섬유제품에 대한 수요(수입 포함)는 감소한다. 관세가 있기 때문에 전통 섬유 제품의 수입 감소는 더욱 가속화된다. 관세를 높이면 국내 전통 섬유산업이 받는 타격을 다소 완화할 수 있다.

만약 남부에서도 에코라벨링을 실시하면, 남부의 전통 섬유제품 생산자는 이전보다 훨씬 상황이 악화되는 반면 남부는 총 시장 점유율을 다시 회복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에코라벨과 생산과정 기준을 조율하는 것이다. 이 분석에서는 남부에서 에코라벨링을 한 상품의 품질이 북부에서 에코라벨링을 한 상품의 품질보다 낮다고 가정하는데, 이는 남부에서 오염이 환경에 미치는 한계피해가 더 적기 때문이다.

품질이 발산한다고 가정할 경우, 북부와 남부 모두 에코라벨링을 한다면 남부의 섬유제품 공급자들은 다소 이익을 보게 되고 이는 수요 증가가 생산 기준 강화로 인해 생기는 한계비용 증가분을 상쇄하는 한 유효하다.

하향 평준화는 남부의 전통 섬유산업에 득이 될 것이다. 상향평준화는 북부의 에코라벨링 사업의 경쟁을 더욱 촉발하여 가격을 낮추고, 이 결과 소비자들의 잉여가 늘어날 것이다.

③ 실증분석결과 1 : 에코라벨링과 섬유산업

Nimon and Beghin(1999b)은 '유기면화', '친환경적인 염색', '무 염색' 표식에

대한 가격 프리미엄을 조사했다. 데이터는 1996년 5월, 10월 미국의 소매우편 주문 카탈로그와 인터넷 카탈로그에 나온 상품의 가격과 특성 데이터를 이용했다. 데이터는 총 794개의 관찰치를 포함하는데 이 중 364개는 전통적인(친환경 표식을 하지 않은) 표식이고 430개는 유기농 표식을 한 것이었다. 이 중 117개는 합성/천연 면화를 혼합한 것이었다.

이 분석은 특성가격함수(hedonic price function)를 이용했는데, 여기서는 상품의 다양한 속성을 설명하는 독립변인들을 회귀분석하여 가격을 도출한다. 이 분석에서는 품목 유형(바지, 양말, 티셔츠 등), 카탈로그, 성별(여성, 남성, 양성), 연령(유아, 아동, 성인), 염색 방법(열은 염색, 무 염색), 유기 면화 범주와 유기면화의 함량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여 가격을 설명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유기면화에 대해 확실한 가격 프리미엄이 있었고, 전체 가격 평균 대비 33.8%의 프리미엄이 있었다. 그러나 환경친화적인 염색에 관련된 프리미엄이 있는지 여부는 판단할 수 없었고, 생산공정을 단순화하여 비용을 절감한 무염색에 대해서는 할인 요인이 있었다.

④ 실증분석결과 2 : 에코라벨링과 수산업

Johnston, Wessells and Donath(1999b)는 미국 시장을 대상으로 에코라벨링을 한 수산물 수요를 조사했다. 자료 수집 방법으로 1,640명의 미국 소비자를 임의로 선정하여 전화 설문을 실시하였다. 이 설문은 응답자가 인증을 받은 수산물과 인증을 받지 않은 수산물을 비교하여, 인증을 받은 수산물에 지불하고자 하는 프리미엄이 유발하는 가격 차이가 나타나도록 설계되었다.

인증과 가격의 차이를 제외하면 두 가지 상품은 모든 면(품질과 신선도 포함)에서 동일하다. 인증은 '수산물에 라벨을 부여하여 해당 수산물이 남획을 엄격히 방지하도록 하고 있는 프로그램 인증을 받은 수산물은 남획하지 않았음을 보증하는 라벨을 부착한다. 인증을 받지 않은 수산물에는 이러한 보증이 없다.'고 표현했다.

소비자들에게 연어, 대구, 각테일 새우를 임의의 순서로 제시했다. 각각의 상품에 대한 기본 가격은 조사시점의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다양하게 제시했다. 프리미엄은 파운드 당 -\$2.00에서 \$5.00의 범위로 설정했다.

인증기관은 세계야생동물보호기구, 국립해양어업청, 해양보호의회 중 선택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인증 받은 연어는 인증을 받지 않은 연어와 인증 받은 대구는 인증을 받지 않은 대구와 인증을 받은 각테일 새우는 인증을 받지 않은 각테일 새우와 비교를 했다는 것이다.

평균적으로 응답자의 70% 정도가 에코라벨링을 한 새우, 연어, 대구를 에코라벨링을 하지 않은 경우보다 선호했다. 계량분석을 실시하여 어떠한 변인이 에코라벨링을 한 수산물을 에코라벨링을 하지 않은 수산품보다 선호하도록 하는지를 검증했다.

로짓 분석을 이용한 결과, 응답자의 에코라벨링 수산물에 대한 선호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인이 프리미엄의 규모로 나타났다. 프리미엄이 증가할수록 응답자가 에코라벨링을 한 수산물을 선호하는 확률이 감소했다. 뿐만 아니라 응답자가 에코라벨링을 한 수산물을 선택할 확률을 상품 종류(연어, 대구, 새우), 가구의 지리적 위치, 소비자 그룹에 따라 달랐고, 인증기관은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예를 들어 프리미엄의 영향은 전 상품에 걸쳐 음의 값을 나타냈지만, 대구의 경우가 영향력이 가장 컸고 연어의 경우는 영향력이 적었다. 미국 서부해안에 위치한 가구는 인증받은 연어를 선택하는 경향이 다른 지역보다 높았다. 환경 단체에 가입한 사람이 있는 가구는 인증 받은 수산물을 택하기가 쉬웠다.

에코라벨링을 한 수산물을 선호하는 정도에 영향을 미친 다른 변인으로서는 성별(여성이 남성보다 선호), 예산(수산물 구입 비중이 적은 가구가 더 선호) 등이었다.

또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2/3 정도가 태평양 연어와 대서양 대구의 상태를 잘 모른다고 응답해 소비자에 대한 심도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국가간 선호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앞에서 언급한 미국자료 외에 1999년 가을에 노르웨이 소비자 2,039명을 대상으로 동일한 전화 설문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했다. 노르웨이와 미국 설문에서의 가장 큰 차이는 1) 노르웨이의 경우 각테일 새우 대신 소형 한대성 새우를 사용했고, 2) 국립해양어업청 대신 노르웨이 국립어업감독청을 사용했고, 3) 프리미엄 단위를 달러 대신 노르웨이 통화인 크로네(Kroner)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노르웨이 소비자들은 인증 받은 수산물에 대해 50% 정도의 선호를 보여 인증 받은 수산물을 택하는 경향이 미국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약 34% 정도는 인증을 받지 않은 수산물을 선호하였고, 15%는 응답하지 않았다.

에코라벨링을 한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선호가 국가에 따라 다르다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앞의 경우와 유사한 방정식을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경우에는 노르웨이와 미국 자료를 섞어 사용하였고, 두 응답자 집단의 차이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 적절한 변수를 추가하였다. Kroner와 달러로 표시된 프리

미엄을 비교하기 위해, 프리미엄은 퍼센트로 환산했다. 그 결과를 보면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프리미엄이 증가할수록 소비자들은 에코라벨링을 한 상품을 덜 택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효과는 노르웨이에서 더욱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노르웨이 소비자들이 가격이 더 민감함을 나타낸다. 이에 더해 노르웨이 소비자들은 미국 소비자들보다 어느 인증기관이 인증을 했느냐에 좌우되었다. 환경 단체에 가입한 사람이 있는 노르웨이 가구는 미국에 비해 인증 받은 수산물을 택하는 경향이 적었다.

이들 연구결과는 여러 가지 시사점을 갖는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 설문 응답자들이 해당 상품이 어떻게 인증을 받았는지를 교육 받았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일단 교육을 받은 뒤에 인증을 받은 상품과 받지 않은 상품 중 택하라는 질문을 받았다.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소비자가 인증을 받은 상품을 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이는 프리미엄의 크기에 매우 큰 영향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각국에서 설문조사의 대상이 된 소비자 표본은 '에코라벨링에 대해 교육을 받았다고' 가정을 하고 있다. 이 선택이 실제 상황이고 소비자들이 에코라벨에 대해 교육을 받았다면, 소비자들은 인증을 받은 수산물을 택하는 경향이 더 높아졌을 것이다.²⁾

2)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Ecolabell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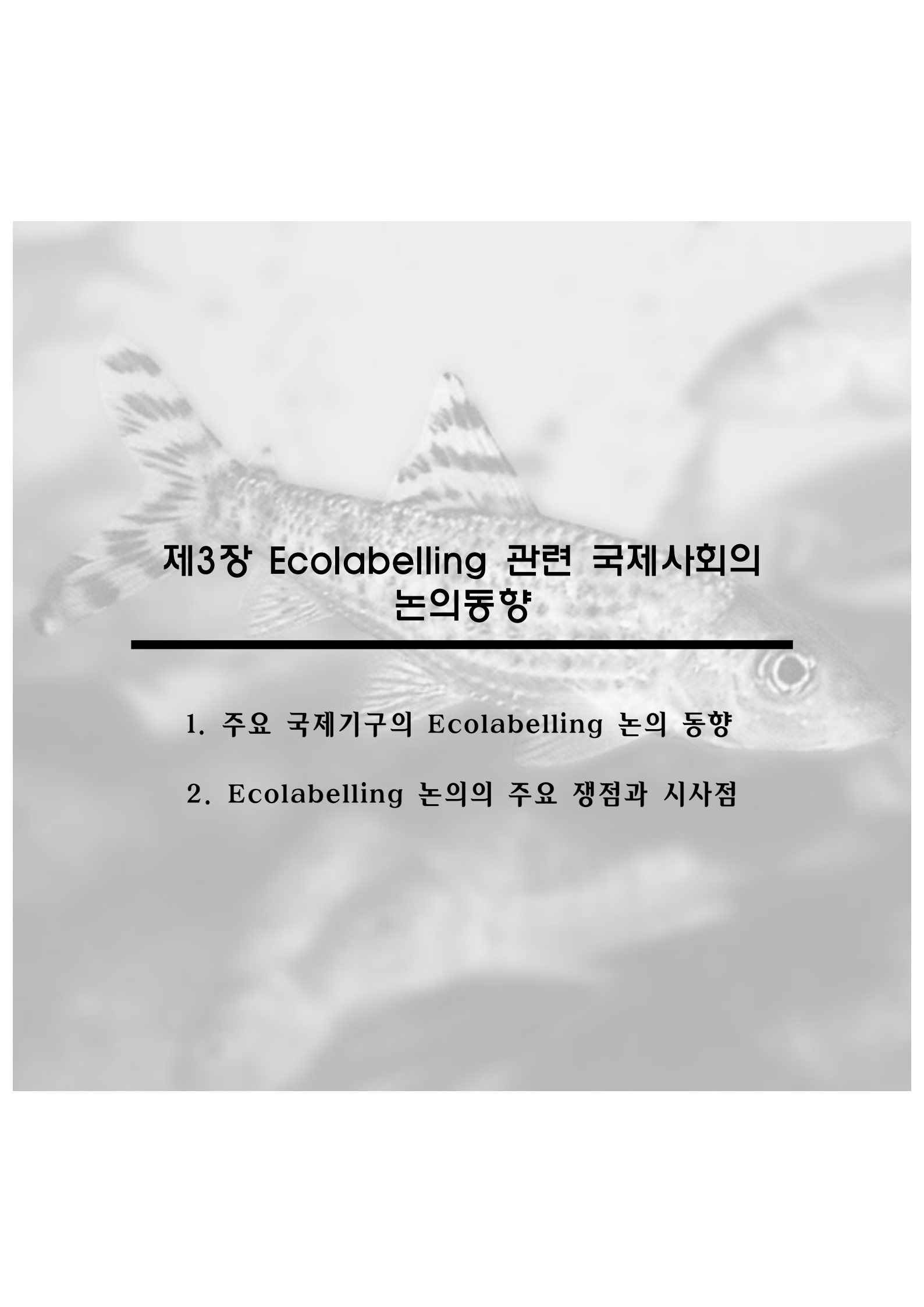
결론적으로 말하면, 소비자의 수산물의 선택은 에코라벨링을 한 수산물에 대해 지급하는 프리미엄에 확실히 좌우되며, 소비자가 에코라벨 문제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 지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수산물 생산량 감소 및 수산자원의 남획으로 지휘-통제의 어업관리 메커니즘(command-and-control management)의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한 현시점에 에코라벨링제도는 매우 흥미있는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수단이다. 소비자 구매 결정에 영향을 줌으로써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비자들에게 수산물의 생산 과정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자는 움직임이 국제사회에서 일기 시작했다.

소비자에게 수산물의 생산과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바로 에코라벨링 프로그램이다. 일반적으로 에코라벨링 프로그램은 제3자가 마련한 환경기준에 비추어 수산물 및 수산식품의 생산과정을 평가하는 것이다.

2) "Cathy Roheim Wessells 외, 「Product certification and ecolabelling for fisheries sustainability」, FAO, 2001."를 참조

생산과정이 환경기준에 부합할 경우에는 생산자 또는 가공업자는 특정 에코라벨을 사용할 수 있는 면허를 살 수 있다. 이 라벨은 상품이 환경에 미친 영향을 관찰할 수 없는 소비자에게 정보를 전달한다. 상품 정보를 접한 소비자들 가운데서 수산물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어획된 상품을 더 선호하는 자는 에코라벨링이 부착된 상품을 구매할 확률이 높아지고, 이렇게 반복되는 소비자의 구매 행동은 수산물 생산자 및 유통인들에게 신호를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즉, 수산 자원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시장이 생산자 및 유통인에게 동기 부여를 할 것이다.



제3장 Ecolabelling 관련 국제사회의 논의동향

1. 주요 국제기구의 Ecolabelling 논의 동향
2. Ecolabelling 논의의 주요 쟁점과 시사점

1. 주요 국제기구의 Ecolabelling 논의 동향

최근 세계 수산물 생산량 감소 및 수산자원의 남획이 계속되자 기존의 지휘-통제의 어업관리 메커니즘(command-and-control management)의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 소비자 구매 결정에 영향을 줌으로써 수산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비자들에게 수산물의 생산 과정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자는 움직임이 국제사회에서 일기 시작했다.

소비자에게 수산물의 생산과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바로 에코라벨링 프로그램이다. 일반적으로 에코라벨링 프로그램은 제3자가 마련한 환경기준에 비추어 수산물 및 수산식품의 생산과정을 평가하는 것이다. 생산 과정이 환경기준에 부합할 경우에는 생산자 또는 가공업자는 특정 에코라벨을 사용할 수 있는 면허를 살 수 있다. 이 라벨은 상품이 환경에 미친 영향을 관찰할 수 없는 소비자에게 정보를 전달한다.

상품 정보를 접한 소비자들 가운데서 수산물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어획된 상품을 더 선호하는 자는 에코라벨링이 부착된 상품을 구매할 확률이 높아지고, 이렇게 반복되는 소비자의 구매 행동은 수산물 생산자 및 유통인들에게 신호를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즉, 수산 자원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시장이 생산자 및 유통인에게 동기 부여를 할 것이다.

이 같은 움직임 속에서 에코라벨링을 가장 먼저 도입한 곳은 MSC이다. MSC는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어업, 책임있는 어업관행을 진작시키고자 설립된 비영리조직으로써 1996년 세계야생동물보호기금(WWF)과 다국적기업인 Unilever의 합작으로 창설되었다.

MSC의 목적은 환경친화적이며, 책임있는 어업관리 및 어업관행을 실천하여 생산된 수산물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해 독립 기관이 인증된 환경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이다.

인증 받은 수산물 또는 수산식품은 해당 상품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어획되었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알릴 수 있는 라벨을 상품에 부착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된다. 이를 통해 MSC는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수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과거 지휘-통제 관리 메커니즘(command-and-control management)의 어업관리방식에서 시장 중심의 관리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소비자들은 MSC 로고가 부착된 수산물 및 수산식품을 구매하면서 깨끗한 해양 그리고 깨끗한 환경을 지지한다는 것을 생산자들

에게 알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민간의 노력을 대표하는 MSC 창설이후 1997년 FAO의 수산위원회(COFI)는 제22차 회의에서 처음으로 에코라벨링에 관한 논의를 시작되었다. 에코라벨링이 세계교역에 새로운 무역장벽을 형성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논의의 진전이 이뤄지지 못하다가 2003년 COFI 제25차 회의에서 해면어획 수산물에 적용할 수 있는 에코라벨링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것을 FAO에 제의하였다.

2004년 10월 기술자문단의 각 국 대표들은 해면 어획 수산물에 적용할 수 있는 에코라벨링 국제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개발하는 문제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이 후 상당한 진전이 이뤄졌고, 제2차 기술자문단이 COFI 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소집되었다. 이어 2005년 3월 COFI 제26차 회의에서 최종 가이드라인이 채택되었다.³⁾

<표 3-1> Ecolabelling 관련 국제회의 논의동향

년도	회의	내용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의 리우선언	에코라벨링(Ecolabelling)이라는 개념이 최초로 언급됨. 각 국은 환경라벨(environment labelling)의 사용을 확대하는 것에 동의함
1998년	FAO (10.21~23)	해면어획 수산물 적용 에코라벨링의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기술협의회(Technical Consultation on the Feasibility of Developing Non-discriminatory Technical Guidelines for Ecolabelling of Products from Marine Capture Fisheries) 소집함. 가이드라인 가안(draft) 내용에 대한 합의는 이루지 못했지만, 에코라벨링의 기본원칙만 확인하였음
2002년	WTO 무역환경위원회(CTE)회의	WTO규범과 국제환경협약 및 에코라벨링과의 관계, 환경상품과 환경서비스에 대한 관세·비관세 장벽감축 논제 논의
2004년	FAO의 25차 수산위원회(COFI) (10.19~10.22)	해면어획 수산물 적용 에코라벨링의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기술협의회소집 에코라벨링 가이드라인 가안 채택
2005년	FAO의 26차 수산위원회(COFI) (3.3~3.11)	수산물교역소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대로 해면어획 수산물에 대한 가이드라인 채택 2007년 27차 회의에서 수정·보완된 가이드라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내수면어업에 대한 에코라벨링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것을 권고함
2007년	FAO 27차 수산위원회 예정(날짜 미정)	

3) 이 가이드라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5장 2절을 참조.

에코라벨링과 관련한 논의는 MSC와 FAO 외에 WTO에서 일반적으로 다루지고 있다. WTO는 라벨링이 국제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기술장벽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우려에 따라 라벨링의 기술장벽효과 예방을 위해 TBT협정을 체결하였다.

TBT의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 즉 의무적(mandatory) 라벨링에 대해서는 TBT협정 제2.1조(최혜국대우 및 내국민대우), 제2.2조(무역제한적 목적의 제거), 제2.4조(관련 국제표준의 준수), 제2.9조(투명성 및 공지 의무)가 적용된다. 또한 표준(standard), 즉 자발적(voluntary) 라벨링에 대해서는 TBT협정 부속서 3 “모범관행규약(code of good practice for the preparation, adoption and application of standards)”이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PPMs를 포함하는 라벨링이 TBT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에코라벨은 전과정 환경영향을 고려하여 PPM 기준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어떤 라벨링이 TBT협정 대상이 된다는 것은 그 라벨링이 TBT협정을 준수하면 WTO에서 수용한다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동종상품 원칙과 근본적 상충관계를 가지는 PPMs 라벨링을 WTO에서 수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또한 TBT협정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가와 관련하여 TBT협정이 정부라벨링(governmental labelling)이 아닌 민간라벨링(private labelling)까지도 규율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는 것이 WTO의 일반적 견해이다. 그러나 WTO 회원국은 자국내 민간라벨링 프로그램이 TBT협정에 부합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므로 민간라벨링 프로그램은 TBT협정에 의해 직접 규율되지는 않으나 국가에 의한 간접규율 대상이 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주도 라벨링은 직접적으로 TBT협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국가는 자국의 민간라벨링이 TBT협정에 부합하도록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이 같은 환경라벨링에 대해 회원국별 의견이 다양하게 나뉘지고 있는데, 크게 환경라벨링과 관련한 논의를 TBT협정에 PPMs 라벨링까지도 포괄하여 적용할 것인가, 기술장벽 제거를 위해 TBT 규정이 충분한 수준인가, 그리고 개도국의 시장접근성 제고를 위해 별도의 대안이 필요한가로 집약된다.

스위스 및 EC는 환경라벨링으로 인한 불필요한 무역기술장벽효과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TBT협정이 환경라벨링에 대해 포괄적으로(강제적/자발적/정부주도/민간주도/PPM을 불문하고) 적용되어야 하며, 라벨링의 유형에 따라 적절한 TBT규정이 보완·확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또한 환경라벨링 프로그램이 비교적 성숙한 캐나다와 일본도 환경라벨링의 유효성을 WTO에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체로 EC의 주장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미국은 현행 TBT협정의 불충분성으로 인해 발생한 무역분쟁사태가 없으므로 TBT를 확대 적용할 필요가 없으며, 실제로 라벨링 관련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WTO 분쟁해결기구를 통해 처리하면 자연스럽게 관례가 형성될 수 있으므로 TBT에서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개도국 역시 미국과 마찬가지로 PPMs 환경라벨링까지 TBT에서 적용한다면 이는 PPMs에 근거한 제품차별(정부에 의해 직접적이건, 시장선택에 의해 간접적이건 간에)을 WTO에서 수용한다는 의미이므로 선진국이 라벨링을 이용하여 개도국의 선진국 시장진입을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입장이다.

【각국 주장의 배경】

- ▶ **EC** : EU Flower 라벨과 LMO 라벨이 EC DG(사무국) 차원에서 직접 운영되고 있으며,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역내 환경보호 차원에서 환경라벨링 프로그램의 광범위한 활용을 선호
- ▶ **미국** : 환경라벨링을 정부 차원에서 후원하고 있지 않으며 전통적으로 산업계의 反환경정서(미국 산업계는 Coalition for Truth in Environmental Marketing라는 단체를 설립하여 환경라벨링에 대해 적극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음)가 강하므로 WTO에서 환경라벨링이 수용가능한 환경조치로 인정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음. 또한 미국은 LMOs 제품의 최대 수출국가로서 유럽의 LMO 라벨의 철폐를 적극 주장하고 있음
- ▶ **개도국** : 환경라벨링이 비록 자발적이라 하더라도 개도국의 환경친화적 생산기술이 선진국 환경라벨링 기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따라서 선진국의 환경라벨링을 매개로 한 녹색소비문화는 상대적으로 환경비친화적인 개도국 제품의 시장진입을 제한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미국이나 개도국의 입장과는 달리 환경라벨링에 대해 매우 공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EC는 2003년 3월 무역환경위원회(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에 신규 제안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EC는 도하각료선언문 제32절(환경목적 라벨링)과 관련하여 최근 PPMs를 포괄하는 에코라벨링의 WTO 수용을 주장하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2002년도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지구정상회담(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에서 채택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환경라벨링의 활성화”라는 의제와 WTO에서의 논의가 일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전과정 환경라벨링의 유효성을 WTO가 인정해야 할 것임을 촉구하면서 환경라벨링의 전과정 인증기준, 즉 PPMs 기준이 불필요한 무역차별 조치가 아님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개도국의 반발을 감안하여 개도국에 대한 공평한 시장접근 기회 제공을 위한 수단 및 기술지원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도 주장하였다.

【CTE 환경라벨링에 대한 EC 제안 주요내용 (2003/3/6)】

- ① 전과정 평가에 근거한 자발적 에코라벨링제도는 환경목적을 달성하는데 유효한 정책도구이다.
- ② 에코라벨링제도는 개도국의 환경적 고려가 중요한 시장에서의 진입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WTO는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 ③ 전과정 평가에 근거한 자발적 에코라벨링제도는 WTO협정에서 정한 권리·의무관계에서 적합하다. 또한 관련 국제표준을 활용함으로써 에코라벨링제도의 도입 및 적용이 불필요한 무역제한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아야 한다.
- ④ 개도국의 정부, 기업, 소비자가 에코라벨링제도에서의 완전히 자유로운 참여를 보장하도록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며, 현행 에코라벨링제도의 협의절차, 의견청취절차, 통보절차 등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
- ⑤ 에코라벨링제도는 TBT협정의 모범관행규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주목할 만한 점은 EC가 제안의 근거로서 각국 에코라벨링 협의기구인 GEN(우리나라는 1997년도 가입)의 의견을 대폭 수용하고 있으며 GEN 중심의 Type I 에코라벨링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2년도 GEN 정기총회에서 참석 16개국의 합의에 의해 WTO 환경라벨링 논의에 대해 GEN 차원의 성명을 발표하기로 하였으며, GEN 의장국인 캐나다가 창구역할을 하고 있다.

EC는 환경라벨링의 TBT협정내 수용을 위해서 국제표준이 존재하며 자발적 의사결정기구를 가지고 있는 Type I 에코라벨링에 대해 우선적으로 CTE 권고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MSC, FAO, WTO 이 외 환경라벨링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곳은 국제환경라벨링네트워크(GEN)이다. 전 세계 Type I 환경라벨링을 시행하고 있는 27개 국가의 환경라벨링 운영기관들의 협의기구인 국제환경라벨링 네트워크는 이러한 환경라벨링의 무역차별효과를 예방하고 각국간의 환경라벨링 정보공유를 통해 제도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에서 GEN은 1994년 발족된 이래 국가간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greement)을 지원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각국의 상이한 환경라벨

링제도를 공통된 기준과 절차에 의해 통합 운영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이른바 국제통합에코라벨링시스템(Internationally Coordinated Ecolabelling System)을 통해 환경라벨링으로 인한 무역장벽효과를 해소하고 수출기업들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2. Ecolabelling 논의의 주요 쟁점과 시사점

지금까지 논의된 국제동향을 살펴보면 수산물의 지속가능성이라는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MSC'라벨 등의 민간차원의 에코라벨링이 개발되었고, 이를 모멘텀으로 하여 민간에서 만들어 졌던 에코라벨링이 신뢰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FAO는 해면어획수산물에 대상으로 한 에코라벨링 가이드라인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FAO의 에코라벨링 주요 논의 목적은 어업관리방안의 개선이다.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관리방안으로 국제사회는 개별 국가 및 지역수산기구를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에코라벨링의 지배구조를 개발하는 데 힘쓸 것으로 보인다.

수산자원의 사용자 또는 기타 어업에서 가지고 있는 쿼터는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수산부문 에코라벨링은 산업간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는 문제가 아니라 어업의 특수한 문제로 한정되기 때문에 민간보다는 정부의 노력이 무엇보다도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같은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에코라벨링제를 국제사회에서 구체화해 나가는 데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첫 번째 문제는 어업의 인증과 관련된 문제이다. 실제 수산물의 인증은 객관적인 기준에 대한 신뢰성 문제로 평가절하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어업관리에 있어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대표적으로 MSC 기준이 있는데 이는 기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개발도상국과 소규모 어업국에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하는 문제에서 대해 국제사회는 실제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렇다고 국내의 기존 어업관리 방법을 수정한다고 할 경우에도 인증기준은 기존의 기준보다 훨씬 높아야 하는 동시에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켜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에 대해서 에코라벨링 인증 주체로서 정부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어업관리기준을국제무역법 하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 에코라벨링 인증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속가능한 어업이라는 가치있는 슬로건과 에코라벨링 시행 주체에 대한 논의 외에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문제는 에코라벨링의 도입하게 되었을 때의 사회적 비용이다.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관리방안을 개선하는 것은 곧 수산물 가격 인상을 의미하고 소비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FAO가 제안한 에코라벨링 가이드라인의 대상은 해면어획수산물에 한정하고 있고 향후 양식수산물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을 채택할 것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로 양식수산물과 해면어획수산물 둘 중 어떤 수산물에 라벨을 부착할 것인지 더욱 신중을 기해서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다.

현재 국제 사회에서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WSSD)는 현 어업관리방식을 바꾸기 위해 몇 가지 야심 찬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2010년까지 책임있는 어업에 대해 생태계 기반의 접근방법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과학적 데이터, 분석 방법, 적절한 생태계 접근을 위한 보존 및 관리 측정기준 개발, 새로운 규제 메커니즘 도입 등 다양한 사안들을 해결해야 한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문제는 개발도상국의 참여문제이다. 수산물 교역에서 개발도상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개발도상국이 에코라벨링제 참여는 필수적으로 여겨지지만 이는 선진국의 지원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개도국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선진국의 지원방법의 구체화도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아있다.

뿐만 아니라 WTO 내에서도 스위스 및 EC 등은 환경라벨링으로 인한 불필요한 무역기술장벽효과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TBT협정이 환경라벨링에 대해 포괄적으로(강제적/자발적/정부주도/민간주도/PPM을 불문하고) 적용되어야 하며, 입장을 견지하는 한편 미국은 TBT를 확대 적용할 필요가 없으며, 실제로 라벨링 관련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WTO 분쟁해결기구를 통해 처리하면 자연스럽게 관례가 형성될 수 있으므로 TBT에서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 이어서 양 선진국간의 의견합의를 보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상의 국제 사회 논의 동향을 요약하면 수산물 에코라벨링에 있어 정부가 국제사회의 국내어업의 가교역할을 하며 에코라벨링 확대를 위해 힘써야 하며 구체적으로 인증 기준을 개발하는 데에도 중요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



이 전체적인 논의동향이다.

나아가 세부적으로 에코라벨링을 시행하게 되었을 경우의 환경보호적인 측면과 사회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국제적으로 에코라벨링을 확대 실시하기 위해 개도국의 지원방법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제4장 Ecolabelling 관련 법적 검토

1. Ecolabelling의 국제법제
2. Ecolabelling의 국내법제
3. Ecolabelling의 법제화 추진원칙과 방향

1. Ecolabelling의 국제법제

1) Ecolabelling과 일반국제법

Ecolabelling은 환경친화적제품의 생산이나 소비촉진을 위하여 Eco-Label 부여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충족하는 제품에 대해서 Eco-Label의 부착을 허용하여 생산, 소비패턴의 전환을 유도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일반국제법에서 Ecolabelling의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은 1992년 브라질의 리우에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가 개최된 이래 리우선언의 구체적인 실천계획으로 '의제21'이 선정되면서부터이다. 유엔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의제21'에서 채택하고 논의된 작업계획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이를 위해 상태·반응(Driving force-State-Response, DSR)구조의 지속가능개발지표로 삼는다.

Ecolabelling의 우선적인 목적이 Eco-Label이 부착된 제품이 Eco-Label이 부착되지 않은 동종의 다른 제품보다는 환경에 훨씬 덜 해로운 영향을 가진 제품으로 식별되도록 하는 것이다. Ecolabelling제도는 Eco-Label이 부착된 제품의 판매가 증가되거나 제조기업의 이미지를 고양하는 수단으로 수용되고 사용될 때에 비로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즉 다른 제품과는 의도적으로 차별화하려고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Ecolabelling제도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가지라고 할 수 있다.

첫 번째로, Ecolabelling 제도는 Eco-Label이 부착된 제품과 그러지 않은 제품의 가격을 동등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Eco-Label이 부착된 제품의 시장점유율을 증대시켜야 Eco-Label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상승분을 상쇄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소규모의 공급업자들은 자신들의 기업 활동을 Ecolabelling제도의 요건에 부합시키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상쇄시키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소규모 공급업자의 수출경쟁력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 일부 Ecolabelling제도는 공장설비를 현장에서 검사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공장설비가 외국에 있을 경우에는 검사하는 것이 어려울 수가 있다. 외국의 Ecolabelling제도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기업비

밀을 공개하여야 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며 검사비용도 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소규모의 공급업자에게 있어서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외국기업에 대한 검사나 인증 등이 수입국의 Ecolabelling 당국에 의해 이루어질 경우 아무래도 수입국의 국내생산자보다는 외국기업에 대해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일부 Ecolabelling제도의 내용에 수입국의 기업이 개발한 특정 중간물질(intermediate materials)이나 특정제조과정의 사용을 요건으로 하고 그 중간물질이나 제조과정이 수입국 기업의 지적소유권의 대상인 경우에는 무역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더 심화될 수 있다.

네 번째로, Ecolabelling제도는 Eco-Label의 사용에 제품단위당 가격 또는 연간판매량에 기초하여 수수료를 부과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조차도 외국의 소규모 공급업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한다.

다섯 번째로, 어느 제품이 원산국에서 그 제품에 대해 신용할 만한 기준에 따라 Eco-Label이 부여되었고 그 표지를 부착한 제품이 외국으로 수출되었다면 수입국에서도 이러한 표지를 부착한 제품의 유통이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수입국에서도 동종의 제품에 대해 Ecolabelling제도를 시행하고 있을 경우 수입국의 소비자들은 외국(수출국)의 Eco-Label을 이해하지도 못할 수도 있고 이를 무시할 수도 있으며 외국의 Eco-Label로 인하여 국내의 Eco-Label과 혼동을 일으켜 결국은 수출국의 수출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이다. 외국기업이 다양한 수입국의 각기 상이한 Ecolabelling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높은 비용이 소요되거나 기타 많은 난관에 봉착하게 될 수 있다.

여섯 번째로 Eco-Label의 부착대상인 제품 범주(category)의 선정과 그 제품이 구비하여야 할 기준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흔히 당해지역(local)의 환경적 조건을 반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지역적인 요건들은 외국의 기업들이 충족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Eco-Label을 부착하기 위해서는 수명주기분석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제품의 여러 특성 중 특정 단계에 있어서의 하나 혹은 수개의 특성만이 강조되는데 그치게 되어 이는 결국 여러 특성중 하나를 선택하는 가치판정(value judgement)을 요하게 될 수밖에 없으므로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다.

일곱 번째로, 절차적인 면에 있어서 수입국 Ecolabelling제도의 투명성부족으로 외국기업에 대해 부당한 무역적 영향이 발생한다. Ecolabelling제도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Eco-Label의 부착대상 제품의 범주(category) 및 제품의 기준

설정과정에 외국의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외국(특히 개발도상국)의 기업들은 그러한 환경기준의 선정 등의 과정에 접근권을 가지지 못한 경우가 있으며, 각국이 수입국의 Ecolabelling제도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comment)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다. 외국의 기업들에 대해 완전하고도 적시적인 투명성의 결여는 특히 자발적인 Ecolabelling제도에 많이 있다고 한다.

여덟 번째로, Ecolabelling제도에 있어서 외국산 제품에 대해 Eco-Label을 부착하는 과정에서 엄격한 시험 및 검정절차는 외국기업들이 수입국의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으며, 선적지연을 초래하거나,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질의 저하를 결과하여 소비자의 신용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아홉 번째로, 각자 상이한 기준을 가진 Ecolabelling제도를 각국이 시행할 경우 이른바 시장의 세분화(market segmentation, 혹은 market fragmentation) 현상이 초래되어 외국의 공급업자들은 부존자원 혹은 생산능력 등의 이유로 각기 상이한 모든 국가에서의 기준을 충족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Ecolabelling제도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자. 이미 위에서 언급한 무역에 대한 영향이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특히 더 증폭된다고 할 것이다. Ecolabelling제도는 본질적으로 동종의 제품 중 가장 환경친화적인 제품만이 Eco-Label을 부착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사실상 특별한 기술 또는 생산과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개발도상국이 이러한 특별한 기술 또는 생산과정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또한 Ecolabelling제도는 Eco-Label이 부착된 제품에 대해 특별히 가격상 프리미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Eco-Label이 부착되지 않은 제품과 동등한 가격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시장점유율을 높여야만 Eco-Label의 획득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의 상쇄가 가능한데 이것이 개발도상국의 기업들에게는 특히 더 어렵다는 것이다.

상기의 맥락에서 보건대, 일반국제법상 Ecolabelling제도에 대한 논의는 국가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환경보호효과(긍정적 측면)와 무역제한효과(부정적 효과)에 대한 상대적 가치의 평가문제가 된다. 특히, 국제무역에서 환경 보호목적의 무역조치가 자의적이고 불공정한 차별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출국에게 과도한 부담을 강요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으로 나타나야 할 것이다.

2) Ecolabelling과 WTO협정

① 논의경과

1948년 발효되어 47년 동안 국제무역체제의 중추 역할을 해 온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이하 GATT라고 한다.)은 그 전문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로운 무역을 통하여 국제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을 그 목표로 가지고 출범하였기 때문에 그 협상과정에서 환경문제는 주요한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GATT 전문에 나타나 있듯이 GATT는 비교우위원리에 기초한 자유무역의 확대를 통하여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완전고용을 달성하며, 지구자원의 완전이용을 도모하고 끝으로 재화의 생산과 교환을 확대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제한문제를 수반하는 환경보호는 주요관심사항이 아니었다. GATT관계자들도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제한조치를 보호무역주의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아 왔으며, 환경보호와 관련된 GATT규정들을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 왔다.

환경라벨링과 관련된 규정을 가진 WTO 협정으로는 첫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및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과 같은 일반협정, 둘째, 기술장벽협정(TBT), 위생검역협정(SPS), 원산지규정협정, 정부조달협정 등과 같은 특별협정이 있다.

GATT와 GATS에서 규정한 동종상품(like product)에 대한 최혜국대우(most favored nation) 및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원칙과 환경라벨링에 근거한 제품차별이 양립가능한지 여부가 논의의 핵심이다.

TBT협정(technical barrier-to-trade agreement)은 각국의 표준(standards) 및 기술규제(technical regulations)가 무역장벽으로서 작용하지 않도록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제시하고 있다. TBT 협정의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 즉 의무적(mandatory) 라벨링에 대해서는 TBT협정 제2.1조(최혜국대우 및 내국민대우), 제2.2조(무역제한 목적의 제거), 제2.4조(관련 국제표준의 준수), 제2.9조(투명성 및 공지의무)가 적용된다. 그리고 표준(standard)에 대한 자발적(voluntary) 라벨링에 대해서는 TBT협정 부속서 3 “표준의 준비, 채택 및 적용을 위한 모범관행규약(code of good practice for the preparation, adoption and application of standards)”이 적용된다. 현재까지 TBT협정문 기술규정 및 표준 제정의 일반원칙 명시(제2조), 비정부기관에 의한 기술규정 및 표준 제정(제4조), 기술지원 규정(제11조), 개도국에 대한 특별 및 차등 대우(제12조)

등에서 환경라벨링에 관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EC와 미국·개도국 주장이 대립한다.

환경라벨링의 운영 주체가 정부인가 민간인가에 따라서 TBT규정의 준수 의무가 환경라벨링 운영주체에 직접 적용되는지 또는 간접 적용되는지가 결정된다. 운영주체와 관련하여 TBT협정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가하는 문제도 논란의 대상인데, TBT협정은 정부라벨링(governmental labelling)이 아닌 민간라벨링(private labelling)까지도 규율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그러나 WTO 회원국은 자국내 민간라벨링 프로그램이 TBT협정에 부합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므로 민간라벨링 프로그램은 TBT협정에 의해 직접 규율되지는 않으나 국가에 의한 간접규율 대상이 된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정부주도 라벨링은 직접적으로 TBT협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국가는 자국의 민간라벨링이 TBT협정에 부합하도록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또한 TBT관련 환경라벨링 논의핵심이 동종상품(Like Products)에 대한 동일대우원칙에의 부합 여부이므로 환경라벨링의 제품차별기준(인증기준 또는 표시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환경라벨링과 관련한 논의는 결국 TBT협정이 PPMs 라벨링까지도 포괄하여 적용할 것인가, 기술장벽 제거를 위해 TBT 규정이 충분한 수준인가, 그리고 개도국의 시장접근성 제고를 위해 별도의 대안이 필요한가로 집약된다.

② 기술장벽협정(TBT)과 라벨링

GATT 체약국들은 도쿄라운드에서 표준코드(Standards Code)라고 통칭되는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협정(An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공산품 및 농산품에 대하여 정부에 의하여 정해진 의무적인 명세(Specifications)를 규율하는 표준코드는 각국의 규제요건의 차이로부터 발생하는 무역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표준코드에 의하여 표준의 유효성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그 표준이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unnecessary obstacle to international trade)”가 되는지 여부이었다. 표준코드가 각국의 다양한 표준들이 비관세장벽으로서 무역을 왜곡시킬 가능성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지만 “불필요한 장애”의 판정을 위한 핵심적인 기준 등이 명백히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용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TBT협정이 인간, 동물, 식물의 생명 및 건강의 보호 또는 환경의 보호를 위

하여 기술규정 또는 표준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은 GATT 제20조(b), (g)의 일반적 예외조항과 유사하다. 그러나 두 협정사이의 중요한 차이점은 TBT 협정에서는 기술규정, 표준 등이 환경이나 건강보호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보호무역주의에서 나온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표준화제도를 채택한 수입국이 지는 것이 아니라 수출국이 부담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감에 따라 각국 정부들은 소비자들이 물건을 선택할 때 환경적으로 올바른 결정을 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환경마크제도(Ecolabelling)”를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Tuna-Dolphin 사건 I에서도 환경마크제도가 쟁점으로 등장하였다. 미국의 돌고래보호소비자정보법(Dolphin Protection Consumer Information Act, 이하 DPCIA라 한다.)은 미국으로부터 수출되거나 미국내에서 팔려지는 모든 참치에 대하여 분류기준을 특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DPCIA는 태평양동부적도지역에서 돌고래 안전을 위한 특정한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방법인 유자망(purse-seine nets)을 사용하여 잡은 참치나, 표류망(drift nets)을 사용하여 잡은 참치에 대하여 ‘돌고래안전(Dolphin-Safe)’이라는 용어나 참치를 돌고래에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여 잡았다는 인식을 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어 이를 금지하고 있다.

멕시코는 ‘DPCIA는 태평양동부적도지역에서 유자망을 사용하여 잡은 참치에만 적용되고 그밖의 다른 지역의 유자망어부들에게는 ‘Dolphin-Safe’라는 용어를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GATT 제9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다. 멕시코는 그 근거로 GATT 제9조 제1항은 원산지 표시에만 국한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표시요건과 관련된 의무를 규정하고, GATT 제9조 제6항은 그 의무를 상품의 지리적인 이름에까지 확대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미국은 ‘DPCIA는 원산지표시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단지 ‘Dolphin-Safe’ 표시를 거짓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산지표시를 규정하고 있는 GATT 제9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가사 GATT 제9조가 적용된다고 할지라도 DPCIA는 참치를 잡은 배의 국적과는 관계없이 태평양동부적도지역에서 잡은 참치에 적용되기 때문에 GATT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GATT 패널은 제9조에 대한 미국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9조가 내국민대우의무는 포함하지 않고 최혜국 의무만을 담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제9조는 수입상품에 부과되는 원산지표시규정을 규율하는 것이지, 상품표시를 일반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아니므로 DPCIA규정들에는 제9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Dolphin-Safe’라는 표시가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DPCIA는 참치제품의 판매를 제한하거나 정부로부터 특혜를 주기위한 조건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유일한 쟁점은 DPCIA가 GATT 제1조의 최혜국대우 의무 및 제3조의 내국민대우에 위반되는지 여부인데, 이견 표시규정은 참치를 잡은 선박의 국적에 관계없이 태평양동부적도지역에서 잡은 참치에는 모두 적용되므로 최혜국대우 및 내국민대우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TBT협정의 기본 목적은 포장(packaging), 분류표시(labelling) 요건을 포함하여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s) 및 표준(Standards) 그리고 기술규정 및 표준에의 적합판정절차(methods of certifying conformity)등이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형성하는 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채택, 적용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공산품 및 농산품을 포함한 모든 상품이 TBT협정의 적용을 받는다.

첫째, TBT협정은 크기, 등급, 품질 등 모든 상품규제에 적용되기 때문에 여기서 환경규제의 초점을 맞춘 것이 TBT협정이 주로 환경규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둘째, 도쿄라운드에서 채택된 GATT 표준코드는 ‘공정 및 생산방법(Process and Production Methods)’에 근거한 정부의 규제를 제한하지 않았지만 새로운 TBT협정은 이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제품에 관련된(related) ‘공정 및 생산방법(PPMs)’에만 적용될 뿐 제품과 관련이 없는(unrelated) ‘공정 및 생산방법(PPMs)’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재생원료의 사용을 규정하는 환경법은 새로운 TBT협정의 적용대상이 되지만 유지가능하지 않게(unsustainably) 관리된 산림에서 생산된 열대산 목재에 대한 수입금지조치는 동협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③ SPS협정과 라벨링

SPS협정의 목적은 위생 및 검역조치(Sanitary or Phytosanitary Measures)가 인간, 동물 및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에 필요하도록 하고 국제무역에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장애로 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SPS협정은 농산품등 식품안전에 대한 상품표준과 공중보건관련 수입제한을 다루고 있다. TBT협정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제품과 무관한(unrelated) 공정 및 생산방법(PPMs)규제는 새로운 SPS협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예를 들면 참치잡이에 적용되는 돌고래안전표준에 관한 미국법은 SPS협정의 적용대상이 아

니다.

SPS협정은 동 협정에 합치되는 한 각 회원국이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생 및 검역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SPS협정은 각국의 개별조치에 관하여 두가지 종류의 제한을 가하고 있다. 그 하나는 “보호수준”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선택된 보호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것이다.

위생 및 검역조치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몇가지 제한이 있다. 그러한 조치들은 첫째,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용되어야 하며, 둘째, 과학적 원리(scientific principles)에 근거해야 하고, 셋째, 충분한 과학적 근거 없이(without sufficient scientific evidences) 유지되어서는 안되며, 넷째, 여건에 따라 적절한 위험평가(risk assessment)에 기초하여야 한다.

GATT의 무역·환경소위원회는 1994년 말까지 議題 1 국제환경협약과 다자무역체제, 議題 6 개도국의 시장접근, 議題 3 환경세, 부과금 및 제품요건 등 3가지 의제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WTO의 무역환경위원회는 1995년 9월까지 議題 7 국내관금품의 수출, 議題 4 투명성문제, 議題 5 MEA의 분쟁 해결절차와 WTO, 議題 2 현저한 무역효과를 갖는 환경조치, 議題 8 TRIPs와 환경, 議題 6 개도국의 시장접근에 대한 환경조치의 영향 및 무역자유화의 환경영향 등을 다루었다.

〈표 4-1〉 협상관련 무역-환경문제와 WTO/CTE의제

구분		WTO/CTE 의제
환경보전을 위한 무역조치	국내환경보전을 위한 무역조치	없음
	월경성 환경오염관련 무역조치	없음
	지구환경관련 무역조치	①MEA와 MTS
	타국의 “부적절한” 환경정책에 대한 무역조치	없음
	유해제품 및 폐기물의 수출문제	⑦ 국내판금품의 수출
국내환경 조치의 무역효과	환경세, 부과금 등의 무역효과	②현저한 무역효과를 동반하는 환경정책 ③환경세, 부과금 및 제품요건
	표준 및 환경마크의 무역효과	②현저한 무역효과를 동반하는 환경정책 ③환경세, 부과금 및 제품요건
기타주제	분쟁해결절차 및 투명성	⑤분쟁해결절차, ④투명성 ⑩NGO참여문제
	TRIPS-환경 및 서어비스 교역-환경 문제	⑧TRIPs-환경 ⑨서어비스교역-환경

〈표 4-2〉 환경라벨링 관련 WTO 논의체계

이사회	위원회	관련라벨링	관련규정
일반이사회	무역환경위원회	환경라벨링 LMO라벨링	UR 무역환경결정 2001 도하각료선언
상품무역이사회	TBT위원회	환경라벨링 LMO라벨링 원산지라벨링 사회적라벨링	TBT협정
	SPS위원회	LMO라벨링	SPS협정
	원산지위원회	원산지라벨링	원산지규정협정
TRIPS이사회		지리적 표시	TRIPS협정

자료 : 환경마크협회, WTO DDA 검토의제 “환경목적 라벨링” 대응방안, 2003.4

3) Ecolabelling과 FAO

FAO는 1997년 이후 수산물의 Ecolabelling을 추진하여 왔으나, 2003년 10월 수산물 에코라벨링에 대한 국제적 지침개발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하면서 본격화되었다. 전문가 협의회에서 마련한 초안에 대한 회원국간 기술협의회를 개최(2004.10)하여 Ecolabelling을 위한 절차적·제도적 측면에 합의하였고, 다만, Ecolabelling을 위한 실질적 기준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재로써는 FAO의 합의가 국제 에코라벨링 지침이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하여 WTO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이 지침이 추후 국제자유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하고 있다.

관리체제에 대한 최소기준으로는 자료의 수집·평가, 보존관리조치의 선택, 효과적인 법적·행정적 제도의 구축 및 효과적인 감시감독의 실행, 충분한 과학적 자료가 없는 경우의 예방적 접근등이 있다. 자원 관리에 대하여는 남획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자원량이 목표수준이하로 떨어질 경우 자원회복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채택하는데 생태계 고려요건에 대한 문구가 불명확하고 그 기준이 지나치게 포괄적임이 지적되는 부분이다. 해당 어업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히 평가하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내용 또한 포함된다. 수산물 Ecolabelling제 도입은 일반적인 친환경 Ecolabelling과는 다른 개념으로 소비자의 반응정도에 따라 개별국가의 자원관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4) Ecolabelling과 OECD

1991년 OECD의 환경라벨링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라벨링은 라벨이 붙여진 상품이 기능 및 경쟁적인 면에서 유사한 상품보다 환경친화적으로 인증된 상품이라는 것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민간 또는 공공기관에 의해 부여되는 라벨을 부착하는 제도이다.

OECD는 1972년 '환경정책의 국제 경제적 측면과 관련한 지침의 원칙'의 발표를 통해 환경과 무역에 대한 4대원칙⁴⁾을 제정한 후 환경과 관련된 무역문

4) 오염자부담원칙(Polluter Pays Principle : PPP원칙), 국가간 환경정책 및 규정의 조화를 위한 조화원칙(Harmonization principle), 내국민대우 및 무차별원칙(National Treatment and Non-discrimination principle), 각국간 환경정책의 차이에 따른 생산비 차이를 상쇄하기 위한 수입부과금 및 수출환급의 금지원칙(Compensating import levies and export rebates principle)

제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를 이끌어오고 있다.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OECD는 각국의 무역정책과 환경협약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최소화 지침을 비롯하여 환경목적을 위한 일방적 무역제재의 사용에 관한 방침 등 무역과 환경문제간 조화방안을 강구하고 있다.⁵⁾

1991년 1월 OECD는 각료이사회의 결정에 의해서 무역위원회와 환경위원회의 합동작업반을 구성하였다. 동 작업반은 무역과 환경간의 조화증대를 위한 4개의 절차적 지침(procedural guidelines)을 작성하여 10개 분석대상분야를 선정하여 작업계획과 함께 1993년 6월의 각료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였다. 동 보고서에서 제시한 4개 절차적 지침은 ① 무역과 환경 정책 및 협약의 상호검토 실시, ② 무역·환경 공동영역에서의 정책개발에 있어서 투명성과 민간단체와의 협의제고, ③ 초국경적 및 범세계적인 환경문제에 대한 정부간 협조, ④ 무역·환경 분쟁해결절차 개선을 위한 광범위한 전문가들의 의견 참고 등이며, 10개의 무역·환경 분석대상분야는 ① 무역과 환경정책 및 협약에 대한 조사·검토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론, ② 자유무역화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③ 공정 및 생산방식, ④ 환경보호목적의 무역조치 사용, ⑤ 수명주기(life-cycle) 관리와 무역의 개념, ⑥ 환경기준의 국제적 조화, ⑦ 무역과 환경의 원칙 및 개념, ⑧ 경제적 수단, 환경보조금 및 무역, ⑨ 환경정책, 투자 및 무역, ⑩ 분쟁해결 이다.⁶⁾

OECD 무역·환경 합동전문가회의가 1995년 OECD 각료회의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무역자유화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환경규제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환경보호 목적의 무역규제 수단사용의 정당성 여부, 환경보호 목적의 생산 공정 및 생산방법의 규제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환경보호 목적의 경제적 수단의 사용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루었다.

OECD는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복지증진을 목표로 1961년 설립된 국제기구로, 회원국 상호간 정책협약과 정책연구 등 상호 협조수단으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구로써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개발관련 압력·상태·반응(Pressure-State- Response, PSR)구조의 기본체계를 구축하고 환경지표와 사회·경제지표로 대별하여 총 33개의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1991년 OECD의 환경각료회의가 경제와 환경정책의 통합을 주창하면서 환경정책위원회(Environmental Policy Committee, EPOC)를 중심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전개해 오고 있다.

5) 빈봉식, "WTO 체제하의 국제환경규제가 우리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과제", 동림경영연구 제2집, 한국동림경영학회, 1999.5, p.47.

6) 이동걸, 전게서, pp.7-8.

OECD에 있어서 환경규제개혁 논의는 1980년대 중반부터 회원국들 사이에서 계속적으로 전개되어 왔다. 경제성장, 구조조정, 기술의 변화, 지구적 규모의 환경오염 등 변화하는 환경에의 압력 요인에 대응하기 위하여 환경규제개혁을 추진하여 왔다. 환경분야의 규제개혁은 보다 높은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주된 원인이었으나, 부분적으로는 1980년대 중반 이후의 경제적 어려움, 특히 1990년대에 들어와 환경규제에 따른 비용증가와 그 결과로서 경제적 악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정부규제의 질 향상을 위하여 1995년 OECD는 규제당국의 의사 결정에 있어 몇 가지 체크리스트를 제시하면서, 규제에 의한 편익이 비용을 정당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권고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규제당국은 규제시안과 대안에 대한 예상비용과 편익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그 측정결과가 행정과 정치적 의사결정자가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둘째, 이를 위하여 정부는 실용적이고 실질적인 접근을 하여야 한다. 분석기술이 낮고 정보 수집비용이 높으며, 편익측정방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초기단계에서는 수량적인 평가가 유용한 수단이 된다. 셋째, 규제당국은 규제에 따른 비용과 편익의 사회집단간 분배효과를 투명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넷째, 업계나 다른 이해관계집단 또는 다른 정부기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제과정이 공개되고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1997년 OECD는 회원국들의 보다 효율적인 규제개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규제영향평가의 강화와 환경개혁 관리역량의 강화가 그것이다.

먼저, 환경규제의 평가수단으로써 규제영향평가(RIA : Regulatory Impact Analysis)를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검토할 사항은 규제에 따른 비용·편익의 분석이다. 규제영향평가의 방법으로는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 복수기준분석(multi-criteria analysis), 자기평점수단(subjective scoring methods), 위험-편익분석(risk-benefit analysis) 등이 있으며, 이중 가장 종합적이고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 비용편익 분석이다. 그러나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환경재 등 외부성이 있는 재화나 서비스는 비용-편익분석이 너무 복잡하고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소득분배효과 등 다른 변수까지 추가할 경우 비용-효과분석, 환경효과성분석 등이 사용될 수 있다.

다음으로, 규제개혁 관리역량의 강화를 위하여 우선 일반적인 경제·사회규제 개혁과 아울러 특히 환경규제개혁에 대하여도 정치적·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의 고위레벨의 지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환경분야

와 다른 경제·사회적인 분야의 연계를 확보하여 상호간 영향을 충분히 감안하여야 한다. 환경규제는 경제분석 및 정책결정 체계와 환경 및 자원변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경제에 치중한 규제나 환경에 치중하는 규제 모두가 양 변수간의 긴밀한 상관관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도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원료의 채취·투입에서부터 완제품의 생산·출하시까지의 모든 공정 및 생산방법(공정 및 생산방법, Process and Production Methods)을 PPMs라고 한다. 제품의 출하후의 수송·소비·처리 등의 이르기까지 PPMs의 개념을 확장하자는 주장도 있다. PPMs는 크게 제품의 특성(characteristics)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관련 PPMs”와 제품의 특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제품무관련 PPMs” 두가지로 분류하는데 “제품관련 PPMs”의 경우는 제품에 대한 규제로도 환경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PPMs에 대한 논의는 “제품무관련 PPMs”라고 할 것이다.

Ecolabelling제도는 PPMs나 수명주기분석에 기초하고 있다. 물론 현재 수명주기분석이 흔히 전체 수명주기 중 특정 단계에 있어서의 제품의 하나 혹은 수개의 측면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많다고 한다. Eco-Label의 부여기준은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제품의 전 수명(생산·분배·사용·소비·처리)에 걸친 환경적 분석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이 이른바 “요람에서 무덤까지(cradle to grave)”라는 접근방법이다. 단일인수 Eco-Label은 제품의 어느 한 단계에서의 환경적 측면만을 강조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본래의 의미의 Eco-Label과는 다르다고 할 것이다. 제품의 수명주기에 걸친 다양한 환경적 영향을 비교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수명주기분석에 기초한 Ecolabelling제도를 시행하는데 있어서는 불가피하게 PPMs의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을 인식하여야 할 것으로 일부 제약국들은 PPMs에 의하여 무역제한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국내의 환경기준을 외국으로 수출하는 주권의 역외적용(extraterritoriality)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도 우려하고 있다. Ecolabelling제도가 강제적인 경우에는 외국의 수출업자들은 수입국의 Eco-Label을 획득하여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수입국의 PPMs에 적용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는 GATT 제3조등과 관련하여 분쟁을 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다. Eco-Label이 부착되지 않은 제품의 시장접근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지만 그러한 제품에 조세 등을 부과하는 다른 유형의 제도도 역시 위 GATT 제3조와 관련하여 적법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는 것이다.

PPMs는 국가마다 아주 다양하고, Ecolabelling의 무역효과와 관련하여 여러 복잡한 문제들을 야기한다. 해외의 기업들이 선호하는 자신들 고유의 PPMs가 수입국의 시장에서 요구되는 PPMs에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외국기업들이 수입국의 Ecolabelling제도에 접근하는 것이 제한될 수도 있다. 또한 PPMs에 기초한 기준(criteria)이 Eco-Label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비밀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고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다.

5) Ecolabelling과 ISO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는 재화 및 용역의 국제교환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규격의 제정 및 보급과 기술발전을 위한 정보·지식 등의 국제간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1947년 2월 설립되었다.

ISO는 국제조약에 의해 구성된 것이 아니다. 비록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국내 법령에 ISO의 표준을 그 내용으로 포함시키기는 하였지만 어느 국가도 국제 조약이나 자국의 국내법령 등에서 '자동적으로' ISO의 표준이 국내법에 편입 되도록은 하지 않았다.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기업체·비영리기구·기타 단체들도 순수한 자발적인 베이스로 ISO표준을 적용하고 있다.

ISO에서는 환경경영표준화 국제규격인 "ISO 14000시리즈"를 제정한 기술 위원회(TC 207) 산하의 제3 분과위원회(Sub Committee 3)에서 환경라벨링 국제규격을 Table 2, 9와 같이 제정하였다. 특히 ISO 14025 Type III 환경라벨링의 경우 Technical Report 발행 후 표준화 문서 작업을 추진키로 결정되었으며 (2002년 10월) 표준화 완료까지는 약3년이 소요될 예정이다. 이는 각국에서 상이하게 시행되고 있는 환경라벨링제도를 조화 (또는 통일) 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환경라벨링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합의된 절차 및 원칙을 설정하였다.

TBT협정은 각국으로 하여금 국제표준을 가급적 많이 활용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즉 ① 회원국의 중앙정부기관은 기술규정이 요구되고 관련 국제표준이 존재하거나 그 완성이 임박한 경우, 회원국은 근본적인 기후적 혹은 지리적 요소나 근본적인 기술문제 때문에 국제표준 또는 국제표준의 관련부분이 추구된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비효과적이거나 부적절한 수단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국제표준 또는 관련부분을 자기나라의 기술규정의 기초로 사용하여야 하고, ② 회원국의 중앙정부기관이 국제표준에 따라 기술규정을 준비·채택·적용하는 경우에는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

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고, ㉔ 위 ㉑·㉒가 회원국의 지방정부기관 및 비정부기관에 의한 기술규정의 준비·채택·적용 시에도 적용되도록 하였으며, ㉕ 회원국은 자기나라의 중앙정부표준기관이 이 협정의 부속서3의 표준의 준비·채택·적용에 대한 '모범관행규약'을 수용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보장하며, 회원국은 자기나라 영토내의 지방정부 또는 비정부 표준기관과, 회원국이나 자기나라 영토내의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기관이 회원인 지역표준기관이 이 모범관행규약을 수용하고 준수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능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또한 회원국은 이러한 표준기관이 모범관행규약에 일치하지 않는 방법으로 행동하는 것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장려하는 효과를 갖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특정 표준기관이 모범관행규약을 수용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표준기관의 모범관행규약의 규정 준수와 관련된 회원국의 의무는 적용되며, 회원국은 모범관행규약을 수용하고 이를 준수하고 있는 표준기관은 이 협정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PPMs 및 기타 환경관련 환경라벨(Ecolabel)과 국제환경 인증제도는 엄격히 볼 때 무역조치로 볼 수 없으며, GATT 규정과의 연관성도 미약하다. 다만 GATT 규정은 환경라벨이 정부에 의해 부과될 경우 GATT에 통보되어야 하며, 민간기구에 의한 대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 통보하도록 되어있다.

환경라벨은 이와같이 GATT 규정과 크게 관련이 없으면서도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환경라벨은 특정제품에 대해 특정기술의 사용을 강요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으며, 이 경우 개발도상국의 수출에 대해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한편 지금까지 제품의 품질인증과 관련하여 작업을 해오던 국제표준화기구(ISO)가 환경에 대해서도 눈을 돌려 생산공정과 방식을 포함하여 인증작업을 하고 있으며, 이를 'ISO 14000'이라 칭하고 있다.

ISO 14000이 제품 자체의 환경영향 평가를 인증하는 것이라면 현재의 국제무역질서에서 수용될 수 있을 것이다. 공정에 대한 인증도 제품의 환경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라면 기술장벽(TBT)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품자체와 무관한 공정의 환경영향을 인증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면 이는 매우 중대한 의미를 띠게 될 수밖에 없다. 현재까지의 GATT 제20조 해석에서 환경은 수입국의 환경에 국한되며 UR의 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of Trade) 관련 조항에서 工程 및 生産方法에 대한 언급이 있으나 이 역시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정에 대한 기술장벽으로서 인정하고 있

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ISO 14000이 채택된다 하더라도 공정에 대한 내용이 다자간 체제 내에서 기술장벽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나 이 제도는 GATT규정과 거의 무관한 상태에서 선진국의 소비자와 기업의 구매결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실질적이고 강력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다.

GATT의 EMIT에서는 환경라벨링과 관련하여 환경라벨링 운영상의 투명성과 외국 수출업자가 적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함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외국 수출업자가 환경라벨링의 설정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환경라벨의 제정에 수입국의 특유한 환경여건이 반영되거나, 현지 업체의 이해관계가 개입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방지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환경라벨링(environmental labelling)이란 동일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환경성과가 우수한 제품을 소비자가 식별·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정보수단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환경라벨링은 ISO 분류에 따라 Type I (제3자 인증), Type II (자기주장), Type III (정보공개)로 분류된다. 기업의 자의적인 환경성 주장은 객관적으로 사실여부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ISO 14020의 원칙을 두었고 추가적으로 효율적 환경라벨링 운용을 위하여 'ISO 14024 환경라벨링 일반원칙'을 두었다. 즉, ① 자발적 특성, ② ISO 14020 원칙 준수 ③ 신청기업의 환경법률 및 관련법률 준수 의무 ④ 제품 전과정 환경영향을 고려한 인증기준의 개발 ⑤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다른 제품과 식별할 수 있는 인증기준의 개발 ⑥ 달성가능하며 측정가능한 수준의 인증기준 개발 ⑦ 기준개발시 합목적성 및 제품 환경성과 기반평가 ⑧ 인증기준 적용기간 설정 및 이에 따른 수정·보완 ⑨ 인증대상제품군 선정 및 인증기준 개발단계에서 참여개방성 ⑩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 인증기준 준수평가 ⑪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단계에서 투명성의 확보 ⑫ 국제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애효과 제거 ⑬ 인증신청 및 기업참여의 개방성 ⑭ 과학적·공학적 원칙에 근거한 인증기준 개발 ⑮ 부당한 외부영향으로부터의 프로그램의 독립성 ⑯ 인증수수료의 적합성 및 형평성 ⑰ 습득한 정보의 기밀 유지 ⑰ 상호인정의 추구이다.

2. Ecolabelling의 국내법제

1) Ecolabelling 관련법제의 구조

① 환경관련 직접규제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제1항의 “정보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환경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여 환경기준(ambient standards)의 설정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에서 대기분야, 수질분야 및 소음·진동분야의 환경기준이 설정되어 있고, 그 밖의 토양 및 유해물질 분야 등에 대한 환경기준은 각각의 개별법에 환경기준이 설정되어 운영되고 있다.<표 4-3> 참조)

<표 4-3> 환경기준의 종류

구 분	환경기준	근거법령
수질	수질환경기준(하천, 호수, 지하수, 해역), 먹는 물 수질기준, 방류수 수질기준, 폐수배출허용기준	환경정책기본법, 수질환경보전법,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대기	대기환경기준, 대기배출허용기준, 제작차 배출 허용기준, 운행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	소음 환경기준, 공장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 자동차의 소음허용기준(제작자동차, 운행자동차 건설 및 생활소음·진동규제 기준)	환경정책기본법 소음·진동규제법
토양보전 및 유독물관리	토양오염 우려기준 및 대책기준, 농수산물 재배를 제한 할 수 있는 오염기준, 유독물 및 관찰물질의 지정기준	토양환경보전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자료 : 해양부, 환경백서, 2005

배출허용기준(Emission Standards)은 개별 배출원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최대 허용량을 규정한 것으로 개별오염원이 준수하여야 할 규제기준이다. 한국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대상별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② 경제적 유인수단

경제적 유인수단으로는 1983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업자에 대하여 벌과금 성격의 배출부과금제도가 도입된 이래, 1992년 환경개선부담금과 폐기물예치금, 1993년 폐기물부담금, 1997년 배출부과금에 기본 부과금제도가 도입되어 운영 중에 있다. 이외에도 수질개선부담금, 쓰레기종량제, 대형폐기물수수료, 공병보증금제도 등 경제적 규제수단이 있다. 이중 환경부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표 4-4>와 같이 5종의 제도이다.

<표 4-4> 경제적 유인수단의 현황

구분	근거조항	대상	부과기준	목적
배출부과금 -초과부과금 (83.7.1) -기본부과금 (97.8.28)	대기 및 수질 환경보전법 제19조, 오수·분뇨 및 축 산폐수에 관한 법 률 제29조	생산·제조분야 배출 시설	배출허용기준초과 배출허용기준이내 방류수 기준초과	오염배출억제 환경자원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92.7.1)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유통소비 시설물 경유자동차	-용수·연료사용량 -배기량, 차령	오염배출억제 재원조달
수질개선부담금 (95.5.1)	먹는물관리법 제28조	먹는샘물 음료수	판매가액 20% 제조원가 5%	환경자원 사용료
폐기물부담금 (93.7.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폐기물다량 발생제품	실처리 비용 (현재 30%수준)	처리비부담
폐기물예치금 (92.1.1)	위 법 제18조	재활용가능 제품	실회수 비용 (현재 30%수준)	재활용 촉진

자료 : 환경부, 환경백서(2005)

배출부담금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한 업소에 오염물질 처리비용에 상당하는 경제적 부담을 주는 제도로서, 본래의 취지대로라면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에 부과하여야 한다. 그런데 1983년 도입된 배출부과금은 농도기준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배출농도를 인위적으로 낮게 조작함으로써 법망을 빠져나가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1997년부터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하는 기업체에 대하여 오염물질배출량에 대하여 부과

하는 기본부과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부분적으로 이 문제를 개선하였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소비부문에 환경오염유발 정도에 따라 환경개선을 위한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제조·생산부문에 부과되는 배출부담금과 형평을 이루고, 환경투자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199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수질개선부담금은 공공의 지하수 자원을 보호하고, 먹는물의 수질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먹는 샘물을 개발하고 이를 원료로 제품을 제조·판매한 자와 먹는 샘물을 수입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지하수의 개발과 이용은 공공의 자원인 지하수 자원의 고갈과 오염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지하수 자원의 고갈 및 오염을 방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그 원인자에게 부담토록 하는 데에 이 제도의 목적이 있다.

폐기물부담금은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회수·재활용이 곤란한 제품·재료·용기에 대하여 당해 폐기물의 처리비에 상당하는 비용을 제품가격에 내재화시켜 환경비용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제도이다. 폐기물부담금의 부과대상은 특정 대기·수질유해물질 또는 특정유독물을 함유하고 있거나 회수·처리·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재료·용기 등이며, 2000년 현재 살충제, 유독물, 화장품 용기 등 10개 품목 29종에 부과되고 있다.

폐기물예치금은 다량으로 발생하는 제품·용기 중 사용 후 회수·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용기 중 사용 후 회수·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용기의 제조·수입자에게 폐기물 회수·처리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게 하고, 회수·처리한 경우 실적에 따라 예치비용을 반환해 줌으로써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는 제도이다. 현재 폐기물예치금은 6개 품목, 12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예치요율은 실회수처리비용 및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차등화하고 있다.

환경관련 보조금으로는 오염행위자가 오염을 줄이거나 줄이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오염저감 보조금과 오염에 의해 피해를 받고 있는 대상자에게 그 피해만큼을 보상해 주는 피해보상보조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③ 자율규제수단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에서도 자율 환경관리를 위한 몇 가지의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환경규제를 추가적인 부담으로 생각하는 현실에서 자율적인 환경규제가 쉽게 정착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다만,

직접규제 중심의 환경규제가 초래하는 비효율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피규제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자율적인 환경관리형태가 조속히 발전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될 잠재력은 크다.

첫째, 업종별 사업자단체를 단위로 한 자율적인 환경관리방식이 부분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들은 정부와 배출자가 협약을 체결하여 자율적으로 오염물질의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환경개선계획을 수립·추진토록 유도하는 방안으로써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 활용 및 규제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둘째, 개별기업을 대상으로 한 자율환경관리로는 1995년에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환경친화기업제도를 들 수 있다. 환경친화기업은 기업 스스로 사업 활동 전 과정의 환경상태를 평가하고 구체적인 환경목표를 설정하여 자율적으로 환경개선을 도모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친화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정기 지도·점검의 원칙적인 면제, 배출시설 설치허가의 신고로 대체 등 혜택을 주고 있다.

셋째, '환경마크'는 환경 친화적인 생산·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품의 제조·유통, 사용·폐기 과정에서 동일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하여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하여 이를 인증하는 제도이다. 도입 첫해인 1992년에 재생종이제품 등 4개 품목을 대상으로 선정한 이후 대상제품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

2) 해양수산부 관련법제

① 수산물품질관리법

이 법은 수산물에 대한 적절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수산물의 상품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수산물 가공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⁷⁾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의 상품성을 높이고, 유통능률을 향상하게 하며 공정한 거래를 실현하기 위하여 수산물의 표준규격을 정할 수 있다. 표준규격에 맞는 수산물을 출하하는 자는 포장의 표면에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할 수 있다. 표준규격의 제정절차·기준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⁸⁾

7) 수산물품질관리법(2002. 12. 30, 법률 제6842호) 제1조.

8) 동법 제5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수산특산물 및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을 향상하게 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품질인증제도를 실시한다.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⁹⁾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인이 스스로 수산물 및 수산특산물의 품질을 향상하게 하고 품질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생산자단체를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품질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¹⁰⁾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리적 특성을 가진 우수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을 향상하게 하고 이를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리적표시의 등록제도를 실시한다.¹¹⁾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¹²⁾

② 수산물·수산가공품의 지리적 표시 등록요령

이 요령은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4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물·수산가공품의 지리적표시 등록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¹³⁾

③ 수산물·수산특산물 및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과 품질인증에 관한 세부기준고시

이 고시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 수산특산물 및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과 품질인증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¹⁴⁾

④ 수산물원산지표시업무처리요령

이 요령은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원산지표시와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과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3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9) 동법 제6조.

10) 동법 제8조.

11) 동법 제9조

12) 동법 제10조

13) 수산물·수산가공품의 지리적표시 등록요령(2001.10.29, 해양수산부고시 제2001-92호) 제1조

14) 수산물·수산특산물 및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과 품질인증에 관한 세부기준고시(2005. 12. 13, 해양수산부고시 제2005-99호) 제1조

목적으로 한다.¹⁵⁾

⑤ 유전자변형 수산물의 표시대상품목 및 표시요령

이 요령은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전자 변형수산물의 표시대상 품목과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유전자 변형수산물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¹⁶⁾

⑥ 품질인증 세부 실시요령

이 요령은 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물·수산특산물 및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¹⁷⁾ 수산물·수산특산물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관할 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¹⁸⁾

3) 산업자원부 관련법제

① 산업표준화법

이 법은 적정하고 합리적인 산업표준을 제정·보급함으로써 광공업품 및 산업활동 관련 서비스의 품질고도화, 생산효율의 향상, 생산기술혁신을 기하며 거래의 단순·공정화 및 소비의 합리화를 통하여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¹⁹⁾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표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²⁰⁾

산업자원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을 제정·개정·폐지한 때 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²¹⁾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표준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공업품을 제조하거나 외국에서 수입하는 자의 광공업품이 규격에 맞는 것임을 인증하는

15) 수산물원산지표시업무처리요령(2004. 7. 15, 해양수산부고시 제2004-40호) 제1조

16) 유전자변형수산물의 표시대상품목및표시요령(2002. 12. 31, 해양수산부 고시 제2002-113호) 제1조

17) 품질인증 세부 실시요령(2005. 9. 22, 해양수산부 고시 제2005-1호) 제1조.

18) 동 요령 제3조 제1항.

19) 산업표준화법(2005. 12. 23, 법률7748호) 제1조.

20) 동법 제2조의 제2조.

21) 동법 제9조.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²²⁾

산업자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광공업품의 품목의 제품을 제조하는 자는 당해 지정품목의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 또는 사업장마다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 그 제조하는 제품·포장 또는 용기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제품이 규격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를 홍보할 수 있다.²³⁾

산업자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광공업품의 가공기술의 종목을 사용하는 자는 공장마다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 당해 지정가공기술에 의하여 제조된 제품이나 그 포장·용기 또는 송장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정가공기술이 규격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를 홍보할 수 있다.²⁴⁾

산업자원부장관은 주요 광공업품의 산업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요 광공업품 및 그 부품 또는 소재의 제조업자(가공업자 및 조립업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광공업품·부품 및 소재의 사용, 규격통일 또는 단순화를 위하여 품목·종목 또는 규격의 지정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²⁵⁾

인증기관은 인증을 하는 때에는 인증신청이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인증심사 기준 및 규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²⁶⁾(제18조)

②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

이 법은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의 시행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생산·수입·수출·유통 등에 관한 안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미치는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생활의 향상 및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²⁷⁾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휴대하여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²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의 건강과 생물의 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22) 동법 제10조의3 제1항.

23) 동법 제11조 제1항.

24) 동법 제12조 제1항.

25) 동법 제16조 제1항.

26) 동법 제18조.

27)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2001. 3. 28, 법률 제6448호), 제1조.

28) 동법 제8조 제1항.

이용에 위해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또는 생산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²⁹⁾

③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이 법은 기업·공공기관·단체 등의 품질경영의 조성·지원에 관한 사항과 공산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업·공공기관·단체 등의 품질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³⁰⁾

이 법에서 “국제기준”이라 함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품질경영체제에 관하여 정한 국제규격을 말하며, “인증”이라 함은 기업 등의 품질경영체제가 국제기준에 적합하다고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³¹⁾

산업자원부장관은 기업 등의 품질경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품질경영에 관한 종합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³²⁾

산업자원부장관은 인증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이하 “인정”이라 한다)를 국제기준에 맞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법인 산업자원부장관은 소비자가 성분·성능 또는 규격 등을 식별하기 곤란한 공산품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공산품에 대하여는 그 식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표시기준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고, 당해 공산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이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³³⁾

4) 환경부의 관련법제

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i) 환경표지의 인증

환경부장관은 동일 용도의 다른 제품(기기 및 자재를 포함)에 비하여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하여 환경표지의 인증을 할 수 있으며, 인증을 얻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제품의 선정·폐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³⁴⁾

29) 동법 제14조 제1항 제1호.

30)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2005. 5. 26, 법률 제7507호) 제1조.

31) 동법 제2조 제3호 및 제4호.

32) 동법 제3조 제1항.

33) 동법 제8조.

34)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59호) 제20조.

환경표지의 인증을 얻고자 하는 자는 환경표지인증신청서에, 당해 제품의 환경성관련 자료, 당해 제품의 품질관련 자료,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자료의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환경표지의 인증을 한 때에는 인증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환경표지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³⁵⁾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제품(이하 “환경표지대상제품”이라 한다)의 선정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선정제안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및 의약외품,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과 「산림법」에 의한 임산물로 지정된 목제품은 이를 환경표지대상제품으로 선정할 수 없다. 환경부장관은 환경표지대상제품을 선정한 때에는 대상제품별로 환경표지인증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³⁶⁾

환경부장관은 환경표지대상 제품중에서 환경표지를 인증할 필요성이 없어진 제품은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을 폐지할 수 있으며,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을 폐지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³⁷⁾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 재료 및 제품의 선정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선정제안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제안된 내용을 심의하여 환경성적표지대상 제품으로의 선정 여부를 결정하고, 선정된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에 대하여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는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의 폐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환경표지대상제품”은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으로 본다.³⁸⁾

ii) 환경성적표지의 인증

환경부장관은 재료 및 제품의 환경친화성 제고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재료 및 제품의 생산단계·유통단계·소비단계 및 폐기단계 등의 과정에 대한 환경성 정보를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며, 지정목적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인증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환경성적표지의 인증대상이 되는 재료 및 제품의 선정·폐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환경성적표지에 관한 작성지침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얻고자 하는 자는 인증기관에

35)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7.22 대통령령 제18953호) 제23조.

36) 동 시행령 제24조.

37) 동 제25조.

38) 동 제26조.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이 인증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환경성적표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성적표지에 관한 작성지침에 따라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사하고, 이에 적합하게 작성된 때에는 인증을 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이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iii)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환경부장관은 인증기관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이 경우에는 지정취소),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인증기준 및 절차에 위반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iv) 환경표지 등의 사용

환경표지 또는 환경성적표지(이하 “환경표지등”이라 한다)의 인증을 얻은 자는 재료 및 제품의 포장·용기 등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표지등을 표시하거나 환경표지등의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있다.

환경표지 등의 인증을 얻은 자가 아니면 재료 및 제품의 포장·용기 등에 환경표지등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표시하거나 환경표지등의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v) 환경표지 등의 인증취소

환경부장관은 인증을 얻은 자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얻은 경우,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에 환경표지를 표시하여 유통시키는 경우, 환경표지의 인증을 얻은 제품을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없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계속 유통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표지의 인증을 취소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은 인증을 얻은 자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얻은 경우, 인증의 내용과 다른 재료 및 제품에 환경성적표지를 표시하여 유통시키는 경우,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얻은 재료 및 제품을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없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계속 유통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인증이 취소된 재료 및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경우 인증취소 처분을 받은 자에게 환경표지등의 제거를 명하여야 한다.

vi) 국가간 상호인정

정부는 환경표지 등의 상호인정에 관하여 외국정부와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외국정부와 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정부는 환경표지 등의 상호인정에 관하여 외국정부와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환경표지등에 관한 외국의 인증기관의 인증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인증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것을 그 협정의 내용으로 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³⁹⁾

② 환경정책기본법

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⁴⁰⁾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환경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⁴¹⁾

③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친환경상품이라 함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을 말한다.⁴²⁾(제2조 정의)

39)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7.22 대통령령 제18953호) 제28조의 2조.

40) 환경정책기본법(2005. 5. 31, 제7561호) 제1조.

41) 동 제10조.

42)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2004. 12. 31, 법률 제7296호) 제2조.

④ 자율환경관리협약운영규정

이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환경질 개선을 위한 기업 또는 단체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자율환경관리협약(VEA : Voluntary Environmental management Agreements)의 체결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⁴³⁾

⑤ 유해물질 전과정 위해성 평가 위원회 규정

이 규정은 유해물질에 의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조 및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는 유해물질의 전과정 위해성 평가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⁴⁴⁾

이 규정에 의한 유해물질은 “화학제품의 원재료 또는 원재료로부터 생성 또는 합성되어 제품중에 함유된 유해물질”로서 다음 각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제품의 제조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생성된 미량의 불순물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⁴⁵⁾

5) 농림부 관련법제

① 축산물가공처리법

이 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사육·도살·처리와 축산물의 가공·유통 및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⁴⁶⁾

농림부장관은 공중위생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축산물의 가공·포장·보존 및 유통의 방법에 관한 기준(이하 “가공기준”이라 한다), 축산물의 성분에 관한 규격(이하 “성분규격”이라 한다), 축산물의 위생등급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⁴⁷⁾

농림부장관은 축산물의 위생적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축산물에 대하여 사용하는 용기·기구·포장 또는 검인용색소에 관한 규격

43) 자율환경관리협약운영규정(환경부 고시 제2002-139호, 2002. 9. 19) 제1조.

44) 유해물질 전과정 위해성 평가 위원회 규정(환경부훈령 제629호, 2005. 10. 5) 제1조.

45) 동 제2조.

46) 축산물가공처리법(2006. 3. 24, 법률 제7915호) 제1조.

47) 동법 제4조 제2항.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⁴⁸⁾

농림부장관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축산물은 그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축산물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⁴⁹⁾

농림부장관은 가축의 사육과 축산물의 원료관리·처리·가공·포장 및 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인체에 위해한 물질이 축산물에 혼입되거나 축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별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⁵⁰⁾

②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이 법은 농산물가공산업을 육성하여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농산물의 상품성 제고와 공정한 거래의 실현을 도모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⁵¹⁾

농림부장관은 국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되고,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우리 고유의 맛·향 및 색깔을 내는 식품(이하 “전통식품”이라 한다)의 개발과 그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품목을 지정하여 이를 지원·육성할 수 있다.⁵²⁾

농림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농산물의 수급원활 및 소비촉진과 전통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국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전통외식산업을 연구·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⁵³⁾

농림부장관은 특산물과 전통식품의 품질향상·생산장려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이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를 실시한다.⁵⁴⁾

③ 우수농산물인증의 세부기준 및 대상품목 고시

우수농산물인증의 세부기준, 우수농산물관리시설 지정을 위한 그 밖에 농산물을 관리하는 시설 및 대상품목을 제정, 고시한다.

④ 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 및 대상품목고시

이 고시는 농산물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5의 규정에 따라 농산

48) 동법 제5조 제1항.

49) 동법 제6조.

50) 동법 제9조 제1항.

51)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2005. 8. 4, 법률 제7678호) 제1조.

52) 동법 제6조 제1항.

53) 동법 제7조 제1항.

54) 동법 제13조 제1항.

물이력추적관리기준을 마련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10규정에 따라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의 대상품목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⁵⁵⁾

⑤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고시

이 고시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 및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의 원료관리, 처리/가공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분석하여 중점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으로써 유해한 물질이 축산물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⁵⁶⁾

3. Ecolabelling의 법제화 추진원칙과 방향

1) Ecolabelling 법제화 추진원칙

① 투명성원칙

환경-무역문제와 관련하여 각국은 환경관련 무역조치와 무역에 현저한 영향을 주는 환경조치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때 주로 절차상의 투명성이 국제적 문제가 될 수 있다. 투명성확보는 목적 그 자체는 아니며 무역-환경문제와 관련한 다자체제의 안전과 안정성을 보장하고 신뢰성을 확보하여 무역분쟁과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환경관련 경제적 수단, 지방정부에 의한 조치 및 민간부문에 의한 조치 및 자발적 조치 등과 관련한 투명성이 크게 문제되고 있으며, 무역-환경문제와 관련한 별도의 투명성관련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무역-환경문제와 관련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우선 기존의 각국에 대한 무역정책검토제도(TPRM : Trade Policy Review Mechanism)에 의한 투명성 검토가 이용될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각국마다 조회처(enquiry point)를 설치하여 정부 및 민간의 모든 이해당사자가 요청하는 무역관련 환경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 되고 있다. 동 조회처는 공식적인 통보의무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 예를 들어 환경관련 국내법의 변화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여러 면에 있어서 Ecolabelling의 무역효과는 TBT협정의 기술규정 및 표준의

55) 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 및 대상품목 고시(농림부 고시 제2006-5호, 2006. 1. 31) 제1조.

56)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농림부고시 제2003-32호, 2003. 7. 15) 제1조.

무역효과와 유사한 점이 많아 기술규정 및 표준에 관한 문제를 다루면서 획득된 경험이 Ecolabelling으로 인한 부당한 무역에의 영향을 감소하는데 있어서 기초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TBT협정은 각국의 기술이나 표준을 일치시킴으로써 교역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협정이다. 상품의 형태·치수·소재·기능·안전성등과 같은 기술적 특성을 규정함으로써 동 상품의 생산 및 유통에 대한 효율을 제고하고, 성능 및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명세를 정할 경우 소비자의 상품 선택의 효율성을 증가시켜 주며 생산자에게는 부품이나 중간제품의 호환성, 연계성 등을 제고시켜 결국 대량생산에 따른 비용절감의 효과로 인한 규모의 경제 이익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Ecolabelling제도를 강제적인 것과 자발적인 것으로 대별한다고 할 때에 강제적인 Ecolabelling제도에도 과연 TBT협정이 적용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으나 자발적인 Ecolabelling제도에도 과연 TBT협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논의가 분분하다. 또한 Ecolabelling제도의 개발이나 시행에 있어서의 정부의 관여정도(degree of government involvement)가 이러한 강제성·자발성이라는 특성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문제도 있다.

강제적인 Ecolabelling제도는 그것이 중앙정부에 의해 시행되든, 지방정부에 의해 시행되든지 여부에 상관없이 TBT협정 제2조 및 제3조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자발적인 Ecolabelling제도가 TBT협정의 '표준'으로서 TBT협정에 의해 규율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다. 자발적인 Ecolabelling제도가 TBT협정에 의해 규율되는지의 여부는 궁극적으로 무역환경위원회 혹은 TBT위원회에서 결정하여야 하는 견해도 있으며 또한 많은 WTO회원국들은 자발적인 Ecolabelling제도와 강제적인 Ecolabelling제도 모두 TBT협정에 의해 규율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TBT협정은 회원국들이 인간이나 동·식물의 생명·건강 혹은 환경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자유를 인정하고 있는 반면, 기술규정이나 표준 및 적합판정절차의 준비·채택·적용으로부터 야기되는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애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①무차별원칙의 무, ②불필요한 무역장애를 만들지 않을 의무, ③국제표준의 사용, 동등한(equivalent) 표준 및 상호인증제도의 수용권장, ④사전통보제도에 의한 고도의 투명성 보장, 코멘트 및 협의기회제공과 질의처의 설립의무 등이 그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외국기업들이 수입국의 Ecolabelling제도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또한 그 Ecolabelling제도의 계획·개발단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TBT협정의 사전통보의무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Ecolabelling의 투명성 보장과 관련하여 주요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사실 민간부문(private sector)에서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Ecolabelling제도라고 할 것이다.

현행 TBT협정이 제품관련 PPMs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TBT협정의 규정들이 제품의 특성이 PPMs에 체화(incorporated)되지 않은 수명주기분석(제품무관련 PPMs)에 기초한 Ecolabelling제도에도 적요오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에 관하여 의문이 제기되어 왔고, 이러한 자발적 Ecolabelling제도의 투명성을 적절히 보장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하여도 의문이 제기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② 이해관계국의 참여 보장

Ecolabelling 제도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광범위한 참여에 기초하여 발전될 때에야 국제무역에 있어서 혼란을 야기시키지 않고서도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Ecolabelling제도는 환경적 의식이 있는 생산자들에게는 새로운 마케팅의 기회를 창출할 수도 있는 것이다. 환경적 목적과 무역이 상호 양립할 수 있는 Ecolabelling제도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원칙에 있어서야 Ecolabelling제도는 자발적이고 국내의 공급자나 외국의 공급자에게 전부 개방이 되어있다. 그러나 아무래도 국내의 공급자들이 Eco-Label 부착대상 제품의 선정에 영향을 미치고 외국기업의 관심대상이 되는 제품들은 배제되기 쉽다. 즉 제품선택의 기준과 그 최저수준도 좁은 국내의 관심사와 정책만을 반영할 뿐이고 개발도상국 등에서 적용 가능한 다른 환경친화적인 제조과정에 대해서는 적절히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지구 전체의 환경보호를 위해 Ecolabelling제도가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지구전체의 환경에 대해서는 비친화적인 방식으로 Ecolabelling제도가 운영될 수도 있는 것이다.

Ecolabelling제도는 산업계나 상인조합, 소비자, 환경단체 등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참여를 포함하여야 하므로 철저적인 투명성의 보장이 특히 중요하다. Eco-Label이 부착될 제품의 범주(category)나 그 제품들이 구비하여야 할 기준 및 최저수준을 선정하는 과정이 폐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그 결정에서 배제된 그룹은 그 Ecolabelling제도에 반대를 하게 될 것이고 결국 그 신뢰성을 감소시키는 것이 될 수 있다.

③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

개발도상국에 대해 Ecolabelling제도는 무역적 측면에서 볼 때에는 비관세장벽의 하나로서 수출국의 경쟁력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며, 환경적 측면에서 볼 때에는 Ecolabelling제도의 기준이라는 것이 선진산업국의 지역적 환경문제와 우선순위를 강조하는 것이 되므로 다른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에게는 관련이 없거나 부적절한 경우가 많다.

국제환경규제의 강화는 개발도상국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준다. 개발도상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서라도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TBT협정에서도 개발도상국에 대해 특혜적인 대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이고 명료한 내용은 없다. 앞서 설명한 투명성증진 및 이해관계국의 참여를 보장하고 국제적인 조화를 도모하는 것도 물론 개발도상국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 이외에도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의 표준화기관을 훈련시킴으로써 제품과 공장시설의 시험 및 검증 등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훈련은 ISO와 같은 국제적인 표준화기구에서 지명된 기관을 통하여도 이루어질 수 있다. 시설현장에서의 검정 등에 있어서도 개발도상국에 대한 검정수수료 등에 대해서는 차별적이고도 특혜적인 대우를 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는 것이며, 선진국의 컨설팅 기업들이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적 지원 등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2) Ecolabelling의 법제화 추진방향

① Ecolabelling의 법제화 원칙

i) Ecolabelling제도의 국제적인 조화(Harmonization)

범세계적으로 기초를 둔 Ecolabelling제도는 Ecolabelling제도의 무역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일부분 완화시킬 수 있으며, 각국별로 다양한 Ecolabelling제도가 존재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소비자들의 혼란을 경감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국제적인 컨센서스에 기초한 Ecolabelling제도는 각국이 독자적으로 시도한 Ecolabelling제도보다는 성공할 가능성이 더 많다고 할 것이다.

국제환경표준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이른바 ISO 14000시리즈로 대표되는 ISO 환경경영표준화운동을 들 수 있다. 각국의 다양한 환경규제조치가 증가일로에 있고 각국마다 상이한 환경관리기법과 관리체제가 존재하여 그 조화 내지 통일 필요성이 증대되어 1991. 6경 UN환경개발위원회(UNCED) 산하의 “지속

적 발전을 위한 산업계 회의”에서 ISO에 표준화를 요청하여 ISO에서는 그해 9월경 표준화작업을 위해 환경전략자문회의(SAGE, Strategic Advisory Group on the Environment)를 설치함으로써 이러한 움직임이 본격화 되었다.

각국의 Ecolabelling제도는 극히 다양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른바 표준화(standardization)가 이런 Ecolabelling의 복잡다양성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또한 각국마다 지극히 다양한 환경적 조건·기호·우선순위의 차이(differences in environmental conditions, tastes and priorities)를 표준화 하려는 시도가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혹은 실현 가능한 일인 것인지에 관하여도 의문이 제기된 적도 있다.

ii) 무차별의 원칙(Non-Discrimination Principle)

자유무역의 근거를 이루는 무차별의 원칙(non-discrimination)은 최혜국대우와 내국민대우로서 구현되는 바, GATT제1조에 규정된 최혜국대우는 특혜조치의 무조건적인 확대를 통하여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대외무역 관계에 있어서 어느 특정국가의 상품은 그 밖의 다른 나라의 ‘동종상품(like products)’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no less favorable treatment)를 해주어야 함을 의미한다. 환경과 관련하여 최혜국대우의 원칙 및 내국민대우의 원칙 적용에 있어서 문제로 되는 것은 ‘동종상품(like products)’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관해서이다.

‘동종상품’이 문제되는 것은 공정 및 생산방식(Process and Production Methods, 이하 PPMs라고 한다.)과 관련하여 어떤 상품과 본질적으로는 같으나, 환경적으로 불건전한 방법, 이를 태면 환경을 오염시키는 방법으로 생산된 상품이 ‘동종상품’인가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수입국이 본질적으로는 같으나 생산방법의 환경오염 정도가 서로 다른 수입품들에 대하여 차등 관세를 물리거나, 또한 수입국이 자국의 생산자에게 이미 개발된 오염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생산활동을 하라고 요구하면서 느슨한 오염방지 규정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 대한 경쟁에 있어서 자국의 생산자들을 불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수출국의 생산자에게 생산의 환경비용을 내부화(internalize)시키기 위한 관세등을 부과하는 것이 GATT에 위반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현재 지배적 견해는 ‘동종상품’이라는 용어는 생산의 방법(the method of production)이 아니라 상품 그 자체의 본질(the nature of the product itself)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엄격한 환경구제가 적용되지 않는 국가들이 국제무역에서 누리는 경쟁우

위를 상쇄하려는 국가들은 GATT 제20조의 일반적 예외규정이나 UR에서 타결된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협정(Agreement of Technical Barriers to Trade), 위생 및 검역조치 협정 등에서 허용되는 조치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된다.

iii) 내국민대우

GATT는 세계무역을 확대하기 위하여 최혜국대우 및 내국민대우의 원칙 하에 구체적인 무역정책으로 수량제한금지 및 관세에 의한 국내산업보호라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GATT 제11조는 쿼타, 수입 또는 수출허가제, 기타 수단을 사용하여 수입 또는 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GATT 제11조는 비관세장벽의 사용을 막는 주요한 규정이다.

무역제한효과를 가진 환경조치에 대하여 GATT 제3조가 적용되는가 아니면 GATT 제11조가 적용되는가에 따라서 그 환경조치에 대한 처리가 달라진다. 그 이유는 환경조치가 무역제한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나 제3조에 따라 국산품과 수입품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되는 경우에 그 조치는 GATT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금지 또는 제한조치에 대하여 GATT 제11조가 적용되면 GATT 제20조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조치는 GATT에 위반되는 것이 된다.

상품의 사용 및 처리의 환경적 영향을 규제하기 위한 수입제한조치는 그 조치가 수입품과 동종 국내상품 모두에게 적용되고, 의도에 있어서나 실제효과에 있어서 공히 무차별적이라면, 조치의 내용이 금지이든 제한이든 간에, 국경에서 또는 국내에서 적용되든 간에 관계없이 그리고 그 조치의 목적의 적법성에 대한 조사가 없이도 GATT 제3조에 의하여 존중될 것이며 제 11조에 의하여 금지되지 않는다. 이에 반하여 수입제한조치가 수량제한에 관계되고, 국경에서만 적용되며, 국내상품에 적용되는 국내규제조치 또는 세금부과를 보충하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GATT 제11조에 의하여 금지될 것이다.

iv) 일반적 예외

GATT 제20조는 공공정책을 이유로 한 제3조의 내국민대우 및 제11조의 수량제한금지 의무에 대한 면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20조는 면제가 허용되는 정책목표의 목록을 열거함으로써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으며, 특히 제20조 전문은 “그러한 조치가 동일한 조건이 지배하는 국가들 사이에 자의적이거나 정당화 될 수 없는 차별이나 국제무역에 위장된 제한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적용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0조(b)에 따라 취한 조치는 환경

보호, 공중보건 등 추구하는 정책목표와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조치의 정도는 그 목표의 중요성 및 사안의 심각성 등에 비례해야 한다. GATT 당사국이 환경을 이유로 무역제한조치를 취하는 경우, 그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필요한가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다.

v) 상호인증(mutual recognition)

다른 국가의 기술규정 등이 자국의 것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자국 제도의 목적에 부합될 경우 이러한 다른 국가의 규정을 자국의 그것과 동등한 것으로 수용하는 것이 바로 상호인증이다.

Ecolabelling의 상호인증에 대한 관심은 점차 증가되고 있는데 이는 각국의 다양한 Ecolabelling제도가 무역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고 소비자들 사이에 혼동을 야기하는 등의 이유로 Ecolabelling의 상호인증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상호인증은 아직까지 널리 수용되지 못하였는데 이는 환경단체들은 상호인증제도에 의해 국내의 Ecolabelling제도의 엄격한 기준을 구비하지 못한 제품에 대해서도 Eco-Label이 부여될 수도 있음을 우려하고 있으며, 국내의 생산자들은 그들의 경쟁력에 어떤 영향이 있지는 않을까 하고 걱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호인증의 기본 전제조건이 수출국과 수입국의 기준의 동등성(equivalence)이라고 할 것이다.

② 규제법체계의 완화

환경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기 시작한 1970년대 이후 환경규제의 주요 방식은 직접규제수단에 의존한 규제방식이었다. 각종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에 위반하는 기업에 대하여 개선명령, 조업정지 등의 행정명령을 내리고 불이행시에는 벌금과 형사처벌을 가하는 직접규제는 단기적으로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냄으로써 많은 국가에서 적용의 범위를 넓혀갔다. 그러나 직접규제의 편익은 사회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분산되는 반면, 비용부담은 특정집단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적인 특성상 피규제자들로 부터 부당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직접규제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것이 바로 1980년대 중반이후의 경제적 유인방식이었다. 부과금이나 배출권거래제도를 통하여 오염을 발생시키는 피규제자들이 오염을 억제하거나 줄인 양만큼 그들에게 시장원리에 입각한 경제적 이익이 돌아가도록 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오염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경제적 유인책은 우선 자발적인 오

염역제 노력을 유도하고 청정기술의 개발을 위한 유인을 제공할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라는 점에서 직접규제방식의 환경규제정책보다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경제적 유인제도는 각 오염원으로부터의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술적인 문제들이 남아있으며, 또한 경제적 유인책의 무엇보다도 큰 한계점은 이 방식 역시 명령-강제방식의 환경정책과 더불어 사전적이고 예방적인 정책수단이라고 하기보다는 사후적인 정책수단이라는 점이다. 환경오염을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하거나 애초에 최소로 줄이려는 노력이 이미 오염된 환경을 되살리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따라서, 금후 환경규제체계는 종래의 직접규제위주의 환경규제체계에서 벗어나서 경제적 유인방식을 보다 많이 활용하고, 업계의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노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편해 나가야 할 것이다.

③ 행정·제도적 기반조성

환경규제체계를 직접규제 위주에서 경제적 유인수단과 자율적 규제방식으로 점진적으로 개편함에 있어서 현재의 행정적·제도적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정책의 집행기능이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1980년대 이후 환경행정이 본격화되면서, 환경부가 정부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위상이 높아지고 법체제도 정비되어 환경정책기본법과 오염매체별 법률들이 정비 되었다. 그러나 아무리 환경법규가 잘 완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실효성이 없으면 환경문제의 해결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의 경우 단속행정의 전문성 결여 및 피규제자가 인력 및 장비 및 예산상의 제약으로 탈법행위의 여지가 항상 존재하고 있다. 그럼에도 환경규제의 적법한 집행이 관할 행정인력이나 장비의 불충분성으로 말미암아 행정력 자체가 이미 희소자원화되고 있다. 이러한 인력 및 예산, 전문성의 부족과 함께 경제성장위주의 분위기가 탈법을 더욱 부채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든 환경규제수단의 기초가 직접규제수단의 집행의 실효성이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며, 이러한 직접규제의 명확한 담보 위에 집행되어야 할 경제적 규제수단 역시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집행력 부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환경관련 행정기구간의 기능 재조정 및 정책조정의 합리화가 필요하다. 환경행정조직측면에서 내부적으로

로는 오염매체별 조직의 통폐합, 부서간 업무효율화를 위한 내부조정능력의 향상을 도모하고, 환경관련 타부처와의 관계에서 확대된 조정권을 갖고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업무협조를 통해 환경보전의 목표를 달성해 나가야 한다. 둘째, 환경보전을 위한 경제행위 주체들간의 협력관계가 미흡한 점을 들 수 있다. 지금까지 환경행정은 정부주도의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견지하여 왔다. 그러나 규제일변도의 정책은 규제에 필요한 인력과 기술, 그리고 수많은 환경오염 관련정보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기업, 시민 모두가 자율적으로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협력관리체계(cooperative management system)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④ 자율규제방식의 적극 도입

지금까지의 직접규제 및 경제적 유인제도 중심의 규제체계에서 자율적 관리에 의한 환경규제수단의 도입타당성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객 지향적인 규제개혁이 되기 위해서는 피규제자의 융통성을 최대한 확보해 줄 수 있으면서도 자발적인 규제준수를 유인할 수 있는 규제수단의 마련이 필요하다.

그 동안의 직접규제에 대한 개혁은 환경규제로 인한 기업의 부담경감과 불편해소를 위해 각종 교육, 보고, 조사, 신고 등에 관한 의무를 폐지하거나 개선하고, 환경산업의 진입제한을 통한 경쟁력제고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여 왔다. OECD 국가들도 기업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직접규제수단은 다른 경제적 유인수단이나 자율적 규제의 근간이 되므로 규제사각지대의 감소 및 집행력 강화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규제절차의 간소화와 과대규제의 철폐는 그간 환경규제개혁의 성과 중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분야이다. 지속적으로 규제절차의 간소화를 추진하고 과대규제 역시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철폐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앞에서 살펴본 자율협약, 자발적 동의에 입각한 환경규제, 기업 환경보고서의 발행과 공개, 지역공동체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시책, 환경라벨링제도, 환경성평가 등 각종 정보를 이용한 규제수단의 적용 등 다양한 정책을 혼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환경규제 체계로 개편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자율규제제도는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친 후 도입되어야 한다. 자율규제의 맹

점은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기업의 가장 큰 인센티브는 지도단속 등 규제당국의 직접규제의 완화이다. 그러나 환경보존을 위해서는 지도단속이 필요하므로 이를 면제하는 것은 모순이다. 따라서 자율규제는 배출목표량을 설정하고 과학적으로 단계적 삭감목표를 설정하는 등의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 또한 자율규제의 확대는 우선 철저한 규제집행 능력이 확보되어야 하고 강력한 직접규제방식의 규제체제가 정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자율규제수단들은 항상 독자적으로 사용될 때보다 다른 명령강제방식의 수단들과 같이 보조적으로 사용될 때에 효과적이라는 점이 늘 지적되고 있다.



제5장 Ecolabelling의 국내외 적용사례

1. 국내사례

2. 국외사례

1. 국내사례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Ecolabelling 관련 제도의 사례를 살펴보면, 공공기관의 환경정책 차원에서 시행하는 경우와 일반 기업체에서 자사 제품 홍보차원에서 실시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공공기관에서 시행되는 제도는 상품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 있어서 환경보호 측면과 상품 이용에 따른 소비자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각 행정부처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다.

일반 기업의 경우, Ecolabelling 제도를 통해 환경측면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소비자에게 홍보하고,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이윤을 높이려는 상업적 목적에서 동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국내 정부부처 중 농림부, 산업자원부, 환경부 등에서 추진되는 Ecolabelling 관련 정책과 함께 민간사례로서 일반기업체에서 도입하고 있는 몇 가지 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1) 농림부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① Ecolabelling 관련 정책방향

그동안 증산위주의 고투입농법에 의존해온 결과 농업환경이 악화되어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을 위협하고 있고, 지나친 농약사용은 토양미생물, 천적감소 등 생태계 교란, 수질오염 및 농산물의 농약잔류문제 야기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농업·환경·무역의 연계논의가 강화되고, Codex에서 유기농산물에 대한 기준을 제정하는 등 관련 국제규범이 제정됨으로써 국내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커질 전망이다.

환경보전 및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대응방안의 일환으로서 농림부에서는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도록 하며, 유통과정에서의 신뢰구축으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공급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② Ecolabelling 관련 제도

○ 법적근거 또는 정책적 근거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 제17조의 3 및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8조, 제9조, 제14조 내지 제17조에 의거 1993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친환경농산물은 화학비료나 농약 등을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이므로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고 맛과 향이 좋고 인공첨가물을 넣지 않아 신선도가 오래 지속 되는 등 국민에게 웰빙 식품을 안전하게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제도이다.

○ 제도의 내용

농림부의 정의에 따르면 ‘친환경농산물’이란 환경을 보전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농약과 화학비료 및 사료첨가제 등 화학자재를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최소량만을 사용하여 생산한 농산물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친환경농산물을 전문인증기관이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검사하여 정부가 그 안전성을 인증해 주는 제도를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라고 한다.

친환경농산물 관리는 토양과 물은 물론 생육과 수확 등 생산 및 출하단계에서 인증기준을 준수 했는지에 대한 엄격한 품질검사를 시행하며, 시중 유통품에 대해서도 허위표시를 하거나 규정을 지키지 않는 인증품이 없도록 철저한 사후 관리를 하고 있다.

전문인증기관으로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에 따른 22개 민간인증기관(2006년 4월 현재) 등이 인증업무를 수행중이다.

인증기관은 친환경농업육성법의 기준에 따라 인증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자를 지정하며, 인증기관은 조직, 인력, 시설, 인증업무규정이 적합해야 한다.

인증기관 지정절차는 신청서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제출하면 심사계획서에 따라 인증신청서, 첨부서류 및 인증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결과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증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 등을 정하여 인증기관 지정서를 교부하고 고시하게 된다.

〈표 5-1〉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지정현황

지정번호	지정일자	인증기관명	인증업무 범위
제1호 (농관원고시 제2002-1호)	2002.01.31	(사)흙살림	○ 유기농림산물 및 유기축산물 ○ 전환기유기농림산물 및 전환기유기축산물 ○ 무농약농림산물 및 저농약농림산물
제2호 (농관원고시 제2002-3호)	2002.05.23 2005.12.19 (승계)	(유)돌나라 유기인증 코리아	○ 유기농림산물 및 유기축산물 ○ 전환기유기농림산물 및 전환기유기축산물
제3호 (농관원고시 제2002-6호)	2002.08.12	(사)양평환경 농업-21 추진위원회	○ 유기농림산물 및 유기축산물 ○ 전환기유기농림산물 및 전환기유기축산물 ○ 무농약농림산물 및 저농약농림산물
제4호 (농관원고시 제2002-8호)	2002.11.14	(사)국산공 가공업협회	○ 유기농림산물 ○ 전환기유기농림산물 ○ 무농약농림산물
제5호 (농관원고시 제2003-2호)	2003.07.11	(사)한국 유기농협회	○ 유기농림산물 및 유기축산물 ○ 전환기유기농림산물 및 전환기유기축산물 ○ 무농약농림산물 및 저농약농림산물
제6호 (농관원고시 제2003-5호)	2003.12.15	(주)코악스	○ 유기농림산물 및 유기축산물 ○ 전환기유기농림산물 및 전환기유기축산물 ○ 무농약농림산물
제7호 (농관원고시 제2004-3호)	2004.6.15	주식회사 부강테크	○ 유기농림산물 ○ 전환기유기농림산물 ○ 무농약농산물 및 저농약농산물
제8호 (농관원고시 제2004-4호)	2004.8.2	(사)정농회	○ 유기농림산물 ○ 전환기유기농림산물 ○ 무농약농산물
제9호 (농관원고시 제2005-4호)	2005.2.14	글로벌 유농인 영농조합 법인	○ 유기농림산물 및 유기축산물 ○ 전환기유기농림산물 및 전환기유기축산물 ○ 무농약농림산물 및 저농약농림산물
제10호 (농관원고시 제2005-5호)	2005.2.25	한경대학교 산학협력단	○ 유기농림산물 및 유기축산물 ○ 전환기유기농림산물 및 전환기유기축산물 ○ 무농약농림산물 및 저농약농림산물
제11호 (농관원고시 제2005-5호)	2005.2.25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 유기농림산물 ○ 전환기유기농림산물 ○ 무농약농산물 및 저농약농산물
제12호 (농관원고시 제2005-9호)	2005.6.7	(사)울진환경 농업연구회	○ 유기농림산물 및 유기축산물 ○ 전환기유기농림산물 및 전환기유기축산물 ○ 무농약농림산물 및 저농약농림산물
제13호 (농관원고시 제2005-11호)	2005.7.18	(주)오씨케이	○ 유기농림산물 및 유기축산물 ○ 전환기유기농림산물 및 전환기유기축산물 ○ 무농약농림산물 및 저농약농림산물

<표 5-1>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지정현황 (계속)

지정번호	지정일자	인증기관명	인증업무 범위
제14호 (농관원고시 제2005-12호)	2005.9.14	천안 연암대학교 산학협력단	○ 유기농림산물 및 유기축산물 ○ 전환기유기농림산물 및 전환기유기축산물 ○ 무농약농림산물 및 저농약농림산물
제15호 (농관원고시 제2005-12호)	2005.9.14	영농조합법인 학사농장	○ 유기농림산물 및 유기축산물 ○ 전환기유기농림산물 및 전환기유기축산물 ○ 무농약농림산물 및 저농약농림산물
제16호 (농관원고시 제2005-12호)	2005.9.14	주식회사 스페이스	○ 유기농림산물 및 유기축산물 ○ 전환기유기농림산물 및 전환기유기축산물 ○ 무농약농림산물 및 저농약농림산물
제17호 (농관원고시 제2005-16호)	2005.12.19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	○ 유기농림산물 및 유기축산물 ○ 전환기유기농림산물 및 전환기유기축산물 ○ 무농약농림산물 및 저농약농림산물
제18호 (농관원고시 제2006-6호)	2006.2.28	사단법인 친환경농업 문화연구소	○ 유기농림산물 및 유기축산물 ○ 전환기유기농림산물 및 전환기유기축산물 ○ 무농약농림산물 및 저농약농림산물
제19호 (농관원고시 제2006-6호)	2006.2.28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 유기농림산물 및 유기축산물 ○ 전환기유기농림산물 및 전환기유기축산물 ○ 무농약농림산물 및 저농약농림산물
제20호 (농관원고시 제2006-6호)	2006.2.28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 유기농림산물 및 유기축산물 ○ 전환기유기농림산물 및 전환기유기축산물 ○ 무농약농림산물 및 저농약농림산물
제21호 (농관원고시 제2006-8호)	2006.3.14	국립진주 산업대학교 산학협력단	○ 유기농림산물 및 유기축산물 ○ 전환기유기농림산물 및 전환기유기축산물 ○ 무농약농림산물 및 저농약농림산물
제22호 (농관원고시 제2006-10호)	2006.4.3	국립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	○ 유기농림산물 ○ 전환기유기농림산물 ○ 무농약농림산물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검사원 홈페이지(<http://www.naqs.go.kr/>)





○ 인증 방법 및 절차

친환경농산물 인증절차는 인증신청→인증심사→심사결과통보→생산 출하과정 조사→시판품 조사의 과정을 따른다. 우선 친환경농산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생산농가의 희망에 따라 생산여건과 품질관리상태를 심사한 후, 인증여부를 통보해 주고 생산·출하과정 조사를 거쳐 적격품에 한해 인증표지 표시 후 출하하게 된다.

인증심사 절차는 인증신청서가 접수되면 인증심사 계획을 수립하여 심사계획을 통보 후 심사하고, 심사결과 가부 결정을 통보한다. 심사결과 생산조건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적합'으로 판정한다. 인증기준에 적합하면 인증서를 교부하며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통보한다.

인증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내용물과 표시사항의 일치여부 등 인증품에 대한 시판품 조사를 하며, 조사결과 인증 기준위반 등 이상품 발견시에는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가 취해진다.

〈표 5-2〉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종류 및 기준

종류	기준	표시
유기농산물	* 전환기간 이상을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재배(전환기간 : 다년생 작물은 3년, 그 외 작물은 2년)	
전환기 유기농산물	* 1년 이상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재배	
무농약 농산물	* 유기합성농약은 일체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가급적 권장시비량의 1/3이내 사용	
저농약 농산물	* 화학비료는 가급적 권장시비량의 1/2이내 사용 * 농약 살포횟수는 “농약안전사용기준”의 1/2이하 - 사용시기는 안전사용기준 시기의 2배수 적용 * 제초제는 사용하지 않아야 함. * 잔류농약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의 1/2이하	
유기축산물	* 목초지 및 사료작물재배지에는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을 일체 사용하지 않아야 함. * 토양에 투입하는 유기물은 유기농산물의 인증기준에 맞게 생산 * 축분비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완전히 부숙시켜서 사용	* 기타 표시사항 : 친환경농산물 인증 표시, 생산자(수입농산물은 유통업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인증번호, 품목, 산지, 생산년도(곡류에 한함), 무게 등 * 다만, 포장에 없거나 날개 판매의 경우 당해 인증품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시판 또는 풋말로 이를 표시
전환기 유기축산물	* 목초지 및 사료작물재배지는 무농약농산물 인증기준에 맞게 관리 * 유기사료의 경우에는 건물을 기준으로 반추가축은 45퍼센트 이상, 비반추가축은 40퍼센트 이상 급여 * 무농약농산물 또는 그 부산물로부터 유래된 사료의 경우에는 건물을 기준으로 반추가축은 60퍼센트 이상, 비반추가축은 55퍼센트 이상 급여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검사원 홈페이지(<http://www.naqs.go.kr/>)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년간이다. 유효기간 연장신청은 만료 30일전까지 인증을 받은 인증기관에 유효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하며, 인증기관은 연장신청에 대하여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인증서를 교부한다.

친환경농산물 인증품 종류는 세부기준에 따라 농산물의 경우 유기농산물, 전환기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등 4가지로, 축산물의 경우 유기축산물, 전환기유기축산물 등 2가지로 구분된다.

농산물의 인증기준은 경영관리, 재배포장 용수 종자, 재배방법, 생산물의 품질 관리 등이며, 축산물은 사육장 및 사육조건, 자급사료기반, 가축의 출처 및 입식, 전환기간, 사료 영양관리, 동물복지 및 질병관리, 운송·도축·가공과정의 품질관리, 축산 분뇨의 처리 등이 기준이 된다. 세부기준별 인증품 종류는 <표 5-2>와 같다.

친환경농산물 인증건수는 1999년 이래 증가추세이며, 특히 2005년부터는 농가수, 면적, 인증품 생산량 등이 모두 큰 비율로 증가하였다. 2005년에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은 806,247톤으로 전체 농산물 생산량 약 1,800만 톤 대비 약 4.4%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 연도별 친환경농산물 인증현황

년도	인증구분	건수(건)	농가수(호)	면적(ha)	인증량(톤)
1999	생산자	598	1,306	875	26,643
2000	생산자	704	2,448	2,039	35,406
2001	생산자	1,128	4,678	4,554	87,279
2002	생산자	2,919	11,892	11,239	200,374
2003	계	4,897	23,309	24,565	366,107
2004	계	5,851	28,985	38,958	466,048
2005	계	8,761	53,522	81,994	806,247

인증품 종류별·연도별 증가추세를 살펴보면, 무농약과 저농약 농산물이 유기 및 전환기 유기농산물에 비해 인증건수 증가폭이 훨씬 더 높았다. 2005년 현재 무농약 및 저농약 농산물의 인증건수는 7,551건으로 전체 8,761건의 86.2%이며, 이에 비해 유기 및 전환기 유기농산물은 1,210건으로 전체 인증건수의 13.8%에 불과하다.

〈표 5-4〉 연도별 친환경농산물 인증건수

년도	계	유기	전환기	무농약	저농약
1999	598	246	0	256	96
2000	704	194	0	324	186
2001	1,128	180	3	441	504
2002	2,919	286	151	1,370	1,112
2003	4,897	369	349	1,999	2,180
2004	5,851	420	392	2,494	2,545
2005	8,761	584	626	3,599	3,952

생산·출하과정 조사는 인증을 받은 농가 중 표본추출을 통해 이루어진다. 조사항목으로는 농산물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재배관리 상황, 재배포장 환경, 농약잔류 여부, 수확시기, 수확후 관리 상황, 가공관리, 출하과정 등이며, 조사 결과 경미한 부적합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보완토록 조치하며, 시정 및 보완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당해 농가(생산자단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한다.

시판품 조사는 인증표시품으로 상장되었거나 판매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되는 농산물에 대해, 또는 이해관계자가 조사를 요청한 인증품에 대해 표시사항과 내용물의 일치여부, 포장재 규격 및 표시사항, 잔류농약 등을 조사한다.

부적격품에 대해서는 출하품이 표시내용과 일치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면 인증표시 말소 등 현장에서 시정조치 하며, 부적격 내용을 당해 농가 및 생산자 단체에 통보하는 한편, 농가지도 등을 통해 부적격품이 반복하여 출하하지 못하도록 지도하고 자체적으로 품질관리를 유도한다.

생산·출하과정 및 시판품 조사 결과, 인증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처분사전 통지 또는 청문절차 등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인증취소 및 인증표지 사용정지를 통보하고, 인증농업인이 거래하는 유통업체에 통보하며, 재배포장의 인증표지판을 철거하는 등 행정처분이 시행된다.

③ 농산물 Ecolabelling 관련 제도의 특징과 시사점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는 생산과정에서 화학비료와 농약 등 인체에 해로운 물질의 사용여부를 모니터링하여 소비자들의 식생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생산단계에서의 환경유해 물질 사용여부와 생산품에 유해물질 잔류여부가 가장 중요한 검토사항이다. 동 제도는 자연과 인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요구를 생산품의 가격과 구매력에 반영함으로써 환경친화성 제품의 소비를 증대시키고 그 결과로서 환경유해물질의 사용을 감소시켜 간접적인 환경개선 효과를 얻고자 하는 정책이다.

2) 산업자원부의 GR(Good Recycled) 인증

① Ecolabelling 관련 정책방향

환경문제가 국내외적으로 강조되면서 산업계에서도 생산방식에 있어 일정수준 이상의 환경성을 고려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산업계가 부담해야 하는 오염처리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관련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산업자원부에서는 1997년도에 「산업계의 자원재활용촉진 종합대책」을 수립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낙후된 자원재활용산업을 활성화하고 영세한 재활용업체의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등 통합적인 재활용기술개발 기반구축을 위해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내에 「자원재활용 기술개발센터」를 설립하였다.

동 센터는 자원재활용에 대한 국내·외 기술을 종합적으로 분석, 효율적인 기술개발 체계를 구축하고 개발된 기술을 관련업체에 이전·보급하기 위한 재활용기술개발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재활용기술개발과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을 통하여 국내 재활용제품의 품질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기업의 재활용기술개발의욕을 고취시켜 재활용산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GR마크제도(우수재활용제품 품질인증제)가 탄생하였다.

② Ecolabelling 관련 제도(GR마크제도)

○ 법적근거 또는 정책적 근거

GR마크제도는 재활용제품의 품질과 환경친화성 등을 정부가 인증함으로써, 그동안 소비자가 외면해 오던 재활용제품의 품질을 향상시켜 소비자의 불신

을 해소하고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립기술품질원고시 제 1997-87호(현 기술표준원 고시 제1999-137호)에 의거 1997년부터 시행되었다.

○ 제도의 내용

국내에서 개발·생산된 재활용제품을 철저히 시험·분석·평가한 후 우수제품에 대하여 우수재활용제품인증마크(GR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로써, 인증기준은 국제적 규격·기준보다 동등한 수준 이상으로 하여 단계별로 국가 규격화하며, 이를 통해 재활용제품의 품질 일류화를 유도하고자 한다.

인증기관은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이며, 대상품목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재활용제품 중에서 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제품이다.

대상업체가 영세중소기업이므로 신청제품의 품질규격·기준 제정경비, 인증신청 및 평가수수료, 인증마크사용료 등은 전액 국고지원이며, 인증신청제품의 품질개선, 제조공정개선을 위한 기술개발지원비는 전액무료이다.

○ 인증 방법 및 절차

인증과정은 신청서 제출(업체) -> 신청서 접수(기술표준원) -> 품질평가, 현장평가 및 종합 평가(평가위원회) -> 심의(심의위원회) -> 인증서 교부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규격 및 품질심사기준은 환경부 및 산업자원부간 협의를 통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규격제정위원회에서 제정한다.

<그림 5-1> GR마크



인증 분야는 크게 폐지, 폐플라스틱, 폐고무, 폐요업, 폐섬유, 폐목재, 폐유, 폐금속, 기타, 폐유리, 생쓰레기 및 미분류 등 12가지 구분된다.

③ Ecolabelling 관련 제도의 특징과 시사점

동 제도는 사용 후 폐기된 제품을 매립 또는 소각처리하지 않고 재생산 과정을 통해 상품으로 재활용함으로써 환경에 대한 오염부담을 경감시키는 직접적인 환경보호정책이다. 따라서 정부의 노력이 곧 바로 정책효과에 반영되므로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앙집중적인 지원과 관리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3) 환경부 환경라벨링 제도

① Ecolabelling 관련 정책방향

환경부에서는 지속가능한 경제개발 즉, 환경을 고려하는 경제개발을 통해 환경보호와 경제발전이라고 하는 양자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 친환경상품의 생산·소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환경마크제도와 환경성적표지제도 등을 운영함으로써 친환경상품의 기준을 마련하고 평가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그 외에도 친환경상품 생산지원, 친환경상품 정보제공, 친환경상품 구매촉진과 친환경 소비활동 지원,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친환경상품 및 제품 환경성 향상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② Ecolabelling 관련 제도(환경마크 및 환경성적표지)

○ 법적근거 또는 정책적 근거

과거에는 주로 공정에서 발생하는 오염이 주요 환경문제의 원인이 되었으나 최근에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소비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문제가 주요 관심사로 대두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지속가능 생산·소비(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즉, 친환경제품 및 친환경서비스의 생산과 소비를 통해 생산과정 뿐만 아니라 소비 및 폐기과정에서의 환경오염도 동시에 관리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환경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친환경적인 소비패턴을 유도하고 생산자들이 친환경적 소비패턴에 상응하여 제품을 개발·생산하도록 하는 환경라벨링(environmental labeling)이 도입되었다. 즉, 환경라벨링이란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환경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품 및 서비스 매체에 부착·제공되는 도안이나 표시를 의미한다.

국제표준화기구(ISO)는 환경라벨링의 유형을 3가지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 환경라벨링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ISO 14020 시리즈(환경라벨 및 환경선언, 2000)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Type I 환경라벨링(일명 에코라벨링)은 제품의 제조, 유통, 사용, 폐기 등 전과정(lifecycle)에 걸쳐 동일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환경영향이 적은 제품을 선별하여 친환경상품임을 제3자가 인증하여 주는 방식을 의미한다. Type II 환경라벨링은 생산자 및 판매자가 스스로

자기제품이 친환경적임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착하는 마크나 문구로서 허위·과대광고가 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Type III 환경라벨링은 제품의 전과정에 걸쳐 발생하는 환경부하를 수치나 그래프 등 계량화된 형태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 제1유형[Type I]: 에코라벨링 (ISO 14024, 1999)
- 제2유형[Type II]: 자기선언 환경성 주장 (ISO 14021, 1999)
- 제3유형[Type III]: 환경성과선언(ISO 14025, 2000)

각 유형의 환경라벨링은 환경부하가 적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수요 및 공급을 촉진시켜 결과적으로 시장 주도의 지속적인 환경개선을 유도하려는 동일한 목표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 목표를 제외한다면 환경라벨링의 세 가지 유형 사이에는 큰 차이점이 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사용되는 Type I 환경라벨링은 형태로는 Blue Angel(독일), Nordic White Swan(북유럽), Ecomark(일본), Environmental Choice(캐나다) 및 환경마크(한국) 등이 있다.

이러한 형태의 라벨이 부착된 제품은 그 제품이 동일제품군 내의 다른 제품보다 환경적으로 더 우수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라벨을 통하여 소비자는 라벨이 부착되지 않은 타제품과의 차별성을 인식하게 되므로, 소비자의 구매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비록 이러한 환경 라벨링 제도가 근본적으로 자발적인 성격을 취하기는 하지만, 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높다면 이는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자발적 시스템은 환경적으로 더 우수한 제품의 무역을 촉진시킬 수 있으나, 반면에 잠재적인 무역 기술장벽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Type II 환경라벨링은 제품 혹은 서비스의 환경성을 강조하는 문구나 심벌을 제품 광고에 이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광고 유형의 목적은 환경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제품의 환경 친화성을 선전함으로써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함이다.

그러나 기업에서 시행된 환경성 주장은 대부분 검증이 불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시장과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비검증된 환경성 주장들은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성 평가에 역효과를 주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문구 및 심벌 사용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한 규정들은 자국 제품뿐 아니라 수입제품에도 적용되므로 무역촉진의 측면뿐 아니라 무역장벽의 측면으로도 활용될 잠재성을 내포하고 있다.

Type III 환경라벨링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대상제품의 전과정에 걸친 환경부

하 정보를 환경친화성 여부에 대한 가치판단 없이 제공하는 형태의 제도이다. 특히 LCA⁵⁷⁾라고 하는 복잡한 분석기법을 통해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제품 환경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Type III는 Type I 제도의 대안적 성격을 갖는 제도라 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를 위한 최종 제품이 아니라 기업들간 원/부자재 및 부품 공급 시에 더 적당한 환경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 Type I 환경 라벨 제도와 다른 점이다. Type III 환경 선언 제도는 기업간 거래에서 녹색상품구매 네트워크(GPN)를 구현하는데 실용적인 수단이 될 수도 있다.

<표 5-5> 3가지 유형의 환경라벨링 비교

구분	Type I	Type II	Type III
명칭	에코라벨링	자기선언 환경성 주장	환경성과 선언
대상 목표	구매자	구매자	산업체/구매자
표시방법	라벨	라벨, 문구, 기호 등	환경성 정보 데이터
평가 범위	life cycle(전과정)	단일속성	life cycle(전과정)
선택성	있음	없음	없음
LCA 고려	고려 안함	고려 안함	고려함
제도 수행	제3자	당사자	제3자 또는 당사자
인증	있음	대체로 없음	있음 또는 없음

주 : 선택성 : Type I 은 합격/불합격 판정방식이므로 동일제품군중 일정 수준 이상의 제품만 인증됨

i) 3가지 유형의 환경라벨링 상호 비교

ISO 14020 시리즈의 모든 표준들은 공통적으로 “환경 라벨 및 환경 선언”이라 불리 운다. 이때 “라벨”은 Type I을, “선언”은 Type II 및 III 의미한다. 따라서 ISO14020 표준이라고 하면 상기 모든 유형의 환경 라벨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된다. Type I환경 라벨링은 여러 기준에 대한 제품 평가에 바탕을 둔 인증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각 제품군 별 기준은 일반적으로 제삼자에코라벨링 기관(Ecolabeling body)이 관리한다. 반면에 Type II 및 Type III 환경 라벨링의 경우, 제조업자가 ‘제품에 대한 환경성을 고려했다’는 주장을

57) LCA (Life Cycle Assessment, 전과정평가) : 제품(서비스 포함)의 전과정 즉, 원료획득 및 가공, 제조, 수송, 유통, 사용, 폐기 및 재활용 단계까지의 과정동안에 소모되고 배출되는 에너지 및 물질과 배출물의 양을 정량화하여 이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총체적으로 평가하고, 환경개선의 방안을 모색하는 객관적이며, 종합적인 환경영향 평가방법으로 국제표준화기구(ISO) 환경경영기술위원회(TC 207)에서 표준화를 완료함. 개발된 규격은 총 7종으로 다음과 같음. ISO14040(일반원칙 및 기본구조), ISO14041(목표 및 범위정의와 목록분석), ISO14042(전과정 영향평가), ISO14043(전과정 해석), ISO14047(ISO14042 응용예제), ISO14048(데이터 문서화 형식), ISO14049(ISO14041 응용예제)

하기 위해 제품의 환경측면을 자발적으로 선언하는 형식을 띠고 있다. 이러한 환경성 주장들로는 선호도 선언(Declaration of preference(Type II))과 과학적 데이터 공개(Report of scientific data(Type III)) 같은 것들이 있다. 이와 같이 용어를 구분하는 이유는 각 유형의 라벨간 차이를 부각시키기 위함이다.

통상 라벨이라는 단어는 제품에 부착되는 인장(seal)을 말한다. 그러나 상기 비교표에서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실제 환경 라벨의 형태는 더 다양하다. Type I에서는 심벌이나 심벌이 표시된 인장이 필요하지만, Type II에서 심벌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제품 광고에서와 같이 환경선호도(environmental preference)를 선언하는 단어나 문구가 Type II의 핵심이다. 따라서 Type II에서는 필요한 경우 심벌과 주장을 서로 분리해서 제시해야 한다. Type III에서도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가끔 그림이나 심벌을 사용하긴 한다. 그러나 Type III의 실질적 형태는 제품의 환경성을 설명하는 데이터 시트(data sheet)이다. Type II와 III에서 “환경 라벨”이 아니라 “선언”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주장 형식들 사이의 차이에서 기인된다.

ii) 환경부 ecolabelling 제도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환경라벨링 제도는 환경마크제도 및 환경성적표지제도 2가지로 구분되며, ISO 환경라벨링 구분에 따르면 각각 Type I(에코라벨링)과 Type III에 해당한다.

환경마크제도는 기업과 소비자가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생산, 소비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제품의 환경정보를 제공하여 환경보전활동에 참여토록 하고, 기업에게는 소비자의 친환경적 구매욕구에 부응하는 환경친화적인 제품과 기술을 개발하도록 유도하여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생활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동 제도는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1994.12.22)’에 근거한다.

동 제도는 1990년 말 환경마크 도안에 대한 국민공모와 1992년 ‘환경마크제도 운영에관한규정’을 제정함으로써 시행되었다. 1994년 12월에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관한법률’에 제도운영과 관련한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친환경상품진흥원(구 환경마크협회)를 설립하여 환경마크제도의 실무집행업무를 담당하도록 위탁하였다. 2004년 8월부터 환경부는 환경마크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새롭게 한다는 취지하에 환경마크 도안을 새로 제작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성적표지제도는 재료 및 제품의 환경성 제고를 위해 재료 및 제품의 생산 유통, 소비 및 폐기단계 등의 전과정에 대한 환경성 정보를 계량적으로 표

시하는 제도이다.

동 제도는 제품에 대한 검증이 가능하고 정확한 환경성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환경친화적인 제품들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장려하고, 잠재적으로 시장주도의 지속적인 환경개선 가능성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동 제도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법률(1994.12.22)', 환경부 고시 제 2002-68호, 제2004-135호, 제2004-152호에 근거한다.

<표 5-6> 국내 환경라벨링 제도 유형

구분	국제규격	국내명칭	법적근거	시행연도	운영기관	현황
Type I	ISO 14024 (1999.4)	환경마크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관한법률	1992.4	환경부 (환경마크협회)	768기업 3,117제품
Type II	ISO 14021 (1999.9)	환경성 자기주장	표시·광고의 공정화에관한법률	1999.7	공정거래위원회	*
Type III	ISO 14025 (2000.3)	환경성적 표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관한법률	2001.12	환경부 (환경관리공단)	8개사 96제품

주 : Type II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도안하여 자기 제품상에 표시하는 라벨로서 정형화된 제도가 아니므로 시행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움.

자료 : 친환경상품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oeco.or.kr/>). 이병욱, 환경경영 실천 및 확산방안, 산업자원부, 2002, p50.

○ 제도의 내용

i) 환경마크제도

환경마크제도는 동일 용도의 제품 중 생산 및 소비과정에서 오염을 상대적으로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환경마크를 표시함으로써 정확한 제품의 환경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가 환경보전활동에 참여토록 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이러한 소비자의 친환경적 구매욕구에 부응하는 환경친화적인 제품과 기술을 개발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다.

동 제도는 ISO14024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제품의 생산, 유통, 소비, 폐기 등 전과정에 걸쳐 오염배출이 적거나, 자원 및 에너지를 절약하는 친환경제품임을 인증하는 정부공인제도로서 친환경제품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친환경적 생산·소비 패턴의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1979년 독일에서 처음 시행된 이 제도는 현재 유럽연합(EU), 북유럽, 캐나다, 미국, 일본 등 현재 40여개 국가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2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환경마크제도에서 운영되는 환경마크 인증제품 현황은 2006년 4월 현재 107

개 제품군에서 790개 업체, 3,176개 제품으로 지난 2000년 이후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1년 전인 2005년 4월에 102개 제품군에서 537개 기업, 1,908개 제품이 인증받은 것과 비교해 볼 때 약 66.5%가 증가한 것이다.

〈표 5-7〉 환경마크 연도별 인증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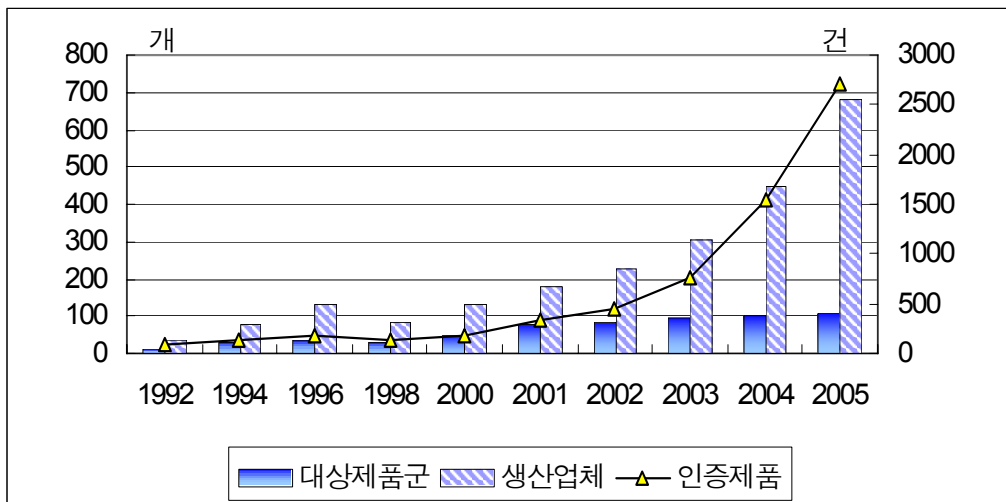
구분 \ 연도	1992	1994	1996	1998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대상제품군	12	29	35	29	49	79	82	94	102	107
생산업체	37	75	131	85	130	182	227	306	445	679
인증제품	82	137	185	125	169	325	439	755	1,536	2,703

자료 : 친환경상품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oeco.or.kr/>)

1992년 제도시행 초기에 12개 불과했던 인증대상 제품군은 현재 107개 제품군(7개 대분류, 21개 중분류)으로 늘어나 친환경상품에 대한 다양한 소비자 요구를 만족시키고 있다.

이 같은 환경마크 인증제품 수의 급격한 증가는 친환경상품법 시행에 따른 영향 외에도, 친환경상품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늘고 친환경상품 생산기업이 대우받는 사회적 여건이 조성되어 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림 5-2〉 환경마크 연도별 인증품목 증가추이



품목별로 살펴보면 ‘사무용 기기·가구 및 사무용품(대분류 번호 EL100s)’의 ‘사무용 목제가구(제품군 번호 EL172)’ 품목이 416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주택·건설용 자재·재료 및 설비(대분류 번호 EL200s)’의 ‘페인트’(제품군 번호 EL241) 품목이 405건이었다. 제품군 수가 가장 적은 분야는 ‘교통, 여가, 문화관련 제품(대분류 번호 EL500s)’으로 총 32건이었다.

<표 5-8> 환경마크 인증제품 현황

대분류	중분류(EL 분류번호별)	업체수	제품수
사무용 기기·가구 및 사무용품(EL100s)	문구류(EL101~105) : 5개 제품군	71	351
	사무용 기기류(EL141~145) : 5개 제품군	30	249
	사무용 가구 등(EL171~175) : 5개 제품군	45	445
주택·건설용 자재·재료 및 설비(EL200s)	전기 자재류(EL201~208) : 7개 제품군	36	167
	수도·배관 자재류(EL221~227) : 7개 제품군	48	233
	기타 자재류(EL241~252) : 12개 제품군	131	630
	설비류 등(EL261~263) : 3개 제품군	2	15
개인용품 및 가정용품(EL300s)	세제류(EL301~305) : 5개 제품군	39	80
	성유·가족류(EL311~313) : 3개 제품군	20	43
	기타 잡화류(EL321~323) : 3개 제품군	39	146
가정용 기기·가구 (EL400s)	전기 기기류(EL401~408) : 8개 제품군	6	72
	전자 기기류(EL431~433) : 3개 제품군	1	13
	가구류 등(EL481~483) : 3개 제품군	10	96
교통, 여가, 문화관련 제품(EL500s)	자동차 관련 제품류(EL501~508) : 8개 제품군	14	29
	여가·문화 관련 제품류(EL551~553) : 3개 제품군	2	3
산업용 제품, 장비 (EL600s)	원료·자재류(EL601~609) : 9개 제품군	19	42
	조립제품, 장비 등(EL651~653) : 3개 제품군	1	3
복합용도 및 기타 (EL700s)	에너지 및 대체 에너지 사용 제품류(EL701~703) : 3개 제품군	8	11
	플라스틱·고무·목재 제품류(EL721~724) : 4개 제품군	122	247
	금속·무기재료·요업 제품류(EL741~744) : 4개 제품군	125	245
	기타(EL761~764) : 4개 제품군	21	56
합계(107개 제품군)		790	3,176

자료 : 친환경상품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oeco.or.kr/>)

환경마크제도의 운영주체로서 환경부와 친환경상품진흥원(전 환경마크협회)이 담당하고 있다. 환경부(환경경제과)에서는 환경마크제도 관련 법규 제정 및

개정 등 제도 전반을 총괄하고, 세부적으로 환경마크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우선구매기관의 환경마크 인증제품 구매실적 파악 및 공표, 기타 환경마크제도와 관련한 기술적, 행정적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친환경상품진흥원에서는 환경마크 대상제품 선정 및 대상제품별 인증기준 제·개정안 마련, 환경마크 인증 및 인증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환경마크제도 및 인증제품 홍보사업, 기타 관련 행정업무 등을 수행한다.

<표 5-9> 환경마크제도의 기관별 업무수행

환경부	친환경상품진흥원
*환경마크제도 관련규정 제·개정	*환경마크 대상제품 선정 및 인증 기준 개정
*환경마크제도 전반의 총괄적 관리 및 기술적·행정적 지원	*환경마크 인증 및 인증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환경마크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심의기구 운영 및 관련 행정업무 등
*우선구매기관의 실적파악 및 공표	*친환경상품 구매를 지원하기 위한 환경마크 상품 정보 제공
*기타 환경마크제도와 관련하여 국민에게 알리는 주요 사항 고지	*환경마크제도 및 인증제품 홍보사업

자료 : 친환경상품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oeco.or.kr/>)

ii) 환경성적표지제도

환경성적표지제도는 제품의 전과정(원료물질 채취 및 제조단계-제품제조단계-사용단계-폐기단계)에서 투입물과 배출물에 의한 환경성을 정량화하고, 이를 관련 환경영향 범주별로 분류, 영향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시하고 있는 제3유형의 환경라벨링(Type III Environmental Declaration) 제도이다. 즉 제품의 원료채취, 제조, 유통, 소비 및 폐기단계에서 소모되는 자원과 각종 환경부하를 종합적으로 계산하여 제품의 전과정 환경영향을 정량적인 수치로 표시하는 환경라벨링이다.

이를 위해 기업은 환경부에서 고시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전과정평가(life cycle assessment)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3자 기관에서 검증받아 제품라벨 또는 요약보고서 형태로 일반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즉, 환경성적표지는 정부에 의해 공인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제품 환경성적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보장하는 제도로서, 소비자가 스스로 제품의 친환경성을 파악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환경성적 표지제도를 통해 공인된 제품의 환경성적정보는 요약보고서 형태로 일반에 공개되거나 <그림 5-3>과 같이 제품에 라벨형태로 부착되어 공개된다.

현재 환경성적표지에서는 제품의 자원소모,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산성비, 수질부영양화, 광학스모그 등 6개 범주에 대해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로 표시하고 있다.

환경성적표지제도는 2000년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제도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2002년 5월에는 첫 인증이 이루어졌으며, 2005년 12월 현재 환경성적표지 대상품목은 전과정평가 수요가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제안을 받아 총 24개 제품군이 선정되어 각 품목별 환경표지 작성지침이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삼성, LG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8개 기업, 96개 제품이 환경성적표지를 인증 받고 있다.

〈그림 5-3〉 환경성적표지 라벨



〈표 5-10〉 환경성적표지 인증현황

대상제품군	인증 제품수	대상업체	대상제품군	인증 제품수	대상업체
가정용 전기 냉동·냉장고	1	삼성전자(주)	자동차용 에어필터	-	-
TFT-LCD 모니터	-	-	EP고무	-	-
CRT용 유리	-	-	주방용 세제	-	-
두루마리 화장지	-	-	세탁용 세제	-	-
PDP TV	-	-	레이저프린터	4	삼성전자(주)
PC내장형 광디스크 장치	6	TSST KOREA	휴대전화기	2	LG전자(주)
전자레인지	1	LG전자(주)	천연가스	1	한국가스공사
비디오 재생·기록기기	1	삼성전자(주)	TFT-LCD 모듈	11	LG, Philips LCD(주)
에어컨디셔너	30	LG전자(주) 삼성전자(주)	TFT-LCD용 평판유리	5	삼성코닝 정밀유리(주)
가정용 드럼세탁기	32	LG전자(주)	디지털 카메라	1	삼성테크윈(주)
휘발유	-	-	인쇄회로기판	-	-
타이어	1	금호타이어(주)	부직포	-	-
합계			24	96	8

자료 : 친환경상품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oeco.or.kr/>)

한편, 기업에 제품의 전과정 환경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제품 생산시 투입되는 각종구성요소별 환경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과정분석목록이 개발되어 제공되고 있다.

2005년 12월 현재 국가전과정 분석목록정보(LCI)⁵⁸⁾는 환경부에 의해 151개 모듈, 산업자원부에 의해 158개가 개발되어 전과정평가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

환경성적표지제도 운영은 환경부에서 총괄책임을 담당하고, 각 업무별로 친환경상품진흥원(업무수탁기관), 환경관리공단(인증기관), 환경보전협회(교육기관) 등이 세부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각 기관별 업무영역을 살펴보면, 환경부(환경경제과)에서는 제도운영 총괄 및 법률 제·개정과 함께 업무수탁기관 지도감독, 인증기관 및 교육기관 지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친환경상품진흥원에서는 환경성적표지 대상제품 선정, 대상제품별 작성지침 개발, LCI DB 개발 및 보급, LCI 등 정보망 운영 등 업무를, 환경관리공단에서는 기업이 신청한 전과정평가결과보고서의 인증심사 및 인증과 사후관리 업무를, 환경보전협회에서는 인증심사원 교육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인증 방법 및 절차

환경마크의 인증 절차는 인증신청과 접수 -> 시험검사 및 생산현장 확인·검증 -> 인증심의 -> 결과통보 -> 약정체결 및 인증서 교부 -> 환경마크 사용 -> 인증제품 사후관리 등의 순이다.

인증신청은 환경마크 대상제품에 적합 유무 확인 후 신청인이 친환경상품진흥원에 신청·접수하며, 인증기준 적부판단을 위한 검사를 위해 담당자가 시중 또는 생산현장에서 시료를 채취·봉인한 후, 신청인은 봉인된 시료를 다음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험결과에 대한 성적서 원본을 친환경상품진흥원에 제출한다.

인증심의를 위해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시험분석 기간은 산입하지 않음)에 전문가 5인 이상으로 구성된 환경마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제품에 대한 환경마크 사용인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된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보한다. 환경마크 사용인증을 승인 받은 신청인은 인증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마크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환경마크 사용약정을 체결한다.

58) LCI 데이터베이스(Life cycle Inventory Database, 전과정분석목록정보) : 환경성적 산출시 반드시 필요한 기초 데이터로서 친환경상품진흥원은 ISO14040 절차에 따라 이를 개발중임.
 LCI 데이터베이스 정보망 : 국가기반사업 및 기초소재, 수송, 공정, 폐기 등 산업 전반에 걸쳐 구축된 LCI 데이터베이스를 관리 및 보급 확산하기 위한 네트워크

약정기간은 2년이며, 약정기간 종료 후 환경마크를 계속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종료일 이전에 환경마크 사용기준에 적합한 제품임을 확인받고 약정을 다시 체결한다. 인증제품 사후관리는 환경마크 사용 인증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확보 차원에서 인증기준 준수여부, 환경마크 무단사용 여부 등을 조사한다.

친환경상품진흥원에서는 해외 환경마크 운영기관과의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환경마크 인증업무를 상호 대행하고 있다. 이는 기업이 상대 국가의 환경마크를 취득하는데 드는 시간적 물적 경비를 절감하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해외 환경마크를 인증 받고자 하는 기업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해외 환경마크 인증기관에서 요구하는 제품시험평가 및 현장실사를 친환경상품진흥원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해외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표 5-11〉 해외 환경라벨링 국가별 상호인정 내역

국가	상호인정 내역
대만·태국 (양국 시험결과 상호인정)	*대만 그린마크 또는 태국 환경라벨을 취득하고자 하는 기업은 해당 국가의 인증기준을 따르되 인증기준에서 요구하는 시험결과를 우리나라 시험평가기관에 의뢰하거나 기 취득 시험평가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일본 (제품평가업무 대행)	*일본 에코마크를 취득하고자 하는 기업은 일본 에코마크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되 친환경상품진흥원을 통해 신청접수 및 검증을 받을 수 있음
호주 (상호인정)	*우리나라 환경마크 인증제품은 별도의 검증 없이 호주 환경라벨(Good Environmental Choice)을 취득할 수 있음 *우리나라 환경마크를 인증받지 아니한 제품은 호주 환경라벨이 정한 기준을 따르되 친환경상품진흥원을 통해 신청접수 및 검증을 받을 수 있음
중국 (제품평가업무 대행)	*중국 환경표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기업은 중국 환경표지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되 친환경상품진흥원을 통해 신청접수 및 검증을 받을 수 있음
뉴질랜드 (제품평가업무 대행)	*뉴질랜드 Environmental Choice를 취득하고자 하는 기업은 뉴질랜드 Environmental Choice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되 친환경상품진흥원을 통해 신청접수 및 검증을 받을 수 있음
일본(에코마크), 대만(그린마크), 태국(환경라벨)	*품목별 공통인증기준에 의한 상호인정(해당품목 : 토너카트리지, 페인트) *페인트, 토너카트리지에 대해 우리나라 환경마크 취득시 별도의 시험·평가를 거치지 않고 해당국의 환경마크를 인증받을 수 있음

해외 환경라벨링 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업체는 친환경상품진흥원에 사전 문의하여 신청제품의 상호인정 대상품목 해당여부를 확인한 후 인증을 신청하고, 친환경상품진흥원은 이를 해외 인증기관에 통보한다.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서면검토 및 필요한 경우 업체 현장실사를 통해 해외 인증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사하며, 기준에 만족한다고 판단되면 인증신청 검토보고서를 해외 인증기관에 발송한다.

해외 인증기관의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신청업체에 약정의사를 통지하고 신청업체는 해외 인증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사용약정을 체결한다. 인증사용약정 이후 해외인증기관이 친환경상품진흥원에게 사후관리조치를 요청할 경우 친환경상품진흥원은 인증제품에 대해 샘플테스트 또는 현장검증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사후관리조치를 취할 수 있다.

환경성적표지제도 인증 절차의 경우, 인증을 받기 원하는 제안자가 친환경상품진흥원에서 개발하는 대상제품별 작성지침에 따라 전과정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환경관리공단에 제출하면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단계별로 살펴보면, 우선 1단계는 친환경상품진흥원이 주관하는 대상제품 선정 및 작성지침 개발 단계로서 제안자가 환경성적표지 대상제품을 제안하면 -> 친환경상품진흥원에서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상제품을 선정한 후 -> 작업반에서 대상제품별 작성지침을 개발한 후 -> 대상제품별 작성지침을 고시하며 -> 제안자가 고시내용을 접수하는 순서에 따라 진행된다. 작성지침은 선정위원회에서 대상제품으로 선정된 품목에 대하여 친환경상품진흥원에서 구성한 작업반들이 ISO14040s 및 ISO14025에 부합되도록 개발하고 있다.

2단계는 환경관리공단이 주관하는 전과정평가 수행단계로서 기업에서 환경성적표지 인증신청을 하면 -> 환경관리공단에서 심사단을 구성하여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 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인증·심의한 후 -> 심의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면 -> 신청인이 환경성적표지를 사용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마지막 3단계는 사후관리 단계로서 표시광고조사와 작성지침 준수여부 조사 2가지가 있다. 표시광고조사에서는 3가지 항목을 수시로 실시하는데 첫째, 비인증제품의 표지 무단 사용 여부, 둘째, 인증기간 종료 후 표지 사용, 셋째, 표지 표시광고의 적절성 여부 등이다. 작성지침 준수여부 조사에서는 시판품 및 생산현장을 조사하여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작성지침 적합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③ Ecolabelling 관련 제도의 특징과 시사점

환경마크제도 대상품목은 사무용품, 산업용 제품, 가정용 기기 등 주로 2차 산업의 상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운영방식은 시중이나 생산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기관에 의뢰한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친화적인 제품에 라벨을 인증해주는 수준이다.

반면에 환경성적표지제도의 경우 공산품을 대상으로 제품의 원재료에서 사용 후 폐기단계에 이르는 모든 과정의 환경영향을 계량화하게 되므로 환경마크제도에 비해 철저한 인증 및 사후관리가 가능하다. 두 제도 모두 간접적인 환경보호정책이므로 소비자의 친환경제품 구매력 수준에 따라 제도의 성패가 좌우될 것이다.

기업체 입장에서는 비용증가 요인 발생으로 경영 부담으로 작용하며, 기업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인증절차 및 사후관리에 있어서 정부의 간접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수산물에 이를 적용할 경우 단순히 환경친화적인 제품에 라벨을 인증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수산자원보호라는 측면이 좀 더 고려될 필요가 있다.

4)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절약마크제도

① Ecolabelling 관련 정책방향

기후변화협약이 발효되면서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효율향상은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경제의 성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로 부상하였다. 최근 국제 원유가격 상승으로 육지와 해상에서의 자원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국제 환경협약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세계 에너지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산업과 사회구조를 에너지저소비형으로 전환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수요관리정책을 추진하는 에너지관리공단은 산업, 수송, 건물 등 모든 부문의 에너지소비효율 향상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며,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과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 환경협약에 대해 적극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산업자원부와 함께 에너지절약형 제품의 보급·확대를 위해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에너지절약마크제도·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건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 등 4가지의 에너지효

율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제도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가전기기·사무기기·조명기기·열사용기기·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를 많이 쓰는 제품과 적게 쓰는 제품을 구분하고, 이중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많이 보급하여 원천적인 에너지절약을 기하도록 하는 정책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환경라벨링에 해당하는 에너지절약마크제도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② Ecolabelling 관련 제도(에너지절약마크제도)

○ 법적근거 또는 정책적 근거

원유 등 소중한 외화로 사들인 에너지가 실제 사용하지 않는 대기상태(standby)에서 낭비되는 경우가 많다. 사무기기는 근무시간 내내 켜 있지만 사용시간은 많지 않고, 텔레비전의 경우도 전원을 꺼도 플러그가 전원에 연결되어 있으면 일정부분의 전력은 소모된다. 이렇게 대기시간에 버려지는 에너지비용은 우리나라 가정·상업부문 전력사용량의 10%를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전자제품의 보급확대와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의 홍보 등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1998년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결정에 의거, 에너지효율이 높은 제품 또는 에너지절약을 위해 노력하는 사업장·단체 등을 대상으로 1999년부터 도입되었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정부가 제시하는 절전기준에 만족하는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생산 보급함으로써 원천적인 에너지절약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출발한 제도이다.

본 제도의 근거규정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3조(특정에너지사용기자재의 보급촉진),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e-Standby Program) 운용 규정(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39호), 절전형 사무기기 및 가전기기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자원부고시)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자원부고시) 등이다.

○ 제도의 내용

동 제도는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e-Standby Program)이라고도⁵⁹⁾ 하며, 대기전력 감소를 위해 정부와 기업과의 신뢰하에 기업 자체보증으로 에너지절약제품을 보증함으로써 대기시간에 절전모드 채택과 대기전력 최소화를 유도하는 자발적협약(Voluntary Agreement) 제도이다. 제조업체 자체보증으로 절전기능

59) 대기전력 : 컴퓨터, 텔레비전등 사무기기·가전기기는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대기상태(standby)에서도 많은 전력을 소비하고 이를 대기전력이라고 부름. 대기전력소비는 상당히 많으며, 복사기나 비디오의 경우는 전체전력소비의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됨.

을 증명하며, 정부가 제시한 절전기준을 만족한 제품에 대해 에너지절약마크를 부착하며, 절전제품을 나타내는 이미지로 에너지절약마크를 사용한다(그림 참조). 마크부여 기준으로는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자동적으로 절전모드로 전환되거나, 플러그만 꽂아둔 상태에서 대기소비전력을 기준치 이하로 최소화하는 제품이다.

에너지절약마크를 사용하는 대상은 제품 또는 사업장·단체 등으로서 에너지절약마크가 부착된 제품은 에너지효율이 높은 제품이고 마크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에너지절약에 노력하는 사업장을 의미한다.

〈그림 5-4〉 에너지 절약마크



○ 인증 방법 및 절차

마크부여 대상은 에너지절약형으로 인정받은 제품,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로 인정받은 제품,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제품,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녹색에너지 가족운동본부와 약정을 한 에너지사용업체 및 단체, 에너지절약 자발적 협약 및 단체, 에너지절약 5개년계획 점검 결과 우수등급업체, 기타 공단이사장이 에너지이용 합리화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에너지절약마크 대상품목은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e-Standby Program) 운용 규정」(산업자원부고시)에 의거 정부가 제시한 절전기준을 만족하여 에너지관리공단에 절전형기기로 신고된 제품이다. 현재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팩시밀리, 복사기, 스캐너, 복합기, 자동절전제어장치, 직류전원장치, 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DVD플레이어, 전자레인지, 휴대전화충전기, 셋톱박스, 도어폰, 유무선전화기 등 18품목이 신고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연간 2천만대 이상 판매되고 현재 9천만대 이상 보급되어 있는 컴퓨터등 18품목을 대기전력을 최소화한 절전제품으로 대체시 5,900GWh(6,520억원)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고 전력생산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CO₂) 59만 탄소톤(TC)을 감축시켜 지구온난화 방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표 5-12〉 에너지절약마크 대상품목

1. 컴퓨터	(1) 컴퓨터 모니터와 별개로 작동되는 본체 모델로 데스크탑형, 데스크사이드형 등의 컴퓨터 (2) 컴퓨터 모니터 일체형 컴퓨터와 모니터가 단일장치로 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2개의 구성기기 소비전력을 개별로 측정할 수 없고 1개의 전원케이블로 콘센트에 접속되는 것으로 노트북컴퓨터 등도 포함.
2. 모니터	음극선관(CRT), 액정표시장치(LCD), 기타 디스플레이
3. 프린터	컴퓨터에서 수신한 정보를 인쇄하는 화상출력기기
4. 팩시밀리	(1) 팩시밀리 전화회선에서 송수신에 의한 정보를 인쇄하는 화상출력기기 (2) 프린터 팩시밀리 겸용기 프린터와 팩시밀리의 기능을 갖춘 화상출력기기
5. 복사기	광학렌즈 복사기와 같은 표준적인 복사기
6. 스캐너	칼라 또는 흑백의 화상을 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보존, 편집 또는 송신할 수 있도록 전자정보로 변환하는 화상입력장치
7. 복합기	복사기 기능을 기본적으로 포함하고 프린터, 팩시밀리, 스캐너 등의 기능을 갖춘 입출력기기.부가장비를 통해 프린터,팩시밀리,스캐너 등 확장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디지털복사기 포함
8. 절전제어장치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팩시밀리, 복사기, 텔레비전수상기, 비디오테이프 레코더, 오디오에 연결 또는 장착하여 사용하지 않을 때 전원을 자동 오프 시키거나 대기전력을 자동 차단하는 장치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모두 포함. 단, 부품 등 사용자가 쉽게 장착하여 사용할 수 없는 장치는 제외.
9. 직류제어장치	110 ~ 220v 입력교류전압을 출력직류전압으로 변환하는 것으로 외장형 장치에 한함
10. 텔레비전 수상기	(1) 텔레비전수상기 음극선관(CRT), 액정표시장치(LCD), 기타의 브라운관을 갖춘 칼라 텔레비전 (2) 텔레비전 비디오 일체형 텔레비전수상기와 비디오테이프레코더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 별개의 소비전력을 측정할 수 없는 기기 (3) 텔레비전 DVD 일체형 텔레비전수상기와 DVD플레이어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 별개의 소비전력을 측정할 수 없는 기기 (4)텔레비전 비디오 DVD 일체형 비디오테이프레코더, DVD플레이어가 텔레비전 수상기의 케이스에 들어 있는 일체형으로 별개의 소비전력을 측정할 수 없는 기기
11. 비디오테이프 레코더	(1)비디오테이프레코더 비디오테이프를 이용하여 화상 및 음성을 재생, 녹화하여 텔레비전수상기에 전송할 수 있는 기기 (2)비디오DVD일체형 비디오테이프레코더와 DVD플레이어가 일체형으로되어 있어 별개의 소비전력을 측정할 수 없는 기기

<표 5-12> 에너지절약마크 대상품목(계속)

12. 오디오	(1) 오디오 음악을 듣기 위해 사용하는 음향기기. 단, 휴대전화만으로 작동되는 휴대용은 제외 (2) 오디오 DVD 일체형 오디오와 DVD플레이어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 별개의 소비전력을 측정할 수 없는 기기
13. DVD플레이어	디지털다기능디스크플레이어. 고화질, 고음질의 DVD를 텔레비전수상기 등에 전송 하는 기기
14. 전자레인지	고주파 출력 1kW 이하인 가정용 전자레인지
15. 휴대전화 충전기	휴대전화기 배터리의 충전을 위한 기기
16. 셋톱박스	신호를 송수신, 처리, 변환, 기록하여 텔레비전수상기 혹은 유사 영상장치를 통해 시청하거나 컴퓨터 등에 연결하여 신호를 처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17. 도어폰	세대내의 실내기기와 실외기기 간의 호출 및 통화의 기본기능과 이외 화상 전달, 출입문의 개폐, 경비실 통화, 방범방재(가스,화재,방범) 등의 부가기능을 갖는 장치
18. 유무선전화기	무선통신 방식으로서 고정장치와 휴대장치가 상호 결합되어 통신이 이루어지는 전화기로서 교류전원 및 국선과 접속되어 통화망제어 및 신호재생의 기본적 기능과 자동응답, 발신자 표시, 스피커폰, 휴대장치 충전기능 등의 부가 기능을 갖춘 장치 또는 장치의 집합체. 유무선전화기, 무선전화기, 무무선전화기, 자동응답전화기, 무선 자동응답전화기일체형 등이 포함되며, 전원 공급이 되지않는 유선전화기는 제외

동 제도 참가 자격은 국내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로 자체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는 자이며, 참가신청은 ① 참가신청서와 ② 참가준수서 ③ 참가기업 주요현황 ④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첨부하여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하고, 참가신청을 한 후 참가증서를 교부받으면 참가사업자로 인정된다.

참가신청 후 참가사업자는 절전기준에 만족하는 e-스탠바이프로그램 제품을 에너지관리공단에 신고함으로써 에너지절약형 제품으로 분류되고, 신고는 판매시 부여하는 모델별로 하며 신고서류는 ①e-스탠바이프로그램 제품신고서와 ②시험성적서 ③제품 사진 또는 팜플렛 등이다. 현재 동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총 64개 업체이다.

e-스탠바이프로그램 제품 성능시험을 위한 지정시험기관은 기술표준원, 산업기술시험원,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

구원 등이다. 단, 일정한 장비를 보유한 기업의 경우 자체시험도 인정하고 있다.

③ Ecolabelling 관련 제도의 특징과 시사점

동 제도는 제품 사용시 소모되는 에너지를 절약함으로써 석유자원 등 에너지원의 사용을 간접적으로 감소시켜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절전형기기보급제도에 참가하여 에너지절약마크를 부착하게 되는 제품에 대해 공공기관 및 조달청의 우선구매 품목으로 선정하는 등 절전형기기 보급촉진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생산시설자금(100억원이내, 3년거치 5년분할상환) 운전자금(5억원이내, 1년거치 2년분할상환) 및 설치자금(100억원이내, 3년거치 5년분할상환) 등도 지원하고 있다.

5) 민간사례

○ 삼성전자의 삼성에코마크

삼성전자는 환경, 안전, 보건을 중요시하는 녹색경영을 실천함으로써 경영, 제품, 공정, 사업장, 지역사회의 녹색화를 추진해나가고 있다. 삼성에코마크는 이러한 녹색경영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환경문제를 새로운 사업기회로 보고 환경 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상품,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이윤창출 영역을 개척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부정적인 환경요인을 방지하고자 하는 요구를 사업기회로 포착하여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긍정적인 환경을 새로이 창조하기 위해 부가가치가 큰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적극적인 사업을 탐색하는 것이다.

삼성에코마크는 제품의 친환경 특징을 고객에게 보다 쉽게 전달하기 위한 삼성전자 고유의 마크로서 제품개발 초기부터 자원효율성, 환경유해성, 에너지효율성의 3가지 환경측면을 고려하여 개발된 친환경 제품에 사용하고 있다.

즉, 제품의 녹색화를 목표로 전 과정 환경영향과 안전을 고려한 제품의 설계, 유해물질을 함유하지 않은 환경친화 자재의 우선구매와 폐제품의 재활용체계를 운영하여 제품과 서비스의 전 과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제도이다.

우선 자원효율성이란 자원순환형 사회구현을 위한 제품의 자원절약측면, 재활용

용이성을 위한 분해성, 플라스틱 재질표기 등이며, 환경유해성이란 RoHS⁶⁰⁾ 등 유해물질 규제를 만족한 제품인지 등 제품의 제조, 사용, 폐기과정의 유해성을 고려하고, 에너지효율성에서는 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와 가장 관계가 깊은 에너지측면을 개선하기 위한 제품의 소비전력, 대기전력 측면 등을 고려한다. 에코마크의 대상 제품으로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메모리, LSI이 있다.

2. 국외사례

1) MSC의 수산물 인증

① MSC 수산물 인증의 전반적 내용

에코라벨링을 가장 먼저 도입한 곳은 MSC이다. MSC는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어업, 책임있는 어업관행을 진작시키고자 설립된 비영리조직으로써 1996년 세계야생동물보호기금(WWF)과 다국적기업인 Unilever의 합작으로 창설되었다. MSC의 목적은 환경친화적이며, 책임있는 어업관리 및 어업관행을 실천한 수산물에 보상을 하기 위해 독립 기관이 인증된 환경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이다. 인증을 받은 수산물 또는 수산식품은 해당 상품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어획되었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알릴 수 있는 라벨을 제품에 부착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된다. 이를 통해 MSC는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수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과거 지휘-통제 관리 메커니즘(command-and-control management)의 어업관리방식에서 시장 중심의 관리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소비자들은 MSC 로고가 부착된 수산물 및 수산식품을 구매하면서 깨끗한 해양 그리고 깨끗한 환경을 지지한다는 것을 생산자들에게 알릴 수 있게 된 것이다.

○ 인증방법 및 절차, 인증기관

MSC는 소비자로 하여금 환경친화적으로 생산된 수산물을 소비하도록 하기 위해 인증 원칙을 가지고 있다. 첫째 자원 고갈되었거나 고갈생태에 있는 어

60)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 EU에서 제정한 전기/전자 기기에 사용하는 유해 물질의 사용 제한에 관한 지침. 전기기기의 신제품에 납(Pb), 수은(Hg), 카드뮴(Cd), 육가크롬의 중금속과 브롬계물난연제인 PPB와 PBDE의 사용을 2006년7월1일까지 원칙으로서 비합유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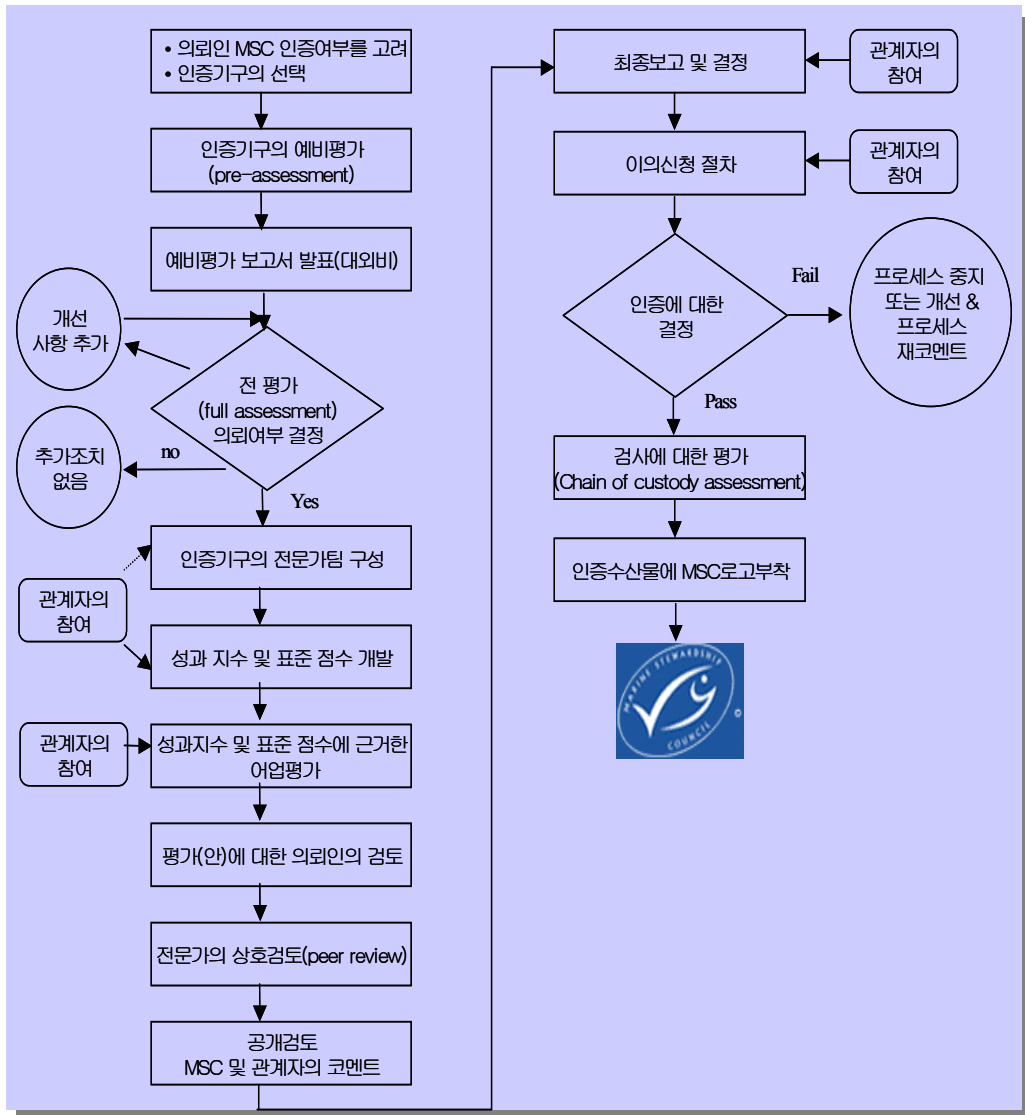
족을 어획하거나 또는 과잉어획 않는다. 또한 자원 고갈 상태에 있는 어족은 자원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산되어야 한다. 둘째, 해양 생태계 구조, 생태계의 생산성, 생태계의 기능 및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어업이 이뤄져야 한다. 셋째, 어업은 각국의 국내법 및 국제법과 기준을 존중하고 어업자원을 지속가능하고 책임있게 사용하기 위한 제도적으로 필요한 틀을 마련해야 한다. 이 같은 원칙을 근거로 MSC는 인증을 받기 전에 준수해야 할 기준을 마련하였고 기준 부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제3의 인증기관을 인허하였다.

MSC 어업 인증 기준의 3가지 원칙
① 목표어종의 상태(status of the target fish stock) ② 어업행위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Impact of the fishery on the ecosystem) ③ 어업관리시스템의 성과 및 효율성(Performance and effectiveness of fishery management system)

여기서 말하는 인증 기준이란 주어진 조건을 충족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특정 어업을 평가하는 일련의 자발적인 활동이다. 감사 완료 후, 특정어업 활동으로 생산된 수산품은 시장에서 에코라벨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하게 된다. 이렇게 MSC의 인증을 받게 되면, MSC 로고를 사용할 수 있도록 MSC가 면허해준다.

MSC의 어업인증 과정은 다각적인 측면(multi-step)으로 이뤄지는데, MSC가 인허한 인증 기구에 의해 인증이 이뤄진다. 독립인증기구가 사용하는 방법론은 목표어종, 어업행위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어업관리시스템의 효율성에 관한 문제를 투명하게 확인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절차들로 구성되는데, 다음과 같다. ① 이해관계자와의 논의 ② 평가과정에서 사용되는 운영성과 및 정보의 공개보고 ③ 운영성과조치를 포함하는 표준화된 방법론 ④ 성과개선을 위한 조건 확인 ⑤ 평가에 대한 상호검토(peer review) ⑥이의 신청이다.

〈그림 5-5〉 인증기구에 위한 어업 평가 프로세스



인증 준비과정 첫 단계는 어떤 인증기구로부터 어업평가를 받을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이다. 인증이 받기 위한 의뢰인은 정부기관, 어업협회, 지방자치단체, 어업협회 및 NGO에 공동의뢰할 수 있다. 실제 호주 서부지역의 어업위원회(락 랍스터), 뉴질랜드 호키어업관리회사(호키 어업), 미국 해상가공업자(베링해 및 알류산 열도, 알래스카 폴락 어업)의 산업조직이 될 수 있고, 영국 콜체스터 버러위원회의 Colchester Borough Council, UK) 템즈 청어, 미국 알래스카 어업부(Alaska Department of Fish and Game 의 연어 등이 관리기구가 될 수도 있다.

인증 기구 선택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점은 인증업체가 의뢰인에게 직·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조건들을 준수할 수 있는가의 여부이다. 두 번째는 무엇을 인증받을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는 결국 인증단위를 결정하는 것이다. 인증단위는 특정 어업, 특정 어족, 특별 어구·어법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시장에서 MSC 에코라벨을 부착할 수 있다.

두 번째 단계는 예비평가(pre-assessment)이다. 예비평가란 인증기구가 시행하는 최초 과정으로써 의뢰인이 MSC기준 충족 가능성에 대해 간단히 평가하는 1차 예비평가는 의뢰인의 강점과 약점을 확인하고 다음 평가단계(full assessment)로 넘어갈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이다. 예비평가보고서는 다음의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 의뢰인과 인증기구간 회의
- 현장방문에 대한 결정
- 해당 어업이 MSC의 지속가능어업에 대한 원칙 및 범위(Principles and Criteria for Sustainable Fishing)와 어느정도 일관되는지에 대한 예비 평가
- 의뢰인의 어업평가에 대비 상태에 대한 평가
- 전 평가과정에서 논의할 관계자의 확인
- 전 평가 범위에 대한 결정
- 인증 단위에 대한 합의
- 인증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잠재적 문제점 확인
- 전 평가에 대한 인용 등이다.

마지막 단계는 전 평가(full assessment)과정이다. 전평가는 MSC 기준으로 특정 어업을 상세히 평가하고 점수화하는 과정으로써 공개적인 프로세스를 거치면서 어업이 MSC의 지속가능어업에 대한 원칙 및 범위(Principles and Criteria for Sustainable Fishing)를 충족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전 평가는 다음의 과정들을 거친다.

- 평가과정에 대한 공개 발표 및 관계자와의 논의
- 평가 계획 및 전문가 팀 선정 : 인증기구는 평가팀 구성에 관해 관계자와의 논의를 거침. 하지만 이는 의무적으로 해야 할 사항은 아니며, 평가를 받는 어업에서의 관계를 통해 상당부분 결정된다.
- 성과지수(Performance Indicator)와 표준 점수 및 가중치 결정 : 평가 트리(assessment tree) 또는 평가 수직체계(assessment hierarchy)를 만들어 평가 받게 되는 어업에 적용함. 표준점수는 최하점수인 60점과 무조건 통과점수인 80점, 그리고 이론적으로 완전한 어업으로 기대되는 어업에 최고 점수 100점에 근거해 각 각의 성과지수를 만든다.

- 평가트리(가안)에 대해 의뢰인, MSC 및 관계자와의 논의 : 평가구조가 어업의 규모, 범위, 생태계, 지리 및 기술에 적합한 것인가에 관한 문제와 MSC 기준과 일관되는지를 의뢰인 및 관계자와의 피드백을 통해 평가한다.
- 현장 방문 및 정보 수집 : 해당 단계에서 의뢰인은 피평가 어업에 관해서 가능한 한 많은 정보 및 데이터를 제공해야 함. 또한 평가팀은 이 정보를 이용해서 점수화시킨다.
- 관계자의 평가 참여 : 평가 과정에서 관계자가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평가와 관련된 입증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 어업의 점수화(Scoring the fishery) : 평가팀은 어업의 정성적 평가 및 정량적 평가를 위해 사용된 분석 모델을 이용한다.
- 점수 해석(Interpreting the scores) : 피평가 어업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성과지수에서 최소 6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성과지수 60점 미만일 경우에는 인증을 받지 못한다. 또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MSC의 3가지 원칙에 대해 각각 총합 8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함. 이 때 인증조직은 피평가 어업의 개선사항을 체크하기 위해 몇 차례의 현장방문을 실시해야 한다. 인증기구 는 현장방문을 통해 발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서는 안 되며 피평가자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관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한다. 또한 인증기구는 인증서를 발행하기 전에 의뢰인과 인증기구간에 향후 조건을 충족시킬 것인지의 여부 및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가에 대해 상호 합의를 이뤄야 한다.
- 제안 검토 : 검토자에 관해서 의뢰인, MSC 및 관계자와의 논의를 한 뒤 의뢰인이 예비가안 보고서 검토하고 선정 전문가가 가안을 상호 검토한다. 관계자는 공청회 보고서(Public Comment draft report)에 대해 검토하고 코멘트한다. 최종보고서는 일단 웹사이트에 게재되면 평가과정에 참여한 자는 21일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하며 해당 기간내에 이의가 없을 시에는 최종보고서의 결정은 인증결정이 된다.
- 이의 절차 : 이의신청은 일단 인증기구에 하며, 반응이 적절하지 않다고 간주될 경우에는 MSC에 신청한다. 이의 신청이 정당할 경우에는 인증조건 및 기간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일련의 활동계획서 즉 액션플랜을 인증기구에 제출하도록 한다.

현재까지 인증을 받은 어업으로는 호주 서부지역의 랍스터(rock lobster), 영국 템즈의 청어, 영국 베리 인렛(Burry Inlet)의 새조개, 미국 알래스카의 연어,

뉴질랜드의 호키(hoki), 영국 남서부 콘월의 고등어이다. 또한 현재 7개 수산물이 MSC 평가를 완료했고, 12개 이상의 수산물이 평가를 받는 중이다. 현재 평가를 받고 있는 대표 어종은 미 남부 조지아의 이빨고기, 미 알래스카 대구(pollock) 등이다.

② MSC의 소비자 접근 확대

MSC 라벨을 부착한 수산물을 소비자가 쉽게 구매 또는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에코라벨링제 운영의 효율성의 키포인트이다. 즉, 에코라벨링의 효율성은 소비자가 라벨을 얼마나 인식(consumer awareness) 하고 있는가의 문제와 소비자가 라벨을 부착한 상품을 신뢰하고 구매할 수 있는가(trust and understanding)의 문제로 귀착된다. 소비자의 인식이란 일반적으로 성공적인 홍보(promotion)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소비자 인식은 대개 관련 이슈에 대한 대중의 이해, 관련 이슈와 상품구매의 상관관계에 대한 대중의 이해, 상품의 특성(attribute) 표시의 정확한 이해, 라벨프로그램이 제공되는 정보에 대해 소비자가 취하는 특정 행동 또는 구매 행위에 대한 이해 등 5개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또한 라벨프로그램은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될 때 소비자의 인식이 쉽게 이뤄질 수 있다.

이처럼 MSC는 에코라벨링에 대한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 세계 10개국의 105개 수산물에 MSC라벨을 부착하도록 하였다. MSC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은 미국과 서부 유럽에서 특히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특히 MSC 인증을 받은 미 알래스카의 연어는 2001년 생산금액 기준으로 7억 2천만 파운드 가치이며 소비자가 가장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이 되었다. 또한 Whole Foods Markets은 미국의 주요 자연식품점으로써, 미 전역의 130이상의 점포에서 MSC 라벨을 부착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SeaBear사는 MSC 라벨을 부착한 훈제 알래스카 연어 상품을 판매하고 있고, Vital Choice Seafoods사와 Wildcatch사는 MSC라벨이 부착된 알래스카 통조림 연어를 판매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세계 최대 식품회사인 Unilever Corporation과 알래스카 연어 5대 생산업자인 Trident Seafoods, Ocean Beauty Seafoods, Wards Cove Seafoods, Peter Pan, Icicle Seafoods가 MSC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Youngs Bluecrest and Interocean Seafoods 또한 MSC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 이 외 스위스의 미그로스(Migros Cooperative)와 코업 스위츠(Coop Schweiz)와 벨기에의 델하이츠(Delhaize), 영국의 테스코(Tesco), 막스 앤 스펜서(Marks and Spencers), 샤

인베리(Sainsburys) 등의 소매업체가 MSC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2002년 10월 독일의 고트프리트 프리드리흐스(Gottfried Friedrichs) 유통업체가 MSC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MSC 라벨 수산물을 판매하기 위해 유럽 최초의 유통체인을 가지고 있는 미그로스는 MSC 라벨을 부착한 27개의 상품이 매장에 전시되어 있으며 2001년 MSC 부착 수산물 매출이 전체 수산물 매출의 약 6%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도(2000년)에 비해 약 20% 증가한 셈이다. 미그로스는 소비자에게 MSC 상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MSC 로고와 로고의 의미를 소비자에게 인지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벨기에 117개 매장과 118개의 자회사, 148개의 소매 식품가게(grocery stores)를 가진 델하이츠(Delhaize)는 많은 환경친화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MSC 상품 판매에 매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델하이츠 상품의 25%는 미국에서 수입되고, 5.1%는 중부유럽, 0.9%가 동아시아에서 수입되고 있다. (상품회전율) 영국의 우수 유통체인점인 테스코와 샤인베리는 자체 매장에서 신규 인증 상품을 진열하기 위해 경쟁하는 업체이다. 특히 영국의 최대 수산물 소매업체인 샤인베리는 초창기 MSC 프로그램을 지원한 회사이며, MSC 라벨을 부착한 수산물을 최초로 영국 매장에 진열한 업체이기도 하다. 특히 MSC 라벨을 획득한 템즈의 청어와 코웰지역에서 나는 고등어를 계절마다 시판하고 있고, 2002년 여름부터는 알래스카 연어도 판매하고 있다. 기타 뉴질랜드의 호키도 판매되고 있다. 2001년 MSC 인증수산물의 상품회전율이 25% 증가하였다.

영국의 최대 수산물 생산업자인 Young's Bluecrest는 MSC 라벨의 잠재적 가치를 인지하고서 MSC 라벨에 근거한 완전히 신개념의 브랜드를 창출하였다. 신개념의 수산물로써 뉴질랜드산 수산물인 호키(hoki)에 빵가루를 묻힌 상품을 'Fish for life'로 부르고 있다. 이 상품에 대한 Young's Bluecrest는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되고, 평가받았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또 최근 부가가치가 높은 알래스카 연어도 'Fish for life' 브랜드로 판매되기 시작하였다. 'Fish for Life' 브랜드는 소비자에게 수산물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동시에 'Fish for Life' 브랜드의 수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어업 자원을 고갈시키는 과잉어획 방식으로 생산된 수산물은 소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MSC 인증을 받은 수산물을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커졌고 앞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유럽 유수의 식품회사의 판매 전략이 시사하는 것은 MSC 인증 수산물을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을 폭을 넓히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MSC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를 더욱 확대될 것이고, 인증받은 수산물 시장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③ MSC 인증 수산물의 효과

i) 호주 서부산 랍스터(Rock Lobster)

2000년 3월 MSC 인증을 획득한 이후 호주 서부산 랍스터는 매년 1,700만 달러 수출된다. 이는 인증을 획득하기 전해보다 수출이 약 15% 증가하였다. 랍스터 주요 수출시장은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의 아시아 시장이다. 하지만 최근 EU 시장에서 호주 서부산 랍스터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EU는 호주산 랍스터에 12%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호주 수산물의 수요를 억제하였는데, MSC인증이 높은 관세 장벽을 극복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분석된다. EU의 랍스터 시장은 캐나다산 랍스터에 8%의 낮은 관세가 부과되고 EU에 수입되는 쿠바산 랍스터에는 무관세로 통과하는 등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MSC 인증을 받은 호주산 랍스터가 경쟁우위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ii) 영국 템즈의 청어

인증을 받기 전 약 3달러 2센트 하였던 청어의 가격이 2000년 3월 인증을 받은 직후 가격이 상승해 4달러 80센트까지 올랐다. 또한 인증을 받은 첫 해 MSC 라벨에 관한 소매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청어를 생산하는 어업들에게 지급하는 가격이 최고 50%포인트 증가하였다.

iii) 뉴질랜드 호키

뉴질랜드 호키 어업이 2001년 3월에 인증을 받아 세계 최대 식품회사인 유니레버는 처음으로 뉴질랜드산 호키를 구매하였고, 당시 구매 금액이 3백만 달러를 호가하였다. 이는 뉴질랜드산 호키를 연간 4천톤이상을 구매하는 것이 되며 현지 산업에 천만불 이상의 경제적 혜택을 줄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호키어업과 관련이 깊은 뉴질랜드의 최대 수산물 업체 샌포드 그룹(Sanford Group Ltd.)의 주가는 호키 어업이 MSC 인증을 받은 직후 지속적으로 오르기 시작했다.

현재 MSC 라벨이 부착된 많은 호키 수산식품은 주로 유럽 가공업체에게 판매된다. 2001년 유럽의 9개 가공업체가 MSC 호키 생산품을 수입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2년 13개 식품이 버즈아이즈(Birdseye), 영즈블루크레스트(Young's Bluecrest), 샤인베리(Sainsburys), 이그로(Iglo)사와 브랜드체결

을 맺었다.

MSC 라벨 부착 호키의 경제적 가치는 2002년 기준 약 2,500만 달러이다. 원인과 결과를 따로 구분하기는 힘들지만 호키의 가격은 인증을 받기 전년도(2001년)에 비해 10% 증가하였다. 또한 호키의 MSC 인증의 기대와 인증 실현은 뉴질랜드 수산업계에 발전을 가져다 주는 효과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수산물 가격 변동폭이 줄이는 것 또한 에코라벨링의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MSC 상품을 구매하는 소매업체는 MSC 라벨 상품 가운데 대체할 상품 종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대체 수산물의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다른 상품군으로 대체할 수 없다. 특히 호키와 같은 흰살생선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흰살생선고기는 해덕(haddock), 대구(cod), 폴락(pollock) 등 3종류 중에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10% 내외의 가격폭에서 조정되기 때문에 가격변화가 줄어들 수 있다.

④ 시사점

MSC의 수산물 인증 및 소비자 접근을 확대 노력은 향후 국내 수산부문에 에코라벨링을 도입하게 되었을 경우 소비자에게 어떻게 접근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시사점을 주고 있다. MSC를 부착한 상품의 매출이 확대되었다는 사실과 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증대로 향후 소비가 확대될 것이라는 연구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소비자가 에코라벨링을 우선 이해하고,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서 상품을 구매할 수 있을 때 에코라벨링의 본래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에코라벨링의 본래 취지 및 기존의 라벨링과는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홍보 방법을 우선 구상해야 할 것이다.

2) FAO의 수산물 Ecolabelling 가이드라인

○ 내용분석

i) 일반적 내용

FAO의 수산물 에코라벨링은 해면에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어획된 수산물로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에코라벨링의 주체는 어업관리 및 국가의 주권 및 권리를 인정한다는 점을 상기해볼 때 국가의 개입이 바람직하며 필요하다면 지역수산기구(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 RFMOs)도 주체가 될 수 있다.

해면어획수산물의 에코라벨링 가이드라인의 원칙

- FAO의 책임있는 수산업을 위한 행동강령, WTO의 규칙 및 기타 관련 국제법과 일관되어야 함
- 국가의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관련법과 규칙들을 준수해야 함
- 에코라벨링은 자발적이고 시장지향적이어야 함
- 에코라벨링의 투명한 운영 및 공정한 참가가 보장되어야 함.
- 에코라벨링은 무차별적이어야 하며, 국제교역에 불필요한 장벽을 형성해서는 안 됨. 즉, 공정무역과 공정경쟁을 지양해야 함
- 국제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
- 에코라벨링의 가이드라인은 국제표준에 의거해 에코라벨링의 시행주체 및 인증기관이 가져야 할 사명감을 명시해야 함
- 신뢰할 수 있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감사 및 인증절차를 수립해야 함
- 형평성을 고려해야 함
- 유효성을 객관적으로 인증하기 위해서 과학적인 증거에 근거해야 하며, 자원에 관한 전통적인 지식을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함
- 실용적이고, 입증가능해야 함
- 라벨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함
- 라벨의 정보는 명료해야 함
-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최소한의 실질적 표준 및 범위 절차에 근거해야 함

FAO는 에코라벨링제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으로 인증 범위 및 인증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최소실질요건 및 범위를 제시하고 있다. 최소실질조건에는 관리시스템, 인증 대상(다음부터는 고려대상어족이라고 명명함), 어업이 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우선 관리시스템(Management systems)이란 최선의 어업관리관행(good practice) 속에서 이뤄지는 어업 행위를 말한다. 즉, 첫째 어족의 현 상태와 향후 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데이터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한다. 이 같은 데이터는 어종의 현 상태 및 트렌드를 정량적으로 예측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방법들을 적용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어족 상태에 대한 평가는 불확실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원 활용 정도를 낮추는 예방차원의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FAO는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객관적인 데이터 및 정보 수집을 통해 정부는 어업이 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을 평가하고 확인된 부정적 영향의 강도 및 가능성에 대해서 생산자에게 권고할 수 있어야 한다. FAO에서 말하는 관리시스템은 데이터 및 정보의 수집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과학적 정보가 부재하다고 해서 보존 및 관리조치를 하지 않거나 보호조치를 연기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 이 같은 문제는 위험평가를 통해 비확실성 문제를 줄여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나아가 정부는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법적,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관리시스템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효과적 메커니즘도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고려대상 어족(Stocks under consideration)이란 단지 과잉어획(over fished)된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optimal)하게 활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되는 상태를 말한다. 다시 말해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고려대상 어족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을 일컫는다. 이때 자연적 변수 또는 어업 외 다른 변수로 인해 장기적으로 생산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등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생물량(biomass)이 적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관리조치(책임있는 어업을 위한 행동강령 7조 6항)를 통해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해당 어족을 적정 수준으로 회복시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생태계 고려사항(Ecosystem considerations)이란 생태계에 미치는 어업의 부작용을 적절하게 평가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과학적 불확실성이란 해당 어족의 상태를 평가하는데 있어서의 불확실성이라기 보다는 생태계에 발생할 수 있는 가능한 한 모든 부작용을 일컫는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는 리스크 평가/리스크 관리접근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어야 하며 향후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부작용에 대해 심사숙고하기 위해 가용할 수 있는 과학적 정보 및 정당성을 입증 받은 지식을 모두 활용해야 한다. 그리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들은 즉각적인 관리 대응 또는 리스크(위험)의 심도있는 분석을 통해 반드시 해결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ii) 원칙 및 제도적 내용

에코라벨링의 원칙과 제도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크게 표준인증 수립, 독립인증기관의 인허, 그리고 어업 또는 수산식품이 필요한 기준 및 절차에 근거하여 생산되었는가에 대한 인증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준인증이란 에코라벨링제가 추구하는 목적과 동일할 수 있는데 상품 또는 상품의 생산과정과 방법이 인증을 받기 위해 충족시켜야 하는 일정 범위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독립 인증기관의 인허란 인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 있는 기관을 선정하는 활동을 일컫는다. 여기서 인증기관은 중립적이고 독립적이어야 하며, 특정 수산물이 기준을 충족시켰는가를 인증할 수 있도록 기술적, 재정적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와 유사한 조건은 인허 기관에도 적용할 수 있는데 인허기관은 인허 업무를 할 수 있는 기술적, 재정적 능력을 가져야 하며, 중립적이고, 무차별적이며, 독립적으로 상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에코라벨링제를 시행하면서 표준인증 수립과 독립 인증기관의 인허 그리고 인증 순으로 업무 추진을 할 수 있겠지만 인허와 인증은 이미 수립된 에코라벨링제의 정기적인 업무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기에 때문에 에

코라벨링과 관련된 신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표준인증을 검토하고 개정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에코라벨링 제도에 대해 다양한 지배구조가 있을 수 있다. 정부, 정부간 기구(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비정부기구, 또는 민간이 에코라벨링 시행주체가 될 수도 있고 지역적 범위를 확대하여 국제적으로 이뤄질 수도 있다. 이 때 에코라벨링의 주체(owner)가 반드시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필요는 없다. 에코라벨링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공공기관, 비정부기구 또는 민간기업 등 특별 기관이나 협회가 운영할 수 있고, 에코라벨링의 주체는 규칙 등을 마련하는 업무에 한정하되, 독립된 전문 인허기구를 만들어 인허업무를 할 수 있다.

이상 FAO의 원칙 및 제도에 대해 대략적으로 살펴보았고, 다음에서 원칙에 대한 세부 내용에 대해 상세히 살펴볼 것이다.

iii) 표준설정에 관한 원칙 및 내용

표준 설정은 해면에서 수산물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고자 하는 에코라벨링의 목적을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여기서 표준⁶¹⁾은 에코라벨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지속가능 어업의 목적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어업의 관리영역 또는 지배 시스템의 정성적이고 정량적인 요소로써 구성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어업과 해면어획 수산자원의 보호 그리고 관련 생태계에 대한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이 같은 표준은 세계 시장을 왜곡시켜서는 안 되며, 국제 교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형성해서는 안 된다.

에코라벨링 표준 개발 절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ISO/IEC Guide 59 Code of good practice for standardization, 1994 2. WTO TBT, ANNEX 3 Code of Good Practice for the Preparation, Adoption and Application of Standard 3. FAO 1998. 해면어획수산물의 에코라벨링 적용을 위한 무차별 기술적 가이드라인 개발의 가능성에 관한 기술고문 보고서(Report of the Technical Consultation on the Feasibility of Developing Non-Discriminatory Technical Guidelines for Ecolabelling of Products from Marine Capture Fisheries. 4. ISEAL. P020 Guidance on ISEAL Code of Good Practice for Setting Social and Environment Standards. Public Draft. 5. ISEAL. P020 Guidance on ISEAL Code of Good Practice for Voluntary Process and Production Method Standard-setting Procedures, Public Draft

61) 에코라벨링의 표준 근거(Normative basis)는 국제수산기구와 적용가능한 국내법에 근거해야 한다. 여기서 국제수산기구는 1982년 UN 해양법 협약(1982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의 어족 협약(1995 UN Fish Stocks Agreement), 책임있는 어업을 위한 행동강령(1995 Code of Conduct for Responsible Fisheries)등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표준을 개발하는 조직은 표준의 설정, 검토, 개정, 평가, 인증, 승인과 관련된 업무를 하며 이 같은 업무는 특화된 표준설정 기구 또는 기타 적정 기관에서 행할 수 있다. 그리고 표준 설정 기관이 없을 경우에는 표준설정 조직구조에서 독립적인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위원회와 컨설턴트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이 같은 표준 개발 조직은 몇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첫째 투명성을 견지해야 한다. 여기서 표준 개발의 투명성이란 관련 국제표준과 일관성을 유지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모든 관계자, 특히 개발도상국의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표준 개발 조직 또는 협회는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서문화된 절차를 따라야 한다. 표준의 규칙은 표준 설정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질적 분쟁 또는 절차상의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메카니즘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표준이 마지막으로 채택되기 전까지는 표준을 개발하고 검토·수정하는 모든 활동이 표준의 준비 (검토 또는 수정) 단계이다. 그리고 일단 표준이 채택되면 표준 개발 조직은 표준에 관한 내용을 즉각 공지하고 인터넷에 접속해서 볼 수 있도록 FAO는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최소 6개월에 한번씩 표준 개발에 참여한 조직이나 협회는 업무 프로그램을 발간해야 하는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표준개발조직이 발간하는 업무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 프로그램 이름 ▪ 업무 프로그램 주소 ▪ 현재 준비중인 표준 리스트 ▪ 현재 검토중이거나 개정상태에 있는 표준 리스트 ▪ 6개월 전에 채택된 표준 리스트

표준 및 표준절차의 검토 및 수정(Review and revision of standards and of standard setting procedures)와 관련하여 표준 내용은 반드시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검토 이후에 필요하다면 수정해야 한다. 그리고 인증받은 수산물이 수정된 표준에 부합되는지를 최소 3년에 한번씩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표준 수정과 관련하여 관심있는 자는 언제든지 표준 수정을 제안할 수 있어야 하는데 표준을 만든 조직은 표준 수정작업이 일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졌는지를 항상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표준 설정 절차 및 방법론은 과학 및 기술 발전 정도와 지속가능 어업의 표준마련에서 획득한 경험을 반영해서 업

데이트 되어야 한다.

표준의 유효성(Validation of standards)과 관련하여 표준의 개발 및 개정 과정은 본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지속가능 해면어업의 최소실질조건과 비교해서 적절한 절차를 거쳤을 때 표준이 유효성을 가질 수 있다. 유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표준이 지속가능 어업과 무관한 범위나 조건을 포함하고 있는 않은지를 확인해야 하며, 불필요한 교역장벽을 형성하거나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들어서도 안 된다.

iv) 인허에 관한 원칙 및 내용

인허⁶²⁾란 인증기관(certification body)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충분한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주는 것이다. 인증기관을 인허함으로써, 인증기관(회사)은 특정 수산물(또는 수산식품)이 지속가능한 어업의 표준에 부합되어 생산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인증했음을 확인하는 기능을 한다.

인허는 자체 규칙 및 인허시스템과 같은 관리방법에 기반을 두어서 이뤄지기 때문에 인허기관의 인증업체에 대한 평가 업무는 무차별적이고, 공평하며, 정확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인허기관은 다음의 몇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무차별성(Non-Discrimination)이다. 인허기관은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모든 인증 주체에 공개해야 한다. 특정 협회 또는 그룹 내의 멤버십 또는 지원 기관의 규모에 상관없이 무조건적인 접근이 이뤄져야 하며, 이미 인허받은 인허기관의 수와도 무관해야 한다. 이 때 개발도상국 인허기관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개발도상국에 지원하는 재정 및 기술, 기술이전, 교육·훈련, 과학협력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FAO는 명시하고 있다. 둘째 독립성, 공정성, 투명성(Independence, impartiality, transparency)이다. 인허기관은 반드시 독립적이고 공정해야 한다. 즉 조직구조, 재정 및 민간업체 또는 공공업체로부터 지원받는 내용에 있어서 투명성을 견지해야 하고 임직원들은 투자자 및 관계자와 독립적이어야 한다. 또한 상업적, 재정적, 또는 인허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자가 인허결정을 내렸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외부 인사 또는 외부 기관에 인허, 인허유지, 인허연장, 인허축소, 인허연기, 인허철회에 대한 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 세 번째 조건은 인적 자원 및 재정자원(Human and Financial Resources)이다. 인허기관은 적절한 재정

62) 인허의 실질적 근거는 ISO의 인증기관의 인허 및 평가를 위한 일반적 조건의 61항(Guide 61. General Requirements for assessment and accreditation of certification/registration bodies. 1996)이다.

자원을 확보하고 인허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운영 및 활동에서 야기될 수 있는 부채를 커버할 수 있는 적절한 장치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인허기관은 교육, 훈련, 전문 지식 및 인허업무 경력을 가진 충분한 인적자원을 확보해야 하며 인증과정에 관계된 자의 관련 자격, 훈련, 경력에 관한 정보는 인허기관이 유지·보관해야 하며, 교육 및 경력에 관한 기록을 업데이트해야 한다. 인허기관이 관련 업무를 외부 기관 또는 외부인사에게 외주로 줄 경우에는 인허기관에 상응하는 자격을 외부기관에 요구해야 한다.

이 같은 조건을 갖춘 인허기관은 지원자 및 인허된 주체에게 인허 및 인허절차에 관한 상세한 설명, 인허에 필요한 서류, 인허기관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상세내용을 제공해야 한다.

인허의 유지 및 연장(Maintenance and Extension of Accreditation)와 관련하여 인허기관은 공식인증기관의 현 상태 또는 운영상의 변동사항에 대해 지체 없이 고지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공식 활동 범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 또는 인증기관이 명시한 관련 범위와의 부합성에 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인허기관은 재평가할 수 있는 절차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공식인증기관이 인허 표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재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한 데 재평가 기간은 5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FAO는 규정하였다.

v) 인증에 관한 원칙 및 내용

인증이란 수산물이 관련 표준을 준수하고, 일련의 적절한 검사가 있었음을 제3자가 서문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확인하는 절차이다. 지속가능한 방식의 해면어업을 위해 인증은 에코라벨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인증은 또한 특정 수산물 또는 수산식품이 지속가능어업 표준에 따라 생산되었음을 구매자와 소비자에게 확인시켜주는 기능을 한다. 즉 모든 요소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후 이뤄지는 인증과정을 통해 에코라벨이 진실한 정보를 전달한다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다.

인증⁶³⁾의 범위(Scope)에는 두 가지 타입이 있다. 첫째는 수산물 자체에 대한 인증이며, 두 번째는 수산물이 생산-가공-판매 과정에 적용되는 일련의 관리방식에 대한 인증이다. 이 같은 인증 범위에 대해 두 가지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첫째는

63) 인증의 실질적 근거는 ISO guide 62, General Requirements for bodies operating assessment and certification/ registration of quality system. 1996, ISO/IEC Guide 65, General requirements for bodies operating product certification systems. 1996, WTO.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Article 5.임

부합성의 평가(confirmity assessment)로써, 수산물이 표준 및 표준인증범위를 준수하였는가를 평가하는 것이고, 둘째 검사 평가(chain of custody assessment)는 수산물 가공, 유통, 마케팅 단계에서 인증 수산물을 확인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부합성 및 검사에 대한 평가는 공식인증기관이 수행해야 하는데 인증기관이 갖추어야 할 조건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립성 및 공정성(Independence and impartiality)이다. 인증기관은 에코라벨링 주체로부터 법적, 재정적으로 독립되어야 한다. 또한 인증기관과 인증기관의 평가 및 인증업무에 참여하는 직원(인증기관이 직접 고용되었는지, 하부 계약에 의해 고용되었는지 상관없음)은 평가받게 될 수산물 또는 검사시스템에 대한 어떠한 상업적,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인증기관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인증결정 및 인증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인증 허가, 유지, 연장, 축소, 연기, 취소에 대한 권한을 외부기관 또는 인사에게 위임할 수 없다. 두 번째 조건은 무차별성(non-discrimination)이다. 지역수산기구, 국영, 준국영, 비정부수산물관리기관 등의 관리주체에 상관없이 모든 어업은 인증기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수산업의 규모나 범위 또는 이미 인증받은 어업의 수에도 상관없어야 한다. 세 번째 조건은 인적자원 및 재정자원(Human and financial resources)이다. 인증기관은 인증시스템 운영을 위한 적절한 재정자원 및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운영 또는 운영과 관련한 활동에서 야기될 수 있는 채무를 커버할 수 있는 적절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특히 어업의 표준 부합성 여부 확인 및 일련의 검사를 평가하기 위해서 충분한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자 또는 전문 기술 보유자 또는 경력자를 확보해야 한다.

지금까지 인증기관이 갖추어야 할 조건에 대해 서술하였다. 지금부터는 인증기관이 책임 및 보고(Accountability and reporting) 내용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인증기관은 법적주체로써 수산물 인증 및 수산물 검사에 대한 인증에 대해 효과적이고 명료한 지원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특히 인증기관은 인증을 받기 위해 지원하는 자에게 인증에 필요한 상세내용을 제공해야 하며 인증주체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상세 내용을 유지·제공해야 한다. 또한 인증기관은 제공 서비스(quality)에 대한 규정된 목적 및 의무, 제공 서비스의 절차 및 지시서에 관한 매뉴얼, 제공 서비스에 대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시스템에 대해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인증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인증기관은 모든 절차를 감시할 수 있는 내부 감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이와 관련

외부 감사를 받았을 경우에는 외부감사 결과는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인증 기관은 또한 수수료(certification fees)와 관련하여 의뢰인을 위해 서문화 된 수수료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수수료체계를 구성하고, 인증평가에 대한 요율을 결정할 때, 인증기관은 특히 평가의 정확성 및 진실성, 수산물 및 검사체계의 규모 및 범위, 의뢰인의 무차별적 서비스 제공, 개도국의 특수상황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인증에 대한 유효기간은 5년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관리시스템의 경우에는 3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재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수산업의 관행 또는 관리 관행의 변동사항을 특히 주목해야 한다. 또한 표준을 변동시키는 새로운 상황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 인증을 갱신(Renewal of Certification) 할 경우에는 전(前) 모니터링과 감사, 재평가 내용에 근거하여, 수산물은 인증 효력을 최고 5년에 한번씩 갱신할 수 있으며, 관리체계는 3년마다 갱신이 이뤄질 수 있다. 그리고 인증기관은 인증 범위를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중지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해야 한다.

인증 범위의 두 번째에 해당하는 수산물의 생산-가공-판매 과정에 적용되는 관리방식에 대한 인증검사(Maintaining the Chain of Custody)의 경우 검사 절차는 중요 이동(transfer)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 이 때 거래되는 수산물 또는 수산식품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각 중요지점(transfer)에서 인증 받은 수산물 또는 수산식품과 비인증수산물을 반드시 구분시켜야 한다. 인증 수산물 또는 수산식품의 수령인이 선적, 영수증과 송장과 관련된 모든 검사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지를 인증기관은 확인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인증기관은 감사방법 및 감사 시기(periodicity)를 규정하는 절차를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감사 시기(periodicity)는 기술적 과정이나 인증 수산물의 가격 및 물량 등의 위험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 이렇게 관리 방식에 대한 검사를 시행한 후 인증기관은 검사/감사의 날짜, 보고서의 책임자의 성명, 검사/감사 장소 및 주소, 의뢰인이 검사요건을 잘 수행했는지에 관한 논평 등의 내용을 최소한 담아야 한다.

인증과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인증 주장, 심볼, 로고이다 이와 관련하여 인증기관, 인허기관 또는 에코라벨링의 주체는 수산물 또는 수산식품이 지속가능한 어업방식으로 생산되었음을 상징할 수 있는 심볼이나 로고의 사용에 관한 조건 혹은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절차를 문서화해야 한다. 이 때 에코라벨링의 심볼이나 로고는 지속가능한 수산업과 관련 있어야 하며, 무역장벽을 형성하거나 소비자의 이해를 저해해서도 안 된

다. 인증기관, 인허기관, 에코라벨링 주체가 인증을 받았는지를 나타낼 수 있는 심볼 또는 로고를 사용하도록 허가받았을 경우 인증받은 수산물 및 수산식품은 심볼 또는 로고를 사용할 수 있다.

인증 로고 외에 발행되는 인증서에는 에코라벨링 주체 또는 인증기관의 이름 및 주소, 인증받은 주체의 이름 및 주소, 인증서의 발행 날짜, 인증 내용, 인증 유효 조건, 발행처(issuing officer)의 서명 등을 담고 있어야 한다.

3) EC

EU의 ‘수산물 시장 미래 커뮤니케이션 위원회’(Commission Communication on the Future for the Market on Fisheries Products)는 1997년 12월 처음으로 에코인증의 논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뒤이어 회원국들은 EC가 에코 인증에 대한 공통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에 동의하였지만, 각 국의 시행 방식에서는 차이를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이루었다. 2002년 위원회는 커뮤니티액션플랜(Community Action Plan)을 채택하여 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공동어업정책(Common Fisheries Plan)에 통합시키고, 수산물에 적용하는 에코라벨링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하였다.

2002년에 개정된 공동어업정책(Common Fisheries Policy)은 해양자원을 경제적·환경적·사회적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EU가 수산물에 에코라벨링을 도입하고자 했던 배경에는 공동어업정책의 개정안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환경보호라는 영역에 수산업 부분도 포함시켜야 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에코라벨’을 부착한 많은 상품이 국제사회에서 경쟁, 무역, 소비자 보호정책과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EU의 수산물 시장 미래 커뮤니케이션 위원회는 국제회의에서 논의되는 에코라벨에 관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WTO의 교역 및 환경에 관한 위원회(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에서 검토하였던 틀 안에서 에코라벨의 필요조건을 검토하고 있었다.

에코라벨링제를 통해 수산업도 환경의 영역이라는 것을 소비자에게 각인시키고, 어업이 환경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가 인지하면서 환경 및 해양을 보호할 수 있도록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같은 의미에서 에코라벨링과 같은 시장 지향적 인센티브는 생산자로 하여금 더욱 책임감 있는 어업관행을 지향할 수 있도록 유인할 수 있다. 국민 모두가 해양 자원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EC 위원회는 생산자가 에코라벨링을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에코라벨링제 자체를 민간에 전담시킬 수 없다는 것이 EU의 입장이다.

따라서 EC 위원회는 일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수산물 및 수산식품 에코라벨링 정책을 개발하되, 에코라벨링제 시행으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EC의 수산물 에코라벨링제 정책은 다음 내용을 원칙으로 한다. 첫째 지속가능한 어업⁶⁴⁾ 및 생태계의 보호를 위해 에코라벨링은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모니터링하고, 나아가 해양 자원의 지속가능성이라는 문제를 소비자에게 널리 인지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둘째 에코라벨링제는 가이드라인과 원칙을 따라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소비자들은 확인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소비자의 구매 결정은 생산방법, 상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상품특성과 관련이 없는 내용에 근거할 수 있기 때문에 제품과 관련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넷째, 오도된 에코라벨링의 사용은 반드시 근절하고 상품에 부착되는 라벨은 개별 기업의 홍보 수단 이상이어야 한다. 다섯째 모든 에코라벨링은 차별없이 정보의 공개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자발적으로 에코라벨링이 시행될 경우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규칙을 잘 준수하였는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EC는 에코라벨링 시행에 대한 세 가지 안을 제시하였다.

① 제1안 : 정부 무개입, 민간주도의 에코라벨링 시행(Non-action)

제1안은 에코라벨링이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자유롭게 개발되도록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다. 현재까지 EC는 에코라벨링과 관련해 어업에 대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 제1안이 현 상황과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제1안의 장점은 다음의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원산지 및 어획 방법을 수산물 또는 수산식품에 기재하는 민간차원의 노력과 지속가능성과 어업자원의 보호를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이 분명히 구분될 수 있다. 즉, 에코라벨링 제도의 지배구조 또는 운영주체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민간차원에서 에코라벨링에 대한 폭넓은 개발을 유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64) 공동어업정책의 어업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보존에 관해 2002년 12월 20일 Eouncil Regulation (EC) No 2371/2002은 지속가능한 이용을 다음과 같이 정의함 ; 어족의 미래 이용을 침해하지 않고, 해양 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가지지 않는 방식으로의 어족 이용을 의미함(exploitation of a stock in such a way that the future exploitation of the stock will not be prejudiced and that it does not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marine ecosystems)

둘째 민간 주도로 자발적으로 에코라벨링이 시행되면, 변화하는 환경에 보다 유연하게 변화할 수 있다. 정부 주도로 에코라벨링을 시행하게 되면 수산물 교역의 제재조치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 최선의 관리방법으로 수산물이 생산되었음을 소비자에게 홍보할 수 있고, 그릇된 내용으로부터 에코라벨링제를 보호하기 위해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대중과 산업계가 모두 노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non-action의 단점도 있다. 첫째, 독립된 인증 및 인허에 대한 검증이 없기 때문에 에코라벨링제에 대한 신뢰성이 의문으로 남을 수 있다. 둘째 유기산 라벨링 등 여타 산업에서 도입하고 있는 라벨링제와 달리 수산 부문에 적용되는 에코라벨링의 합의된 정의가 없다는 것이다. 에코라벨링이 어족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인증하는 체제라는 의견이 있는가하면 일부에서는 에코라벨링이 어업생산 방법 또는 특정 어법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중점을 둔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이다. 즉, 에코라벨링제에 대한 최소한의 조건이 부재한 상태에서 일부 기업들은 자사 상품에 대한 과대광고에 치우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셋째 EC 회원국이 에코라벨링제를 개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서로 상이한 정책들을 시행하게 된다면 EC 시장을 분열시킬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 에코라벨을 부착한 상품의 등장으로 일부 EC 회원국 또는 경제 운영체들은 에코라벨링의 자체 표준을 마련할 것이고 이는 상품의 자유로운 유통을 저해할 수 있다. 또한 에코라벨링이 민간의 독점적인 영역으로써 간주될 경우, 공적 자금 투입 계획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무역을 왜곡시키는 국가보조금으로써 비쳐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공적 자금의 투입은 개발도상국들의 불만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에코라벨링이 민간에 의해 단독으로 운영될 경우 정부는 개발도상국에게 재정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하기 어렵게 된다.

마지막으로 에코라벨이 부착된 상품에 대한 EC의 마케팅 접근 방법이 부재할 수 있다. 이 같은 단점 때문에 처음부터 에코라벨링을 민간이 시행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EC가 에코라벨링에 대한 일반론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위원회는 제1안으로 제시한 non-action을 권고하지 않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하였다.

② 제2안 : EC의 단일 에코라벨링제 시행 위한 표준 마련

EC는 정부 또는 공공부문에서 관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에코라벨링 표준을 수립할 것을 제안하였다. 단일 계획하에 정부는 에코라벨링 계획의 개발, 운영, 관리 등 전 분야에 참여할 수 있다.

제2안의 접근법에 대해 3가지 근거를 제시하였는데, 첫째 에코라벨링의 평가 및 어족의 자원상태를 정부가 관리할 때 야기될 수 있는 잠재적 차이 때문에 EC는 단일 에코라벨링 계획이 수산자원 관리라는 측면에서 정부의 특권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둘째, 민간에서 주도하는 에코라벨링은 상품간 차별화로 인해 시장을 분열시킬 수 있는 한계점을 가진다. 셋째 EC에서 시행하는 단일 에코라벨링제는 서로 경쟁하는 에코라벨링에서 야기될 수 있는 혼돈을 피하고 더 높은 수준의 환경표준, 독립된 검증 및 부가된 권한을 통해 에코라벨링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EC는 제2안에 대한 주장 근거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다양한 주체로 운영되는 에코라벨링은 상호 경쟁하는 가운데 평가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고, 에코라벨링에 적용되는 범위를 소비자에게 분명하게 전달함으로써 소비자의 혼란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정부 차원에서 관리되는 단일 에코라벨링은 다음과 같은 많은 문제를 나타낼 수 있다.

환경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굳이 정부가 에코라벨링을 주도할 필요는 없으며, 어법의 종류 또는 일부 어종에 대해 보완적이며 자발적인 인증 시스템을 시행함으로써 자원의 지속가능성을 유도할 수 있다. 나아가 EC에서 단일 에코라벨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표준들이 EC의 법안들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에코라벨을 부착한 상품은 소비자들에게 큰 차별성을 주지 못할 것이다. 실제로 에코라벨링의 표준이 에코라벨링에 적용가능한 법안 이상의 기준을 요구할 때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EC가 자체적으로 에코라벨링제를 수립할 경우에는 각 개별 어업에 대해 무엇을 인증할 것인지 우선 결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어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단일 기준(표준)이 없을 경우, 이는 논란을 불러 일으킬 수 있고, EC 회원국들은 관리 정책과 인증 표준 사이에 존재하는 모순점에 휘말릴 수 있다. 하지만 어떤 표준을 사용하든지 간에 늘 승자와 패자가 있기 마련이다. 예를 들면 안전한 생물학적 기준점을 벗어난 어업들의 경우 일정 기간동안은 에코라벨링에 지원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EC 어업당국은 책임 회피를 모면하기 힘들 것이다.

나아가 공개적으로 정보를 관리·통제하는 에코라벨은 평가, 인증, 준거 표준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행정자원을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해 상당한 공적 비용이 투입될 수 있다. 따라서 제2안은 가능성이 없는 안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EC 수역내의 많은 어족들이 안전한 생물학적 한계점을 벗어나 있다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상황을 만들 수 있다. 즉, Council Regulation(EC) No

2371/2002의 제3조 (e)항에 명시된 ‘지속가능한 이용(sustainable exploitation)’에 대한 표준은 예방적 접근방법으로 수산물을 오랜 기간 관리한 국가의 수산물이 유리하게 취급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이유로 인해 위원회는 수산물에 대한 EC내 단독으로 운영하는 에코라벨링제도는 바람직하지 않고, 실용적이지도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민간이 에코라벨링제 시행에 따른 혜택을 누리고 동시에 위험을 감수하겠다고 할 경우에 정부의 역할은 공정 경쟁, 정보의 객관성, 어족의 적절한 관리 및 보존 등과 같은 공공정책의 목적을 저해하지 않을 정도로만 한정하고 민간부분에 역할을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③ 제3안 : 자발적인 에코라벨링 시행을 위한 최소조건 수립

제3안은 시장이 주도해 에코라벨링을 시행할 수 있도록 EC가 최소한의 조건을 명시하는 것이다. 에코라벨에 대한 최소한의 조건만 준수할 경우에는 공공 및 민간이 자유롭게 에코라벨링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의 개입은 에코라벨의 등록 및 최소조건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역할에 한정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최소한의 조건이란 기술적, 제도적 측면과 절차상의 문제로 구분할 수 있다.

제3안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3안은 수산업계 또는 수산업 관리자의 행동이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소비자에게 증명할 수 있는 실질적 유연성과 다양성을 가진다. 따라서 에코라벨링은 업계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역할을 하며 업체 스스로 에코라벨링을 적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둘째, 왜곡된 경쟁 및 잘못된 정보로 인한 오해 등의 리스크를 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3안은 에코라벨링 시행에 대한 안전망(safety-net)을 제공하며 소비자들에게 적절한 보장을 해 줄 수 있다. 셋째, 에코라벨링은 수산업계 또는 에코라벨링에 관심 있는 경제적 파트너, 중소기업 또는 개발도상국에도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민간에서 쉽게 시행할 수 있고 비용 부담도 적게 든다. 넷째, 이미 민간에서 자체 운영되고 있는 에코라벨링의 경우에는 최소한의 조건을 충족하면 쉽게 에코라벨링을 인증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상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제3안의 단점이 있다. 첫째, 최소 조건은 환경보전 정책의 현 실무에 근거해야 한다. 다년간의 관리 계획을 모든 수산업에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초기의 최소 조건을 무차별적으로 적용한다면 EC의 환경보전정책은 요구사항이 많거나 매우 까다로운 수 있다. 따라서 에코라벨링의

적용범위는 과학적 지식 및 지금까지의 경험에 근거하되 에코라벨링의 조건을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업그레이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시장에서 에코라벨을 부착하고 있는 모든 상품이 동일한 방식으로 지속가능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못한다는 점이다. 일부 계획은 어획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또 일부는 생태계 보호 차원을 강조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적정 수준에 따라 지속가능성을 보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셋째, 에코라벨의 모니터링은 관리 및 인증을 운영할 수 있는 특수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업관리당국은 자체적으로 관리 및 인증 기술을 익혀야 한다. 마지막으로 EC는 관련 EC 법의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감독능력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4) 결론

지금까지 MSC의 인증방법 및 소비자 접근확대를 위한 노력, FAO의 해면어획수산물 에코라벨링 가이드라인을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에코라벨링을 적용을 위한 EC의 논의 사항을 살펴보았다.

에코라벨링을 가장 먼저 도입한 MSC는 환경친화적이며, 책임있는 어업관리 및 어업관행을 실천한 수산물에 보상을 하기 위해 독립 기관이 인증하고 라벨을 부착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수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과거 지휘-통제 관리 메커니즘(command-and-control management)의 어업관리방식에서 시장 중심의 관리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MSC는 수산물 인증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제시하였다. 독립인증기구는 관계자와의 논의를 거친 뒤 표준화된 방법론을 통해 특정 수산물을 인증하기 위한 평가를 거친 뒤 상호검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 같은 MSC의 절차는 FAO의 해면어획수산물 가이드라인의 모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FAO는 우선 에코라벨링의 주체에 대해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 및 지역수산기구(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 RFMOs)와의 협력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FAO는 MSC보다 보다 구체적으로 에코라벨링을 시행하기 위한 필요한 구체적 인증 범위 및 최소실질요건 및 범위를 제시하고 있다. 인증을 평가하기 위한 최소실질조건은 관리시스템, 인증 대상, 어업이 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으로 구분하여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관리시스템(Management systems)이란 최선의 어업관리관행(good practice) 속에서 이뤄지는 어업 행위

를 말하는 것으로서 어족의 현 상태와 향후 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데이터 또는 정보를 수집 및 관리를 전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량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어족 상태에 대한 평가는 불확실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원 활용 정도를 낮추는 예방차원의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FAO는 보고 있다. 고려대상 어족(Stocks under consideration)이란 단지 과잉어획(over fished)된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optimal)하게 활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되는 상태를 말한다. 생태계 고려사항(Ecosystem considerations)은 생태계에 미치는 어업의 부작용을 적절하게 평가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과학적 불확실성이란 생태계에 발생할 수 있는 가능한 한 모든 부작용을 일컫는 것으로서 리스크 평가/리스크 관리접근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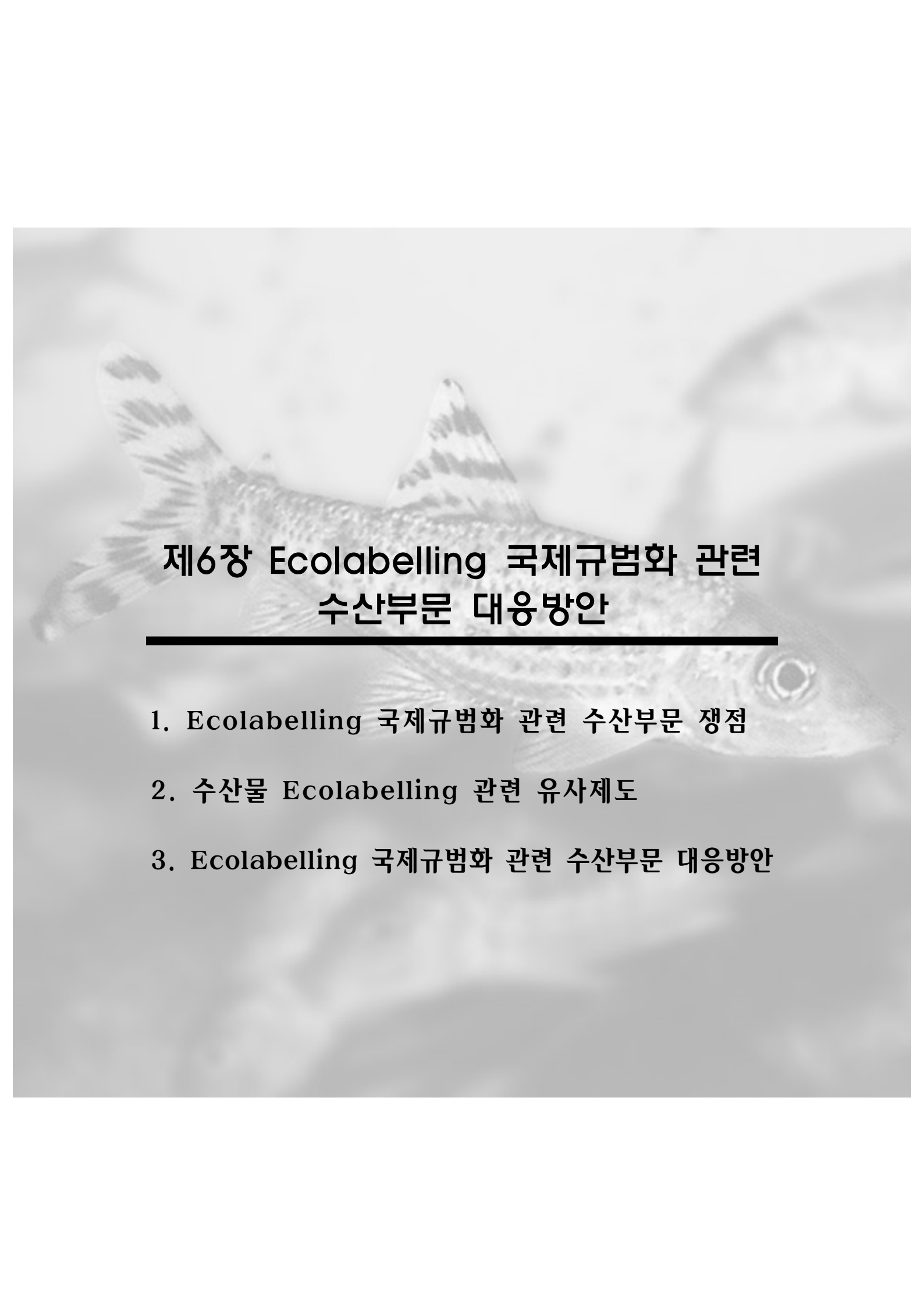
또한 FAO는 표준인증 수립, 독립 인증기관의 인허, 인증 등 에코라벨링의 원칙과 제도에 관해 매우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표준인증이란 에코라벨링제가 추구하는 목적과 동일할 수 있는데 상품 또는 상품의 생산과정과 방법이 인증을 받기 위해 충족시켜야 하는 일정 범위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독립 인증기관의 인허란 인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 있는 기관을 선정하는 활동을 일컫는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보고내용, 기록유지 내용, 인증의 유효성 등에 관한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이 같은 원칙 외에 에코라벨링제에 관한 지배구조에 관해서도 FAO는 언급하였는데 정부, 정부간 기구, 비정부기구(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또는 민간이 에코라벨링 시행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에코라벨링의 주체(owner)가 반드시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필요는 없다고 하면서 에코라벨링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공공기관, 비정부기구 또는 민간기업 등 특별 기관이나 협회가 운영하고 에코라벨링의 주체는 규칙 등을 마련하는 업무에 한정하되, 독립된 전문 인허 기구를 만들어 인허업무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같은 국제사회의 움직임 속에서 EC는 1997년 12월 처음으로 에코인증의 논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뒤이어 회원국들은 EC가 에코 인증에 대한 공통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에 동의하였지만, 각 국의 시행 방식에서는 차이를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이루었다. 하지만 2002년 위원회는 커뮤니티액션플랜(Community Action Plan)을 채택하여 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공동어업정책(Common Fisheries Plan)에 통합시키고, 수산물에 적용하는 에코라벨링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EC는 에코라벨링제를 통해 수산업도 환경의 영역이라는 것을 소비자에게 각인시키고, 어업이 환경 생태계에 미

치는 영향을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인지시키면서 환경 및 해양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같은 의미에서 에코라벨링과 같은 시장 지향적 인센티브는 생산자로 하여금 더욱 책임감 있는 어업관행을 지향할 수 있도록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EC 위원회는 생산자가 에코라벨링을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에코라벨링제 자체를 민간에 전담시킬 수 없다는 것이 EU의 입장이다.

따라서 EC 위원회는 일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수산물 및 수산식품 에코라벨링 정책을 개발하되, 에코라벨제 시행으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자발적으로 에코라벨링이 시행될 경우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규칙을 잘 준수하였는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EC는 에코라벨링 시행에 대한 세 가지 안을 제시하였다. 제1안은 에코라벨링이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자유롭게 개발되도록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고 제2안은 정부 또는 공공부문에서 관리할 수 있는 에코라벨링의 표준을 수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제3안은 시장이 주도해 에코라벨링을 시행할 수 있도록 EC가 최소한의 조건을 명시하는 것이다. 에코라벨에 대한 최소한의 조건만 준수할 경우에는 공공 및 민간이 자유롭게 에코라벨링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EC는 세 가지 안에 대해 비교·분석한 뒤 에코라벨링이 자발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소 조건을 수립하는 제3안이 가장 적절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제3안은 운영 측면에서의 융통성을 가지고 있고, 비용면에서 운영주체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해양 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등의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EC 위원회는 유럽회의(Council of Europe), 유럽국회(European Parliament), 유럽국제 및 사회위원회(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를 초청해서 본 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공동 논의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어업 및 양식 자문위원회와의 논의를 통해 과학적·기술적 지원 작업도 병행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제6장 Ecolabelling 국제규범화 관련 수산부문 대응방안

1. Ecolabelling 국제규범화 관련 수산부문 쟁점
2. 수산물 Ecolabelling 관련 유사제도
3. Ecolabelling 국제규범화 관련 수산부문 대응방안

1. Ecolabelling 국제규범화 관련 수산부문 쟁점

Ecolabelling의 국제규범화 추진에 대응하여 고려될 수 있는 주요한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Ecolabelling의 개념 및 적용범위에 대한 국제대응문제이며, 다른 하나는 Ecolabelling의 수산부문 국내대응 문제이다.

1) Ecolabelling의 개념 및 적용범위에 대한 국제대응문제

① Ecolabelling 수산부문 국제규범화 협상과제

에코라벨링의 개념 및 적용범위에 대한 국제대응 문제는 FAO COFI에서 논의되고 있는 “해면어획 수산물의 에코라벨링 가이드라인”을 비롯한 전체 수산물에 대한 에코라벨링의 국제규범화는 다양한 방법으로 수행되고 있는 기존의 수산업 관행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FAO 가이드라인은 국가가 에코라벨링의 시행 주체가 되는 것을 바람직하게 여기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지역수산기구와 국가가 공동으로 FAO에서 제안한 가이드라인과 일관되게 에코라벨링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시행을 위해서는 가이드라인의 구체화 및 비관세장벽화 방지, 어업관리비용의 증가에 대한 보완조치, 저수준 인증 남발의 방지, 자원평가 및 어로기술의 차이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가간 불평등 요인을 해소하는 것이 제도도입의 전제조건일 수 있다.

수산부문 에코라벨링을 가장 먼저 도입한 MSC에서 주장하는 세 가지 원칙, 즉 ①목표어종의 상태, ②어업행위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③어업관리 시스템의 성과 및 효율성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는 여전히 용이하지 않은 쟁점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 MSC는 비영리조직으로 설립된 세계야생동물보호기금(WWF, 1996)과 다국적기업인 Unilever의 합작으로 창설되었는데, MSC는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수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과거 지휘-통제 관리메커니즘의 어업관리방식에서 시장중심의 관리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부착된 수산물 및 수산식품을 구매하면서 깨끗한 해양 그리고 깨끗한 환경을 표시한다는 MSC 로고에 대한 신뢰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남는다.

EC의 수산물 시장에서 에코라벨링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단일관리 방식의 수산물 에코라벨링제도를 확립하고자 하였는데, 지금까지 EC는 ①어업 또는 어획방법 등 정확히 무엇을 인증할 것인가, 또한 단일 라벨을 사용할 것인가 ②에코라벨링의 자발적 시행을 원칙으로 하되,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모순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③어업인, 가공업자,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어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에코라벨링의 가능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EC는 고민하고 있다. EC는 에코라벨링의 세 가지 대안 중에서 최소조건을 수립하는 제3안이 가장 적절하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이 제3안을 중심으로 향후 유럽회의(Council of Europe), 유럽국회(European Parliament), 유럽국제 및 사회위원회(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를 통하여 제기된 문제들을 공동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 EU 수산물 수출국 입장에 있는 우리나라의 모니터도 필요하다.

이상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FAO, MSC, EC의 논의는 향후에도 해양생태계에 부정적이지 않은 어구 및 어법은 무엇이며, 역으로 해양생태계에 긍정적인 어구 및 어법은 어떠한 것인가를 규명하여야 할 것이다. 또 해면어획수산물 중에서도 연안어업과 근해어업을 구분할 것인가, 양식어업, 내수면 어업 및 내수면 양식어업은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등에 대한 많은 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FAO COFI 등 국제기구의 논의의 장에서 논의될 경우에는 WTO 수산보조금 논의와 같이 자국의 수산업 특성에 따라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에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어구 및 어법이며, 더 나아가서 수산물을 생산·가공·유통시키는 어떤 행위가 해양생태계에 긍정적인가를 구체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국제기구의 논의과정에 우리나라의 수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우리 수산업에 유리한 규범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저층 트롤어업과 같은 어업방법은 해양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어업관행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현행 조업방법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② Ecolabelling 제도화와 수산자원관리

Ecolabelling의 기본목적은 수산자원의 관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어업을 하게끔 하게 하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수산자원의 개발이용은 한 나라의 수산자

원 관리정책의 목표이자 세계적인 추세이다. 특히 2002년 8월 26일부터 9일간 남아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세계정상회의(WSSD)'에서는 어류를 포함한 해양생물자원의 지속적 이용 및 보존을 향후 과제로 확인하였고, 가능한 경우에는 2015년까지 긴급하게 최대지속생산량(MSY) 수준까지 회복한다는 시한을 정한 바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 볼 때는 날로 감소하는 수산자원을 회복시켜 지속가능한 어업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원관리와 적극적인 자원조성이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단순한 사업물량의 확대가 아닌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과 그 결과를 중시하고 있다.

FAO 제26차 Ecolabelling 기술협의회에서 합의된 가이드라인 중 에코라벨링의 최소구비요건과 기준으로써 관리체계(Management System), 대상어족(Stocks under consideration), 그리고 생태계 고려(Ecosystem consideration) 등으로 크게 세 가지 분류로 나누고 있다. 이 중에서 「대상자원」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조건으로 자원이 남획(overfished)되지 않아야 하고, 어업자원량의 최적 사용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을 유지해야 하며, 현세대 및 차세대가 이용 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더 나아가 대상자원평가에 있어 어로 행위외의 자연재해 및 어업생산성의 장기적 변화와 같은 변수를 고려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남획 기준이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와 같은 변수를 고려한 대상자원의 적정한 사용이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등이 국제규범화를 위한 주요한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③ Ecolabelling 제도화와 국제무역(자유화, 차별화)

선진국들은 Ecolabelling의 초기 계획은 '어업자원의 지속적 이용'을 위해 라벨을 부착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라벨 부착된 상품이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줄 경우에는 라벨을 부착하지 않은 상품을 수출하는 국가는 시장에서 외면당함으로써 무역장벽을 경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개도국들은 어업자원의 지속적 이용에 대해서는 이미 FAO의 '책임 있는 수산업 규범' 등 국제적인 규범들이 발효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Ecolabelling제도를 이용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으며, Ecolabelling제도가 무역장벽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좀 더 넓은 범주에서 에코라벨링을 살펴보면 환경라벨링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환경라벨링이 어떻게 무역장벽으로서 역할을 할 것인가, 그리

고 가능한 무역장벽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날 것인가에 논의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환경라벨링은 소비자의 구매의사 결정에 의존하는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제도로서 원칙적으로 구속력 있는 요건 또는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자발적인 표준이 무역활동을 제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무역에 관한 일반적인 규범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환경라벨링 제도가 국가간 상호인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무역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여러 국가로부터 중복 인증을 받거나 수입업체가 인정하는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기업은 환경라벨링 인증에 따른 시간과 비용의 발생으로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되며 그 결과 실질적인 무역제한조치의 하나로 작용될 수 있다. 현재는 환경라벨링 인증제품의 국제무역이 미미하여 심각한 무역영향을 초래하고 있지 않으나,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고 환경라벨링이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제품선택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향후 국제무역에서의 그 역할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서로 다른 프로그램을 가진 국가간의 무역에 있어서 비관세 무역장벽으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일반적으로 환경라벨링제도는 자발적이고, 비교적 적용될 수 있는 제품범주가 적고, 시장에서 소수의 제품만 인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입제한이나 관세, 수입규제 등과 같은 정부의 강력한 무역정책에 비해 영향이 적을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러나 환경라벨제도는 강제규범에 의한 무역효과를 나타내지는 않지만 상품의 소비형태, 라벨부여기준 충족을 위한 비용부담 요인, 각국별 소비자의 선호도에 따라 간접적인 비관세 무역장벽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현재 국가별로 시행중인 환경라벨제도는 대부분 자발적인 권고규정으로 운영되어 있어 수입품에 대한 강제인증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환경친화적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 선택에 따라 시장 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국가별로 다른 환경라벨 대상제품의 범위와 그 기준을 충족하는데 따른 부담증가도 무역제한 효과를 발생시킨다. 즉, 라벨 부여대상 제품 범주 및 그 기준의 선택은 국가별로 자원의 제약이나 특정한 제품특성 선호도와 같은 지역적 여건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수입품에 상대적인 작용을 하여 외국 기업의 참여가 제한되므로 수입제품에 차별적 무역효과가 발생한다.

또한 무역상대국이 라벨부여기준으로 제품의 생산공정 및 방법(PPMs)이나 전과정평가(LCA) 기법을 채택할 경우는 통상 각국의 기존 생산방식이 반영되므

로 상대국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경제적 부담이 증가되어 외국 기업의 시장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특히 개도국의 경우 선진국의 PPMs, LCA요건 충족을 위한 자본과 기술부족으로 경쟁력이 저하되고, 제품의 PPMs, LCA를 통한 기업의 고유한 영업비밀 노출은 국제무역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현재는 환경라벨 부착제품의 국제거래가 미미하고 그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높지 않아 환경라벨 프로그램이 심각한 무역영향을 초래하지는 않지만,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고 환경라벨이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제품선택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게 됨에 따라 장래에 환경라벨이 국제무역에서의 역할이 유의적이게 될 전망이다.

환경라벨링제도가 무역에 미치는 주요 영향은 아래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i) 환경라벨링제도는 환경라벨 부착상품의 가격과 미부착 상품의 가격을 동일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환경라벨이 부착된 상품의 시장점유율을 높여야 환경라벨을 획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상쇄할 수 있다. 그렇지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환경라벨링제도의 요건에 부합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상쇄시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수출경쟁력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ii) 일부 환경라벨링제도의 내용에 수입국의 기업이 개발한 특정 중간물질이나 특정 생산과정의 사용을 요건으로 하고 그 중간물질이나 생산과정의 수입국 기업의 지적소유권의 대상인 경우에는 무역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

iii) 환경라벨 부착대상인 상품범주의 선정과 그 상품이 갖추어야 할 기준을 결정 하는데 있어서 통상 당해지역의 환경적 조건을 반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지역적 조건들을 외국의 기업들이 충족시키기는 어렵다. 환경라벨을 부착하기 위해서는 LCA의 방법을 사용해야 하지만 통상 제품의 여러 특성중 특정단계에 있어서 하나 혹은 여러개의 특성만이 강조되는데 그치게 되므로, 결국에는 여러 특성중 하나를 선택하는 가치관정을 요구할 수 밖에 없으므로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iv) 절차적인 측면에 있어서 수입국 환경라벨링 제도의 투명성 부족으로 외국 기업에 대해 부당한 무역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 환경라벨링 제도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환경라벨 부착대상 제품의 범주 및 제품의 기준 설정과정에 외국의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의 기업들은 그러한 환경기준의 선정 등의 과정에 접근하지 못하며, 각 수입

국의 환경라벨제도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

④ Ecolabelling 제도화와 개발도상국 적용 예외 문제

자본력이 많은 선진국은 정책 이행과 실현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에 비해 유리한 것이 사실이다. 막대한 자본력은 곧 경쟁력을 의미하고 그 경쟁력은 바로 정책의 실현에 한발 다가감에 유리한 것이 현실이다.

최근 현대 산업화의 발달로 인하여 현재 전 세계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급격히 늘어났다. 대기오염과 온실가스의 배출로 인한 지구 온난화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지구를 살리자는 세계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이것은 교토의정서라는 결과물을 낳게 된 것이다.

교토의정서란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에 따른 책임에 대한 것을 경제적으로 환산하여 이산화탄소의 배출권 판매라는 정책을 실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의도는 좋으나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늘이는 제품에 대한 기술적 개발이 필요한 것은 자명하다. 자본력이 충분한 선진국의 경우는 기술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여 도쿄의정서에 대한 대비를 차근차근 진행해 나간다 하지만 소득수준이 낮은 개발도상국의 경우는 당장 시급한 식생활의 문제도 해결하기 힘든 상황에서 신기술의 개발에 투자를 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선진국들과 개발도상국들의 차이를 두어 교토의정서의 적용 시기에 차별을 두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우리는 세계 환경 보존을 위한다는 동일한 시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동일한 맥락으로 현재 세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에코라벨링 제도는 한 국가의 단독적인 이득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도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보존해야 할 수산자원에 대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FAO의 26차 회의에서 채택된 해면 어획수산물의 에코라벨링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부, 국제기구, 비정부기구는 에코라벨링제도에 참여하고자 하는 개도국에게는 적극적인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으나, 이 같은 개발도상국 우대조치는 에코라벨링을 도입하려는 선진국으로부터 개도국에게 특혜를 제공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에코라벨링의 문제는 무역의 문제를 불러일으키며 국가의 이익에 직접 관련된 사항이 될 수도 있다. 국가의 이익과 세계 환경보존의 기로에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간의 이해와 타협이 절실히 필요한 문제이기도 하며, WTO 도하개발아젠다에서도 개발도상국에 대한 우대조치가 명문화되기도 하였다.

2) Ecolabelling 국제규범화의 수산부문 국내대응문제

① Ecolabelling의 수산부문 도입 문제(여부, 시점)

Ecolabelling의 국내 제도화 문제는 우선 Ecolabelling제도를 국내 수산부문에 도입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친환경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기 쉽게 제공함으로써, 친환경상품(식품)에 대한 구매 및 소비를 활성화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소비자 선호에 부합하는 친환경 제품의 개발·생산 유도에 목적이 있는 Ecolabelling의 국내 제도화는 도입의 시점 문제는 있으나, 도입에 대한 당위성은 재론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

현재 EU를 비롯한 전 세계 40여개 국가에서 Ecolabelling을 국내시장에 적용을 하고 있으며, 이 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 크게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도 1992년 4월부터 Ecolabelling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주로 공산품을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수산부문에는 아직 적용하고 있지 않다. 최근 WTO체제의 확대·강화와 더불어 선진국을 중심으로 에코라벨링을 기술무역장벽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이 제도가 기술무역장벽화의 도구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세계의 수산국가와 마찬가지로 수산자원 관리 메커니즘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우리나라의 수산부문에 그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메커니즘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국제사회에서는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핵심으로 하여 에코라벨링 개념을 도입하고자 직·간접적인 시도가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수산부문에서는 FAO 수산위원회(FAO-COFI)의 “해면어획 수산물에 대한 에코라벨링 가이드라인”과 MSC(Marine Stewardship Council)의 에코라벨링을 들 수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수산업 부문에 있어서 Ecolabelling의 도입은 국제사회의 동향과 기존의 수산자원관리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친환경적인 수산물의 생산을 유도하고, 친환경적인 수산물의 수출(수출차별화수단)과 수입(수입관리수단)을 촉진하기 위해 Ecolabelling의 도입은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다만 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현장에 직접적으로 제도화하는 시점은 가능한 어종 및 업종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이러한 시점은 FAO 가이드라인의 논의동향을 고려하고, 또한 참여자의 합의하에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② Ecolabelling의 국내 제도화 문제

만약 수산업 부문에 있어서 Ecolabelling의 도입을 시도한다고 하더라도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Ecolabelling의 법제화는 어떻게 할 것인가?

둘째, Ecolabelling의 도입 범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셋째, Ecolabelling의 인증방법과 범위(기준)는 어떻게 할 것인가?

넷째, Ecolabelling의 인증비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다섯째, Ecolabelling의 인증을 관리하는 인증기관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이다.

㉠ Ecolabelling의 법제화 문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제표준화기구의 분류에 의한 Type I (ISO14024)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법률', Type II (ISO14021)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Type III (ISO14025)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운영하고 있다.

수산부문 Ecolabelling 도입은 (가칭)우수수산물제도나 수산물 이력추적제와 연계시켜 정책적으로 도입하는 방법과 법률에 의한 도입방법이 있다. 법제화에 의한 Ecolabelling 도입의 경우에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존의 법률에 의거 수산업 및 수산물의 생산-유통의 특성을 반영한 개정 법률에 의거하여 도입하는 방법을 상정할 수 있으며, 다른 방법으로는 수산부문만의 독자적인 법률 제정을 통하여 추진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환경부가 Type I (ISO14024)의 운영근거로 삼고 있는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 관한법률'의 경우에는 공산품 중심의 운영체제로 1차 산업 특히 수산부문에 적용에는 많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만약 법제화를 통하여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수산물품질관리법의 활용 및 수산부문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별도의 (가칭)친환경수산업육성법 또는 (가칭)수산물에코라벨링지원에 관한법률 제정을 통하여 추진할 것인가를 주요 쟁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또한 법제화에 대한 관계자의 반대가 매우 강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는 것이 주요한 쟁점으로 제기된다.

㉡ Ecolabelling의 도입 범위(대상어종, 업종)

에코라벨링의 도입은 에코라벨인의 인증 기준에 따라 적용 가능한 어종 또는 업종, 역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어종 또는 업종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에코

라벨링의 도입 범위는 원칙적으로는 전 어종을 대상으로 하되, 우선 제도 적용의 가능성이 있는 어종 및 업종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선정에 있어서는 관계자의 참여의사가 가장 중요하다. MSC의 수산업 인증기준에서도 제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는 어종으로 과학적으로 또는 정량적으로 분석이 가능한 어종을 대상으로 해야 할 것이며, 자율관리어업과 같이 자발적인 수산자원 관리시스템하에서 어업행위를 하여 어획되는 어종이나 TAC 어종 등을 우선 적용범위로 활용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에코라벨링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어종 및 업종에는 우리나라의 수산업 현실을 고려할 때 상당한 한계가 있다.

㉓ Ecolabelling의 인증방법과 범위

FAO의 인증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에코라벨링 인증에는 수산물 자체에 대한 인증과 수산물의 생산-가공-판매 과정에 적용되는 일련의 관리방식에 대한 인증이 있다.

즉, 수산물과 수산물 관리에 대해 개별 인증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증을 위해서는 부합성의 평가(confirmity assessment)로 수산물이 표준 및 표준인증범위를 준수하였는가를 평가하는 것과 과정평가(chain of custody assessment)로써 수산물 가공, 유통, 마케팅 단계에서 인증 수산물을 확인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라벨이 부착되어 소비자에게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되었음을 알려주는 수산물 및 수산식품은 두 가지 타입의 평가 및 인증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안된다.

㉔ Ecolabelling의 인증원칙과 기준

일반적으로 Ecolabelling이란 상품이 환경에 배려된 것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라벨의 총칭이다. 그런데 에코라벨링은 용어의 개념 또는 본질에서의 차이보다는 인증방법, 인증기관의 주체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

*Protecting environment, Encouraging environmentally sound innovation and leadership, Building consumer awareness of environmental issues*의 세 가지 에코라벨링의 기능에 조화되는 수산물 에코라벨링의 원칙과 기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원칙과 기준은 ISO 에코라벨링의 일반원칙과 MSC의 원칙 등이 있는데, 수산물 에코라벨링의 원칙은 국제기준에 조화되고 우리나라의 수산업 현실에 맞는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TypeⅡ(자기선언적 에코라벨링)와 같이 기업의 자의적인 환경성 주장은 객관적으로 사실여부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국제표준화기구는 ISO 14020의 원칙을 규정하였다. 또한 추가적으로 효율적인 에코라벨링의 운용을 위하여 ISO 에코라벨링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도입하고자 하는 수산부문에 에코라벨링에 대한 인증원칙과 기준도 작성되어야 한다. ISO 에코라벨링 일반원칙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자발성
- ISO 14020 원칙 준수
- 신청기업의 환경법률 및 관련법률 준수 의무
- 제품 전과정 환경영향을 고려한 인증기준의 개발
-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다른 제품과 식별할 수 있는 인증기준의 개발
- 달성가능하며 측정가능한 수준의 인증기준 개발
- 기준개발시 합목적성 및 제품 환경성과 기반평가
- 인증기준 적용기간 설정 및 이에 따른 수정·보완
- 인증대상제품군 선정 및 인증기준 개발단계에서 참여개방성
-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 인증기준 준수평가
-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단계에서 투명성의 확보
- 국제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애효과 제거
- 인증신청 및 기업참여의 개방성
- 과학적·공학적 원칙에 근거한 인증기준 개발
- 부당한 외부영향으로부터의 프로그램의 독립성
- 인증수수료의 적합성 및 형평성
- 습득한 정보의 기밀 유지
- 상호인정의 추구

㉔ Ecolabelling의 인증기관

Ecolabelling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인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증기관이 필요하다. 현재 공산품 에코라벨링을 관장하고 있는 친환경상품인증원과 같이 수산물 에코라벨링을 관리할 인증기관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공산품 에코라벨링을 관장하고 있는 친환경상품인증원을 활용할 것인가, MSC와 연계하여 수산물 에코라벨링 인증을 담당하는 (가칭)수산물친환경인증원을 설립할 것인가, 국제기준(FAO 에코라벨링 가이드라인과 MSC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한국형 수산물친환경가이드라인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 운영할 독자적인 (가칭)수산물친환경인증원을 설립할 것인가 등에 대한 결정 문제가 있다.

⑥ Ecolabelling의 인증비용

Ecolabelling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바와 같이 여러 단계에 걸쳐 평가 및 검증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검증을 위해서는 인력과 시간, 그리고 과학적인 평가 기술이 필요하며, 인증 후에도 인증을 받은 에코라벨링의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인증을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에코라벨링의 인증 및 운영, 사후관리를 위한 비용은 신청 수수료에 의해 충당하고 있다.

이상에서 검토한 에코라벨링 국제규범화에 대한 쟁점 이외에도 Ecolabelling 제도의 한계도 지적되고 있다. Ecolabelling제도는 이론적으로 Ecolabel 부착으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환경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이 더 높은 가격(Premium Price)을 지불함으로써 생산자들이 보다 높은 영업이익을 올리고 환경친화적인 생산방법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나, 이 제도가 그 기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 가지 조건, ① 소비자들이 환경라벨이 부착된 제품을 차별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하고, ② 라벨이 부착된 제품에 대한 실질적인 지불의사능력이 있어야 함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소비자들의 조건에 대한 국제적인 조사와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Ecolabelling제도의 기대효과, 즉 이 제도의 필요성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현재까지 진행된 실증분석(미국과 노르웨이의 소비자들 환경라벨링 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소득이 높을수록 지불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소득이 낮을수록 환경라벨링이 부착된 상품에 대해서는 차별화를 두지 않고, 높은 가격도 지불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과연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 혹은 심지어 선진국에서조차 Ecolabeling제도에 대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 수산물 Ecolabelling 관련 유사제도

수산물 Ecolabelling이란 상품으로서 수산물이 해양생태계를 배려한 것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라벨의 총칭이며, 에코라벨은 환경을 배려하는 소비자에게 있어서는 수산물 선택에 있어서 주요한 의사결정수단이며, 환경의식이 약한 소비자에게 있어서는 동기부여의 효과를 부여해주는 수단이다.

소비자에게 수산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유사한 제도로 수산물품질인증제도, 원산지표시제도, HACCP인증, 수산물 이력추적제 등이 활용되고 있다. 에코라벨링제도와와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몇 가지 제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수산물 품질인증제도

수산물 품질인증제도는 1993년 초에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해 제정된 「수산특산물 품질인증제」(수산청 고시, 1993.2.22)를 근거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공동이익을 제고시키기 위해 추진되었다. 정부가 가치를 인증한 수산제품에 대해 증표를 부착하여 시장에 출하함으로써 생산자는 제품 차별화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소비자는 안전한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며, 동시에 외국산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되는 사례를 방지하는 간접적 효과도 거둘 수 있다.

품질인증대상 선정 기준은 우선, 전통성과 대중성이 있는 상품, 상품화할 때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상품, 보전·계승 및 발전에 필요한 상품으로 선정 대상 수산물은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거 수산물심의회에 회부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대상품목과 대상 품목에 대한 개별 품질기준을 고시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다.

수산물 품질인증 표시 및 표시 방법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고시(2001-13호) 제 10조의 규정에 따라 표시하는데, 수산물 품질인증 60개 품목과 수산특산물 품질인증 9개 품목은 “품(品)” 마크와 함께 산지, 품명, 생산 년도, 무게, 생산 조건, 등급 및 업체명, 대표자를 표시하며, 수산전통식품 43개 품목은 “물레방아” 마크와 함께 품명, 원료명, 내용량, 제조년월일, 유통기한, 업체명, 대표자 등 제품·초장·용기의 크기·형태 및 주변의 도안 등을 고려해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하고 있다.

㉡ 원산지표시제도

수산물 원산지표시는 수입 자유화에 따른 수산물 수입이 증가하면서 국산으로 둔갑되어 판매되는 등의 부정유통 사례가 늘어나자 수산물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어업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91년 7월 1일 수산물 원산지표시제도를 도입·시행하였다.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국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과 수입수산물로 구분하며, 국산 수산물 중 수산물의 경우에는 처리 형태를 불문하고 수산물을 산것, 신선·냉장, 냉동, 건조, 염장, 염수장한 수산물로 분류하며, 비식용 수산물은 원산지 표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입 수산물은 대외무역법 제23조제1항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공고한 품목이며, 대외무역관리규정의 개정('04.6.30, 산자부 고시 제2004-66호)으로 수입할어에도 원산지표시제를 도입하고 있다. 또한 국산 수산가공품 중 젓갈류(멸치젓, 액젓, 기타 젓갈류)도 원산지 대상품목으로 확대하였다(수산물원산지표시업무처리 요령 개정 '04.7.15, 해수부고시 제2004-40호, 시행 '04.9.1).

원산지 표시 사항은 국산 수산물의 경우, 원양산을 제외한 수산물은 “국산”으로 표시하고 품목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연근해산”이나 그 수산물을 생산한 시·군명 또는 해역명을 표시하고, 국산 수산물 중 원양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이 어획한 수산물은 “원양산”으로 표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역명을 함께 표시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국산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방법은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포장에 인쇄하거나 스티커, 전자저울에 의한 라벨지 등으로 부착하고, 포장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풋말, 꼬리표 등으로 표시하며, 원산지 표시 의무자는 국산 및 원양산인 경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자이며, 수입산의 경우에는 수입 수산물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판매업자가 원산지 표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대외무역법 제23조).

그런데, 원산지표시제도는 최종제품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생산-유통과정의 정보가 기록·저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식품 관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의 원인을 추적하기가 어렵다.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란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위해물이 혼입 또는 잔류하거나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생산·가공 등 각 단계를 중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말한다.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의해 기록·관리되는 사항은 가공공장의 명칭 및

주소, 기록일자 및 시간, 공정을 수행한 사람의 이름이며 그 밖의 정보는 관찰되는 때에 기록한다.

모든 기록은 해당제품을 생산·가공한 후 냉장품은 최소한 1년, 냉동품은 최소 2년 동안 가공시설에 보관하며, 사용 장비 또는 가공공정이 해당 제품의 생산·가공에 적합한지 여부를 기록한 기록은 최소 2년 동안 그 가공시설에 보관해야 하며, 장기간 작업을 중단하거나 기록의 보관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적당한 장소에 옮겨 놓을 수 있으나, 조사·점검 시에는 이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HACCP 이행 업체는 시설 및 생산·가공되는 제품이 다음의 위생관리 항목에 적합한 위생조건 및 위생관행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해야 하며, 이에 대한 기록을 유지·관리해야 한다. 이처럼 HACCP는 국내에서 시행되는 제도 가운데 위생·안전 측면에서 가장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생산-가공 과정의 정보 기록 및 사후 모니터링까지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HACCP는 수출 촉진을 위해 생산자가 자발적으로 위생·안전문제를 관리하기 때문에 의무 불이행이나 위반 사례가 빈번하지 않다. 그러나 HACCP는 생산-가공단계까지는 정보 기록 및 위생관리가 엄격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유통단계에 관한 관리가 미흡한 점이 있으며 이 단계에서 상품 생산-가공정보가 유실될 가능성도 높다.

④ 수산물 이력추적제

우리나라에서 식품 이력추적제 또는 수산물 이력추적제는 새로운 정책사업으로 최근에 새롭게 도입된 개념이다. 이력추적제는 “원인규명을 위하여 역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의미로 1996년 영국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광우병의 원인 규명 단계에서 요청된 시스템으로 병원균을 보유한 문제의 육우를 찾기 위하여 역추적 한다는 의미로 탄생한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traceability’란 ‘추적하다’의 ‘trace’와 ‘가능성’의 ‘ability’가 합해진 말로 원래의 의미는 ‘추적가능성’이라고 해석되며, ‘산지에서 식탁까지’ 식품의 모든 생산·유통·가공 과정을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력추적제의 기본구조는 시스템 측면에서 크게 생산이력정보, 유통이력정보로 구분할 수 있으나, 실제로 모델을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다. 정보의 기록, 관리, 전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시스템 으로서는 팩스를 이용한 기록저장 및 공개시스템, 기존 유통업체의 내부네트

워크, 기존의 정보시스템과 인터넷 활용 등을 들 수 있는데, 생산-유통 참여자의 직접 기록과 팩스에 의한 전달방법, 바코드와 핸드폰 또는 인터넷에 의한 전달방법, 전자칩(RFID) 전달방법 등을 들 수 있다.

이력추적제의 기록·관리·제공하는 정보는 반드시 기록·관리되어야 할 필수정보와 생산자가 적극적으로 기록·관리하는 자발적 정보로 구분할 수 있으며, 필수정보는 식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추적을 가능하게 하고 추적을 바탕으로 신속한 원인규명과 문제식품을 시장으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정보이다. 자발정보는 소비자와 생산자와의 심리적 거리감을 해소시킴으로써 다른 사업자 생산자와 차별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적 정보이다.

이와 같이 수산물 이력추적제는 수산물 생산단계에서부터 소비자의 식탁에 이르기까지 수산물의 흐름을 기록, 관리하여 네트워크화함으로써 모든 생산·유통·가공 과정을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 확인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 5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양식굴, 양식김, 양식넙치에 적용하고 있으며, 2006년도 2차 년도에 10개 품목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농산물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이력추적제를 규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수산물 이력추적제는 법제화하지 않고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상기의 관련 제도들은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비해 생산자 또는 유통인이 가지고 있는 많은 수산물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그 방향성은 유사하지만, 제도적 범위, 인증방법, 표시방법, 제도적 목표 및 영향면에서는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수산물 이력추적제의 기본 시스템과의 연계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3. Ecolabelling 국제규범화 관련 수산부문 대응방안

이상의 검토에서 수산물 Ecolabelling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논의동향과 국내외의 적용사례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Ecolabelling 제도화 관련 주요 쟁점 및 과제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수산부문 Ecolabelling 국제규범화에 대비한 논의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정책담당자가 의사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하나의 정책수단으로 Ecolabelling의 활용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여기에서는 Ecolabelling의 국제규범화에 대응한 국제협상 및 국내도입을 위

한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우선 수산부문 Ecolabelling 제도화의 효과 및 도입 타당성을 규범적으로 제시하고, 다음으로 국제규범화에 대응한 수산부문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며, 마지막으로 Ecolabelling 수산부문 도입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1) 수산부문 Ecolabelling 제도화의 규범적 타당성

모든 정책이나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그 정책이나 제도가 집행 후에 예상했던 결과에 미치지 못하거나 불필요한 사업의 추진이 시행이 되어 재정적 운영에 비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고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요소들을 미리 제거하기 위해 이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필요하다.

Ecolabelling 도입의 타당성 분석모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경제적 타당성은 투자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을 비교함으로써 당해 사업의 경제적 수익성 내지 투자효율을 판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Ecolabelling과 같은 공공부문의 성격을 가진 사업의 추진 목적은 민간기업의 사업추진 목적과는 달리 이윤의 성격보다는 전체 사회구성원의 후생의 증가에 있으며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손익분기점분석과 순현재가치법, 내부투자수익률법 등이 있으나 제도 도입비용이나 경비절감 등은 실제적으로 산출이 가능하지만, Ecolabelling 제도 도입에 의한 효용 또는 편익은 Ecolabelling을 도입하면서 발생하는 소비자의 신뢰, 이미지 제고, 만족도 등의 무형의 요소들로서 측정이 매우 어렵다.

다음으로 제도적 타당성을 살펴보면 실제로 Ecolabelling을 시행하는 기관의 성공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으로 가능한 기술의 존재여부, 제도 개발요원의 실력, 예산, 개발 위험, 활용 가능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한 방법론을 기존의 유사한 사례를 찾아 비교해 보는 사례연구, 가장문제를 크게 발생시킬 수 있는 예상조건들을 모아 최악의 경우를 예측한 사례를 분석하는 최악 사례분석 등을 들 수 있다.

법적 타당성을 살펴보면 Ecolabelling제도 도입시 발생 가능한 위반, 침해, 또는 법규들을 분석하여 개별 Ecolabelling제도에 대한 법적 저촉여부를 분석한다. Ecolabelling제도 도입에 대한 법적 타당성 분석은 기존의 식품위생법, 수산물품질관리법, 수산업법, 농안법 등 관련 법률 체계와의 저촉 내지 중복, 보완여부를 검토한다.

그러면 과연 수산부문 Ecolabelling의 도입으로 인한 수산물에 대한 에코라벨을 표시하여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규범적 효과에 한정하여 이론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Ecolabelling제도를 도입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기술의 발달로 인한 어획량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써 어류 품종의 멸종 및 수자원 환경의 오염에 대해 인식을 하고 어자원 및 환경보호를 하기 위함에 있다 하겠다. 이것은 생태계와 종 다양성 보호를 촉진한다.

둘째, 어자원의 지속성 유지면에서 볼 때 멸종위기의 자원보호는 경제적 가치의 문제를 떠나서 해양 생태계 보존의 의미가 매우 크다.

셋째, Ecolabelling제도의 도입은 자율경쟁적인 자원의 효율적이 관리를 촉진하여 다음 세대가 이용하도록 보장하며 화석연료와 같이 재생이 불가능한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장려한다.

넷째, 친환경적인 수산식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현시대의 인체에 유해한 각종 식품속에서 사업체는 틈새시장을 구축 또는 강화할 수 있고 긍정적인 회사의 이미지를 소비자들에게 심어줄 수 있다.

다섯째, 생활환경에 자연스럽게 친환경의 이미지를 심어줌으로써 제품선택에 있어서 환경문제를 고려한 소비선택의 소비자 지식을 높여준다.

여섯째, Ecolabelling제도의 도입은 인적, 경제적, 시간적, 물질적으로 많은 비용이 지불되는 제도이다. 국가간의 무역장벽의 역할도 될 수 있으며 개발도상국의 제도 도입에 대한 고려도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그에 대한 정황보다도 위에 언급된 더 많은 이점을 얻을 수 있다.

2) Ecolabelling 국제규범화 대비 수산부문 기본방향

Ecolabelling의 규범화 문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자원의 지속적 이용과 친환경적인 산업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나라의 수산업에 있어서도 동 제도의 도입은 국제적으로는 협상대책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국내적으로도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 및 환경친화적인 수산물 생산 및 유통, 그리고 수출입 관리를 위한 하나의 정책대안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수산부문에 Ecolabelling을 하나의 규범으로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누가, 언제,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는 많은 선택지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수산부

문에 Ecolabelling을 도입해야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에 두어야 하며, 이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하나의 정책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 실천방향으로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에코라벨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원회복계획'과 '수산물 이력추적제'와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국제사회에서는 현재 규범화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므로, 구체적인 도입 범위 및 접근방법에 대해서는 향후 관련 업계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그 속도를 조절하여 자발적이며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Type I 제3자 인증의 자발적 수산물 에코라벨링에서 TypeIII(환경성적표시제도) 계량적 인증제도로 추진되도록 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특히, 소규모의 어업인이나 수산기업들은 Ecolabelling 도입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기초적 인식은 하고 있더라도 새로운 제도 도입에서 발생할 비용 및 노력을 투입할 충분한 인센티브를 가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수산부문 Ecolabelling 도입에 대해 어업인 스스로가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인 시행을 도모하도록 하기 위한 동기부여를 위해 정부차원의 계몽 및 홍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 차원의 홍보 활동으로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했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인식시키면서 Ecolabelling을 적용한 상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

초기 단계에서 소비자에게 Ecolabelling에 대해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킨 홍보 전략은 생산자 및 수산물 가공업체에게 Ecolabelling을 자사 제품의 차별화 전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제품 차별화를 통해서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3) Ecolabelling제도의 수산부문 도입방안

① 추진목표

수산물 Ecolabelling제도를 도입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에 두어야 하며, 이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하나의 정책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국제사회에서는 현재 규범화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므로, 구체적인 도입범위 및 접근방법에 대해서는 향후 관련 업계의 의견수

를 통하여 그 속도를 조절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수산부문의 에코라벨링제도는 MSC(Marine Stewardship Council)와 FAO의 수산부문 에코라벨링제도를 들 수 있는데, 양자 모두 해면 어획수산물 을 대상으로 에코라벨링제도를 상정하고 있으며, 생산현장에 적용되기에는 많은 검토를 필요로 하는 수준이다. 또한 향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양식수산물 및 내수면 수산물(어획물, 양식물)에 대한 준비도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우선 도입 대상품목에 있어서도 영세 어업인보다는 대 EU 수산물 수출에 주력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의 80~90%가 일본이나 유럽시장에 집중되어, 수산물 수출 기업들은 해외 시장에서 안전성 및 Ecolabelling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음을 잘 인식하고 있으므로 동 제도의 도입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없을 것이다.

② Ecolabelling의 국제규범화에 대한 협상방향

수산부문의 에코라벨링제도는 현재 MSC(Marine Stewardship Council)와 FAO의 수산부문 에코라벨링제도를 들 수 있다. 양자 모두 해면 어획수산물을 대상으로 에코라벨링제도를 상정하고 있으며, 생산현장에 적용되기에는 많은 검토를 필요로 하는 시점이다.

현재는 에코라벨 표시상품의 국제거래가 미미하고 그 상품의 시장점유율이 높지 않아 에코라벨 프로그램이 심각한 무역영향을 초래하지는 않지만,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고 에코라벨이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제품 선택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게 됨에 따라 장래에 에코라벨이 국제무역에서의 역할이 유의적이게 될 전망이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시점에서 수산물 에코라벨링에 대한 협상전략이 필요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에코라벨링 기준의 강제적 적용은 가능한 한 중장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상에 임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전체 수산물을 대상으로 에코라벨링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와 함께, FAO COFI에서 논의되고 있는 “해면어획 수산물의 에코라벨링 가이드라인”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화 작업에 우리의 수산업 특성, 특히 개별어업별(원양어업, 연안어업, 근해어업), 업종별(선망, 트롤, 권현망 등) 특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수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논의를 주도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FAO가 주장하는 국가관리의 에코라벨링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어업행위와 어획물과의 친환경적 관계를 규명할 과학적인 기법도 동시에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어업행위와 어획물과의 친환경적 관계를 규명할 과학적인 기법의 수준이 낮을 경우에 역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주요 수출시장으로서 EU시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수산업계로서는 EC가 추진하고 있는 단일관리 방식의 수산물 에코라벨링제도에 대한 전략 수립도 필요하다.

그리고 FAO 제26차 Ecolabelling 기술협의회에서 합의된 가이드라인 중 에코라벨링의 최소구비요건과 기준으로써 관리체계, 대상어족, 그리고 생태계 고려 등 세 가지 분류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조건으로 자원 남획 수준이나, 어업자원량의 최적이용의 기준은 평가하기 매우 힘든 척도인데 우리의 수산자원 및 어업관행면에서 유리한 기준은 무엇인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Ecolabelling 제도화는 국제무역에 있어서 반드시 차별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에코라벨링은 소비자의 구매의사 결정에 의존하는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제도로서 원칙적으로 구속력 있는 요건 또는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자발적인 표준이 무역활동을 제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무역에 관한 일반적인 규범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에코라벨링 제도가 국가간 상호인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무역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여러 국가로부터 중복 인증을 받거나 수입업체가 인정하는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기업은 에코라벨링 인증에 따른 시간과 비용의 발생으로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되며 그 결과 실질적인 무역제한조치의 하나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WTO 도하개발아젠다에서도 개발도상국에 대한 우대조치가 명문화되기도 하였는데, FAO의 26차 회의에서 채택된 해면 어획수산물의 에코라벨링가이드라인에서도 에코라벨링제도에 참여하고자 하는 개도국에게는 적극적인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 같은 개발도상국 우대조치는 한편으로 에코라벨링을 도입하려는 선진국으로부터 개도국에게 특혜를 제공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왜냐하면 자본력이 강한 선진국은 정책 이행과 실현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에 비해 유리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또한 2006년도에 개최될 제27차 FAO COFI 회의에서 우리 입장에서 주요 쟁점으로 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 쟁점별 검토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산물 에코라벨링 운영의 자발성을 적극 강조해야 한다. 현재 WTO 비농산물 협상에서 EU를 비롯한 선진국은 환경상품에 대한 무관세 또는 관세인하를 제기한 바 있다. 개도국의 반발로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

았지만 향후 환경상품에 관한 국제 사회의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미 FAO에서는 해면 어획 수산물에 대한 에코라벨링 가이드라인이 채택되었고, 자발적 운영(voluntary)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 점을 적극 강조할 필요가 있다.

둘째, FAO의 해면어획 수산물의 에코라벨링 가이드라인인 최소실질요건에 대해 고려대상 어족(Stocks under consideration)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제26차 COFI 회의에서 고려대상 어족을 과잉 어획되지 않았으며 현 세대와 미래 인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기준이 모호하여 각 국가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운영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에코라벨링의 최소실질기준과 관련한 생태계 고려사항이 광범위하다. 즉, 가이드라인에서는 어업활동이 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모든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모든 부작용을 고려한다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각 국가의 현재 생태계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 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넷째, 수산물 에코라벨링에 대한 표준화된 국제 인증기구를 설립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현재 EU를 비롯한 선진국 중심으로 MSC인증을 받은 수산물이 늘어나고 있으며 향후 국제교역에서 거래될 가능성을 고려하면 개도국보다 선진국이 경쟁 우위에 있을 수 있고, 선진국은 개도국에서 수입하는 수산물 중 에코라벨링 인증을 받지 않은 수산물은 수입을 제한 또는 금지할 가능성도 있다. 우리나라 역시 수산물을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에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수출제제에 직면할 수 있을 것이다. 선진국 중심의 기준이 국제 교역에서 인정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에코라벨링에 대한 국제 인증기구설립방안을 제안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③ 수산부문 Ecolabelling의 국내대응방안

① Ecolabelling의 수산부문 도입방안

우리나라도 1992년 4월부터 Ecolabelling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주로 공산품을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수산부문에는 아직 적용하고 있지 않다. 최근 WTO체제의 확대·강화와 더불어 선진국을 중심으로 에코라벨링을 기술무역장벽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기존의 수산자원 관리 메커니즘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우리나라의 수산부문에 그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메커니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수산업 부문에

Ecolabelling의 도입은 국제사회의 동향과 기존의 수산자원관리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친환경적인 수산물의 생산을 유도하고, 친환경적인 수산물의 수출(수출차별화수단)과 수입(수입관리수단)을 촉진하기 위해 Ecolabelling의 도입은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다만 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현장에 직접적으로 제도화하는 시점은 가능한 어종 및 업종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이러한 시점은 FAO 가이드라인의 논의동향을 고려하고, 또한 참여자의 합의하에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㉑ Ecolabelling의 법제화 방안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부가 Type I (ISO14024)의 운영근거로 삼고 있는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의 경우에는 공산품 중심의 운영체제로 1차 산업 특히 수산부문에 적용에는 많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만약 법제화를 통하여 추진하기 위해서는 편의성 또는 효율성 측면을 강조할 경우에는 기존의 「수산물품질관리법」 또는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책의 적극성 측면을 강조할 경우에는 (가칭)친환경수산업육성법 또는 (가칭)수산물에코라벨링지원에관한법률 제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㉒ Ecolabelling의 도입범위 설정방안

에코라벨링의 도입은 에코라벨인의 인증 기준에 따라 적용 가능한 어종 또는 업종, 역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어종 또는 업종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에코라벨링의 도입 범위는 원칙적으로는 전 어종을 대상으로 하되, 우선 제도 적용의 가능성이 있는 어종 및 업종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선정에는 첫째, TAC 어종 둘째, 대 EU 주요 수출어종 셋째,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는 어종으로 과학적으로 또는 정량적으로 분석이 가능한 어종 넷째, 자율관리어업과 같이 자발적인 수산자원 관리시스템하에서 어업행위를 하여 어획되는 어종 등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현재 해양수산부가 추진중인 자원회복계획과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자원회복계획에 의하면, 자원회복 대상종 선정은 FAO 기준을 고려, 어획통계자료상 최근 15년간 어획량 자료 중 과거 최고 3년이동 평균에 비해 30% 이하로 감소된 종을 기초로 어종별 어획량 변동추세를 감안하여 <표 6-1>과 같이 선정하고 있다.

〈표 6-1〉 수산자원회복 대상어종(예)

회복대상종(40종)	관리대상종(40종)
말쥐치 참조기 정어리 보구치 갈치 가자미류 부세 도루묵 명태 까나리 임연수어 골뱅이류 강달이류 뱀어류 갑오 징어류 뱀탕이 젓새우 꽃새우 중하 꽃게 가오리류 갯장어 서대류 준치 민어 꼴뚜 기류 개량조개 코끼리조개 성게류 홍어 키조개 전어 참돔 양태 전복 보래새우 낙 지 해삼 자리돔 오분자기	복어류 눈볼대 고등어 다랑어류 삼치 전 갱이 쾡치 청어 대게 붉은대게 오징어 문 어 대하 매둥이류 주꾸미 멸치 아귀 봉장 어 방어류 학공치 넙치 대구 병어류 노래 미류 가무락 맛류 백합 동족 조피볼락 농 어류 송어 감성돔 바지락 꼬막 새조개 개 조개 옥돔 능성어 소라 닭새우

주 : 해양수산부, 수산자원회복 세부실천계획 수립 보고 자료(2006.1) 참조.

㉔ Ecolabelling의 인증방안(방법, 범위, 원칙, 기준)

우리나라의 수산부문에 적용할 수 있는 수산물 에코라벨링 인증방법은 FAO의 가이드라인에서 정하고 있는 인증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국제기준 조화원칙에 합리적이다. 이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수산물과 수산물 관리에 대해 개별 인증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대상품목의 부합성 평가, 과정평가를 들 수 있다. 이들 두 가지 인증을 위해서는 생산과 유통의 인증을 관리,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력추적제와의 연계성이 능률적이라고 할 수 있다.

에코라벨링은 용어의 개념 또는 본질에서의 차이보다는 인증방법, 인증기관의 주체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 현재 활용할 수 있는 Ecolabelling의 원칙과 기준은 ISO 에코라벨링의 일반원칙과 MSC의 원칙, FAO 가이드라인 등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수산업에 도입할 수 있는 수산물 에코라벨링의 원칙은 국제기준에 조화되고 우리나라의 수산업 현실에 맞는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㉕ Ecolabelling의 인증기관 설립방안

Ecolabelling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인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증기관이 필요하다.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은 첫째, 기존의 친환경상품인증원을 활용하는 방안, 둘째, MSC와 연계하여 수산물 에코라벨링 인증을 담당하는 (가칭)수산물친환경인증원을 설립하는 방안, 셋째, 국제기준(FAO 에코라벨링 가이드라인과 MSC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한국형 수산물친환경가이드라인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 운영할 독자적인 (가칭)수산물친

환경인증원을 설립하는 방안 등이 있다.

⑥ Ecolabelling의 인증비용

현재 우리나라의 친환경인증원에 신청하는 기본 수수료는 10만원이며, 정밀평가 및 현지조사를 겸할 경우에는 별도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에코라벨링의 인증 및 운영, 사후관리를 위한 비용은 신청 수수료에 의해 충당하고 있다. 이와 같이 Ecolabelling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에 걸쳐 평가 및 검증 작업이 필요하며, 이러한 검증을 위해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신청자가 마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검토한 에코라벨링 국제규범화에 대한 쟁점 이외에도 Ecolabelling제도에 대한 많은 한계도 지적되고 있다. Ecolabelling제도는 이론적으로 Ecolabel 부착으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환경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이 더 높은 가격(Premium Price)을 지불함으로써 생산자들이 보다 높은 어업수입을 올리고 환경친화적인 생산방법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나, 이 제도가 그 기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 가지 조건, ① 소비자들이 환경라벨이 부착된 제품을 차별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하고, ② 라벨이 부착된 제품에 대한 실질적인 지불의사능력이 있어야 함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소비자들의 조건에 대한 국제적인 조사와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Ecolabelling제도의 기대효과, 즉 이 제도의 필요성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현 시점에서 제기될 수밖에 없다.

향후 Ecolabelling제도에 대한 FAO COFI의 협상 방향에 대해 예상하는 것은 쉽지 않으나, 제26차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논의된다는 전제하에서는 타결 시점은 다를 지라도 에코라벨링의 수산부문 도입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FAO COFI 논의과정에서 우리정부가 협상력을 갖고, 협상결과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종별, 어업별, 업종별 구체적인 도입을 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해양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 대상어종에 대한 자원평가 기법의 개발 등도 정책적으로 시급히 정비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제도적 대응과 함께 대내적으로는 동 제도의 도입이 다양한 집단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이나 시사점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평가를 토대로 제도 도입의 효과에 대한 생산자 설득 및 대국민 홍보를 충분히 실시함으로써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에도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4) 수산물 Ecolabelling 도입을 위한 실천계획

여기서는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수산물 Ecolabelling의 국내 도입에 필요한 절차상의 실천계획을 간략하게 제시하고자 한다.

① 추진배경

최근, 세계 수산물 생산량 감소 및 수산자원의 남획이 계속되자 기존의 어업관리 메커니즘의 한계 노정



보완(극복) 대안으로서 수산물 에코라벨링 도입

시장 중심의 환경 및 천연 자원 관리방식으로 전환
 상품(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구매 결정에 영향을 줌으로써 환경(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비자들에게 수산물의 생산 과정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자는 움직임이 국제사회에서 나타남

② 추진목표

수산자원관리에 있어서 국제사회의 규범화에 조화되고, 국내적으로 수산자원관리의 보완적 수단으로 활용하여,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에 기여

③ 추진방향

수산물 에코라벨링 제도화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입각하여 시범사업을 연차적으로 실시하며, 연차적으로 동 제도 적용 대상품목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추진함

기본계획 및 시범사업계획은 자원회복계획과 연계시켜 추진될 수 있도록 작성하고, 또한 정보의 신뢰성 및 관리를 위해 이력추적제와 연계시켜 추진되도록 함

④ 에코라벨링의 개념

에코라벨링의 개념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환경보호 및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을 위해 활용되는 메커니즘의 일종으로 수산물(수산상품)이 소비자에게 해양생태계를 배려한 또는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을 위한 관리시스템하에서 생산, 가공되었다는 정보를 제공하여 구매하게 함으로써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하도록 시장이 생산자에게 신호를 보내는 시스템으로서 시장의 신호에 의해서 추진되는 해양생태계 및 수산자원관리 메커니즘으로 정의함

MSC 어업 인증 기준의 3가지 원칙

- ① 목표어종의 상태(status of the target fish stock)
- ② 어업행위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Impact of the fishery on the ecosystem)
- ③ 어업관리시스템의 성과 및 효율성(Performance and effectiveness of fishery management system)

⑤ 에코라벨링 도입 대상품목의 선정 방향

- 첫째, 국제수산기구에서 에코라벨링의 개념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또는 민간영역에서 이미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는 어종을 우선으로 선정하고
- 둘째, 수산자원회복계획의 회복대상어종 및 관리대상어종을 고려하며
- 셋째, 에코라벨링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모니터할 수 있는 어종 또는 품목을 대상으로 선정토록 함

※자원회복계획상의 대상종(사례)

회복대상종(40종)	관리대상종(40종)
말뚝치 참조기 정어리 보구치 갈치 가자미류 부세 도루묵 명태 까나리 임연수어 골뱅이류 강달이류 뱀어류 갑오 징어류 뱀돔이 첫새우 꽃새우 중하 꽃게 가오리류 갯장어 서대류 준치 민어 꼴뚜 기류 개랑조개 꼬끼리조개 성게류 홍어 키조개 전어 참돔 양태 전복 보래새우 낙 지 해삼 자리돔 오분자기	복어류 눈볼대 고등어 다랑어류 삼치 전 갱이 콩치 청어 대게 붉은대게 오징어 문 어 대하 매둥이류 주꾸미 멸치 아귀 붕장 어 방어류 학공치 넙치 대구 병어류 노래 미류 가무락 맛류 백합 동족 조피볼락 농 어류 송어 감성돔 바지락 꼬막 새조개 개 조개 옥돔 능성어 소라 닭새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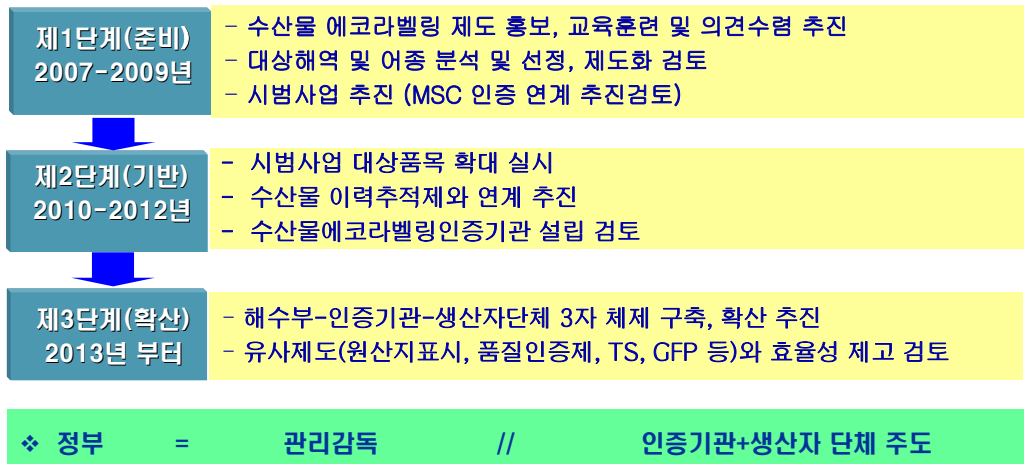
⑥ 에코라벨링의 제도화

수산물 에코라벨링 제도는 우선 제반여건 구축과 함께 정책사업으로 시범사업을 우선저금로 추진하고, 2단계로 법제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법제화는 기존의 수산물품질관리법, 수산업법의 활용이나, 또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반영하는 것 등으로 고려할 수 있음. 만약 정책의 적극성 측면을 강조하여 독립법으로 할 경우에는 (가칭)친환경수산업육성법 등 법률 제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⑦ 추진전략

에코라벨링 제도 도입은 MSC 와 FAO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동 제도에 대한 관계자의 이해뿐만 아니라 관련되는 시스템의 구축을 전제로 하여야 하므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특히 어종별 자원상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사후관리체제 구축을 전제로 하고 있음. 따라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며, 국제사회에서 쟁점화되고 있는 참치 등 원양어업 등을 우선순위로 시범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에코라벨링 도입 단계별 추진전략



참고문헌

- ◆ 공정거래위원회 지침(1999/06/30) 『환경관련표시·광고에관한심사지침』 1999
- ◆ 산업자원부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e-Standby Program) 운용 규정(고시 제2006-39호)』 2006
-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녹색구매기준 지침서』 2003
- ◆ 이건모, 하루오 우에하라 『ISO 14021 실무, APEC Secretariat』 2003
- ◆ 친환경상품진흥원 『우리나라 환경라벨링제도 운영현황 및 향후전망』 2004
- ◆ 친환경상품진흥원 『WTO 도하개발아젠다 검토의제 “환경목적 라벨링” 대응방안』 2003
- ◆ 환경부 『환경친화상품 생산·소비 활성화 방안』 2001
- ◆ 환경부 『환경상품 우선구매정책 및 우수구매사례』 2002
- ◆ 환경부 『환경친화상품구매 시범사업지침』 2003
- ◆ 환경부 『친환경상품 보급촉진 우수사례 및 제도 개선방안』 2004
- ◆ 환경부 『친환경상품 보급촉진 및 환경표지제도 활성화 토론회 자료』 2004
- ◆ 환경부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입법예고』 2004
- ◆ 환경부 『친환경 원부자재 공급망 구축방안』 2003
- ◆ 환경부 『LCI 데이터베이스 표준지침서』 2003
- ◆ 환경부 『LCI 데이터베이스 제·개정 및 EDP 전용 소프트웨어 개발·보급』 2004
- ◆ 환경부 『에코디자인 일반지침 및 지원소프트웨어 개발』 2002
- ◆ 환경부 『에코디자인 일반지침서』 2003
- ◆ 환경부 『WTO DDA 환경협상 대응방안』 2004
- ◆ 환경부 『환경백서 2003』
- ◆ 환경부·환경친화기업협의회 『기업 친환경제품 생산·소비 워크숍 자료』 2003
- ◆ 환경관리공단 『환경성적표지 인증업무 편람』 2004
- ◆ 환경부·환경마크협회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 및 기준개발』 2004
- ◆ 환경부·환경마크협회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2004
- ◆ 환경부·환경마크협회 『환경성적표지제도 길라잡이』 2004
- ◆ 환경마크협회 『2004년 11월 환경마크 인증현황』 2004
- ◆ 환경마크협회 『세계 각국 환경보호목적 라벨링 시행현황』 2003
- ◆ 환경마크협회 『환경라벨링제도의 상호인정협정 추진현황』 2003
- ◆ 환경마크협회 『WTO DDA 검토의제 환경목적 라벨링 대응방안』 2003
- ◆ 환경마크협회 『해외 무역·환경조치 시행현황 요약보고』 2004
- ◆ 환경부 환경정책실 『세계 각국 환경보호 목적 라벨링 시행현황』 2005
- ◆ 환경부 『환경백서2004』 2004
- ◆ Appleton, Arthur, E. 1997 『Environmental Labelling Programmes: Trade Law Implications』 Kluwer Law International. pp.123~124.
- ◆ Caswell, Julie A. 『How Labelling of Safety and Process Attributes Affects Markets for Food』 Agricultur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October 1998), pp.151~158.
- ◆ Caswell, Julie A. & Eliza M. Mojduszka 『Using Informational Labelling to Influence the Market for Quality in Food Products』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78(1996), pp.1248~1253.

- ◆ Cathy A. Roheim 『Early Indications of Market Impacts from the Marine Stewardship Council's Ecolabelling of Seafood』 2002
- ◆ Cochrane K. and R. Willmann 『Eco-labelling in fisheries management』 In, Current Fisheries Issues and the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edited by Myron H. Nordquist and John Norton Moore. Martinus Nijhoff Publishers. The Hague/Boston/London(2000). pp.583-615.
- ◆ Codex Committee on Food Labelling 『Draft Guidelines for the Production, Processing, Labelling and Marketing of Organically Produced Foods』 CL 1996/23-FL. Rome, Italy, June 1996.
- ◆ Deere, Carolyn. 1999. 『Eco-labelling and Sustainable Fisheries』 IUCN – The World Conservation Union and the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 Washington and Rome.
- ◆ David R. Downes Brennew Van Dyke 『Fisheries Conservation and trade rules』 European Parliament and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Launching a debate on a Community approach towards eco-labelling schemes for fisheries products』 2005
- ◆ FAO 『Fisheries for the Ecolabelling of fish and fisheries products from marine capture Fisheries』 2005
- ◆ Fiorillo, John. 『Eco-labelling could benefit fishermen』 Fishmonger.com, March 13, 2000.
- ◆ FAO. 1998. Issues related to the feasibility and practicability of developing globally applicable, non-discriminatory technical guidelines for eco-labelling of products from marine capture fisheries. FAO Secretariat document prepared for the Technical Consultation on the Feasibility of Developing Non-Discriminatory Technical Guidelines for Eco-Labelling of Products from Marine Capture Fisheries, Rome, Italy, pp.21~23, October 1998.
- ◆ FAO. 1998. Report of the technical consultation on the feasibility of developing non-discriminatory technical guidelines for eco-labelling of products from marine capture fisheries. Rome, Italy, 21-23 October 1998. FAO Fisheries Report, 594. 29pp.
- ◆ FAO. 1995a. 『Code of Conduct for Responsible Fisheries. FAO』 Rome.
- ◆ FAO. 1995b. 『Precautionary approach to fisheries: Part 1: Guidelines on the precautionary approach to capture fisheries and species introductions』 FAO Fisheries Technical Paper 350(1): 51p.
- ◆ ISO. 1999 『Environmental labels and declarations – Type I environmental labelling – Principles and procedures』 ISO/DIS 14024. Geneva.
- ◆ ISO. 1999 『Environmental labels and declarations – Self-declared environmental claims (Type II environmental labelling)』 ISO/DIS 14021. Geneva.
- ◆ ISO.2000 『Environmental labels and declarations – Type III environmental declarations』 ISO/WD/TR/14025. Geneva.

- ◆ Johnston, Robert J. Cathy Roheim Wessells, Holger Donath, and Frank Asche. 2001. 『A Contingent Choice Analysis of Ecolabelled Seafood: Comparing Consumer Preferences in the United States and Norway』 Journal of Agricultural and Resource Economics, 26(1):20-39.
- ◆ MSC 『MSC Guidance to potential or actual clients; the MSC Fishery Assessment & Certification Process』 2005
- ◆ MSC 『MSC Accreditation Quality Manual』 2006
- ◆ Nordic Technical Working Group on Fisheries Eco-labelling Criteria. 2000. 『An Arrangement for the Voluntary Certification of Products of Sustainable Fishing』 Final Report, Copenhagen, June.
- ◆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1991. 『Environmental Labelling in OECD Countries』 Paris, France.
- ◆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1997a. 『Processes and Production Methods (PPMs): Conceptual Framework and Considerations on use of PPM-based Trade Measures』 OECD, Paris;
- ◆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1997b. 『Eco-labelling: Actual Effects of Selected Programmes』 Paris, France.
- ◆ P.R Gardine and K.Kuperan Viswanathan 『Ecolabelling and Fisheries management』 2004
- ◆ Preiss, Erika. 1997. 『An Eco-label for Shrimp: Minimizing Potential Trade Barriers』 mimeograph prepared for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Clinic at NYU School of Law.
- ◆ Staffin, Elliot. 1996. 『Trade Barrier or Boon? A Critical Evaluation of Environmental Labelling and its Role in the ‘Greening’ of World Trade』 Columbia Journal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Vol. 21:205-286.
- ◆ Sedjo, Roger A. & Stephen K. Swallow. 1998. 『Eco-Labelling and the Price Premium』 working paper, Department of Environmental and Natural Resource Economics, University of Rhode Island.
- ◆ Tietje, Christian. 1995. 『Voluntary Eco-labelling Programmes and Questions of State Responsibility in the WTO/GATT Legal System』 Journal of World Trade, 29;123-158.
- ◆ Wessells, Cathy R., Holger Donath, & Robert J. Johnston. 1999. 『U.S. Consumer Preferences for Eco-labelled Seafood: Results of a Consumer Survey』 <http://www.riaes.org/resources/library> (2000, June).
- ◆ Wessells, Cathy R., Robert J. Johnston, & Holger Donath. 1999. 『Assessing Consumer Preferences for Eco-Labelled Seafood: The Influence of Species, Certifier and Household Attributes』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81:1084-89.
- ◆ World Trade Organization. 1997. 『Eco-labelling: Overview of Current Work in Various International Fora』 Note by the WTO Committee on Trade and

- Environment, WT/CTE/W/45, WTO: Geneva;
- ◆ World Trade Organization. 1998d. 『Market access impact of eco-labelling requirements』 WT/CTE/W/79. Geneva. p.11
 - ◆ Zarrilli, Simonetta, Jha, Veena & René Vossenaar (Eds.). 1997. 『Eco-Labelling and International Trad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 New York.

참고 웹사이트

- ◆ 공정거래위원회 환경관련표시광고심사지침 www.ftc.go.kr
- ◆ 국제에코라벨링네트워크(GEN) www.gen.gr.jp
- ◆ 국제제품환경선언네트워크(GEDnet) www.gednet.org
- ◆ 국제표준화기구(ISO) www.wto.org
- ◆ 기술표준원 GR마크 recycling.ats.go.kr
- ◆ 세계무역기구(WTO) www.iso.ch
- ◆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효율관리 www.kemco.or.kr/efficiency_system
- ◆ 조달청 나라장터 www.g2b.go.kr/g/i_d01.htm
- ◆ 조달청 환경마크 및 재활용제품공급 www.pps.go.kr
- ◆ 환경부 환경정책실 환경라벨링/에코디자인 www.me.go.kr
- ◆ 환경마크협회 환경마크제도 www.kela.or.kr/cover/cover.asp
- ◆ 환경마크협회 환경성적표지제도 www.kela.or.kr/record/record01_1.asp
- ◆ 환경마크협회 에코디자인 www.kela.or.kr/eco/eco.asp
- ◆ 환경마크협회 상호인정협정 www.kela.or.kr/world/world.asp
- ◆ 환경관리공단 환경성적표지인증 www.edp.or.kr
- ◆ 환경보전협회 환경성적표지심사원교육 www.epa.or.kr/epa/kor/office/0202.asp

부
부

〈 부 록 〉

해면어획 수산물의 에코라벨링 가이드라인

Guidelines for the Ecolabelling of Fish and Fisheries Products from Marine Capture Fisheries

범위(SCOPE)

1.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위해 해면어획 수산물에 라벨을 부착할 수 있도록 라벨인증을 촉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임. 본 가이드라인의 범위는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된 문제에 초점맞춰져 있음.

원칙(PRINCIPLES)

2. 해면어획수산물의 에코라벨링 가이드라인은 다음 내용을 원칙으로 해야 함.
 - 2.1 1982년의 UN 해양법협약과 FAO의 책임있는 수산업을 위한 행동강령, WTO의 규칙 및 기타 관련 국제법과 일관되어야 함
 - 2.2 국가의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관련법과 규칙들을 준수해야 함
 - 2.3 에코라벨링은 자발적이고 시장 지향적이어야 함
 - 2.4 에코라벨링의 투명한 운영 및 공정한 참가가 보장되어야 함.
 - 2.5 무차별적이어야 하며, 국제교역에 불필요한 장벽을 형성해서는 안 됨. 공정무역과 공정경쟁을 지향해야 함
 - 2.6 국제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
 - 2.7 에코라벨링의 가이드라인은 국제표준에 의거해 에코라벨링의 시행주체 및 인증기관이 가져야 할 사명감을 명시해야 함
 - 2.8 신뢰할 수 있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감사 및 인증절차를 수립해야 함
 - 2.9 형평성을 고려해야 함
 - 2.10 유효성을 객관적으로 인증하기 위해서 과학적인 증거에 근거해야 하며, 자원에 관한 전통적인 지식을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함
 - 2.11 실용적이고, 입증 가능해야 함
 - 2.12 라벨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함
 - 2.13 라벨의 정보는 명료해야 함
 - 2.14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최소한의 실질적 표준 및 범위 절차에 근거해야 함.

3. 투명성의 원칙이란 조직 및 재정분야를 포함한 에코라벨링의 전 분야에 적용되어야 함.

일반적 고려사항(GENERAL CONSIDERATIONS)

4. 본 가이드라인에서 최소 실질 표준, 최소 실질 범위 및 최소 실질 절차는 선진국, 개발도상국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되었는지를 고려해야 함.
5. 에코라벨링 계획안은 어업관리 및 국가의 주권 및 권리를 인정한다는 점을 상기해볼 때, 에코라벨링 시행계획에 국가의 개입은 바람직한 현상이며, 반드시 권고되어야 함. 필요하다면 국가 및 지역어업기구(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 RFMOs)가 본 가이드라인과 일관되도록 수산물에 적용시킬 수 있다. 에코라벨링 계획안은 각 국가와 지역수산기구가 안하는 권고안에 대해 충분히 심사숙고해야 할 것임.
6. 책임있는 어업을 위한 행동강령의 제5항 즉, 모든 국가에게 동등한 기회 부여를 고려하여 개발도상국 또는 수산물 국제교역에 중요한 공헌을 하는 국가에 에코라벨링을 적용할 시 특수한 조건 등을 감안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함. 즉, 에코라벨링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에코라벨링 적용 계획을 가지고 있는 국가, 관련 정부간 기관, 비정부 기관은 개발도상국에게 재정 및 기술 지원을 해야 하며 개발도상국이 에코라벨링을 정착·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여기서 지원이라 함은 인허 및 인증하기 드는 비용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일컬음. 개발부처(development agency)와 기부기관(donor institutes)은 개발도상국(development countries and countries in transition)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FAO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용어 및 정의(TERMS AND DEFINITIONS)

7. 에코라벨링의 국제 가이드라인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음.

인허⁶⁵⁾(Accreditation)

8. 자격을 갖춘 자 또는 기관이 특정 업무를 수행할 능력 또는 자질이 있음을 관계기관이 공식적으로 인정(recognition)해주는 절차

65) 인허의 사전적 의미는 어떠한 일이 법적으로 옳다고 인정하여, 행정적으로 그 시행을 허락하는 일.

인허기관(Accreditation body)

9. 인허기관이란 인허시스템을 수행·관리하며 인허해주는 기구

인허시스템(Accreditation system)

10. 인허하기 위한 절차 및 관리 규칙이 있는 시스템
11. Note - 인증기관의 인허는 성공적인 평가 및 감사 과정을 거친 다음 획득할 수 있음.(ISO Guide 2, 17조 1항 근거)

조정(Arrangement)

12. 둘 이상이 설립한 협력 메커니즘으로써 정부나 민간 또는 비정부기구가 조정의 주체가 될 수 있음.

감사(Audit)

13. 활동 및 관련 결과가 계획된 목적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기능적으로 독립된 검사(examination)(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식품 수입 및 수출인증 및 검사의 원칙에 근거; Principles for Food Import and Export Certification and Inspection CAC/GL20)

인증(Certification)⁶⁶⁾

14. 제3의 기관이 상품, 절차 또는 서비스가 관련 규정에 일치 또는 부합한다는 내용을 서면 등으로 확인해주는 절차. 인증은 생산 과정에서 연속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일련의 검사 활동에 근거해야 함.(ISO Guide 2, 15.1 식품 수입 및 수출인증 및 검사에 관한 원칙; Principles for Food Import and Export Certification and Inspection, CAC/GL 20)

인증기관(Certification body)

15. 인증해 주는 관계기관임. 인증기관은 다른 기관을 대신하여 인증활동을 감독할 수 있음(Based on ISO Guide 2, 15.2)

감독(Chain of custody)

16. 시중에 출시되면서 에코 로고가 부착된 상품이 실제로 인증을 받은 상품

66) 인증의 사전적 의미는 어떠한 행위 또는 문서의 성립이나 기제가 정당한 절차로 이루어졌음을 공적 기관이 증명하는 일

(수산물)인지를 보증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임. 이 조치는 가공, 유통, 마케팅 전 분야에서 상품 자체의 이력성과 정보의 이력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함.

고소(Complaint)

17. 인허 또는 비인허, 인증 또는 비인증과 관련된 결정에 대해 특정 개인이나 기관에 제기하는 반대

부합성 평가(Conformity Assessment)

18. 관련 조건이 충족되었는지를 직·간접적으로 결정하는 것과 관련된 활동

19. Notes: 부합성 평가활동의 전형적인 예로써는 샘플링, 테스트, 검사, 평가, 확인·조회, 부합성 확인(공급자의 선언, 인증), 등록, 인증, 승인 등이 있음(ISO Guide 2, 12.2)

결정(Decision)

20. 개인 또는 기관의 권리·의무와 관련하여 인허 기관 또는 인증기관이 내리는 결정

에코라벨링 계획 (Ecolabelling scheme)

21. 에코라벨링 계획이란 수산물에 특정 로고 혹은 문구를 부착함으로써 해양자원의 보존 및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되었음을 인증하는 것임. 특정로고 혹은 문구는 소비자가 다양한 정보에 근거해 소비하는 경향을 반영하는 것임. 즉, 수산물의 생산방법이 해양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정보가 소비자의 구매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임. 이 같은 소비자의 태도에 근거해 에코라벨링 제도는 소비자의 구매 경향을 의거,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기 위함임.

표준 인증 (Standard for certification)

22. 상품, 생산과정 또는 생산방법에 대해 적용되는 공통의 규칙, 가이드라인, 특성에 대해 인정받은 기관이 승인을 하더라도 이것은 국제교역하에서 의무적인 것인 아님. 또한 상품, 생산 프로세스, 생산방법에 인증표준을 적용할 때 용어, 심볼, 포장방법, 표시 혹은 라벨링 조건을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 (TBT agreement, Annex 1, para2 근거)

가이드라인에서, 표준이란 표준인증을 일컫음. 인증표준이란 필요조건, 범위, 수행요소가 계약서(hierarchical arrangement)에 포함되어야 함. 각 조건에 있어, 1개 이상의 실질적(substantive) 요소들에 대한 정의가 내려져야 함. 범위의 경우에는 평가를 위해 1개 이상의 수행요소가 있어야 함.

표준설정 조직 또는 기관(Standard-setting organization or arrangement)

23. 표준설정과 관계되는 활동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조직이나 기관 (ISO Guide 2, paragraph 4.3 근거)

제3자(Third party)

24. 문제가 되는 이슈에 대해 독립적인 사람이나 기관(ISO/IEC Guide 2: 1996)

인증단위(Unit of certification)

25. 인증단위란 에코라벨링 인증이 요구되는 어업을 일컫음. 인증은 1개 어종 이상을 어획·생산하기 위해 특정 어법 또는 방법을 사용하는 어업을 포함함. 고려대상어족(stock under consideration)으로부터 생산된 수산물만 인증 대상이 됨. 인증 표준의 준수 여부를 평가할 때, 생산 어법이 고려대상어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함.

에코라벨링의 최소실질요건 및 범위

Minimum Substantive Requirement and Criteria for Ecolabels

서론(Introduction)

26. 어업이 인증을 받았으며, 에코라벨이 어업에 부여되었는지를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최소실질요건 및 범위를 제시함. 에코라벨링의 계획은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추가적인 혹은 보다 엄격한 조건 및 범위를 적용할 수 있음. 아래에서 설명되는 조건 및 범위는 수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에서 합의된 협정, 특히 1982년의 UN 해양법 협약, 1995년의 UN의 어족합의문(UN Fish Stocks Agreement), 1995년의 책임어업을 위한 행동강령, 해양 생태계의 책임있는 어업에 관한 레이카비크 선언(Reykjavik Declaration)에 근거해 해석할 수 있음.
27. 최소실질조건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 관리시스템, 인증 대상(다음부터는 고려대상어족이라고 명명함), 어업이 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으로 분류할 수 있음. 에코라벨링 제도의 조건 및 범위 그리고 어업의 부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범위 및 관련 업무수행측정척도, 관련 모니터링 시스템을 수립해야 함. 표준인증과 어업의 부합성을 평가하고 범위를 개발·적용하기 위해서 각 국의 의견과 지역수산기구 및 FAO의 의견도 고려해야 함.

관리시스템(Management systems)

28. 조건 : 최선의 어업관행(good practice)에 근거한 관리시스템하에서 어업행위가 이뤄져야 하며, 조건 및 아래 29항에서 설명하고 있는 범위를 충족시켰는지를 확인해야 함. 관리시스템 및 어로 행위는 지역 조례 및 국내법, 목표(target) 어족을 관리하는 지역수산기구 등의 국제법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이뤄져야 함.
29. 앞으로 서술하게 될 범위는 어업의 관리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음. 하지만 소규모로 이뤄지는 어업이 경우에는 데이터의 존재유무 및 관리시스템이 어업의 규모 및 행태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해 두어야 함
 - 29.1 어족의 현 상태와 향후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데이터 혹은 정보를 적절히 수집, 관리해야 함(아래 방법론 참조)

- 29.2 보존 및 관리 척도를 결정하기 위해서 정부는 기존의 가장 과학적인 증거를 고려해야 하며, 객관적으로 증명된 과거 지식도 고려해야 함. 이를 통해 특정대상 어족 또는 한계준거점(limit reference points)⁶⁷⁾과 관련하여 고려대상 어족의 현 상태를 평가할 수 있음.
- 29.3 또한 객관적으로 증명된 전통적인 지식을 포함하는 데이터 및 정보는 생태계에 관한 어업의 부작용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확인된 영향의 강도 및 가능성에 관해 시기적절한 충고(권고)사항을 제공할 수 있음
- 29.4 데이터와 정보, 선행연구(preceding bullets)⁶⁸⁾와 관련한 과학적 정보에 근거하여 정부는 고려대상 어족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단기적 목표와 어업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사용이라는 장기적 목표와 상충되어서는 안 됨
- 29.5 어업을 위해 지방, 국가, 지역차원에서 효과적인 법적, 행정적 틀을 만들어야 하고, 규범 준수 등 확인하기 위해 모니터링, 감독, 관리를 위한 효과적 메커니즘을 수립해야 함.
- 29.6 책임있는 어업을 위한 행동 강령 7.5항에 의거하면, 예방차원의 접근법(precautionary approach)을 통해 고려대상어족을 보호하고, 해양 환경을 보존할 필요가 있음. 특히, 과학적 정보가 부재하다고 해서 보존 및 관리조치를 하지 않거나 보호조치를 연기해서는 안 됨. 나아가 적절한 위험평가를 통해 비확실성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함. 준거점(reference points)에 도달하였거나 준거점을 초과했을 적정 준거점을 결정하고 보안적인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고려대상 어족” (Stocks under consideration)

30. 필요조건 : 고려대상 어족은 과잉어획(over fished)된 것이 아니라, 적절한(optimal)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함. 고려대상 어족은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을 일컬으며, 자연적인 변수 또는 어업 외 다른 변수로 인해 장기적으로 생산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도 고려해야 함. 생물량(biomass)이 적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관리조치(책임있는 어업을 위한 행동강령 7조 6항)를 통해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해당 어족을 적정 수준으로 회복시켜야 함.

67) Code of Conduct for Responsible Fisheries, Articles 6.4 and 7.4.1

68) Code of Conduct for Responsible Fisheries, Article 7.1.1

생태계 고려사항(Ecosystem considerations)

31. 조건 : 생태계에 미치는 어업의 부작용을 적절하게 평가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함. 과학적 불확실성이란 해당 어족의 상태를 평가하는데 있어서의 불확실성이란 보다 생태계에 발생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부작용을 일컫음. 따라서 이 같은 문제는 리스크 평가/리스크 관리 접근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음. 에코라벨링을 계획하기 위해서는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부작용을 고려하고, 가용할 수 있는 과학적 정보 및 정당성을 입증 받은 지식을 활용해야 할 것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들은 즉각적인 관리 대응 또는 확인된 리스크(위험)의 심도있는 분석을 통해 반드시 해결해야 함. 여기서 개발도상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고 개발도상국에 재정적 지원 및 기술 지원, 기술 이전, 훈련 및 협력해야 할 것임.

방법적 측면(Methodological aspects)

목표 어종 현 상태 및 트렌드(trend) 평가

32. 어종의 현 상태 및 트렌드를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음. 선진국의 경우 자원상태 평가를 위해 데이터에 근거한 매우 정량적인 방법을 이용할 수 있지만, 데이터가 없을 경우에는 자원상태 평가를 위해 에코라벨링 인증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어종은 자원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음. 하지만 이 같은 방법들을 적용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어족 상태에 대한 평가는 불확실성의 문제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자원 활용 정도를 낮추는 예방차원의 접근법이 필요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어업 또는 저가 어종에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다양한 관리방법들이 자원 상태에 관한 불확실성이라는 문제에 직면해서 적정 수준으로 어족을 보호하고 있음.

절차 및 제도적인 측면**PROCEDURAL AND INSTITUTIONAL ASPECTS****서론**

33. 이번 장은 에코라벨링의 원칙과 제도적인 문제와 관련된 세 가지 원칙에 관해 서술하고 있음. (1) 표준인증 수립 (2) 독립 인증기관의 인허 (3) 어업 또는 수산식품이 필요한 기준 및 절차에 근거하여 생산되었가를 인증해주는 것임. 표준인증은 에코라벨링 계획이 추구하는 목적과 동일할 수 있음. 즉, 상품 또는 상품의 생산과정과 방법이 인증을 받기 위해 충족시켜야 하는 일정 범위으로써 표현할 수 있음.
34. 인증기관의 인허는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 있는 기관을 선정하는 것임. 인증기관은 중립적이고 독립적이어야 하며, 특정 수산물이 기준을 충족시켰는가를 인증할 수 있도록 기술적, 재정적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함. 이와 유사한 조건은 인허 기관에도 적용할 수 있음. 인허기관은 인허 업무를 할 수 있는 기술적, 재정적 능력을 가져야 하며, 중립적이고, 무차별적이며, 독립적으로 상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
35. 에코라벨링 계획을 시행하면서 (1) 표준인증 수립, (2) 독립 인증기관의 인허 그리고 (3) 인증 순으로 업무 추진을 할 수 있겠지만 (2) 인허와 (3) 인증은 이미 수립된 에코라벨링의 정기적 업무의 성격을 가짐. 즉, 장기간의 텀(term)이지만 규칙적으로 에코라벨링과 관련된 신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표준인증을 검토하고 개정해야 할 것임.

구조(Structure)

36. 가이드라인은 1) 지속가능한 어업의 표준 설정에 관한 가이드라인 2) 인허 가이드라인 3) 인증으로 구성됨. 가이드라인 3가지 주제는 다시 1) 목적, 2) 규범 준거점(normative reference) 3) 기능 및 구조 4) 필요조건 등 4부분으로 세분화됨. 필요조건이란 기관, 사람, 기관이 해당 영역에서 신뢰할 수 있는 자질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말함. 앞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원칙은 해면 어획 수산물의 에코라벨링에 대한 절차적인 문제와 제도적인 문제에 동일하게 적용됨.

지배구조에 대한 선택안(options for governance structures)

37. 에코라벨링의 지배구조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 정부, 정부간 기구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비정부기구, 또는 민간이 에코라벨링 시행 주체가 될 수 있음. 또한 에코라벨링 제도는 국가적 차원, 지역 또는 국제적인 범위에서 이뤄질 수도 있음.

38. 에코라벨링의 주체(owner)가 반드시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필요는 없음. 에코라벨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특별 기관 또는 협회가 운영할 수 있음. 즉, 공공기관, 비정부기구 또는 민간기업이 될 수 있음. 에코라벨링의 주체는 규칙 등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에코라벨링을 준비 또는 운영할 필요가 있음.

39. 에코라벨링의 주체는 별개의 독립된 전문 인허기구를 만들어 인증 기관을 대신해 인허업무를 해야 함. 인허기관은 민간, 정부기관 또는 국영으로 운영되는 자립기구 등이 될 수 있음.

지속가능한 어업의 표준설정 가이드라인 (Guidelines for the Setting of Standards of Sustainable Fisheries)

목적

40. 표준 설정은 해면에서 수산물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고자 하는 에코라벨링의 목적을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임. 표준은 에코라벨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지속가능 어업의 목적을 반영해야 함. 표준은 어업의 관리영역 또는 지배 시스템의 정성적이고 정량적인 요소로써 구성되어야 함.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어업과 해면어획 수산자원의 보호 그리고 관련 생태계에 대한 결과를 반영해야 함.
41. 표준은 세계 시장을 왜곡시켜서는 안 되며, 국제 교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형성해서는 안됨.

표준 근거(Normative basis)

42. 지속가능 어업을 위한 표준은 국제수산기구와 적용가능한 국내국제 근거해야 함. 관련 국제수산기구는 1982년 UN 해양법 협약(1982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의 어족 협약(1995 UN Fish Stocks Agreement), 책임있는 어업을 위한 행동강령(1995 Code of Conduct for Responsible Fisheries)등임

43. 표준 개발을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함.

ISO/IEC Guide 59 Code of good practice for standardization. 1994

WTO TBT, ANNEX 3 Code of Good Practice for the Preparation, Adoption and Application of Standard

FAO 1998. 해면어획수산물의 에코라벨링 적용을 위한 무차별 기술적 가이드라인 개발의 가능성에 관한 기술고문 보고서(*Report of the Technical Consultation on the Feasibility of Developing Non-Discriminatory Technical Guidelines for Eco-Labelling of Products from Marine Capture Fisheries.*)

ISEAL. P020 Guidance on ISEAL Code of Good Practice for Setting Social and Environment Standards. Public Draft.

ISEAL. P020 Guidance on ISEAL Code of Good Practice for Voluntary Process and Production Method Standard-setting Procedures, Public Draft

기능 및 조직 구조(Functions and organization structure)

44. 조직 및 기관의 표준이란 표준의 설정, 검토, 개정, 평가, 인증, 승인과 관련된 업무와 관계됨. 이 같은 업무는 특화된 표준설정 기구 또는 기타 적정 기관에서 행할 수 있음.
45. 표준 설정 기관이 없을 경우에는 표준설정 조직구조에는 독립적인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위원회와 컨설턴트를 반드시 포함해야 함.

조건(Requirements)

투명성(Transparency)

46. 표준 개발의 투명성이란 관련 국제표준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고, 모든 관계자, 특히 개발도상국의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어야 함함
47. 표준설정 조직 또는 협회는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서문화된 절차를 따라야 함. 표준의 규칙은 표준설정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질적 분쟁 또는 절차상의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함.
48. 표준이 채택되기 전까지 표준을 개발하고 검토·수정하는 결정이 나는 과정은 표준의 준비 (검토 또는 수정) 단계임.
49. 일단 표준이 채택되면, 즉각 공지하고 인터넷에서 접속이 가능해야 함.
50. 최소 6개월에 한번씩 표준 개발에[참여한 조직이나 협회는 업무 프로그램을 발간해야 하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함.
- 업무 프로그램 이름
 - 업무 프로그램 주소
 - 현재 준비중인 표준 리스트
 - 현재 검토중이거나 개정상태에 있는 표준 리스트
 - 6개월 전에 채택된 표준 리스트

51. 업무 프로그램을 표준화에 관한 국내외 및 국제 간행물에 발표하고, 언제든지 인터넷을 통해 접속이 가능해야 함.
52. 관심 있는 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표준 마련과 관련된 조직이나 협회는 표준마련절차, 가장 최근의 업무 프로그램, 가안의 표준 또는 최종 표준에 관한 내용을 즉각 제공해야 함.
53. 요청이 있을 시 표준마련 절차, 최근의 업무 프로그램, 가안의 표준 또는 최종 표준 내용을 영어, 불어, 스페인어로 번역해서 제공해야 함.

관심있는 자의 참여(Participation by interested parties)

54. 표준 설정 조직이나 협회는 독립 기술 전문가 또는 표준 개발, 개정, 승인 과정에 관심있는 자들의 대표자가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지속가능 어업에 관한 표준 개발 과정에 어업관리국, 수산업, 어업인 대표 조직, 학계, 환경그룹, 수산물가공업자, 무역업자, 소매업자, 소비자협회의 대표자가 참여해야 함.
55. 관심있는 자는 협의회(consultation forum)를 통해 표준설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음. 또한 관심있는 자는 참여할 수 있는 대안의 메커니즘을 인지하고 있어야 함. 1개 이상의 포럼이 지정된 곳에서 관심있는 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협력 조건을 결정해야 함.
56. 표준화 조직은 반드시 의사결정을 알려줄 수 있는 서문화된 절차를 가지고 있어야 함.

고지 조항(Notification provisions)

57. 표준이 채택되기 전에는 표준설정조직은 최소 60일전에 관심있는 자로부터 가안의 표준에 관한 논평을 반드시 받아야 함. 논평 기간 전에 표준마련 조직은 표준화 관련 국내외 간행물 또는 인터넷에 논평기간임을 공지해야 함.
58. 표준설정조직은 해당 기간에 받은 논평 내용을 고려해야 함. 표준이 국내 또는 국제 표준과 다를 경우에는 이에 대해 이유를 설명해야 함.

기록유지(Keeping of records)

59. 표준 및 표준 개발과 관련된 활동은 반드시 기록·유지되어야 함. 표준 설정조직은 표준 관련 질의 및 논평 의뢰에 대한 주요내용(central focal point)을 확인해야 함. 주요내용 문의에 대한 연락정보는 인터넷 등에 알림으로써 쉽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표준 및 표준절차의 검토 및 수정(Review and revision of standards and of standard setting procedures)

60. 표준 내용을 정기적으로 반드시 검토해야 하며 검토 이후에 필요하다면 수정해야 함. 또한 인증받은 수산물이 수정된 표준에 부합되는지를 최소 3년에 한번씩 확인해야 함.
61. 관심있는 자는 표준 수정을 제안할 수 있음. 표준마련 조직은 표준 수정 작업이 일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졌는지를 고려해야 함.
62. 표준 설정 절차 및 방법론은 과학 및 기술 발전 정도와 지속가능 어업의 표준마련에서 획득한 경험을 반영해서 업데이트되어야 함.

표준의 유효성(Validation of standards)

63. 표준의 개발 및 개정 과정은 본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지속가능 해면어업의 최소실질조건과 비교해서 적절한 절차를 거쳤을 때 표준이 유효성을 가질 수 있음. 유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표준이 지속가능 어업과 무관한 범위나 조건을 포함하고 있는 않은지를 확인해야 하며, 불필요한 교역장벽을 형성하거나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들어서도 안 됨.

인허 가이드라인 (Guidelines for Accreditation)

목적

64. 인허란 지속가능 어업의 표준 및 어업에 대한 일련의 검사에 대해서 부합성 평가를 내리는 인증기관(certification body)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충분한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주는 것임. 인증기관을 인허함으로써, 인증기관(회사)가 특정 수산물 또는 수산식품이 지속가능 어업표준에 부합하는 수산물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인증했음을 인허기관이 확인해 주는 기능을 함.

실질적 근거(Normative Reference)

65. ISO Guide 61. *General Requirements for assessment and accreditation of certification/registration bodies.* 1996

기능 및 구조

66. 인허는 자체의 규칙 및 인허시스템과 같은 관리방법에 기반해서 이뤄짐. 다음의 평가 업무는 반드시 적절한 인허 기관에 의해 이뤄져야 함. 무차별적이고, 공평하며, 정확한 방식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인허기관은 다음의 조건을 반드시 충족시켜야 함.

조건(Requirements)

무차별성(Non-Discrimination)

67. 인허기관 제공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모든 인증 주체에 공개해야 함. 특정 협회 또는 그룹 내의 멤버십 또는 지원 기관의 규모에 상관없이 무조건적인 접근이 이뤄져야 하며, 이미 인허받은 인허기관의 수와도 무관해야 함.
68. 개발도상국 인허기관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개발도상국에 지원하는 재정 및 기술, 기술이전, 교육·훈련, 과학협력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함.

독립성, 공정성, 투명성(Independence, impartiality, transparency)

69. 인허기관은 반드시 독립적이고 공정해야 함. 공정하고 독립적이기 위해서는 인허기관은 다음과 같아야 함.
- 조직구조, 재정 및 민간업체 또는 공공업체로부터 지원받는 내용에 대

해 투명해야 함

- 임직원들은 투자자 및 관계자와 독립적이어야 함.
- 상업적, 재정적, 또는 인허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함.
-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자가 인허결정을 내렸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외부 인사 또는 기관에 인허, 인허유지, 인허연장, 인허축소, 인허연기, 인허철회에 대한 권한을 위임할 수 없음

인적 자원 및 재정자원(Human and Financial Resources)

70. 인허기관은 적절한 재정자원 확보 및 인허 시스템 운영을 위한 안정성을 확보해야 함. 그리고 운영 및 활동에서 야기될 수 있는 부채를 커버할 수 있는 적절한 장치를 유지하고 있어야 함.
71. 인허기관은 교육, 훈련, 전문 지식 및 인허업무 경력을 가진 충분한 인적 자원을 확보해야 함.
72. 인증과정에 관계된 자의 관련 자격, 훈련, 경력에 관한 정보는 인허기관이 유지·보관해야 하며, 교육 및 경력에 관한 기록을 업데이트해야 함.
73. 인허기관이 관련 업무를 외부 기관 또는 외부인사에게 외주로 줄 경우, 인허기관에 상당하는 자격을 외부기관에 요구해야 함. 기밀내용 및 분쟁 발생 등에 관한 내용을 계획서 또는 협약서에 기재해야 함.

책임 및 보고(accountability and reporting)

74. 인허기관은 법 주체(legal entity)이어야 하며, 인허 절차를 받기 위한 명료하고 효과적인 절차를 가지고 있어야 함. 특히, 인허기관은 지원자 및 인허된 주체에게 다음 내용을 제공해야 함.
 - 인허 및 인허절차에 관한 상세한 설명
 - 인허에 필요한 서류
 - 인허기관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상세내용
75. 양자의 책임에 관한 내용을 계획서 또는 협약서에 기재해야 함.
76. 인허기관은 다음을 가지고 있어야 함.

- 제공 서비스(quality)에 대한 규정된 목적 및 의무
- 제공 서비스의 절차 및 지시서에 관한 메뉴얼
- 제공 서비스에 대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시스템

77. 인허기관은 모든 절차가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졌는지를 감시할 수 있는 내부 감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해서 인허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시행되었음을 확인해야 함.

78. 인허기관은 또는 외부감사를 받고 외부감사 결과는 공개해야 함.

79. 인허기관 팀 소속이며 자격을 갖춘 자가 모든 적용가능한 인허 조건을 평가해야 함.

80. 평가를 위해 임명된 자는 인허기관에 최종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보고서의 내용은 인허기관이 모든 인허조건에 맞게 평가하였는지에 관한 것임. 또한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 하는데

- 직원의 자격, 경력 기재
- 내부 조직 및 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인허기관이 채택한 절차의 적절성
- 표준과 부합되지 않는 내용(nonconformities)을 수정하기 위해 취한 액션

81. 계약상, 법적 또는 기타 의무사항을 평가받는 동안의 모든 내용을 기록·보관하기 위해서 인허기관은 정책과 절차를 가져야 함. 기록 내용은 특히 지원양식, 평가보고서, 인허 획득, 유지, 연장, 단축, 철회와 관련된 인허 절차가 효과적으로 시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또한 인허의 신뢰성 및 절차의 투명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내용을 관리·유지 및 처리해야 함.

인증기관⁶⁹⁾의 인허와 관련된 불만사항의 해결책(Resolution of complaints concerning accreditation of certifying bodies)

69) 인증과 관련된 불만사항 및 항소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 인허기관이 취하는 절차는 다음장 인증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될 것임.

82. 인허기관은 인증기관의 인허 및 비인허과 관련한 불만 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문서화된 정책 및 절차를 가지고 있어야 함.
83. 불만사항에 대응하도록 특별 독립 위원회 설치 절차를 포함해야 함. 가능하다면 위원회는 논의 또는 조정을 통해 불만사항을 해결해야 함. 논의 또는 조정이 불가하다면 위원회는 인허가구에 서면의 규칙을 제출하고, 다시 다른 당사자 또는 관계자에게 전달되어야 함.
84. 인허기관은
 - 인허와 관련된 모든 불만사항 및 해결책과 관련된 기록을 보관·유지해야 함.
 - 조정 또는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예방조치의 효율성을 평가해야 함.
 - 불만사항 해결 및 불만 사항을 조사하는 동안 획득한 정보는 비밀로 유지해야 함.
85. 인허와 관련한 불만사항 처리 절차는 반드시 공개해야 함.
86. 위 내용은 국내법 또는 국제법상의 법적·행정 절차에 따름.

기밀유지(Confidentiality)

87. 인허기관은 위원회 및 외부기관을 포함한 모든 조직차원에서 인허활동과정에서 획득한 정보의 기밀유지를 위해 적절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함.
88. 법에 따라 제3자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인허기관은 획득한 정보를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알릴 수 있음. 그 외 인허기관의 서면 동의가 없을 경우에는 지원한 인증기관에 관한 정보를 제3자에게 노출해서는 안 됨.

인허의 유지 및 연장(Maintenance and Extension of Accreditation)

89. 인허기관은 공식인증기관의 현 상태 또는 운영상의 변동사항에 대해 지체 없이 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함.
90. 인허기관은 공식 활동 능력 또는 범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

화 또는 인증기관이 명시한 관련범위와의 부합성에 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재평가할 수 있는 절차를 가지고 있어야 함.

91. 공식인증기관이 지속적으로 인허표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인허를 짧은 시간 간격을 두고 재평가해야 함. 재평가 기간은 5년을 초과해서는 안 됨.

인허의 연장 및 철회(Suspension and Withdrawal of Accreditation)

92. 인허기관은 인허 범위의 전체 또는 부분이 중지 또는 취소될 수 있다는 조항을 명시해야 함.

인허조건의 변화(Change in the accreditation requirements)

93. 인허기구는 인허 조건의 변동사항을 공지해야 함.

94. 변동사항의 유효일자 및 정확한 양식에 관한 결정하기 전에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검토해야 함.

95. 변화 요구의 결정 및 공시에 이어, 각 인허기관은 합리적인 기한내에 절차에 필요한 조정을 했음을 확인해야 함.

96. 개발도상국의 인허기관을 특별히 고려해야 함.

인허 심볼 또는 로고⁷⁰⁾의 소유권 또는 면허(licensee)(Proprietor or licensee of an Accreditation Symbol or a Logo)

97. 심볼 또는 로고의 소유권 또는 면허를 가지고 있는 인허기관은 인허프로그램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절차를 문서화해야 함.

98. 인증기관이 인증한 상품, 서비스, 또는 시스템을 인허 기관이 자체적으로 승인했다는 뉘앙스로 인허 마크나 로고를 사용해서는 안 됨.

99. 광고, 카달로그 등에서 발견되는 인허시스템의 부정확한 내용(references) 또는 인증 로고의 잘못된 사용을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70) 인증, 심볼, 로고의 사용 및 통제권한에 대한 조항은 인증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될 것임.



인증가이드라인 (Guidelines for certification)

목적(Purpose)

100. 인증이란 수산물이 관련표준을 준수하고, 일련의 적절한 검사가 있었음을 제3자가 서문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확인하는 절차임. 지속가능한 해면어업을 위해 인증은 에코라벨링의 가장 중요한 부분임. 인증은 또한 특정 수산물 또는 수산식품이 지속가능어업 표준에 따라 생산되었음을 구매자(buyer)와 소비자에게 확인시켜주는 기능을 함. 모든 요소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후 이뤄지는 인증과정을 통해 에코라벨이 진실한 정보를 전달한다는 것을 확인해줌. 이는 에코라벨의 소기 목적을 획득하기 위해 중요한 조건임.

범위(Scope)

101. 인증에는 두 가지 타입이 있음. 첫째는 수산물 자체에 대한 인증이며, 두 번째는 수산물이 생산-가공-판매 과정에 적용되는 일련의 관리방식에 대한 인증이 있음. 수산물과 수산물 관리에 대해 개별 인증을 할 수 있음.

102. 인증에 대한 두 가지 평가를 할 수 있는데,

1) 부합성의 평가(confirmity assessment)로써, 수산물이 표준 및 표준인증 범위를 준수하였는가를 평가함

2) 검사 평가(chain of custody assessment)로써 수산물 가공, 유통, 마케팅 단계에서 인증 수산물의 수산물을 확인할 수 있는지 평가

103. 라벨이 부착되어 소비자에게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되었음을 알려주는 수산물 및 수산식품은 두 가지 타입의 평가 및 인증을 받아야 함.

실질적 근거(Normative references)

104. ISO guide 62, *General Requirements for bodies operating assessment and certification/registration of quality system.* 1996

105. ISO/IEC Guide 65, *General requirements for bodies operating product certification systems.* 1996

106. WTO.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Article 5.

기능 및 구조(Functions and structure)

107. 부합성 및 검사에 대한 평가는 공식인증기관이 수행해야 함. 무차별적이

고, 공정하고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기관으로써 인정받기 위해서 인증기관은 특히 다음의 조건들을 충족해야 함.

조건 (Requirements)

독립성 및 공정성(Independence and impartiality)

108. 인증기관은 에코라벨링 주체로부터 법적, 재정적으로 독립해야 함.
109. 인증기관과 인증기관의 평가 및 인증업무에 참여하는 직원(인증기관이직 접 고용되었든지, 하부 계약에 의해 고용되었는지 상관없음)은 평가받게 될 수산물 또는 검사시스템에 대한 어떠한 상업적,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됨.
110. 인증기관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인증결정 및 인증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111. 인증기관은 인증 허가, 유지, 연장, 축소, 연기, 취소에 대한 권한을 외부 기관 또는 인사에게 위임할 수 없음.

무차별(non-discrimination)

112. 지역수산물기구, 국영, 준국영, 비정부수산물관리기관 등의 관리주체에 상관 없이 모든 어업은 인증기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또한 수산업의 규모나 범위 또는 이미 인증받은 어업의 수에 상관없이 인증받을 수 있음.

인적자원 및 재정자원(Human and financial resources)

113. 인증기관은 인증시스템 운영을 위한 적절한 재정자원 및 안정성을 확보해야 함. 또한 운영 또는 운영과 관련한 활동에서 야기될 수 있는 채무를 커버할 수 있는 적절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함.
114. 어업의 표준 부합성 여부 확인 및 일련의 검사를 평가하기 위해서 충분한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자 또는 전문 기술 보유자 또는 경력자를 확보해야 함.
115. 인증 과정과 관련된 인력의 경력 및 학력에 대한 정보는 인증기관이 보관·유지해야 함. 또한 훈련 및 경력에 기록은 반드시 최신의 내용으로 기록되어야 함.

116. 인증기관은 인증과 관련한 용역(sub-contract work)을 외부기관 또는 외부인사에게 위탁할 경우 인증기관에 상응하는 조건을 외부기관에 적용해야 함. 분쟁해결, 기밀성 등을 포함하는 계약서 또는 협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함.

책임 및 보고(Accountability and reporting)

117. 인증기관은 법적추체이어야 하며 수산물 인증 및 수산물 검사에 대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효과적이고 명료한 지원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함. 특히 인증기관은 지원자 및 인증받는 주체에 대해 다음의 내용을 유지·제공해야 함.
- 인증 절차 및 평가의 상세 내용
 - 인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상세내용
 - 인증주체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상세내용
118. 인증기관과 의뢰인은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상세히 서술한 계약서 또는 협약서를 작성해야 함.
119. 인증기관은 다음을 가지고 있어야 함
- 제공 서비스(quality)에 대한 규정된 목적 및 의무
 - 제공 서비스의 절차 및 지시서에 관한 매뉴얼
 - 제공 서비스에 대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시스템
120. 인증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시행되었는지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인증기관은 모든 절차를 감시할 수 있는 내부 감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해야 함.
121. 인증기관은 120항과 관련하여 외부 감사를 받을 수 있음. 외부감사 결과는 반드시 공개해야 함.
122. 인증기관은 계약서, 법적 내용 및 기타내용의 일관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일정기간동안 유지하기 위한 정책 및 절차를 가져야 함.
123. 인증기관은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모든 관계자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알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함.

124.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인증기관은 관련 내용의 문서를 공개해야 함.

인증 수수료(certification fees)

125. 인증 요청이 있는 수산물 및 인증 의뢰인을 위해서 인증기관은 서면화된 수수료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함. 수수료체계를 구성하고, 인증평가에 대한 요율을 결정할 때, 인증기관은 특히 평가의 정확성 및 진실성, 수산물 및 검사체계의 규모 및 범위, 의뢰인의 무차별적 서비스 제공, 개도국의 특수상황 등을 고려해야 함.

비밀 보장(Confidentiality)

126. 조직의 모든 차원에서 인증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의 기밀을 보장할 수 있는 체계가 있어야 하며, 이 체계는 적용법과 일관되어야 함.

127. 법에 따라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할 경우에는 의뢰인은 공개된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함. 의뢰인의 서면 동의서가 없을 경우에는 특정 상품 또는 수산물에 관한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되어서는 안 됨.

인증의 유지(Maintenance of Certification)

128. 인증기관은 인증된 수산물 또는 검사시스템이 인증 조건에 부합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간적 간격을 두고 정기적으로 감독 및 모니터링을 해야 함.

129. 인증기관은 수산물, 검사시스템 또는 부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즉각 고지해야 함.

130. 인증 수산물 또는 검사시스템의 지위 및 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인증 수산물 또는 검사시스템이 더 이상 인증 조건이나 표준과 부합하지 않다는 불만이나 지적이 있을 경우에는 인증기관은 재평가 할 수 있는 절차를 가지고 있어야 함.

131. 수산물의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관리시스템의 경우에는 3년을 초과해서는 안 됨. 재인증을 받기 위해 평가할 경우 수산업의 관행 또는 관리 관행의 변동사항을 특히 주목해야 함. 또한 표준을 변동시키는 새로운 상황에 대해 주목해야 함.

인증의 갱신(Renewal of Certification)

132. 전(前) 모니터링과 감사, 재평가 내용에 근거하여, 수산물은 인증 효력을 최고 5년에 한번씩 갱신할 수 있으며, 관리체계는 3년마다 갱신이 이뤄질 수 있음.

인증의 중지 및 취소(Suspension and Withdrawal of Certification)

133. 인증기관은 인증 범위를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중지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해야 함.
134. 인증의 중지 또는 취소 결정이 나면 인증기관은 에코라벨링과 관련된 인증수산물 또는 검사시스템의 모든 광고 사용을 중지해야 하며, 인증기관이 요구하였던 인증문서도 반납해야 함. 항소가(appeals process)가 완료되면 인증기관은 인증의 중지 또는 취소결정을 공지할 책임이 있음.

검사(Maintaining the Chain of Custody)

135. 검사 절차는 중요 이동(transfer)지점에서 이뤄져야 함. 거래되는 수산물 또는 수산식품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각 중요지점(transfer)에서 인증받은 수산물 또는 수산식품과 비인증수산물을 반드시 구분시켜야 함.
136. 인증 수산물 또는 수산식품의 수령인이 선적, 영수증과 송장과 관련된 모든 검사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지를 인증기관은 확인해야 함.
137. 인증기관에는 감사방법 및 감사 시기(periodicity)를 규정하는 절차가 있어야 함. 감사 시기(periodicity)는 다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중요지점에서 이뤄지는 기술적 프로세스
 - 인증 수산물의 가격 및 물량 등의 위험 요인
138. 검사/감사기간 동안 확인된 검사의 위반사항은 검사/감사보고서에 다음의 내용과 함께 기록되어야 함.
- 위반사항을 발생시킨 요소에 관한 설명
 - 유사 위반사항의 재발방지를 위한 보완조치에 대한 설명
139. 모든 검사/감사 기록은 서문화된 검사/감사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관계자들이 열람할 수 있어야 하며, 인증기관사무소는 검사/감사 보고서를 철하여 보관해야 함.

140. 검사/감사기록은 최소한 다음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함.
- 검사/감사의 날짜
 - 보고서의 책임자의 성명
 - 검사/감사 장소 및 주소
 - 의뢰인이 검사요건을 잘 수행했는지에 관한 논평

인증 주장, 심볼, 로고의 사용 및 권한(Use and Control of a Certification Claims, Symbol or a Logo)

141. 인증기관, 인허기관 또는 에코라벨링의 주체는 수산물 또는 수산식품이 지속가능한 어업방식으로 생산되었음을 상징할 수 있는 심볼이나 로고의 사용에 관한 조건 혹은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절차를 문서화해야 함. 특히 에코라벨링의 심볼이나 로고가 지속가능한 수산업과 관련있어야 하며, 무역장벽을 형성하거나 소비자의 이해를 저해해서도 안 됨.
142. 인증을 받기 위해서 실제로 인증받는 자원으로 생산하였는지를 확인받지 않은 경우 인증기관, 인허기관 또는 에코라벨링 주체는 수산물 또는 수산식품의 마크/주장/로고를 첨가하거나 수산물 또는 수산식품을 인증할 수 있는 면허를 발행할 수 없음.
143. 인증기관, 인허기관, 에코라벨링 주체는 인증 마크와 로고의 사용 및 전시가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부당한 내용을 담지 않도록 책임져야 함.
144. 인증기관, 인허기관, 에코라벨링 주체가 인증을 받았는지를 나타낼 수 있는 심볼 또는 로고를 사용하도록 허가하였을 경우, 인증받은 수산물 및 수산식품은 심볼 또는 로고를 사용할 수 있음.
145. 광고, 카탈로그 등에서 심볼과 로고가 잘못 사용되고 있거나 인증 시스템의 부정확한 내용(references)을 발견하였을 경우 인증기관, 인허기관, 에코라벨링 주체는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146. 발행된 모든 인증서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함.
- 에코라벨링 주체 또는 인증기관의 이름 및 주소

- 인증기관의 이름 및 주소
- 인증받은 주체의 이름 및 주소
- 인증서의 발행 날짜
- 인증 내용
- 인증 유효 조건
- 발행처(issuing officer)의 서명

불만사항 및 고소에 대한 해결책 (Resolution of complaints and appeals)

147. 인증 또는 비인증과 관련해 관계 당사자들의 불만 사항 및 고소를 해결하기 위해 인증기관 또는 에코시스템의 주체는 공식 인증기관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 및 절차를 가지고 있어야 함. 이 절차는 시기적절해야 하며, 고소의 범위와 특성에 관한 명확하게 정의 내려야 함. 불만사항을 평가하는 동안 불만 및 고소내용은 관계자에게만 공개됨. 고소에 드는 비용은 고소인 부담임.
148. 불만 및 고소 절차에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위원회가 포함되어야 함. 가능하다면 위원회는 논의 또는 조정과정을 통해 불만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함. 논의 또는 조정이 불가능하다면 위원회는 인증기관, 인허기관 또는 에코라벨링 주체에 평결문(finding)을 내려야 하고, 이 평결문은 당사자 및 관계자에게 전달되어야 함.
149. 위의 내용은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법적, 행정적 프로세스와 배치되어서는 안 됨.

인증과 관련된 불만 및 항소에 관한 내용 보관(Keeping of records on complaints and appeals concerning certification)

150. 인증기관, 인허기관 또는 에코라벨링 주체는
- 인증과 관련한 모든 불만사항, 고소 내용 및 불만사항의 개선 조치에 관한 내용을 모두 기록·보관해야 함.
 - 적절한 조정 및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함
 - 조정 조치의 효율성을 평가함.
 - 인증과 관련한 불만 및 고소에 대한 조사 및 해결책을 모색하는 동안 획득한 정보의 비밀이 보장되어야 함.
151. 인증과 관련한 불만 및 항소 처리 절차에 관한 정보는 반드시 공개해야 함.



〈원 문〉

GUIDELINES FOR THE ECOLABELLING OF FISH AND FISHERY PRODUCTS FROM MARINE CAPTURE FISHERIES

SCOPE

1. These guidelines are applicable to ecolabelling schemes that are designed to certify and promote labels for products from well-managed marine capture fisheries and focus on issues related to the sustainable use of fisheries resources.

PRINCIPLES

2. The following principles should apply to ecolabelling schemes for marine capture fisheries:

2.1 Be consistent with the 1982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nd the Agreement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f 10 December 1982 relating to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Straddling Fish Stocks and Highly Migratory Fish Stocks, the FAO Code of Conduct for Responsible Fisheries and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rules and other relevant international instruments.

2.2 Recognize the sovereign rights of States and comply with all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2.3 Be of a voluntary nature and market-driven.

2.4 Be transparent, including balanced and fair participation by all interested parties.

2.5 Be non-discriminatory, do not create unnecessary obstacles to trade¹ and allow for fair trade and competition.²

2.6 Provide the opportunity to enter international markets².

2.7 Establish clear accountability for the owners of schemes and the certification bodies in conformity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2.8 Incorporate reliable, independent auditing and verification procedures.

- 2.9 Be considered equivalent if consistent with these guidelines.
 - 2.10 Be based on the best scientific evidence available, also taking into account traditional knowledge of the resources provided that its validity can be objectively verified.
 - 2.11 Be practical, viable and verifiable.
 - 2.12 Ensure that labels communicate truthful information.
 - 2.13 Provide for clarity.
 - 2.14 Be based, at a minimum, on the minimum substantive requirements, criteria and procedures outlined in these guidelines.
3. The principle of transparency should apply to all aspects of an ecolabelling scheme including its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financial arrangements.

GENERAL CONSIDERATIONS

4. Ecolabelling schemes should take into account that principles, minimum substantive requirements, criteria and procedures set out in this document will apply equally for developed, transition and developing countries.

5. Bearing in mind that ecolabelling schemes relate to fisheries management, and rights and duties of States,⁷¹⁾ it is recognized that the involvement of States in ecolabelling schemes is desirable and should be encouraged. It is also recognized that States and, as appropriate,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s (RFMOs) may develop ecolabelling schemes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se guidelines. Ecolabelling schemes should give full consideration to the recommendations and advice by States, and, as appropriate, RFMOs.

6. In accordance with Article 5 of the Code of Conduct for Responsible Fisheries, and recognizing that all countries should have the same opportunities, and in view of the special conditions applying to developing countries and countries in transition and their important contribution to international fish trade, it is acknowledged that in order to benefit from applying ecolabelling schemes, states, relevant intergovernmental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financial institutions should provide

71) In these Guidelines, the reference to States includes the European Community in matters within its competence.



developing countries and countries in transition with financial and technical assistance to develop and maintain appropriate management arrangements that will allow them to participate in such schemes. Such assistance should also consider direct support towards the often high costs of accreditation and certification. Development agencies and donor institutions are encouraged to support FAO in facilitating financial and technical assistance to developing countries and countries in transition.

TERMS AND DEFINITIONS

7. For the purpose of these International Guidelines, the following terms and definitions apply.

Accreditation

8. Procedure by which a competent authority gives formal recognition that a qualified body or person is competent to carry out specific tasks.

(Based on ISO/IEC Guide 2:1996, 12.11)

Accreditation body

9. Body that conducts and administers an accreditation system and grants accreditation.

(Based on ISO Guide 2, 17.2)

Accreditation system

10. System that has its own rules of procedure and management for carrying out accreditation.

11. Note - Accreditation of certification bodies is normally awarded following successful assessment and is followed by appropriate surveillance.

(Based on ISO Guide 2, paragraph 17.1)

Arrangement

12. A cooperative mechanism established by two or more parties be they

governmental, private or non-governmental entities.

Audit

13. A systematic and functionally independent examination to determine whether activities and related results comply with planned objectives.

(Based on Codex Alimentarius, Principles for Food Import and Export Certification and Inspection, CAC/GL 20)

Certification

14. Procedure by which a third party gives written or equivalent assurance that a product, process or service conforms to specified requirements. Certification may be, as appropriate, based on a range of inspection activities which may include continuous inspection in the production chain.

(Based on ISO Guide 2, 15.1.2 and Principles for Food Import and Export Certification and Inspection, CAC/GL 20)

Certification body

15. Competent and recognized body that conducts certification. A certification body may oversee certification activities carried out on its behalf by other bodies.

(Based on ISO Guide 2, 15.2)

Chain of custody

16. The set of measures which is designed to guarantee that the product put on the market and bearing the ecolabel logo is really a product coming from the certified fishery concerned.

These measures should thus cover both the tracking/traceability of the product all along the processing, distribution and marketing chain, as well as the proper tracking of the documentation (and control of the quantity concerned).

Complaint

17. An objection by a person or body to a decision regarding accreditation, deaccreditation, certification or de-certification.



Conformity assessment

18. Any activity concerned with determining directly or indirectly that relevant requirements are fulfilled.

19. Notes: Typical examples of conformity assessment activities are sampling, testing and inspection; evaluation, verification and assurance of conformity (supplier's declaration, certification); registration, accreditation and approval as well as their combinations.

(ISO Guide 2, 12.2)

Decision

20. Any resolution by an accreditation or certifying body or arrangement concerning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a person or body.

Ecolabelling scheme

21. Ecolabelling schemes entitle a fishery product to bear a distinctive logo or statement which certifies that the fish has been harvested in compliance with conservation and sustainability standards. The logo or statement is intended to make provision for informed decisions of purchasers whose choice can be relied upon to promote and stimulate the sustainable use of fishery resources.

Standard for certification

22. Document approved by a recognized organization or arrangement, that provides, for common and repeated use, rules, guidelines or characteristics for products or related processes and production methods, with which compliance is not mandatory under international trade rules. It may also include or deal exclusively with terminology, symbols, packaging, marking or labelling requirements as they apply to a product, process or production method.

(Based on TBT agreement, Annex 1, para.2)

In these guidelines, unless otherwise qualified, the word standard refers to a standard for certification. The standard for certification will include requirements, criteria and performance elements in a hierarchical arrangement. For each requirement, one or more substantive criteria should be defined. For each criterion, one or more

performance elements should be provided for use in assessment.

Standard-setting organization or arrangement

23. Organization or arrangement that has recognized activities in standard setting.
(Based on ISO Guide 2, paragraph 4.3)

Third party

24. Person or body that is recognized as being independent of the parties involved, as concerns the issue in question.
(ISO/IEC Guide 2:1996)

Unit of certification

25. The “unit of certification” is the fishery for which ecolabelling certification is called for. The certification could encompass: the whole fishery, where a fishery refers to the activity of one particular gear-type or method leading to the harvest of one or more species; a sub-component of a fishery, for example a national fleet fishing a shared stock; or several fisheries operating on the same resources. The certification applies only to products derived from the “stock under consideration” (see Para. 30). In assessing compliance with certification standards, the impacts on the “stock under consideration” of all the fisheries utilizing that stock or stocks over their entire area of distribution are to be considered.



MINIMUM SUBSTANTIVE REQUIREMENTS AND CRITERIA FOR ECOLABELS

Introduction

26. The following sets forth the minimum substantive requirements and criteria for assessing whether a fishery can be certified and an ecolabel awarded to a fishery.

Ecolabelling schemes may apply additional or more stringent requirements and criteria related to sustainable use of the resources. The requirements and criteria presented below are to be based on and interpreted in accordance with the current suite of agreed international instruments addressing fisheries, in particular the 1982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the 1995 UN Fish Stocks Agreement and the 1995 Code of Conduct for Responsible Fisheries, as well as related documentation including the 2001 Reykjavik Declaration on Responsible Fisheries in the Marine Ecosystem.

27. Requirements are specified for each of three areas: management systems, the stock or stocks for which certification is being sought (subsequently referred to as “stock under consideration”), and consideration of serious impacts of the fishery on the ecosystem. Criteria and related measurable performance indicators and a corresponding monitoring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in order to assess the conformity of the fishery concerned with the requirements and the criteria of the ecolabelling scheme. In developing and applying the criteria and assessing the conformity of the fishery with the standard of certification, the views and opinions of States, RFMOs and FAO should be fully considered.

Management systems

28. Requirement: The fishery is conducted under a management system which is based upon good practice and that ensures the satisfaction of the requirements and criteria described in Paragraph 29. The management system and the fishery operate in compli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local, national and international law and regulations, including the requirements of any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 that manages the target stocks.

29. The following criteria will apply to management systems for any fisheries, but

it must be recognized that special consideration needs to be given to small-scale fisheries with respect to the availability of data and with respect to the fact that management systems can differ substantially for different types and scales of fisheries (e.g. small scale through to large scale commercial fisheries).

29.1 Adequate data and/or information are collected, maintained and assessed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international standards and practices for evaluation of the current state and trends of the stocks⁷²⁾ (see below: Methodological aspects).

29.2 In determining suitabl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the best scientific evidence available is taken into account by the designated authority, as well as consideration of relevant traditional knowledge, provided its validity can be objectively verified, in order to evaluate the current state of the “stock under consideration” in relation to, where appropriate, stock specific target and limit reference points.

29.3 Similarly, data and information, including relevant traditional knowledge, provided its validity can be objectively verified, are used to identify adverse impacts of the fishery on the ecosystem, and timely scientific advice is provided on the likelihood and magnitude of identified impacts (see Paragraph 31).

29.4 The designated authorities adopt appropriate measures for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the “stock under consideration” based on the data, information, and scientific advice referred to in the preceding bullets. Short-term considerations should not compromise the long-term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fisheries resources.

29.5 An effective legal and administrative framework at the local, national or regional level, as appropriate, is established for the fishery and compliance is ensured through effective mechanisms for monitoring, surveillance, control and enforcement (see also Paragraph 6).

29.6 In accordance with the Code of Conduct Article 7.5, the precautionary

72) After Code of Conduct for Responsible Fisheries, Article 7.4.4.



approach is being implemented to protect the “stock under consideration” and to preserve the aquatic environment. Inter alia this will require that the absence of adequate scientific information should not be used as a reason for postponing or failing to tak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Further, relevant uncertainties are being taken into account through a suitable method of risk assessment. Appropriate reference points are determined and remedial actions to be taken if reference points are approached or exceeded are specified.

“Stocks under consideration”

30. Requirement: The “stock under consideration” is not overfished, and is maintained at a level which promotes the objective of optimal utilization and maintains its availability for present and future generations, taking into account that longer term changes in productivity can occur due to natural variability and/or impacts other than fishing. In the event that biomass drops well below such target levels, management measures (Code of Conduct Article 7.6) should allow for restoration within reasonable time frames of the stocks to such levels.

Ecosystem considerations

31. Requirement: Adverse impacts of the fishery on the ecosystem should be appropriately assessed and effectively addressed. Much greater scientific uncertainty is to be expected in assessing possible adverse ecosystem impacts of fisheries than in assessing the state of target stocks. This issue can be addressed by taking a “risk assessment/risk management approach”. For the purpose of development of ecolabelling schemes, the most probable adverse impacts should be considered, taking into account available scientific information, and local knowledge provided that its validity can be objectively verified. Those impacts that are likely to have serious consequences should be addressed. This may take the form of an immediate management response or further analysis of the identified risk. In this context, full recognition should be given to the special circumstances and requirements in developing countries and countries in transition, including financial and technical assistance, technology transfer, and training and scientific cooperation.

Methodological aspects

Assessing current state and trends in target stocks

32. There are many ways in which state and trends in stocks may be evaluated, that fall short of the highly quantitative and data-demanding approaches to stock assessment that are often used for large scale fisheries in developed countries. Use of less elaborate methods for stock assessment should not preclude fisheries from possible certification for ecolabelling.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to the extent that the application of such methods results in greater uncertainty about the state of the “stock under consideration”, more precautionary approaches to managing such resources will be required which may necessitate lower levels of utilization of the resource. There is a variety of management measures commonly used in small scale or low value fisheries that nonetheless can achieve quite adequate levels of protection for stocks in the face of uncertainty about the state of the resource.



PROCEDURAL AND INSTITUTIONAL ASPECTS

Introduction

33. Drawing heavily on available guides, especially those produced by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this chapter of the guidelines addresses the three principal procedural and institutional matters that any ecolabelling scheme should encompass: (1) the setting of certification standards, (2) the accreditation of independent certifying bodies, and (3) the certification that a fishery and the product chain of custody are in conformity with the required standard and procedures. The certification standard encapsulates the objectives that are pursued by a scheme. It is usually expressed in specific criteria that a product and/or the production process and methods would have to meet to get certified.

34. Accreditation of a certification body seeks to verify that the body is appropriate and capable for the certifying tasks. It would have to ascertain that the certification body is neutral and independent and has the technical and financial capacity to perform a certification of the conformity of a fishery with the established standard. Similar requirements apply to the accreditation body itself. The accreditation body needs to have the technical and financial capacity to undertake accreditation tasks, and perform these tasks in a neutral, nondiscriminatory and independent manner.

35. The above three steps in the setting up of an ecolabelling scheme would normally have to occur sequentially in the same order whereby (2) accreditation and (3) certification would remain regular activities of the scheme once established. The scheme may also, at a regular but longer time interval, review and revise the certification standard in view of new knowledge and experiences.

Structure

36. The procedural guidelines are presented in three parts as follows: 1) Guidelines for the setting of standards of sustainable fisheries, 2) Guidelines for accreditation, and 3) Guidelines for certification. Each of these three parts is further subdivided into four sections: i) Purpose, ii) Normative References, iii) Functions and Structure and iv) Requirements. The Requirements are the minimum requirements that a body, person

or arrangement should meet to be recognized as competent and reliable in its domain. The Principles listed earlier in these guidelines apply equally to procedural and institutional aspects of marine fisheries ecolabelling schemes.

Options for governance structures

37. There are various options for the governance of an ecolabelling scheme. The initiative for a scheme could be taken by a government, an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a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or a private industry association. There are also various options for the geographical range of a scheme. It could be national, regional or international in scope.

38. The owner of a scheme may not necessarily be directly engaged in its operational affairs. These may be handled by an organization or arrangement which has been specifically set up for this purpose. It could be public, non-governmental or private. The owner of the scheme may lay down rules and regulations under which the ecolabelling arrangement or body is required to operate. The body may implement one ecolabelling scheme for one specific sector (e.g. fisheries) or may have responsibilities for various sectors (textiles; paper; etc.)

39. The owner of an ecolabelling scheme should engage a separate independent specialist accreditation body to take on the task of accreditation of certification bodies on its behalf. The accreditation body could be private, public or an autonomous body governed by public service rules.



Guidelines for the Setting of Standards of Sustainable Fisheries

Purpose

40. The setting of standards is among the most critical tasks of any ecolabelling scheme of products from sustainable marine capture fisheries. The standards reflect the objectives for sustainable fisheries that are being pursued through the scheme. Standards compris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indicators of the governance system or management regime of a fishery as well as of its outcome in terms of sustainable fisheries and conservation of marine fishery resources and related ecosystems.

41. Standards should not distort global markets and should not create unnecessary obstacles to international trade.

Normative basis

42. The normative basis of standards of sustainable fisheries is given by international fisheries instruments and applicable national legislation. Relevant international fisheries instruments include, inter alia, the 1982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the 1995 UN Fish Stocks Agreement and the 1995 Code of Conduct for Responsible Fisheries.

43. In procedural terms, the normative basis for standard development includes the following:

- ISO/IEC Guide 59 Code of good practice for standardization. 1994
- WTO TBT, ANNEX 3 Code of Good Practice for the Preparation, Adoption and
Application of Standards
- FAO 1998. Report of the Technical Consultation on the Feasibility of Developing Non-Discriminatory Technical Guidelines for Eco-Labeling of Products from Marine Capture Fisheries, Rome, Italy, 21-23 October 1998. *FAO Fisheries Report No. 594*
- ISEAL. P020 Guidance on ISEAL Code of Good Practice for Setting Social and Environmental Standards. Public Draft. July 2003.

- ISEAL Code of Good Practice for Voluntary Process and Production Method Standard-setting Procedures, Public Draft 1, March 2003.

Functions and organizational structure

44. A standard setting organization or arrangement is assigned with the tasks of setting, reviewing, revising, assessing, verifying and approving standards. These tasks can be fulfilled through a specialized standard-setting body or through another suitable arrangement.

45. Where there is no standard-setting body,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of a standardsetting arrangement should include, inter alia, a technical committee of independent experts and a consultation forum whose mandates are established.

Requirements

Transparency

46. Transparency in the development of standards is necessary to guarantee and to ensure consistency with relevant international standards and to facilitate access, and participation of all interested parties, especially those of developing countries and countries in transition.

47. Standard-setting organizations or arrangements should carry out their activities in a transparent fashion and following written rules of procedure. Procedural rules should contain a mechanism for the impartial resolution of any substantive or procedural disputes about the handling of standard-setting matters.

48. A standard is under preparation (under review or under revision) from the moment a decision has been taken to develop, review or revise a standard until that standard has been adopted.

49. Once a standard has been adopted, it should be promptly published and should be accessible on the Internet.

50. At least once every six months, the standard-setting organization or arrangement should publish a work programme containing:

- its name;
- its address;
- the list of standards currently under preparation;
- the list of standards currently under reviewing or revision; and
- the list of standards which were adopted in the preceding period.

51. A notice of existence of the work programme should be published in a national or, as may be, regional or international publication of standardization activities and/or should be accessible on the Internet whenever possible.

52. On the request of any interested party, the standardizing organization or arrangement should promptly provide, or arrange to provide a copy of its standard setting procedures, most recent work programme, draft standard or final standard.

53. Translations into English, French or Spanish of standard setting procedures, most recent work programme, draft standards or final standards should be provided upon request, within the means of the standard-setting body or arrangement.

Participation by interested parties

54. Standard-setting arrangements or organizations should ensure balanced participation by independent technical experts and by representatives of interested parties in the standard development, revision and approval process. Development of standards of sustainable fisheries should, wherever possible, include representatives of fisheries management authorities, the fishing industry, fishworkers organizations, the scientific community, environmental interest groups, fish processors, traders and retailers as well as consumer associations.

55. Interested parties should be associated in the standard-setting tasks through an appropriate consultation forum or be made aware of an appropriate alternative mechanisms by which they can participate. Where more than one forum is designated,

coordination requirements applicable to them should be determined.

56. Standardizing arrangements or organizations should have written procedures to guide decision-making.

Notification provisions

57. Before adopting a standard, the standardizing organization or arrangement should allow a period of at least 60 days for the submission of comments on the draft standard by interested parties. No later than the start of the comment period, the standardizing organization or arrangement should publish a notice announcing the period for commenting in a national or, as may be, regional or international publication of standardization activities and/or on the Internet.

58. The standardizing organization or arrangement should take into account, in further processing of the standard, the comments received during the period for commenting. The reply should include an explanation why a deviation from relevant national or international standards is necessary.

Keeping of records

59. Proper records of standards and development activity should be prepared and maintained.

The standard setting organization or arrangement should identify a central focal point for standards-related enquiries and for submission of comments. Contact information for this focal point should be made easily available including on the Internet.

Review and revision of standards and of standard setting procedures

60. Standards should be reviewed at regular published intervals and, if appropriate, revised following such reviews. Certified fisheries should be given a period of at least three years to come into compliance with the revised standards.



61. Proposals for revisions can be submitted by any interested party and should be considered by the standard-setting organization or arrangement through a consistent and transparent process.

62. The procedural and methodological approach for setting standards should also be updated in the light of scientific and technical progress and of the experience gained in standard setting of sustainable fisheries.

Validation of standards

63. In developing and revising standards, an appropriate procedure should be put in place to validate the standard vis-a-vis the minimum requirements for sustainable marine fisheries as laid out in these guidelines. Validation is also required to ensure that standards do not encompass criteria or requirements that are of no relevance for sustainable fisheries and could cause unnecessary barriers of trade or mislead the consumer.

Guidelines for Accreditation

Purpose

64. Accreditation provides assurance that certification bodies responsible for conducting conformity assessments with sustainability standards and chain of custody requirements in fisheries are competent to carry out such tasks. By awarding accreditation to a certification body, accreditation bodies provide assurance that the latter is able to assess and certify that a certain fish or fishery product comes from a fishery that conforms with the established standard of sustainability.

Normative Reference

65. ISO Guide 61. General Requirements for assessment and accreditation of certification/registration bodies. 1996.

Functions and structure

66. Accreditation is carried out on the basis of a system that has its own rules and management, i.e. an accreditation system. The tasks of granting accreditation following successful assessment should be undertaken by competent accreditation bodies. In order to be recognized as competent and reliable in undertaking the assessment in a non-discriminatory, impartial and accurate manner, an accreditation body should fulfill, inter alia, the following requirements.

Requirements

Non-Discrimination

67. Access to the services of the accreditation body should be open to all certification entities irrespective of their country of residence. Access should not be conditional upon the size of the applicant body or membership in any association or



group, nor should accreditation be conditional upon the number of certification bodies already accredited.

68. Full recognition should be given to the special circumstances and requirements of certification bodies in developing countries and countries in transition including financial and technical assistance, technology transfer, and training and scientific cooperation.

Independence, impartiality and transparency

69. The accreditation body should be independent and impartial. In order to be impartial and independent, the accreditation body should:

- Be transparent about its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the financial and other kinds of support it receives from public or private entities.
- Be independent from vested interests, together with its senior executive and staff.
- Be free from any commercial, financial and other pressures which might influence the results of the accreditation process.
- Ensure that decision on accreditation is taken by a person(s) who has (ve) not participated in the assessment.
- Not delegate authority for granting, maintaining, extending, reducing, suspending or withdrawing accreditation to an outside person or body.

Human and Financial Resources

70. The accreditation body should have adequate financial resources and stability for the operation of an accreditation system and should maintain appropriate arrangements to cover liabilities arising from its operations and/or activities.

71. The accreditation body should employ a sufficient number of personnel having the necessary education, training, technical knowledge and experience for performing accreditation functions in fisheries.

72. Information on the relevant qualifications, training and experience of each member of the personnel involved in the accreditation process should be maintained by the accreditation body. Record of training and experience should be kept up to date.

73. When an accreditation body decides to subcontract work related to accreditation to an external body or person, the requirements for such an external body should be no less than for the accreditation body itself. A properly documented contractual or equivalent agreement covering the arrangements including confidentiality and conflict of interests, should be drawn up.

Accountability and reporting

74. The accreditation body should be a legal entity and should have clear and effective procedures for handling applications for accreditation procedures. In particular, the accreditation body should maintain and provide to the applicants and accredited entities:

- a detailed description of the assessment and accreditation procedure;
- the documents containing the requirements for accreditation;
- the documents describing the rights and duties of accredited bodies.

75. A properly documented contractual or equivalent agreement describing the responsibilities of each party should be drafted.

76. The accreditation body should have:

- defined objectives and commitment to quality;
- procedures and instructions for quality documented in a quality manual;
- an established effective and appropriate system for quality.

77. The accreditation body should conduct periodic internal audits covering all procedures in a planned and systematic manner to verify that the accreditation system is implemented and effective.



78. The accreditation body may receive external audits on relevant aspects. The results of the audit should be accessible by the public.

79. Qualified personnel, attached to the accreditation body's team, should be nominated by the accreditation body to conduct the assessment against all applicable accreditation requirements.

80. Personnel nominated for the assessments should provide the accreditation body with a report of its findings as to the conformity of the body assessed to all of the accreditation requirements. The report should provide sufficiently comprehensive information such as:

- the qualification, experience and authority of the staff encountered;
- the adequacy of the internal organization and procedures adopted by the certification body to give confidence in its services;
- the actions taken to correct identified nonconformities including, where applicable, those identified at previous assessments.

81. The accreditation body should have policy and procedures for retaining records of what happened during the assessment visit for a period consistent with its contractual, legal or other obligations. The records should demonstrate that the accreditation procedures have been effectively fulfilled, particularly with respect to application forms, assessment reports and other documents relating to granting, maintaining, extending, reducing, suspending or withdrawing accreditation. The records should be identified, managed and disposed of in such a way as to ensure the integrity of the process and confidentiality of the information.

Resolution of complaints concerning accreditation of certifying bodies⁷³⁾

82. The accreditation body should have a written policy and procedures for dealing with any complaints in relation to any aspect of the accreditation or de-accreditation of certifying bodies.

⁷³⁾ Procedures by the accreditation body on the resolution of complaints and appeals concerning certification are provided in the following chapter on Guidelines for Certification.

83. These procedures should include establishment, on an ad hoc basis as appropriate, of an independent and impartial committee to respond to a complaint. If possible, the committee should attempt to resolve any complaints through discussion or conciliation. If this is not possible, the committee should provide a written ruling to the accreditation body, which should transmit it to the other party or parties involved.

84. The accreditation body should:

- a) keep a record of all complaints, and remedial actions relative to accreditation;
- b) take appropriate corrective and preventive action;
- c) assess the effectiveness of remedial actions;
- d) safeguard confidentiality of information obtained during the investigation and resolution of complaints.

85. Information on procedures for handling complaints concerning accreditation should be made publicly available.

86. The above does not exclude recourse to other forms of legal and administrative processes as provided for in national legislation or international law.

Confidentiality

87. The accreditation body should have adequate arrangements, consistent with applicable laws, to safeguard confidentiality of the information obtained in the course of its accreditation activities at all levels of its organization, including committees and external bodies acting on its behalf.

88. Where the law requires information to be disclosed to a third party, the body should be informed of the information provided, as permitted by the law. Otherwise information about an applicant certification body should not be disclosed to a third party without a written consent of the body.



Maintenance and Extension of Accreditation

89. The accreditation body should have arrangements to ensure that an accredited certification body informs it without delay of changes in any aspects of its status or operation.

90. The accreditation body should have procedures to conduct reassessments in the event of changes significantly affecting the capabilities, or scope of accredited activities of the accredited body or the conformance with any other relevant criteria of competence specified by the accreditation body.

91. Accreditation should be re-assessed at sufficiently close intervals to verify that the accredited certification body continues to comply with the accreditation requirements. The periodicity for carrying out reassessments should not exceed five years.

Suspension and Withdrawal of Accreditation

92. The accreditation body should specify the conditions under which accreditation may be suspended or withdrawn, partially or in total, for all or part of the scope of accreditation.

Change in the accreditation requirements

93. The accreditation body should give due notice of any changes it intends to make in its requirements for accreditation.

94. It should take account of views expressed by interested parties before deciding on the precise form and effective date of the changes.

95. Following a decision on, and publication of, the changed requirements, it should verify that each accredited body carries out any necessary adjustments to its procedures within such time as, in the opinion of the accreditation body, is

reasonable.

96. Special considerations should be given to accredited bodies in developing countries and countries in transition.

Proprietor or licensee of an Accreditation Symbol or a Logo⁷⁴⁾

97. The accreditation body which is proprietor or licensee of a symbol or logo, intended for use under its accreditation programme, should have documented procedures describing its use.

98. The accreditation body should not allow use of its Accreditation mark or logo in any way which implies that the accreditation body itself approved a product, service or system certified by a certification body.

99. The accreditation body should take suitable action to deal with incorrect references to the accreditation system or misleading use of accreditation logos found in advertisements, catalogues, etc.

74) The provisions on the use and control of a certification claim, symbol or logo is addressed in the Guidelines for Certification.



Guidelines for certification

Purpose

100. Certification is the procedure by which a third party gives written or equivalent assurance that a fishery conforms with the relevant standard and that a proper chain of custody is in place. Certification is an integral and indispensable part of any ecolabelling scheme of products from sustainable marine fisheries. It provides assurance to buyers and consumers that a certain fish or fishery product comes from a fishery that conforms with the established standard for a sustainable fishery. Impartial certification based on an objective assessment of all relevant factors ensures that ecolabels convey truthful information. This is a necessary condition for the ecolabelling scheme to attain its objectives.

Scope

101. There are two types of certification, certification of the fishery itself and certification of the chain of custody between the time the fish is harvested and the time the fish or fishery product is sold to the final consumer. Separate certificates may be issued for the fishery and for the chain of custody.

102. Two types of assessments are required for certification:

- a) conformity assessment of whether a fishery conforms with the standard and related certification criteria;
- b) chain of custody assessment of whether adequate measures are in place to identify fish from a certified fishery at subsequent stages of fish processing, distribution and marketing.

103. Fish and fishery products that are labelled to indicate to the consumer their origin from a sustainable fishery require both types of assessments and certificates.

Normative references

104. ISO Guide 62, General Requirements for bodies operating assessment and certification/registration of quality systems. 1996.
105. ISO/IEC Guide 65, General requirements for bodies operating product certification systems. 1996.
106. WTO.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Article 5.

Functions and structure

107. The tasks of carrying out conformity and chain of custody assessments should be undertaken by recognized and accredited certification bodies. In order to be recognized as competent and reliable in undertaking the assessments in a non-discriminatory, impartial and accurate manner, a certification body has to fulfill, inter alia, the following requirements.

Requirements

Independence and impartiality

108. The certification body should be legally and financially independent from the owner of the ecolabelling scheme.
109. The certification body and its assessment and certifying staff, whether directly employed by the certification body or sub-contracted by it, should have no commercial, financial or any other interest in the fishery or chain of custody to be assessed other than for its certification services.
110. The certification body should ensure that different personnel conduct the certification decision and the certification assessments.



111. The certifying body should not delegate authority for granting, maintaining, extending, reducing, suspending or withdrawing certification to an outside person or body.

Non-discrimination

112. Access to the services of the certification body should be open to all types of fisheries whether managed by a regional, governmental, parastatal or non-government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s or arrangement. Access to certification should not be conditional upon the size or scale of the fishery nor should certification be conditional upon the number of fisheries already certified.

Human and financial resources

113. The certification body should have adequate financial resources and stability for the operation of a certification system and should maintain appropriate arrangements to cover liabilities arising from its operations and/or activities.

114. The certification body should employ a sufficient number of personnel having the necessary education, training, technical knowledge and experience for performing conformity and/or chain of custody assessments in fisheries.

115. Information on the relevant qualifications, training and experience of each member of the personnel involved in the certification process should be maintained by the certification body. Record of training and experience should be kept to date.

116. When a certification body decides to sub-contract work related to certification to an external body or person, the requirements for such an external body should be no less than for the certification body itself. A properly documented contractual or equivalent agreement covering the arrangements including confidentiality and conflict of interests, should be drawn up.

Accountability and reporting

117. The certification body should be a legal entity and have clear and effective procedures for handling applications for certification of the fishery and/or the chain of custody. In particular, the certification body should maintain and provide to the applicants and certified entities:

- a detailed description of the assessment and certification procedure;
- the documents containing the requirements for certification;
- the documents describing the rights and duties of certified entities.

118. A properly documented contractual or equivalent agreement describing the rights and duties of each party should be drafted between the certification body and its clients.

119. The certification body should have:

- defined objectives and commitment to quality;
- policies and procedures for quality documented in a quality manual;
- an established effective, appropriate system for quality.

120. The certification body should conduct periodic internal audits covering all procedures in a planned and systematic manner to verify that the certification system is implemented and effective.

121. The certification body may receive external audits on relevant aspects. The results of the audits should be accessible by the public.

122. The certification body should have a policy and procedures for retaining records for a period consistent with its contractual, legal or other obligations. The records should demonstrate that the certification procedures have been effectively fulfilled, particularly with respect to application forms, assessment reports and other documents relating to granting, maintaining, extending, reducing, suspending or withdrawing certification. The records should be identified, managed and disposed of in such a way as to ensure the integrity of the process and confidentiality of the



information.

123. The certification body should ensure that, in the event of changes, all affected parties are notified.

124. The certification body should make appropriate documents available on request.

Certification Fees

125. The certification body should maintain a written fee structure for applicants and certified fisheries which should be available on request. In establishing the fee structure and in determining the specific fee of a certification assessment, the certification body should take into account, inter alia, the requirements for accurate and truthful assessments, the scale, size and complexity of the fishery or chain of custody, the requirement of non-discrimination of any client, and the special circumstances and requirements of developing countries and countries in transition.

Confidentiality

126. The certification body should have adequate arrangements, consistent with applicable laws, to safeguard confidentiality of the information obtained in the course of its certification at all levels of its organization.

127. Where the law requires information to be disclosed to a third party, the client should be informed of the information provided, as permitted by the law. Otherwise information about a particular product or fishery should not be disclosed to a third party without a written consent of the client.

Maintenance of Certification

128. The certification body should carry out periodic surveillance and monitoring at sufficiently close intervals to verify that certified fisheries and/or certified chains of

custody continue to comply with the certification requirements.

129. The certification body should require the client to notify it promptly of any intended changes to the management of the fishery, or the chain of custody, or other changes which may affect conformity.

130. The certificate body should have procedures to conduct reassessments in the event of changes significantly affecting the status and management of the certified fishery, or the chain of custody, or if analysis of a complaint or any other information indicates that the certified fishery and/or the chain of custody no longer comply with the required standard and/or related requirements of the certification body.

131. The period of validity of a certificate should not exceed five years in the case of a fishery and three years in the case of the chain of custody. The assessment required for recertification should give particular attention to changes that have been made in the conduct of the fishery or in the management practices, and on any new conditions that changes in standards might require.

Renewal of Certification

132. On the basis of prior regular monitoring and auditing exercises and a full reassessment, the validity of certification can be renewed up to the time limits of five years in the case of a fishery and three years in the case of the chain of custody.

Suspension and Withdrawal of Certification

133. The certification body should specify the conditions under which certification may be suspended or withdrawn, partially or in total, for all or part of the scope of certification.

134. The certification body should require that a certified fishery and/or chain of custody upon suspension or withdrawal of its certification (however determined), discontinues use of all advertising matter that contains any reference thereto and

returns any certification documents as required by the certification body. The certification body should also be responsible for informing the public about the withdrawal or suspension after the appeals process is exhausted.

Maintaining the Chain of Custody

135. Chain of custody procedures are implemented at the key points of transfer. At each point of transfer, which may vary according to the type of fish or fishery product traded, all certified fish or fishery products must be identified and/or segregated from non-certified fish or fishery products.

136. The certification body should ensure that a recipient of certified fish or fishery products should maintain pertinent chain of custody records, including all records relating to shipment, receipt and invoicing.

137. The certification body should have documented procedures defining auditing methods and periodicity of audits. The periodicity of audits should depend on:

- the technical processes undertaken at the point of transfer;
- such risk factors as the value and volume of the certified output.

138. Any breach or apparent breach of the chain of custody identified during an inspection/audit should be explicitly recorded in the inspection/audit report together with:

- an explanation of the factors that allowed the breach to occur;
- an explanation of the corrective actions taken or required to ensure that a similar breach does not re-occur.

139. All inspection/audit records should be incorporated into a written inspection/audit report that is available to pertinent parties and filed at the certification body office.

140. The inspection/audit report should contain as a minimum:

- the date of the inspection/audit;

- the name(s) of the person(s) responsible for the report;
- the names and addresses of the sites inspected/audited;
- the scope of the inspection/audit;
- comments on the conformity of the client with the chain of custody requirements.

Use and Control of a Certification Claim, Symbol or a Logo

141. The certification body, accreditation body or owner of the ecolabelling scheme should have documented procedures describing the requirements, restrictions or limitations on the use of symbols or logos indicating that a fish or fishery product comes from a sustainable fishery. In particular, the ecolabelling scheme is required to ensure that symbols or logos should not relate to claims that are of no relevance for sustainable fisheries and could cause barriers of trade or mislead the consumer.

142. The certification body, accreditation body or owner of the ecolabelling scheme should not issue any license to affix its mark/claim/logo or issue any certificate for any fishery or fishery product unless it is assured that the product bearing it is in fact produced from certified sources.

143. The certification body, accreditation body or owner of the ecolabelling scheme is responsible that no fraudulent or misleading use is made with the use and display of its certification mark and logos.

144. If the certification body, accreditation body or owner of the ecolabelling scheme confers the right to use a symbol or logo to indicate certification, the fishery and any fish or fishery product from such fishery may use the specified symbol or logo only as authorized in writing by it.

145. The certification body, accreditation body or owner of the ecolabelling scheme should take suitable action to deal with incorrect references to the certification system or misleading use of symbols and logos found in advertisements, catalogues, etc.



146. All certificates issued should include:
- the name and address of the accreditation body or owner of the ecolabelling scheme;
 - the name and address of the certification body;
 - the name and address of the certification holder;
 - the effective date of issue of the certificate;
 - the substance of the certificate;
 - the term for which the certification is valid;
 - signature of the issuing officer.

Resolution of complaints and appeals

147. The accreditation body or owner of the ecolabelling scheme should have a written policy and procedures, applicable to accredited certification bodies, for dealing with any complaints and appeals from involved parties in relation to any aspect of certification or decertification. Such procedures should be timely, clearly define the scope and nature of appeals that will be considered and should be open only to parties involved in, or consulted, during the assessment. Costs of appeals should be borne by the appellant.

148. These procedures should include an independent and impartial committee to respond to any complaint. If possible, the committee should attempt to resolve any complaint through discussion or conciliation. If this is not possible, the committee should provide a written finding to the certification body, accreditation body or owner of the ecolabelling scheme as appropriate, which should transmit the finding to the party or parties involved.

149. The above does not exclude recourse to other forms of legal and administrative processes as provided for in national legislation or international law.

Keeping of records on complaints and appeals concerning certification

150. The certification body, accreditation body or promoter/owner of the ecolabelling scheme

should:

- keep a record of all complaints and appeals, and remedial actions related to certification;
- take appropriate corrective and preventive action;
- assess the effectiveness of remedial actions;
- safeguard confidentiality of information obtained during the investigation and resolution of complaints and appeals concerning certification.

151. Information on procedures for handling of complaints and appeals concerning certification should be made publicly available.



MSC 에코라벨링 마크



해양수산부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 FISHERIES

ECOLABELLING